연구보고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책임연구원 : 이진영(인하대학교 · 교수)
- 공동연구원 : 장안리(숙명여자대학교 · 박사)
- 공동연구원 : 김판준(길림사범대학 · 교수)
- 공동연구원 : 임영언(전남대학교 · 교수)
- 공동연구원 : 정호원(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 전문연구원)
- 공동연구원 : 성일광(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 전임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SKA (사)재외한인학회
글로벌 한민족공동체 연구의 중심

발 간 사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들의 노력 이외에 해외에 진출해 있는 동포 네트워크들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확대 등을 위해서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세대교체로 인해서 한민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어서 향후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재외동포 차세대라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한민족의식 등을 진단하고,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수행되어야 할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로 1차 년도에는 미래 인재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전체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2차 년도에는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개발,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소외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별로 다양한 재외동포 전문가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제안되어 재외동포청소년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맡아 수행하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즉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여러 관점에서 비교하여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5개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얻고자 하였다.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정책, 청소년정책 및 인재유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낼 문헌 및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각종 홈페이지 및 법령 제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별 재외동포 관련 정부 기관의 웹싸이트 검색에서부터 이메일 연락 등을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미국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정부 및 민단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정부 지원 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은 국무부의 해외학교부에서 수행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미국시민(ACA), 해외미국여성연맹(FAWCO), 파리장기거주미국여성모임(AAWE), 해외미국인협회(AARO)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은 중국 국적인 화교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외국 국적인 화인 및 화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화교화인 업무의 총괄은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무판공실은 중국내 지방 조직으로 체계화 되어 있으나 해외 화교화인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은 중국해외교류협회(中国海外交流协会),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 등의 사회단체 육성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중국내 화문교육기지와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는 교육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화교화인 사회와의 지역적 매개를 통해 교육·문화 사업들을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은 외국국적 일계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본국적자인 재외방인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거주 외국국적 일계인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민간단체사업을 JICA의 일부사업으로 계승해 오고 있으며, 해외 일계인 청소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JICA 일본 '청년해외협력대(JOCV)'의 해외파견 사업이다. 독일에서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초점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 맞추고 있으며, '사회통합 강좌'는 크게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된다.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은 독일 문화적인 정체성 보존을 위해 독일어교육이 핵심이 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와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에서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관련 정부정책은 유대인의 국내이주를 돕기 위한 이민자 수용부와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기 위한 디아스포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민간기관으로는 세계시온주의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 네페쉬 베네페쉬(Nefesh B'Nefeshi) 등이 있다.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공동체와 직업교육 프로그램, 히브리어와 대학입시 교육프로그램, 상담 및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어 :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정책,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이스라엘, 프로그램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즉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여러 관점에서 비교하여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5개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내용임. 특히 연구의 범위를 국가별 정부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영역의 재외동포 청소년 사업 유형들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얻고자 하였음.

3. 연구방법

○ 먼저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정책, 청소년정책 및 인재유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낼 문헌 및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음.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홈페이지 및 법령 제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국가별 재외동포 관련 정부 기관의 웹싸이트 검색에서부터 이메일 연락 등을 두루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공동 연구자 간의 연구 공유와 교류를 위해 연구자 회의,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의 공동 일정을 추진하였음.

4. 국가별 연구 결과 요약

1) 미국의 재외동포청소년정책

○ 미국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크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미국부모에게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주하다 학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경우로 나뉨. 해외에 어학연수 등 학업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매년 증가는 추세여서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 미국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정부 및 민단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정부 지원 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은 국무부의 해외학교부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협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학교의 행정, 교육, 기술, 재정, 교육, 직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돕고 있음. 되도록이면 보다 많은 학생, 교사 및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보다는 지역별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7백만 달러 투자를 통해 129개의 사업 (학습 계획안, 컴퓨터 프로그램, 교사/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 등)을 지원하였음.

○ 민간단체의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미국시민(ACA), 해외미국여성연맹(FAWCO), 파리장기거주미국여성모임(AAWE), 그리고 해외미국인협회(AARO)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미국여성연맹(FAWCO)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 및 적극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91년 두바이의 미국여성협회에서 만든 아메리카나 프로그램(Americana Program)임. 이 프로그램은 3세에서 10세 정도의 재외동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긍정적인 환경 안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임.
- 파리장기거주미국여성모임(AAWE)은 프랑스인들과 결혼한 미국여성들이 자녀들에게 미국문화 (할로윈, 추수감사절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이들은 여러 사교 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머니'를 문화적 가교로 보고 이들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중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 중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중국 국적인 화교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외국 국적인 화인 및 화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화교화인 업무의 총괄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무판공실은 중국내 지방 조직으로 체계화 되어 있으나 해외 화교화인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은 정부 기관인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해외의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중국해외교류협회(中国海外交流协会),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 등의 사회단체 육성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집행하고 있음.

○ 중국 내 화문교육기지와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는 교육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화교화인사회와의 지역적 매개를 통해 교육·문화 사업들을 추진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화교화인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화(中华)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화인소년작문대회(华人少年作文比赛)', '중국뿌리찾기여행(中国寻根之旅)', '중화문화대낙원(中华文化大乐园)', '해외화예청소년 중문노래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文歌曲大赛)', '해외화예청소년중화문화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华文化大赛)' 등이 있음.

○ 화교화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중화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주국 지역별 대회와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이어지며, 유형별로도 언어, 작문, 춤과 무용, 노래 등 다양하다. 특히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화교화인 교육기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화문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으며, 세계 화교화인 청소년과 중국의 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3) 일본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 일본에서는 각종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은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18세 미만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최대 20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은 외국국적 일계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본국적자인 재외방인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 해외거주 외국국적 일계인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민간단체사업을 JICA의 일부사업으로

계승해 오고 있으며, 해외 일계인청소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JICA 일본 '청년해외협력대(JOCV)'의 해외파견 사업임. JICA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해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일계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일본 국내에서 모집하여 선발과 훈련을 거쳐 해외현지로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일본국민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은 일본헌법이 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및 의무교육무상의 정신에 따라 해외자녀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문부과학성이 재외교육시설에 교원파견, 교재정비보조 및 귀국학생의 수용과 관련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무성에서는 재외교육시설의 건물임대료 및 현지채용 교원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청소년에 관한 주요 프로그램은 해외유학촉진정책, 재외방인 및 해외 일계인 청소년교류프로그램 등이 있음.

- 2014년 4월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계획'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대처라는 방안을 발표하여, 일본정부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유학 중인 대학생을 6만 명에서 12만 명, 고등학생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020년까지 배가시킨다는 계획으로 관계 부성청이 협력하여 해외유학을 통한 일본인 청소년의 우수인재양성을 촉진시키며 동시에 대학과 산업계에도 인재양성에 대한 의식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재외방인 및 해외 일계인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은 내각부 청소년 사회활동 핵심리더 육성 프로그램, 외무성 가케하시 프로젝트(KAKEHASHI Project), 개발도상국 청소년지원 연수사업, 재미일계인 학생 초청사업 등이 있음.

4)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독일의 제도와 정책

○ 재외독일동포청소년은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으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내지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셋째로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대상에 따라서 정책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초점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 맞추고 있으며, '사회통합 강좌'는 크게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됨.

-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은 독일 문화적인 정체성 보존을 위해 독일어교육이 핵심되고 있음. 해외에 세워진 독일(국제)학교 및 독일어 강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공인된 '독일어 어학 증명'(DSD) 또한 발행하는 현지의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연방행정청' 내의 '해외 학교를 위한 중앙기구'(이하 '중앙기구')는 외무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들에 대한 외무성의 지원을 중개해 오고 있음. '중앙기구'는 외무성의 3대 외교정책 중 하나인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의 목표들을 실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며, 무엇보다 현지 국가의 문화 및 사회와의 만남, 해외 독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 교육 지원, 독일어의 장려, 연구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독일의 입지 강화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
- 민간차원에서는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와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일인과 모국인 독일 사이의 '문화적 매개자'로서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및 그들 공동체의 언어, 문화, 습속 등의 유지와 장려,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 내지 교환의 장려, 외국국적 독일동포 학생, 대학생, 직업청소년 등을 위한 장학사업의 수행, 독일어 및 독일문화의 전파자, 그리고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들 간 연결고리로서의 해외 독일 매체에 대한 지원, 교육, 문화, 학문, 연구 등을 위한 외국국적 독일동포청소년 시설(대표적으로 학교, 도서관, 각종 협회 등)에 대한 문화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외국국적 독일동포청소년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국제회의나 포럼, 강연, 세미나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혹은 후원, 의료와 구제 등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5) 이스라엘청소년 재외동포정책

-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스라엘로의 이주 후 정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귀환법(Law of Return)에서 유대인은 모계혈통으로 유대인이거나 비유대인일 경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함.

- 재외동포 관련 정부정책은 유대인의 국내이주를 돕기 위한 이민자 수용부와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기 위한 디아스포라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재외동포 관련 민간기관으로는 세계시온주의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 재외동포 유대인의 정체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대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JAFI), 북미와 영국에서 유대인 이민을 촉진, 장려하는 네페쉬 베네페쉬(Nefesh B'Nefeshi) 등이 있음.
- 청소년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은 타글릿(Taglith, Birthright)프로그램, 니쉬(niche) 프로그램, 야브네 올라미(Yavneh Olami), 키부츠 프로그램 등이 있음. 타글릿(Taglith, Birthright)프로그램은 이스라엘 10일 무료 방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은 키부츠여행, 고고학 유적지 탐방, 하이킹, 생태 탐방, 역사 탐방 등 다양함. 니쉬(niche) 프로그램은 의대생, LGBTQ (성소수자), 음악가, 금융전문가 을 위한 특별 방문 프로그램임. 야브네 올라미(Yavneh Olami)는 종교 시온주의 조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청소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키부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공동소유 집단농장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울판 (히브리어 언어 학습) 프로그램, 티쿤 올람(사회 정의 프로그램)과 각종 이스라엘 경험 프로그램 등이 있음.
- 공동체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Israel Tech Challenge), 글로벌 체인지 에이전트(Global Change Agents), 마콘 젊은 지도자 훈련(Machon Youth Leadership Training) 등이 있음.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Israel Tech Challenge)는 동포 유대인 학생과 이스라엘 현지 IT기술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컴퓨터 과학 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거나 벤처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임. 글로벌 체인지 에이전트(Global Change Agents)는 유대 기구의 글로벌 리더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미, 남미, 유럽과 이스라엘 등의 여러 그룹의 또래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예술 분야의 훈련과 글로법 리더쉽 훈련과 개인 멘토를 제공함. 마콘 젊은 지도자 훈련(Machon Youth Leadership Training)은 청년들을 위한 리더쉽 프로그램으로 매년 4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재외동포유대인들의 히브리어와 대학입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나알레(Na'ale), 마사 이스라엘 프로그램(Masa), 메키나(Mechina)와 타카(Taka), 키부츠 울판, 울판 키네렛(Ulpan Kinneret), 울판 에찌온 네트워크(Ulpan Etzion Network) 등이 있음.
- 상담 및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헤벤 센터(Hechven Center), 커넥트 이스라엘(Connect Israel), 가린 짜바르(Garin Tzabar) 등이 있음.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3
2. 연구 목표 및 내용 ····· 3
3. 연구 방법과 한계 ····· 6

Ⅱ.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 7
1. 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 9
2.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 35
3. 일본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 연구 ····· 65
4.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독일의 제도와 선택 ····· 129
5. 이스라엘 청소년 재외동포 정책 ····· 157

Ⅲ.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183
1. 국가별 연구결과 ····· 185
2.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제언 ····· 198

참고문헌 ····· 205

부록 ····· 223
1. 일본인학교 사립재외교육시설(2014년 7월 기준) ····· 226
2. 과거 문부성 지정 혹은 인정되었던 재외교육시설 ····· 230
3. 과거 문부성 지정 혹은 인정되었던 사립재외교육시설 ····· 232
4. 재외교육시설 안전확보 통지(문교해제214호) ····· 234

표 목차

〈표 Ⅱ-1〉 국가별 미국인 거주 현황 ····· 11
〈표 Ⅱ-2〉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이주 원인 ····· 14
〈표 Ⅱ-3〉 해외 거주 투표자들의 인구통계정보 ····· 14
〈표 Ⅱ-4〉 해외 미국 국무부 지원 학교의 SAT시험 성적 ····· 21
〈표 Ⅱ-5〉 2014-2015년 미국 정부 지원 사립학교 ····· 23
〈표 Ⅱ-6〉 OSAC의 장학금 및 프로그램 ····· 25
〈표 Ⅱ-7〉 2014년 미국 국무부 예산 ····· 27
〈표 Ⅱ-8〉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적 지원 ····· 31
〈표 Ⅱ-9〉 해외 미국 민간단체의 역사 및 프로그램 ····· 31
〈표 Ⅱ-10〉 국무원 교무판공실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 ····· 38
〈표 Ⅱ-11〉 중국해외교류협회(中国海外交流协会) 조직 현황과 네트워크 ····· 42
〈표 Ⅱ-12〉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 주요 사업과 내용 ····· 44
〈표 Ⅱ-13〉 중국의 '화문교육기지' 지정 현황 ····· 46
〈표 Ⅱ-14〉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1차 지정 ····· 47
〈표 Ⅱ-15〉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2차 지정 ····· 48
〈표 Ⅱ-16〉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3차 지정 ····· 49
〈표 Ⅱ-17〉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4차 지정 ····· 50
〈표 Ⅱ-18〉 2013년 화문학교 교사 연수 개최 현황 ····· 51
〈표 Ⅱ-19〉 2014년 화문학교 교사 연수 개최 현황 ····· 53
〈표 Ⅱ-20〉 2015년 화문학교 교사 연수 개최 현황 ····· 54
〈표 Ⅱ-21〉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대상 주요 중화문화 프로그램 ····· 55
〈표 Ⅱ-22〉 최근 10년 '화인소년작문대회(华人少年作文比赛)' 참가자 현황 ····· 56
〈표 Ⅱ-23〉 해외 화예청소년 중화문화대락원(中华文化大乐园)' 참가자 현황 ····· 59
〈표 Ⅱ-24〉 해외 화예청소년 중화문화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华文化大赛)
사업 추진 개요 ····· 60
〈표 Ⅱ-25〉 일본 각종 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구분 ····· 68

〈표 Ⅱ-26〉 해외일계인의 거주자 현황(2013년 기준) ····· 74
〈표 Ⅱ-27〉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을 위한 부성청(府省厅)의 대응 방안 ····· 80
〈표 Ⅱ-28〉 문부과학성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 추이 ····· 86
〈표 Ⅱ-29〉 일본 내 브라질 학교(2006년 기준) ····· 92
〈표 Ⅱ-30〉 해외에서일본 학생 수-일본 해외자녀교육 현황) ····· 93
〈표 Ⅱ-31〉 세계 각지 재외교육시설 재학생 수 추이 ····· 95
〈표 Ⅱ-32〉 지역별 재적자 수의 비율(의무교육단계) ····· 97
〈표 Ⅱ-33〉 귀국학생 수의 동향 ····· 101
〈표 Ⅱ-34〉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의 발자취(2008년 4월 기준) ····· 103
〈표 Ⅱ-35〉 재외교육시설 안전대책 ····· 112
〈표 Ⅱ-36〉 청소년 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 ····· 117
〈표 Ⅱ-37〉 2011년도 청소년 교육시설 활용 교류사업 일람표 ····· 118
〈표 Ⅱ-38〉 가케하시 프로젝트(외무성) ····· 122
〈표 Ⅱ-39〉 해외 청소년 연수실적 ····· 123
〈표 Ⅱ-40〉 청소년 연수프로그램 일정 ····· 124
〈표 Ⅱ-41〉 JICA와 KOICA 사업 비교 ····· 127
〈표 Ⅱ-42〉 세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과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 ···· 143
〈표 Ⅱ-43〉 세계 유대인 분포도 ····· 159
〈표 Ⅱ-44〉 이민자 흡수 바스켓 ····· 170
〈표 Ⅱ-45〉 이스라엘 이민 방식에 따른 이민 ····· 172
〈표 Ⅱ-46〉 이스라엘 체험과 리더쉽 프로그램 ····· 173
〈표 Ⅱ-47〉 사회활동과 상담 프로그램 ····· 174
〈표 Ⅱ-48〉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174
〈표 Ⅱ-49〉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 ····· 175
〈표 Ⅱ-50〉 재외동포 유대인 청소년 이민 현황 ····· 176
〈표 Ⅱ-51〉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 177
〈표 Ⅱ-52〉 독립 이후 1990년대까지의 대규모 알리야 ····· 180

그림 목차

【그림 Ⅱ-1】 미국정부 해외 사립학교 지원 구성 체계 ····· 20
【그림 Ⅱ-2】 중국의 청소년 개념과 사전적·사회적 분류 ····· 36
【그림 Ⅱ-3】 중국의 해외 중국계에 대한 구분 ····· 37
【그림 Ⅱ-4】 국무원 교무판공실 2014년도 예산의 수입 내역 분류 ····· 39
【그림 Ⅱ-5】 중국화문교육기금회 2012년~2014년 재무 상황 ····· 40
【그림 Ⅱ-6】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업무 추진 구조 ····· 41
【그림 Ⅱ-7】 '중국뿌리찾기여행(中国寻根之旅)'의 지방화와 주제화 사례 ····· 57
【그림 Ⅱ-8】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입 정책과 화교화인 인재 귀환 ····· 62
【그림 Ⅱ-9】 일본 중앙성청 청소년 정책 분담 ····· 71
【그림 Ⅱ-10】 2012년 현재 일계인 수 ····· 74

제 Ⅰ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표 및 내용
3. 연구 방법과 한계

제 I 장
서 론[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미래인재 개발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의 하나이다. 특히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지구촌의 상호 의존 경제 체제에서,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는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자산이다. 각 국가는 국내에서의 교육을 통해, 혹은 해외로부터의 유입, 즉 이민자 유치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대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미래창조경제'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해외 우수인재의 유입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인력 중 한민족 해외거주자인 재외동포 우수인재의 도입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이미 길러진 인재의 도입이라는 이민자 유치뿐 아니라, 미래인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재외동포 청소년의 발굴과 활용 여부 역시 주목받고 있다. 즉 미래인재 개발 전략 논의를 한국 뿐 아니라, 해외의 재외동포까지 정책의 지평을 넓혀보는 것이다. 그만큼 미래 인재에 대한 수요는 사활적이며, 재외동포 청소년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적 고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 청소년 미래인재 개발 전략 논의와 한국의 정책 환경 변화가 이 연구의 배경이며, 필요성이라 할 것이다.

2. 연구 목표 및 내용

1)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즉 재외동포청소

1) 이 장은 이진영 교수(인하대학교)가 집필하였음.

년 정책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글로벌 시대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여러 관점에서 비교하여,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이 연구가 가진 부수적 목적이다. 특히 미래인재개발을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발굴하는데 이 연구가 기초적 관점을 제기하는 것을 잠재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첫째,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정책은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정책과 '국내에 거주하는' 각 국의 청소년정책이 별개로 진행되어 왔다. 즉 재외동포정책이란 한 국가의 해외거주 동포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세대별로 세분화할 경우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 차세대 정책'이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분야이다.

반면 각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축적된 분야이다. 중요한 점은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각 국가의 '재외동포정책과 청소년정책이 교차하는 지점' 즉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이란 점이다. 재외동포정책과 청소년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인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사실상 초보적이다. 왜냐하면 재외동포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진 청소년 관련 연구는 '재외동포 차세대' 혹은 '한국어 교육 및 한글 교육' 등과 같은 다른 범주에서 다루어졌고(이진영·박우, 2012), 본격적인 '재외동포청소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배경인 미래인재개발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인재유입' 연구 역시 일천한 상황(이진영·강성봉·김판준·임영언·정호원, 2013)며, 이런 면에서 본 연구가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사례로 5개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검토한다. 세계의 많은 국가는 각기 독특한 재외동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는 자국 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천한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해외 5개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사례검토를 위한 5개 국가의 선정은 재외동포정책을 비교적 잘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는 국가와, 주요 선진국을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재외동포정책 모범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미래 선진국으로서의 통일된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의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사례가 선정되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으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민 국가인 미국의 해외 거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세계 국가로서의 방향 설정과 청소년정책 관리 방향을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은 세계 양 대 강국으로 현재 부상 중이며, 무엇보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즉 화교 화인에 대해 매우 정교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세대라 할 수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미래 중국의 화교 화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계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이 속에서 청소년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고 유럽의 맹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 같은 분단국가인 한국의 미래 통일 청소년정책과 한민족 네트워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스라엘은 해외 유대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수단을 고안하고 발전시켜,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스라엘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해외 유대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국민국가를 넘어서서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려는 한국에 주는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셋째, 5개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유사한 구조에서 검토되고 있다. 먼저 각 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및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고, 청소년에 대한 구분 및 개념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각 국이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범주화하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가 그러하듯, 일부 국가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범주가 부재하며, 그 결과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시각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즉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법령 및 정책의 유무, 다양한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수인재유치라는 측면에서 각 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조망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제외동포청소년 정책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 제안을 우수인재 유치에 초점을 두어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5개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해, 개념 및 현황, 법과 제도, 구체적 정책과 프로그램, 우수인재 유치와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기하는 점에서 본 연구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3. 연구의 방법과 한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시도하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정책, 청소년정책 및 인재유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낼 문헌 및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뿐 아니라, 정부의 각 종 홈페이지 및 법령 제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기구의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언급할 것은 본 연구가 이 분야에서 시도되는 첫 연구라는 점이다. 즉 관련된 선행연구의 수집 및 분류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 제시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충족되었지만, 앞으로의 심화연구를 기대하는 초보적 연구라는 점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이란 범주에서 검토하다보니, 각 국의 재외동포와 청소년정책 개념 규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를 이론적으로 충분히 비교 검토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니었으나, 5개 국가의 비교를 위한 통일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 연관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각 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수집하였지만,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관되게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제 Ⅱ 장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1. 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2.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3. 일본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 연구
4.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독일의 제도와 선택
5. 이스라엘 청소년 재외동포 정책

제 Ⅱ 장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1. 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2)]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과 관련된 정책을 정리 및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은 176여개 국가에 약 700만 여명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사회 규모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한다. 이러한 인적자원은 국가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차세대는 모국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에서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미국의 재외동포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민정책연구원(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의 보고서 및 연구, United Nation의 국제 이민관련 보고서, 재외동포의 참정권에 대한 Smith의 연구 및 유럽 몇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2015) 의 연구로 국한되어 있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현황 및 정책을 다룬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문헌자료 및 재외동포 지원 단체들의 자료를 십분 활용 하여 아래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미국 재외동포에 대한 명칭과 의미를 검토하고 미국 재외동포 현황 및 이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 재외동포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정책, 법령,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정리한 후 민간단체에서 재외동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재외동포 청소년을 다루기에 앞서 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통계 부재, 혈통

2) 이 절은 장안리 박사(숙명여자대학교)가 집필하였음.

및 시민권의 문제)는 현재 미국정부가 재외동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재외동포 집단 전체를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보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루며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취지 및 활동들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청소년과 유학생에 대한 미국정부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검토하며 미국정부의 재외동포 접근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정부가 재외동포 청소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현황과 그들과 관련된 정책을 주제로 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한국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미국 재외동포의 정의, 현황, 및 이주 원인

(1) 미국 재외동포에 대한 명칭과 의미

미국 재외동포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공용되게 사용되는 단어는 expatriate 이다. 법적으로는 추방당한 집단을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국외 거주인을 뜻한다. 학계에서도 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expatriate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단어는 세계대전 때 파리로 떠난 미국인들의 이미지가 담겨 있고 부유층, 특권자 계층 혹은 자가 분리 집단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한다(Cohen, 1977: 6-8).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부분의 해외거주 미국인들이 해외 파견으로 단기 체류하고 있으며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인해 해외에서 즐기며 살고 있으므로 '라이프스타일 이주자'라는 명칭도 제안된 바 있다(Benson & O'Reily, 2009: 609). 특히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현지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여유롭게 살지 못했던 미국인들도 멕시코에서는 부유층에 속한다. 하지만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재외동포 미국인들의 전체 수를 고려했을 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의 분분함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연구하는 특정 집단의 상황을 고려하여 expatriate, 디아스포라, 혹은 해외거주 미국인을 사용한다. 본 보고서에는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해외거주 미국인'(Overseas Americans)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며 재외동포 미국인(overseas American diaspora)도 같은 의미에서 사용할 것이다. 현재 미국정부에서는 이들을 칭하는 공식적인 명칭과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칭이 본 보고서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2) 재외동포의 현황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100여개 국가에 약 220~760만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수의 약 0.78%를 차지한다. 미국 디아스포라들은 취업, 유학, 선교, 국제결혼 등의 이유로 모국을 떠나며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등 이며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10개국에 전체의 약 67%의 재외동포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30-32).

표 Ⅱ-1 국가별 미국인 거주 현황

구분	국가	미국시민 수 (명)
1	멕시코	509,251
2	캐나다	291,652
3	영국	183,326
4	독일	159,326
5	호주	81,672
6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구	56,289
7	일본	52,449
8	프랑스	44,919
9	필리핀	44,788
10	스페인	38,712
해외거주 미국인 합계 (세계은행의 2010년 통계)		2,423,175

* 출처: 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Migrants or expatriates? Americans in Europ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30에서 부분 재인용; 본 수치는 군인, 국방부 소속 직원들과 직계 가족, 그리고 18세 이하인 청소년 제외.[3)]

3) Klekowski von Koppenfels, A. (2014). Migrants or expatriates? Americans in Europ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미국의 재외동포 거주자들의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이다. 첫째는 미국 정부 집계, 둘째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통계, 셋째는 비영리 단체에서 발표한 집계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정확한 집계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미국 국무부가 1999년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은 약 380만 여명이다(US Census Bureau, 2001).[4] 이 집계에는 미국 군인, 국방부 소속 직원들과 직계 가족, 그리고 18세 이하인 청소년 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등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추산된 수치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1999년 이후에는 정확한 집계가 있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재외동포 관련 집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Flick & Yun, 2007: 4). 2013년 국무부는 구체적인 통계(국가별 미국인 수, 나이, 성별 등)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해외거주 동포가 약 680만 여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미국의 10년 주기 인구조사에 재외동포 미국인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 22-30).

정부의 자료 이외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수치는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구 조사 자료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들에게 근처 시나 구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오히려 더욱 정확한 집계를 가능하게 한다(Smith, 2010 : 10). 현재 자국에서 거주하는 자들의 출생국가 및 국적 등을 세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독일, 영국 등의 경우는 미국인들의 수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서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인구 신고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Smith, 2014 : 19-21). 하지만 미국은 혈통주의로(jus sanguinis) 해외에서 태어나도 부모 중 한명이 미국인일 경우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출생한 많은 미국인들이 이중시민권자이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30). 문제는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중 이중국적 표기를 요구하여 인구 통계에 합산을 하는 국가가 있고 이중국적자들은 인구 통계에서 제외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 미국인들은 실제보다 적게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수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비영리기관이 발표한 집계를 통해서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이권을 위해 설립된 American Citizens Abroad(ACA)의 통계에 의하면

4)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01).
https://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overseas/overseas-congress-report.html에서 2015년 6월 12일 인출.

재외동포 미국인들은 약 630만 여명 정도 된다(ACA, 2011).[5]

위의 세 가지 집계 방법 모두 문제점이 있고 미국 정부와 비영리 단체 사이의 집계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 재외동포 미국인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약 '220-760 만여 명'을 사용한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32). 본 연구에서도 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수치가 범위는 넓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치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3) 재외동포의 해외 이주 원인

해외거주 미국인들이 국외로 나가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결혼(29%), 직장(24%), 개인의 선택(15.4%) 등 이다(OVF, 2009: 14). 미국에서 태어나 거주하다 해외 파견 및 결혼 등의 이유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례도 있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이민자의 부모에게 태어나 부모의 국가로 귀환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해외에서 미국 부모에게 태어나 신청을 통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이중국적 소유자로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도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장기 체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는 '세계적 유목형'도(D'Andrea, 2007: 10) 존재하기 때문에 딱히 전형적인 해외거주 미국인의 양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1-5).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인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나이와 학력 부분에서 독특한 점이 발견 된다(Smith, 2014b: 15-20). 미국 국방부에서 해외거주 미국인들의 투표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집계 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인구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주로 40-59세 사이로 본토보다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 가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 17%가 5-10년 정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OVF, 2009: 14). 학력에 있어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토의 경우 투표를 하는 미국인들의 40% 정도가 고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경우 60% 이상이 학사 혹은 석사 학위 소유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3 참조). 이들의 주 직종은 교육, 경영, 예술 등 이었으며 퇴직자 및 가정주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lekowski von Koppenfels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한 미국인들 중 5명 중 1명은 영어

5) American Citizens Abroad (2011). https://americansabroad.org/에서 2015년 6월 13일 인출.

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20%는 IT 혹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 38).

표 Ⅱ-2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이주 원인

해외거주 이유/목적	2008	2010
결혼	28.9%	31.3%
직장	24.1%	21.1%
개인 선호/선택	15.4%	18.1%
기타	8.5%	9.1%
퇴직	2.9%	5.5%
해외출생	4.1%	3.1%
경제적 이유	1.7%	2.6%
연구	2.7%	2.1%
군인	4.8%	2.1%
공무원	1.3%	1.1%

* 출처: Smith(2014). Convenience Voting and Technology: The Case of Military and Overseas Voters. p. 34에서 부분 재인용. Smith 는 해외투표재단의 2012년 자료를 사용하여 정리.

표 Ⅱ-3 해외 거주 투표자들의 인구통계정보

인구통계정보	해외투표자 현황 (2012년 해외투표재단)	미국 본토 투표자 현황 (미국지역사회설문조사)
남자	43.4%	49.2%
여자	56.6%	50.8%
고등학교 졸업 혹은 미국 고졸학력인증서(GED)	6.6%	28.0%
전문대 혹은 2년제 대학 졸업	9.2%	29.2%
학사	32.9%	18.2%
석사	34.9%	10.9%
박사	14.4%	–
교육, 교사, 연구 등	21.1%	9.3%

* 출처: Smith(2014). Convenience Voting and Technology: The Case of Military and Overseas Voters, p. 30에서 부분 재인용. Smith 는 미국 2012년 통계국 자료와 미국지역설문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 및 해외투표재단 (Overseas Vote Foundation) 의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

3) 미국의 청소년 개념 및 정책

(1) 미국의 청소년 개념

미국에서는 청소년에 대응하는 단어로 teenager를 주로 사용한다. 영어의 어미에 -teen이 들어가는 숫자가 13~19세이므로 이들을 teenager 라고 하며 이 시기는 청소년기 및 사춘기와 거의 일치한다. 미국심리협회(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는 청소년을 10세에서 18세라고 규정하지만 청소년의 육체적, 사회적, 지적 성장 속도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연령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주장 한다(APA, 2002: 5). 청년심리학자들은 10대의 청소년을 연령단계로 나눠 15세 이하를 로틴(low teen, 청년전기), 16세 이상을 하이틴(high teen, 청년중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미국의 청소년 제도 관련

미국 연방 정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주 법령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노동법 (16세 이하의 청소년의 근무시간 제한), 음주연령 (21세), 군 입대 연령 (18세))]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주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범죄행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나이 및 정의(대부분의 주는 18세 이하로 규정), 그리고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등(대부분의 주는 21세까지)은 주 정부가 정한다(Juvenile Law Center, 2015).[6]

미국정부는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각 부처와 주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청소년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소속 차관보 조직인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y(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ACF 내 가족·청소년 복지국(Family and Youth Service Bureau)을 두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집행의 실질적인 집행은 주정부나 시, 카운티 등과 같은 지역 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외동포와 그들의

6) Juvenile Law Center
http://www.jlc.org/news-room/media-resources/youth-justice-system-overview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자녀는 자신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에 있어(세금, 재외동포 자녀 시민권 취득 자격 조건 등) 자신이 속해있는 해당 주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ACA, 2011).[7]

(3) 재외동포 청소년 현황

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미국부모에게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며,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주하다 학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경우이다.

해외에서 미국시민인 부모아래 태어난 아이는 두 부모 중 한 명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며 '물리적 참석 요구'(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조항을 충족했을 경우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8]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의 미국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Consular Reports of Birth Abroad(CRBA)를 신청해야 하는데 2000~2009년 사이 50만 건이 신청되었으며 대부분은 유럽국에서 접수되었다(Whitmer, 2010: 10).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로 부모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집계될 수 없다.

해외에 어학연수 등 학업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매년 증가는 추세여서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교육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 에 의하면 2011~2012년에는 28만 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갔다. 이는 미국 총 고등교육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로 보도되었다(IIE, 2013: 33)[9]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8주 정도의 단기 어학 연수생으로 해외를 방문하며 장기 유학생들은 약 3.2% 정도에 그치고 있다(IIE, 2013: 33). 미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중국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는 이민정책연구원(MPI), UN 등에서 발표한 재외동포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2014: 3).

2001년부터 유학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도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단기 어학연수 기간의 경험이 추후 장기 해외 거주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lekowski von Koppenfels(2014: 22-27) 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경우 유학을 간 학생들이 삶의 여러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우연한 이민자'가(accidental immigrant)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

7) American Citizens Abroad (2011). https://americansabroad.org/에서 2015년 6월 13일 인출.
8)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2014). http://www.uscis.gov/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9)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IIE).(2013). http://www.iie.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4)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권리

미국의 해외동포 청소년들의 수는 적지만 중요한 집단이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서 거주하든 해외에서 출생하여 이중 국적을 소유하든 18세가 되면 참정권이 주어진다. 아직 20개 주에서는 30일 거주사항을 충족해야 참정권이 주어지지만 2014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30개 주와 워싱턴 DC 는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미국시민들도 미국부모의 이전 주소를 사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FVAP, 2014).[10] 이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 번도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미국시민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참정권 이외에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별다른 정책, 법령, 제도 등이 없다. 단 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장애 혹은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재아일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에서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주는 혜택이며 모든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니다.

4) 미국 정부의 해외 청소년 지원 제도

(1) (의무) 교육 지원

미국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은 주 정부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주로 5-8세부터 16-18세까지이다. 이 의무 교육은 공립,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립학교, 그리고 홈스쿨링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녀들이 미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 째는, 미국 정부가 세우고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학교(Department of Defence Dependent Schools, DoDDS)이다. 두 번째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자, 비영리

10)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2014) http://www.fvap.gov/vao/materials/ocit-order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단체, 학부모, 기업가 및 종교인 등에 의해 세워진 사립 혹은 독립 학교이다. 이러한 사립 학교들은 1960년대 미국 정부 기관 및 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숫자가 늘었으며 정부의 지원 없이 세워졌다. 하지만 1961년의 풀브라이트-헤이스 법(Fulbright-Hays Act)에 의해 독립학교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Simpson & Duke, 2000: 3-5) 1964년에 와서 미국 정부는 해외학교부를 (Office of Overseas Schools) 세워 해외에 있는 사립학교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1921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녀를 위해 교육기관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해군(태평양 지역: 일본, 대만, 필리핀, 한국 등), 공군(대서양 지역: 버뮤다, 큐바, 아이스란드 등), 육군(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 각각 지역별로 학교를 나누어 별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다. 1949년에 와서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100여개였으며 1960년대는 300개교 이상이었다. 1964년에는 국방부 장관이 모든 학교의 운영 시스템을 통합시켰으며 2015년 현재는 세 지역(유럽, 태평양, 남북 아메리카)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다. 해외에 있는 학교 총괄은 국장이 맡고 있으며 각 지역에 부국장이 한 명씩 임명되어 있으며 각 지역은 다시 지구로 분리되어 교육청장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DoDEA, 2015).[11]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국방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2015년 현재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모두 172개교이며 74,017명의 미국 자녀들이 재학 중이다(DoDEA, 2015).[12]

국방부는 해외에 있는 소속 학교들을 국방부교육활동(Department of Defense Education Activity, DoDEA)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DoDEA는 미국 영토에 있는 학교들과 (예: 괌) 해외에 있는 학교를 별개로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 소속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13] 의회가(Congress) 연방 정부 지출 과정을 통해(교육 위원회를 대신하여) 확보하고 있다. DoDEA 학교 교육 수준을 관리하는 국무부소속학교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합의에 임명된 교육자, 전문 학회 및 단체의 회원, 학부모, DoDEA 학생 등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부소속학교자문위원회는 부국장들에게, 지역자문위원회는 학교청장에게, 학교자문위원회는 학교 교장에게 자문을 주는 시스템으로 양질의 교육 수준을 유지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Smrekar et al., 2001: 6-8).

국방부 학교는 해외로 배치된 국방부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해당 자녀들은 학비가 면제되며 국방부 직원 자녀들 이외에도 민간인 자녀들도 입학가능하다 단. 민간인 자녀일

11)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 (DoDEA). http://www.dodea.edu/에서 2015년 9월 28일 인출.
12)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 (DoDEA). http://www.dodea.edu/에서 2015년 9월 28일 인출.
13) 1999년 국방부 학교는 학생당 $8,900 투자를 하였으며 이는 국가 평균보다 약 22% 정도 더 많은 액수이다(Smrekar et al., 2001: 15).

경우 학비를 내야 한다. 현재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교는 모든 승인을 받은 학교이며(이는 미국의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따라 교육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전국 교육평가 시험(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를 포함하여 여러 표준화된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DEA, 2015).[14] 또한 수준 유지를 위해서 국방부는 매년 모든 학교가 년말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고 5년에 한번 본토에서 교육 전문가들을 보내어 학교의 제반사항을 평가하고 있다. 학교 방문 평가를 한 전문가들은 학교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전체적인 학교의 수준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이외에도 해외에 있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뷰, 수업 평가, 여러 교육 훈련 분석 등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DoDEA, 2015).[15]

국방부는 직원의 자녀들이 해외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자녀가 있는 국방부 직원이 국방부 소속 학교가 없는 지역을 배치가 될 경우 해당 학교청장의 허가 하에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학비를 상환 받을 수 있으며 근처에 미국 학교가 전혀 없을 경우 숙소가 있는 학교로 자녀를 학비와 숙박비를 면제받고 보낼 수 있다. 위의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국방부 직원 자녀는 국방부 학교에 국무부 직원 자녀는 국무부 지원 학교에 자녀를 보내게 되어 있다(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0).[16]

반면 국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자녀들의 교육 및 해당 국가 및 제3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들이다(Simpson & Duke, 2000: 3-5). 국무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국(Office of Administration) 아래 해외학교부(Office of Overseas Schools, OS)를 세우고 미국기업의 후원으로 1967년 해외학교자문위원회(Overseas Schools Advisory Council, OSAC)[17]를 설립하여 미국해외학교(American Overseas Schools)를 지원하고 있다. 136개국에 설립되어 있는 약 196개의 미국 학교는 미국과 제3국의 대기업, 개인, 재단 등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 $15million을 지원 받았다(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 n.d.).[18]

OSAC 는 1년에 두 차례씩 국무부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함께 교육지원프로그램 선정 및 추진사업

14)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 (DoDEA). http://www.dodea.edu/에서 2015년 9월 28일 인출.
15)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 (DoDEA). http://www.dodea.edu/에서 2015년 9월 28일 인출.
16) 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0). Family resources:DoD education activity schools. Millitary.com: Benefits & Resources. http://www.military.com/Resources/ResourcesContent/0,13964,31992-mil_status_active-1,00.html에서 2015년 10월 1일 인출.
17) OSAC 는 미국 국무부의 행정업무국 관할인 Office of Overseas Schools에서 관리하고 있다. http://www.state.gov/m/a/os/c6971.htm:에서 2015년 6월 29일 인출.
18) 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 (n.d.). http://www.state.gov/m/a/os/c6971.htm에서 2015년 5월 20일 인출.

진행과정 보고 등 구체적인 과정을 논의한 후 결정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한다(USDoS, 2015).[19]

국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운영체계는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impson & Duke, 2000: 3-6). 미국의 공립학교는 지역, 주, 국방부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해외에 있는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원칙상 학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Simpson & Duke, 2000: 10-15). 또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도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과 상충 될 경우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림 Ⅱ-1】 미국정부 해외 사립학교 지원 구성 체계(2015년 현재)

* 출처: 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 (n.d.) http://www.state.gov/m/a/os/c6971.htm 2015년 5월 20일 인출하여 재인용

OSAC는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가 미국본토에서 인준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 교육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여럿이지만 모두 까다롭기 때문에 인준을 받았다는 것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본교의 프로그램, 시설, 조직 구성 등을 평가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19)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 (2015). American-sponsor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verseas. Worldwide fact sheet 2014-2015. http://www.state.gov/m/a/os/c1684.htm에서 2015년 6월 29일 인출.

OSAC는 해외 곳곳에 흩어져있는 미국학교가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마다 협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학교의 행정, 교육, 기술, 재정, 교육, 직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돕고 하고 있다. 남미(2개), 아프리카, 유럽(2개), 아시아, 중동, 지중해 지역에 각각 1~2개씩 세워진 지역 협회는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균등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각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Overseas schools, 2015).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의 센터인 East Asian Regional Council of Overseas Schools(EARCOS)의 목표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교의 교사, 학생, 직원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학교는 회원가입 시 필요한 정보 및 협력가능 단체/기관과 연락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회원이 된 학교에 EARCOS 교사들에게 공모를 통해 연구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EARCOS, 2015).[20]

(2) 미국 국무부 지원 학교의 현황

OSAC가 2014-2015년도에 지원한 196개교에 재학한 총 학생 수는 134,867명이다. 그 중 미국 청소년은 36,409명(27%)이었고 동아시아지역에 가장 많은 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미국학교에 다니고 있다(12,196명). 해외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본토에 있는 미국 청소년들과 비교한 결과 더 우수한 SAT 시험 점수를 성적을 거둔 것으로 타나났다(US Dept. of State, 2015a).[21]

표 Ⅱ-4 해외 미국 국무부 지원 학교의 SAT시험 성적(2013,2014)

시험	해외 학교 미국 청소년 평균	해외 학교 전체 평균	미국 본토 평균
critical reading	580	549	497
Math	596	589	513
Writing	578	554	487
2014년 총점	1754	1692	1497
2013년 총점	1744	1675	1498

* 출처: United States Dept. of State(2015a). American-sponsor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verseas. Worldwide fact sheet 2014-2015. pp.2-3 에서 부분 재인용.

20) East Asia Regional Council of Schools(EARCOS). (n.d) https://www.earcos.org/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21)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2015a). American-sponsor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verseas. Worldwide fact sheet 2014-2015. http://www.state.gov/m/a/os/c1684.htm0에서 2015년 6월 29일 인출.

OSAC는 되도록이면 보다 많은 학생, 교사 및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보다는 지역별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 3.7 million 을 투자하여 129개의 사업을 통해 학습 계획안, 컴퓨터 프로그램, 교사/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 등을 공급하였다. OSAC 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K-12) 이다. 미국정부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의 소유권은 미국 정부가 아닌 학부모회(Parents' Association)에 있으며 학부모들이 학교이사를 선출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US Dept. of State, 2015b).[22]

해외에서 재학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본토의 미국 청소년들이 받은 교육과 유사할 수 있도록 미국의 커리큘럼을 지원하고 있다.[23] 베트남, 홍콩 등에 있는 미국학교에서는 졸업반을 위하여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를[24] 수여하는 등 졸업생들의 용이한 대학교 진학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미국대학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미국대학 입학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움으로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해외의 미국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한다. 필리핀에 있는 한 미국학교의 경우 약 60%의 미국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근래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청소년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타이베이미국학교와 싱가포르미국학교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과정에 진학을 한다고 학교관련 자료에 명시해 놓았다. 이처럼 모든 학교들은 해당 국가의 교육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하지만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Toze, 2015).

대다수의 해외 미국학교들의 운영 자금은 학비를 통해 충당되며 미국학교가 미국 정부에서 (OSAC를 통해) 받는 지원금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 있는 미국학교의 경우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정확한 금액은 비공개지만 교사 한 명의 급여보다 더 적다) 그 금액이 학교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동아시아지역에 있는 미국학교의 년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학교 운영비의 89~98%가 등록비로 충당되고

22)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2015b). Selected activities of the 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5. http://www.state.gov/m/a/os/c16358.htm에서 2015년 4월 7일 인출.

23) 미국에는 하나의 커리큘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common core standards 의 중요한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는 IB diploma 라고 불리며 2년에 걸쳐하는 고교과정으로서 수능과 같은 개념의 시험을 통해 수료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학과목 선이수제 (AP)와 동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입시조건으로 인정해준다.(IBO, 2015, http://www.ibo.org/programmes/diploma-programme/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25) 국무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한 미국학교 관계자와 메일 교신

있으며 그 외의 운영비는 개인/학부모/기관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으로 재정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시민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특별한 혜택(학비 혹은 특정 프로그램 가입 등에 있어)을 받거나[26]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학비지원금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단 미국 국무부 혹은 그 외의 정부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자녀일 경우 정부에서 모든 등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 n.d.).[28]

표 Ⅱ-5 2014-2015년 미국 정부 지원 사립학교

구분	지역	국가 수	학교 수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국 청소년	미국인 교사
1	아프리카	36	41	35	3,645	889
2	미국 공화국	25	40	40	6,396	1,392
3	동아시아	14	25	24	12,196	1,852
4	유럽	45	66	63	7,802	2,026
5	남아시아	16	23	23	6,370	1,343
합계		136	195	185	36,409	7,502

* 출처: Department of State, American-sponsor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verseas, Worldwide fact sheet 2014-2015에서 부분 재인용

미국 국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미국학교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안전이다.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미국 정부는 2014-2015년도에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500개 이상의 학교에 $63million 를 지원하였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학교에는 $38million 를 투자하였다. 이 지원은 미국학교의 경비시설 강화, 인근지역 철조망 및 보안등 설치, 비상시 연락망 구축, 학교 유리창 보호대 등에 사용되었다(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5: 5).

OSAC가 지원하고 있는 미국학교의 첫 번째 목표는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5: 1).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학교는 우선 본토의 다수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학교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26) 국무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한 미국학교 관계자와 메일 교신
27) 개인 연락망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학부모들과 메일 교신.
28) 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 (n.d.). http://www.state.gov/m/a/os/c6971.htm에서 2015년 5월 20일 인출.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은 그만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은 AAIE(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Education, 해외교육발전협회)이다.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이 학회는 OSAC 회원을 포함하여 여러 해외 미국학교 교원이 학회이사로 있다. 이 학회의 주목적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AAIE는 또한 해외 곳곳에 있는 직원, 상담가, 교사, 교장 등이 한 곳에 모여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학교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AAIE, 2015[29]); US Dept. of State, 2015b: 6-10).

OSAC 의 두 번째 목표는 미국교육을 통해서 미국의 가치, 교육방법, 그리고 원칙 등을 알리는 것이다(US Dept. of State, 2015b: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학교는 미국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교사들에게 미국교육의 철학 및 방법론 등을 전하고, 거주국에 있는 학교와 협력하여 교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교환하는 제도 등을 권장하고 있다(Overseas schools: 2). MEPI (Middle East Partnership Initiative) 라는 프로그램이 한 예가 되겠다. MEPI는 중동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영어 및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장학금을 통해 영어를 습득하고 미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제 MEPI는 시험적 프로그램이다(US Dept of State, 2015b: 11).

(3) 미국 정부 지원 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아래는 현재 OSAC이 지원하고 미국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장학금, 프로그램 명단이다. 미국학교 본부에서 2015년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모두 정리해 놓은 것으로 현재 미국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국 청소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표라고 할 수 있다.

29)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Education (AAIE) (2015). http://www.aaie.org/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표 Ⅱ-6 OSAC의 장학금 및 프로그램

	대상	구체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	학교 및 교사	학교	World Virtual School Project 세계가상학교 프로젝트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2002년에 시작. 현재 97개교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이 (자연 재해 시에도) 온라인을 통하여 양질의 커리큘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학교 교장	National Distinguished principals program	1984년 설립. 초등학교 중학교 우수한 교장 상.
3		교사	(교사를 위한) 대학 입학 워크샵	해외 미국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위해 카운승링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교사들을 미국으로 초청. 미국에서 대학 입시 담당자들과 만남, 대학입시관련 자료, 정보 교류
4		교사	JOSTI (Jefferson Overseas School Technology Institute)	해외 미국 학교의 교사들에게 새로운 기술, 커리큘럼, 행정관련 업무를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 해외학교부는 1993년 OSAC 의 후원으로 미국의 명문고등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학교와 협력하여 협회를 설립. 현재까지 약 1,900명의 교사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5		AP 교사	AP 교사 훈련	해외학교부는 미국의 대학입시위원회(College Board)와 협력하여 미국정부 후원학교의 AP 교사, pre-AP 교사, AP 코디네이터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AP:미국 대학협의회에서 만든 고교 심화학습 과정으로서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 전에 대학 인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 학습 과정
6		특수아동교사 (ESL, 지체장애, 영재)	특수아동협회	해외에서 특수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7		교사, 교육 프로그램 코디 등	Project AERO (American Education Reaches out)	영어, 수학, 음악, 과학, 사회, 언어, 미술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전문 교육을 실시. 현재까지 약 1,200 교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1	학생	1~12학년	The President's Education Awards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우수한 성과물 혹은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받는 상.
2		1~12학년	American citizenship Award Programs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우수한 시민의식을 인정받아 받는 상.
3		6~8학년	Mathcounts 프로그램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프로그램.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세계수학대회에 참여할 수 있음.
4		7~12학년	Middle East Partnership Initiative (MEPI) 장학금 프로그램	중동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영어 및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3년간 54명 참여. 약 $6million 장학금 수여.

* 출처: US Dept. of State (2015b). Selected activities of the 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5. pp. 5-10에서 부분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장학금은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져 있고 부분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즉, 학업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특수아동, 영재, 발전가능성 등등 장려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분화하여 각 영역에서 특출함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학생들 보다는 교사 그리고 교장(혹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사)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이사가 학부모에 의해 선출되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지원과 자원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충을 덜기 위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해외에서 특히 개발도상국 혹은 중동지역 같이 이변이 많고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직원 및 교사들이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관련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와 본토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식적인 학회 이외에도 해외의 미국학교 웹싸이트를 살펴보면 지원적 사회적으로 학부모의 관심과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이베이미국학교의 경우 교사, 학부모, 졸업생, 기업, 기타 학교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들에게 후원을 받아 학교 운영 및 장학금에 사용하고 있는데 2013~2014년에 지원 받은 총액은 $53,569,536(대만 달러)였다(Taipei American School Annual report, 2014~2015: 55). 이처럼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정부에서 받는 지원이 적은 관계로 학교와 관련된 인적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학교의 부족한 재정 충당하고 학교 지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나가는 학교도 있다.

(4) 미국 정부의 해외 학교 지원 예산

미국정부에서 해외미국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학교 보안을 위한 지원금이 가장 크다. 이 지원금에는 국무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무부 2014년 예산의 약 .002% 정도이다. 해외학교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 지원을 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배분하지만 만약 학교단위로 가정했을 경우 각 학교당 약 $202,000 정도를 지원받는 다고 할 수 있다. 해외학교자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미국 정부와 재단 그리고 제 3국의 대기업 등을 통해 후원을 받은 금액은 총 $15 million

이다. 이는 국무부 예산의 약 .0003%에 달하는 액수이다. 이 금액은 정부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후원금을 모두 포함한 액수이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받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해외학교부에서 이 지원금을 학교단위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각 학교당 약 $76,923 정도를 지원받는다고 할 수 있다(국무부, 2014에서 저자 작성).

표 Ⅱ-7 2014년 미국 국무부 예산

미국 국무부 2014년도 예산 (2014. 4월 10일 발표)	
국무부 예산 총액	$ 47.8 billion
외교 행정 관련 (Administration of foreign affairs)	$ 10.5 billion
국무부 프로그램 (State programs)	$ 7.3 billion
*외교 및 영사 프로그램 (Diplomatic and Consular Programs)	$ 7.28 billion
– 외교 정책 및 지원 (Diplomatic policy and support)	$ 813.3 million
– 보안 프로그램 (Security programs)	$ 1.6 billion
– 국경 보안 지원 (Border security support 등)	$ 61.5 million
–국경 보안 직원/미국인 급여 (Border security staff/american salaries)	$ 481.7 million

* 국무부 산하의 행정부에서는 외교 및 영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위의 4개 항목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행정부 산하의 해외학교부 (Office of Overseas Schools)가 어느 지원금에서 충당 받은 금액으로 해외미국학교를 지원하는지는 알 수 없다.

2014–2015년 해외미국학교가 정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	
학교 보안 지원 (국무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학교 포함: 총 500개교 이상) (2015년)	$101 million
136개국의 196개교가 미국 정부와 재단 및 제3국의 대기업 등을 통해 받은 지원금 (2014년)	$15 million

* 출처: 미국 국무부 2014년 예산 관련 보도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Highlight, 2014)[30] 및 2014 국무부 예산 종합 보고서 부분 재인용 (US Department of State. Executive Budget Summary, 2014).[31]

30)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2013). Highligh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an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udget. Fact Sheet. Released April, 10, 2013. http://www.state.gov/r/pa/prs/ps/2013/04/207281.htm에서 2015년 7월 15일 인출.

3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4). Executive budget summary–function 150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Fiscal Year 2014. Released April 10, 2013. http://www.state.gov/s/d/rm/rls/ebs/2014/pdf/index.htm에서 2015년 7월 15일 인출.

해외학교부는 해외의 미국학교에 지역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학교당 국무부에서 매년 지원받는 총액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의 자료로 추론할 수 있는 점은 해외미국학교에서 해외학교부를 통해 받는 지원금이 적은 액수라고는 할 수 없다.

(5) 미국 정부의 인재 관리

미국은 여러 재단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재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Fulbright 프로그램이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의 우수한 학자, 교육자, 대학원생, 연구원 및 각종 전문가들에게 국제 교환 프로그램 및 장학금을 부여한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가장 명망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15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3년 현재 미국에서 122,8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Fulbright, 2015).[32]

1946년에 설립된 이 장학재단의 주무부처는 국무부이며 행정업무는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ECA)에서 맡고 있다. 미국 정부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국제교육기관(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이며 이 기관은 대학원생 및 교육자들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해외의 약 50개국에서는 풀브라이트위원회가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없는 국가에서는 미국 대사관의 공보처(Public Affairs)에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국내·외 기업, 재단, 정부 및 다양한 기관에서부터 후원을 받아 운영 되고 있다(Fulbright, 2015).[33]

5)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1) 미국 재외동포 지원 단체

재외동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미국 정부 보다 민간단체가 더욱 활발하다. 많은 시민단체 및 비영리 단체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해외미국시민(American Citizens Abroad, ACA)는 1978년에 제네바에서 설립되었으며 2010

32) Fulbright. http://eca.state.gov/fulbright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33) Fulbright. http://eca.state.gov/fulbright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년 기준으로 약 2,400명의 회원이 있다. 이 단체는 해외거주미국인들의 참정권, 시민권, 세금, 건강보험, 그리고 은행업무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ACA, 2015).[34]

해외미국여성연맹(Federation of American Women's Clubs Overseas, FAWCO)은 1931년에 설립되었고 2015년 현재 34개국에 65개의 클럽이 있으며 약 16,000 여 명의 회원이 있다. 이 연맹의 목적은 회원들에게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미국인들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이 연맹은 UN에서도 인가를 받아 UN 의 경제 사회 이사회도 참석하며 활동하고 있다(FAWCO, 2013).[35]

197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해외미국인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esident Overseas, AARO)는 재외동포를 향한 미국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시작되었으며 로비 및 옹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AARO, 2015).[36]

이 세 민간단체들은 매년 '해외 미국인 주'에 워싱턴디씨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해외 미국인들의 세금, 연금, 참정권, 시민권 등의 문제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AARO, 2015).[37] 2013년의 주 안건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본토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동일한 은행 관련 서비스를 받고 (투자 등), 투표에 있어서도 투표용지를 너무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를 줄이기 위한 투표과정 개선방안, 해외에서 체포될 경우 미국 영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 통과, 거주지에 기반 된 세금보고 형식 시행 등 이었다. 이 단체들 외에도 여러 민간단체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권을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해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중 하나는 FAWCO 이다. FAWCO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 및 적극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91년 두바이의 미국여성협회에서 만든 아메리카나 프로그램(Americana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3세에서 10세 정도의 재외동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긍정적인 환경 안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정부 프로그램,

34) American Citizens Abroad (ACA).(2011) https://americansabroad.org/에서 2015년 6월 13일 인출.
35) FAWCO. http://www.fawc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36)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 (AARO). https://aar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37)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 (AARO). https://aar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대통령의 날 프로그램 등 미국 고유의 휴일 및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음악, 문화와 문학을 통해서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교육하며 미국부모와 자녀들이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가정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미국에서 공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그 이외에도 학습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정보 및 도움도 지원하고 있다. FAWCO 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2년에 한 씩 개최하는 학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에서 오는 회원들과 네트워크 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다(FAWCO, 2015).[38]

1963년에 설립된 AAWE(American women living long-term in France)는 프랑스인들과 결혼한 미국여성들이 자녀들에게 미국문화 (할로윈, 추수감사절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AAWE, 2013). 이들은 여러 사교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두 여성단체들은 '어머니'를 문화적 가교로 보고 이들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AWE, 2013).[39]

재외동포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어와 미국 문화를 체험하며 성장하기 원하지만 자원이 부족하여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20-32). 특히 미국인들이 많지 않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자녀들이 미국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 가령 해외에서 태어나서 거주국의 언어가 모국어가 되고 미국 및 영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미국 부모에게 현지어를 사용하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현지 아이들과 다름을 인식하여 자신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정체성 혼란을 겪는 2세들도 있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20-3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부모들은 미국 현지 방문을 통해 혹은 자녀들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미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은 미국학교(JFK School)를 보내 아이들이 미국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언어의 문제는 없지만 미국학교는 학비가 비싼 편이라 미국부모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경우) 미국 부모들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FAWCO 등에서 제공하는 아메리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140-172).

38) FAWCO. http://www.fawc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39) American women living long-term in France (AAWE). http://aaweparis.org/pages/index.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표 Ⅱ-8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적 지원

단체명		프로그램 및 제도	프로그램 및 제도적 지원 내용
FAWCO 1931년 설립	1	FAWCO 청소년 대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보내는 1년간 (갭이어, gap year) 세계 탐험 기회 부여
	2	문화 자원봉사자단	15~18세의 청소년들이 특정국가에서 그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1주일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장소 매년 변경, 예: 2013년 두바이, 2014년 상해)
	3	UN 청소년 대표	(FAWCO 는 UN-승인 비영리 단체)-UN 본회의 참여권, UN본부-뉴욕에서 청소년의회 참석 권한 부여 등
	4	재외동포 청소년 장학금 제도	13~21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
AARO 1973년 설립	1	시민권 취득 관련	미국 부모에게 태어난 해외출생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 과정 간소화 및 지원
	2	시민권 보유 관련	해외 출생 자녀들이 평생 미국시민권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 (AARO 는 주로 법과 관련된 지원을 함)

* 출처: FAWCO. http://www.fawco.org/에서 재인용. 2015년 6월 10일 인출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 (AARO). https://aaro.org/에서 재인용. 2015년 6월 10일 인출.

표 Ⅱ-9 해외 미국 민간단체의 역사 및 프로그램

단체명	단체 연혁	
FAWCO 1931년 설립	1931~1969년	주 안건: 국제결혼을 한 미국여성의 시민권, 세계평화 등 1967년 FAWCO 재단 설립 Development Grants 시작(탄자니아 난민캠프, 모로코 여성 계명 프로그램 등 후원)
	1970~1980년대	해외 출생 미국인 자녀 시민권 획득을 위한 활동 FAWCO 연맹에 소속된 단체 23개에서 44개로 확대
	1990년대~현재	– AARO, ACA, ECACC 와 협력하여 세계 미국 재외동포 연맹(World Federation Americans Abroad)설립, 미국 워싱턴에서 정기적으로 로비활동 – UN 승인 비영리 단체 – 주 안건: 시민권, 개발도상국 계명 프로그램 지원, 환경보호 사업, 재외동포 해외 거주 및 근무 관련

단체명	단체 연혁	
AARO 1973년 설립	1970~1990년대	– 1976년. 해외시민부재자투표권법(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Rights Act of 1976)제정에 기여 – 국제 결혼한 미국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할 경우 미국에서 거주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을 폐지하는데 기여 – 1986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미국에서 거주할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에서 거주해야하는 년 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데 기여
	2000년~현재	– 2002 참정권 개혁 법령이 통과되도록 기여 – 주 안건: 해외거주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해외거주 미국인들의 납세의무 완화, 해외거주 미국인들의 투표과정 지원 등

* 출처: FAWCO. http://www.fawco.org/에서 재인용.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 (AARO). https://aaro.org/에서 재인용

6) 결론 및 함의

미국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수 있다.

첫 째, 미국 정부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의무) 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립학교 및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지원의 주무부처가 국무부이며 (교육부가 아닌)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문화국 그리고 해외미국학교를 관리 및 지원하는 행정부 모두 국무부의 소속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해외미국학교 자문위원회가 제반 사업을 국무부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연2회 회의를 통해 보고 및 상의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게 양질의 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국방부가 설립한 학교가 아직 172개교가 남아있으며 미국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등 해외에 있는 미국 자녀들의 미국식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DoDEA, 2015).[40]

위의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성장하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식 사업을

40)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 (DoDEA). http://www.dodea.edu/에서 2015년 9월 28일 인출.

통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학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정부의 지원 방향을 알 수 있다. 미국정부, 특히 국무부의 교육지원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은 개인단위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특히 교사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교사의 수준을 높여서 학교 전체의 수준을 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로 하여금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 해외미국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학교부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해외미국학교의 SAT성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시험성적은 본토 미국학생들보다 높았으며 해외미국학교를 졸업할 때 미국졸업장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IP 졸업장을 (혹은 주최국의 고등교육 수료증)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역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본토 학생들 평균보다 높다(US Dept. of State, 2015b).[41] 이러한 점으로 보아 미국정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 청소년들이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미국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민간단체 및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FAWCO, AARO, ACA 등의 단체들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지만 다수의 단체들이 장기간 협력하여 세금, 참정권, 시민권 취득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사회,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위의 단체들은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미국 문화, 가치, 언어,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어 이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간주된다.

셋 째, 미국 정부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외 거주 청소년들에게 미국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 이 외에도 18세가 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여 (주 별 차이가 있음) 미국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세금보고를 의무화함으로서 미국시민

41)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s (2015b). Selected activities of the 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5. http://www.state.gov/m/a/os/c16358.htm에서 2015년 7월 2일 인출.

으로서 지켜야하는 의무도 알려준다(AARO, 2015).[42] 이렇듯 미국 정부는 청소년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함으로 미국 청소년들이 미국의 시민참여, 정치참여 의식에 대하여 이른 나이부터 깨닫게 하여 미국사회에 대해 더 깊은 이해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인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째, 한국 정부에서는 해외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할 경우 개인 단위가 아닌 (예: 우수 학생들을 위한 개인별 장학금)학교별 혹은 지역별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재외한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을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사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교육과 관련된 수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중심 센터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중심 센터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함으로서 지원이 부족한 지역 및 학교/기관이 타 기관과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하며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역관리 책임을 맡을 것을 권장한다.

둘 째, 재외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L.A. 등 한인사회가 활발한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아닐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약할 수 있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FAWCO에서 만든 Americana Program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인과의 접촉이 적고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한국문화, 역사, 정서, 언어 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FAWCO에서는 학부모등이 자발적으로 소그룹을 형성하고 지원할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의 교제를 도모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서로 만나 친구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적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들이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 함양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그룹이 형성이 되면 전문성 있는 교사를 초청하여 장·단기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과도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 째, 미국 정부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듯이 재외한인들이 한국에 대한 책임감을 질

42)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 (AARO). https://aar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수 있도록 권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가령 한국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높은 동포 청소년들이 (부모의)모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역량 혹은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및 기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수단을 제공하여 권장하는 방법이 있다. 한 두 번의 참여가 개인적인 성취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국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추후 한국 방문 및 재능 기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43][44]

1)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 개념

(1)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제도

중국에서 청소년(青少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동년(童年)과 성년(成年)의 사이 시기를 지칭하며, 연령대로는 만 13세부터 19세 이하까지를 의미한다. 그리나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군중 조직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소년선봉대를 통해 청소년 연령대를 유추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 즉 1922년 창립된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은 2008년 통계로 약 7858만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관 상 가입 연령은 14세 이상 28세 이하로 되어 있다. 또한 1948년 설립된 중국소년선봉대(中国少年先锋队)는 만 6세에서 14세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약 1억 3천만 명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3) 이 절은 김판준 교수(길림사범대학)와 이진영 교수(인하대학교)가 공동 집필하였음.
44) 이 절의 내용은 2015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재외한인학화·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회의(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에서 "화교화인 청소년 정체성 함양을 위한 중화문화 프로그램 연구"(pp.11~34)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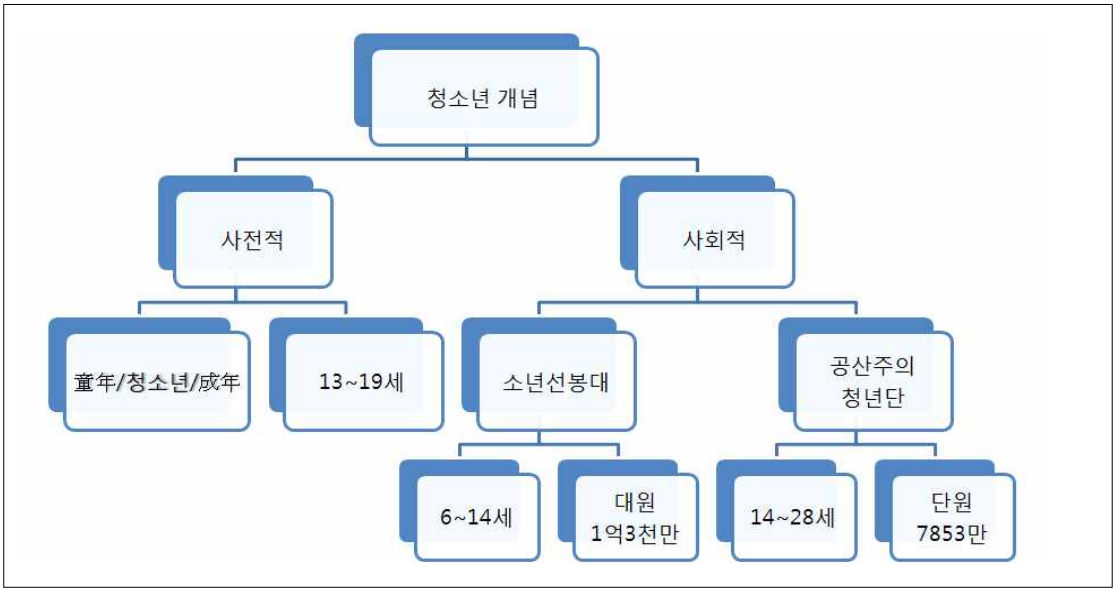

* 출처: '청소년', '청년',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소년선봉대'을 baidu 백과에서 검색하여 직접 작성.
'청소년': (http://baike.baidu.com/link?url=lypstpdEoywOlKhWg1zqqL3t7Dg-TmM3T-DduprluVTg_5KnCre8A0qt4zbe6Ucq6oq3yk0VLNaXChirzSWqO9mk9gRi0XJhOciylfP1suC,)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 (http://baike.baidu.com/view/20997.htm?fromtitle=%E5%85%B1%E9%9D%92%E5%9B%A2&fromid=215034&type=syn.l,)
'소년선봉대' : (http://baike.baidu.com/view/62980.htm,)
'청년' : (http://baike.baidu.com/view/20565.htm0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그림 Ⅱ-2】 중국의 청소년 개념과 사전적·사회적 분류

따라서 사전적 청소년 연령대에 근거하면, 중국소년선봉대의 경우 13세와 14세, 중국공산주의 청년단의 경우 14세부터 19세까지가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된다.

(2) 중국의 해외 중국계와 재외동포 청소년 개념

중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는 약 4천 5백만 명을 상회하며,[45] 국적에 기준하여 화교(华侨)와 화인(华人)으로 구분하고 있다. 화교란 중국 국적의 해외거주자를 의미하며, 화인이란 외국 국적자를 가리킨다. 또한 혼혈 혹은 수 세대에 걸쳐 현지 거주국에 동화되었으나

45) 구이스쉰(桂世勋)의 논문 '해외화교화인의 조국에 대한 공헌' 2006년~2007년 통계로 화교화인 수를 4,543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丘进 主编(2011). 华侨华人研究报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55에서 재인용

중국인의 뿌리가 있는 후예를 화예(华裔)라 지칭한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인 1980년대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화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신화교(新华侨)라 지칭하고 이전 이주자를 노화교(老华侨)라고 사회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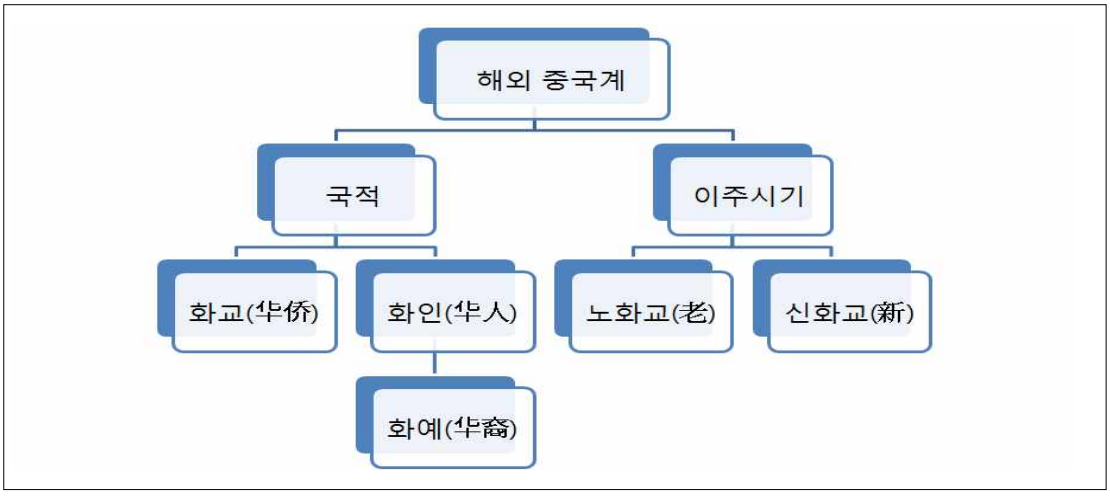

* 출처: '화교화인' : (http://baike.baidu.com/view/1066153.htm,) '화예' : (http://baike.baidu.com/view/71292.htm,) '신화교' : (http://money.163.com/06/0904/08/2Q5OJA7T00251OBC.htm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그림 Ⅱ-3】 중국의 해외 중국계에 대한 구분

그러므로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은 중국 국적인 화교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외국 국적인 화인 및 화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에 관한 법과 제도

(1) 정책기구 및 관련 제도

중국은 항일 항쟁과 건국 과정에서 화교화인의 지원을 협력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교화인이 정책 대상으로서 명확히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 부처인 국무원 교무판공실에서부터, 정치 조직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홍콩·마카오·대만·화교위원회(港澳台侨委员会)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국무원 교무판공실(侨务办公室)은 중앙 행정 기구라는 특징과 함께 지방의 교무판공실로

행정적 수직화가 이루어져 있어 해외 화교화인과 관련 된 사업과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에서 실시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정책 및 관련 법규 제정, 화교화인 현황 연구 및 과제 개발 등 정책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화교 업무의 타부서와의 협력, 귀국 화교의 지원, 화교화인 직능 및 지역 커뮤니티 협력, 화교화인 우수 인재 유입 사업, 화문(华文) 교육 사업 등 화교화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원 교무판공실 산하에는 북경화문학원, 기남대학, 화교대학 등 교육 기관과 언론 단체인 중국신문사, 화성보사 등이 직속기구로 있으며, 화교화인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즉 중국해외교류협회,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중국교상투자기업협회 등을 직접 또는 간접 조직함으로써 화교화인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46]

국무원 교무판공실(侨务办公室)의 정책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정책 역량은 재정 상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2014년도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재정 내역을 살펴보면, 573,906만 위안(한화 약 1조 1백억원, 환율 기준일: 2015년 10월 19일)을 수입·지출 했다. 특히 아래 표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화교화인 업무 담당 주무 부서인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예산 수입은 정부 출연 54%, 사업 수입 20%, 기타 수입 1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10 국무원 교무판공실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1. 재정 수입	271,735	1. 일반공공서비스 지출	5,705
2. 상급 보조 수입	677	2. 교육 지출	380,098
3. 사업 수입	99,969	3. 과학기술 지출	403
4. 경영 수입	3,312	4. 문화체육과 매체 지출	22,435
5. 부속단위 교부 수입	486	5.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	1,903
6. 기타 수입	83,948	6. 절약 및 환경보호 지출	18
		7. 임대주택보장지출	15,985
본년수입합계	460,128	본년지출합계	426,551
수지차액	6,109	결산분배	21,458
년초 이월금	107,669	년말 잉여금	125,896
합 계	573,906	합 계	573,906

* 출처: 국무원 교무판공실(2014). 2014 년도보고, p.4의 도표 재구성 (http://www.gqb.gov.cn/zwgk/) 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46)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기능과 역할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gqb.gov.cn/)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과 재원을 바탕으로 화교화인 업무가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47] 전체 예산 수입 구조를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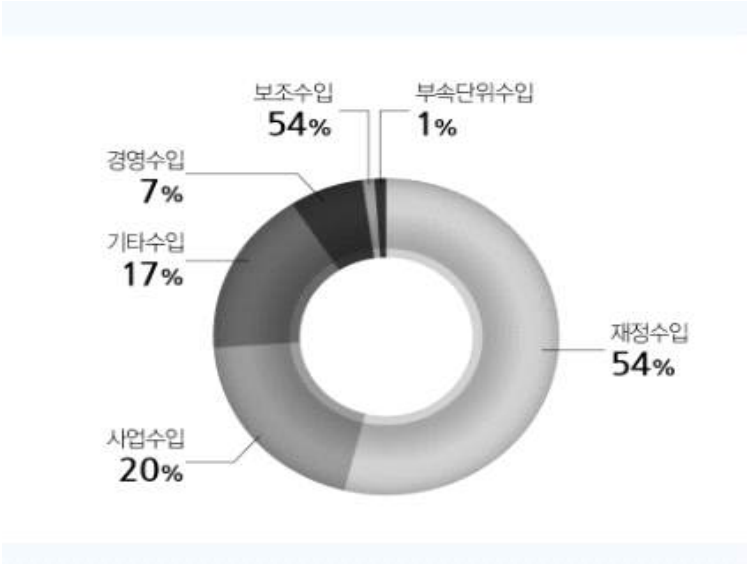

* 출처: 국무원 교무판공실(2014). 2014 년도보고. p.4의 도표 재구성 (http://www.gqb.gov.cn/zwgk/) 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그림 Ⅱ-4】 국무원 교무판공실 2014년도 예산의 수입 내역 분류

반면에 위의 표 "II-10"의 지출 합계 426,551만 위안 중 '교육 지출'이 380,098만 위안으로 2014년도 지출의 약 90%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재정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체육과 매체 지출'이 22,435만 위안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분야 투자와 문화 홍보의 예산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화교화인 교육 진흥을 위해 2004년 설립 된 중국화문교육기금회는 정부의 재정 보조와 함께 민간 차원의 화교화인 기금을 활성화 하여 왔다. 특히 설립 초기에는 화교화인 사회의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지정 기부를 장려하였고,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이사 직위를 위촉하는 등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고 있다. 비록 최근에는 기금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정 기부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47) 2013년도 결산보고에서도 512,999만 위안(한화 약 9천 88억)이 수입·지출되었음을 보고하는 등 화교화인 주부 행정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뒷받침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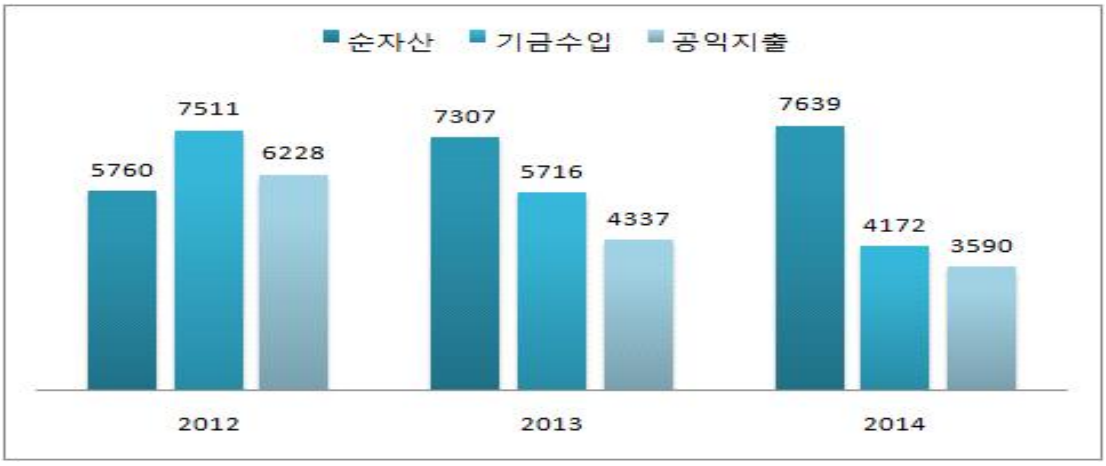

* 출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웹 페이지 (http://www.clef.org.cn/data.foundationcenter.org.cn/content_141.html) 에서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5년 9월 1일 인출.

【그림 Ⅱ-5】 중국화문교육기금회 2012년~2014년 재무 상황(단위: 만 위안)

위 그림의 기부 수익을 보면, 2012년 7,511만 위안(한화 133억), 2013년 5,716만 위안(한화 101억), 2014년 4,172만 위안(한화 74억)으로 매년 기부금이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꾸준히 기부금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전개와 지원은 안정적 재정 투입과 민간 기금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화인은 중국에서 화교 업무(侨务)라는 틀에서 정책 대상화 되어 있으며, 화교화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 또한 화교화인 업무의 일환으로 대상화되어 있다.

(2)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사업 추진 체계

화교화인 업무의 총괄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무판공실은 중국내 지방 조직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 화교화인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은 정부 기관인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외의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사회단체 육성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즉 대표적인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 협력 사회단체로 1990년에 설립 된 중국해외교류협회(中国海外交流协会)와 2004년 설립 된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가 있다. 중국해외교류협회는 중국 전역에 지부 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해외 화교화인 사회의 유력 인사를 이사진으

로 포괄하는 등 화교화인 사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는 해외의 화교화인 교육체계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48]

특히 두 단체는 모두 법인 정관상에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업무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역시 두 단체 모두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같은 주소지 건물로 되어 있다.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 기구인 국무원 교무판공실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조화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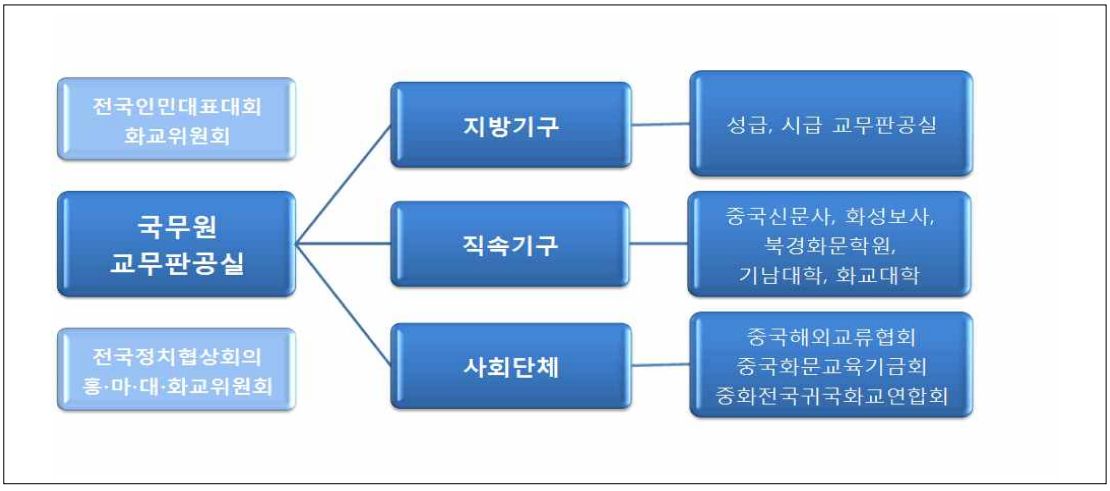

* 출처: 국무원 교무판공실 조직 및 업무 구조와 산하 기관 웹 페이지 (http://www.gqb.gov.cn/zwgk/)에서 2015년 6월 10일, 9월 1일 인출.
중국해외교류협회. 웹 페이지 (http://www.coea.org.c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웹 페이지 (http://www.clef.org.c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그림 Ⅱ-6】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업무 추진 구조

즉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중국해외교류협회가 화교화인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중국의 행정기구가 획일적으로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형태라기보다는 화교화인 거주국가별 상황과 사업 추진 대상에 따라 사회단체와 거주 국가별 커뮤니티가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48) 중국해외교류협회 조직 구조와 네트워크: http://www.coea.org.cn/, 중국화문교육기금회의 조직과 기능: http://www.clef.org.c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화교화인 거버넌스의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정책 기관, 사업단체, 지역별, 직능별 커뮤니티라는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등 사업단체 설립을 통해 정부 기관 인사, 화교화인 사회단체 인사, 그리고 국가별 유력 인사를 인적 네트워크로 재구성하고 있다.

중국해외교류협회는 중국과 해외 화교화인사회를 연결하는 사회단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내 화교화인 업무 정책 담당자와 유력 인사가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화교화인사회의 유력 인사 또한 대거 임원으로 참여하여 있다. 즉, 중국과 해외를 광범위하게 연결하는 인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2015년 현재 5기 임원진으로 고문 52명, 상무이사 260명, 일반이사 373명이라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임에도 중국 정부 기구의 고위 공무원이 상임이사 혹은 이사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49]

특히 중국해외교류협회는 중국 내·외를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북경시, 상해시 등 중국 내 47개 성급, 시급 지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지부 구축을 통해 지방의 인적 자원을 지방 교무판공실과 함께 사업으로 조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 화교화인 기관인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중국신문사 등 주요 8개 기관을 단체 회원으로 둠으로써, 화교화인 사업에 대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해외교류협회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1 중국해외교류협회(中國海外交流協會) 조직 현황과 네트워크

구분	명칭
중국지역지부 47개	북경시 해외교류협회(北京市),상해시 해외교류협회(上海市), 천진시 해외교류협회(天津市), 중경시 해외교류협회(重庆市), 하북성 해외교류협회(河北省), 산동성 해외교류협회(山西省) 내몽고 자치주 해외교류협회(内蒙古自治区), 요녕성 해외교류협회(辽宁省), 길림성 해외교류협회(吉林省), 흑룡강성 해외교류협회(黑龙江省), 강소성 해외교류협회(江苏省), 절강성 해외교류협회(浙江省), 안휘성 해외교류협회(安徽省),

49) 중국해외교류협회 홈페이지 협회 소개의 협회 영도 참조(http://www.coea.org.cn/xhjs/index.shtml) 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구분	명칭
	복건성 해외교류협회(福建省), 강서성 해외교류협회(江西省), 산동성 해외교류협회(山东省), 하남성 해외교류협회(河南省), 호북성 해외교류협회(湖北省), 호남성 해외교류협회(湖南省), 광동성 해외교류협회(广东省), 청해성 해외교류협회(青海省), 광서장족자치구 해외교류협회(广西壮族自治区), 해남성 해외교류협회(海南省), 사천성 해외교류협회(四川省), 귀주성 해외교류협회(贵州省), 운남성 해외교류협회(云南省), 협서성 해외교류협회(陕西省), 감숙성 해외교류협회(甘肃省), 녕하회족자치구 해외교류협회(宁夏回族自治区), 신강위구르자치구 해외교류협회(新疆维吾尔自治区), 신강생산건설병단 해외교류협회(新疆生产建设兵团), 서장자치구 해외교류협회(西藏自治区), 심양시 해외교류협회(沈阳市), 대련시 해외교류협회(大连市), 장춘시 해외교류협회(长春市), 하얼빈시 해외교류협회(哈尔滨市), 남경시 해외교류협회(南京市), 항주시 해외교류협회(杭州市), 녕파시 해외교류협회(宁波市), 하문시 해외교류협회(厦门市), 제남시 해외교류협회(济南市), 청소시 해외교류협회(青岛市), 무한시 해외교류협회(武汉市), 광주시 해외교류협회(广州市), 심천시 해외교류협회(深圳市), 성도시 해외교류협회(成都市), 서안시 해외교류협회(西安市)
회원단체 8개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 중국화상투자기업협회(中国侨商投资企业协会), 중국신문사(中国新闻社), 북경화문학원(北京华文学院), 기남대학(暨南大学), 화교대학(华侨大学), 중국항중려집단공사(中国港中旅集团公司), 화교성집단공사(华侨城集团公司)

* 출처: 중국해외교류협회. 단위회원. 웹 페이지 (http://www.coea.org.cn/) 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아울러 중국해외교류협회와 함께 대표적인 사업 추진 단체인 중국화문교육기금회는 중국 민정부(民政部) 등록 단체이며, 국무원 교무판공실을 통해 주요 업무 감독을 받는 것으로 정관상 기재되어 있으며, 정부 각 부처 및 주요 화교화인 기관이 이사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해외 화문교육 관련 정책 사업들에 대한 집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주요 사업은 '화문교사 양성', '화예 청소년 중화문화 전승', '화문교사 모국연수', '화문교구재 개발', '전통명절 및 기념일 문화 장려' 등이 있으며,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2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 주요 사업과 내용

사업 명칭	내용
화문교사자원양성사업 (华文师资培养工程)	해외 화문교사의 중국내 체계적인 자격 교육을 지원하며, 교사단의 해외 파견 및 지방 화문교사를 양성함. 또한 원격 동영상 교육을 통해 해외 화교사회에 자격 있는 화문교사를 양성함.
화예청소년중화문화전승사업 (华裔青少年中华文化传承工程)	화문교육 장학금 설치를 통해 해외 화예청소년들이 중국어 학습과 중국문화 함양을 지지하며, 중·외 우호교류를 촉진하는 메신저역할을 장려함. 특히 해외 화예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화문화를 주제로 하는 여름, 겨울 캠프를 조직하며, 캠프를 통해 중국 역사 문화와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알 수 있게 함. 이를 통해 중화문화 인식을배양함.
화문교사 애심사업 (华文教师暖心工程)	해외에서 화문교육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붉은 촛불 고향 방문단'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중국 관광과 답사를 진행함. 이를 통해 화문교사의 해외 중화문화 전승에 대한 기여를 표창하며, 화예 차세대 화문교육사업 종사자로서의 기여를 격려함.
전통명절문화개척확대사업 (传统节庆文化拓展工程)	해외 화인사회의 중국전통명절 관련 문화 활동을 진행하도록 지지하며, 이를 통해 해외 화교화인의 중화 문화의 전승과 거주국 민족과의 친선을 장려함.
화문교육참고자료개발사업정 (华文教辅材料开发工程)	해외 화문학교에 적합한 로컬 교재를 편찬함으로써, 해외화문교육의 사업효과를 높임.
화문교육현황조사연구사업 (华文教育现状调研工程)	해외 화인사회의 화문교육 관련 문제점과 쟁점 등을 연구 조사함으로써, 해외 화문교육사업의 맞춤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기부금의효용성을 높이고, 해외 화문교육의 현황과 발전 추세를 이론적으로 탐색함.

* 출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웹 페이지 (http://www.clef.org.cn/) 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정부 부처인 국무원 교무판공실을 중심으로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국화문교육기금이라는 사업 추진 체계를 큰 틀에서 갖추고 있으며,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정책 부서로서의 재정 지원과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해외 화교화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중국해외교류협회는 중국 내·외를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지부 구조를 통해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화문교육기금은 해외 화교화인 교육·문화 관련 세부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즉 화교화인 교육·문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3)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 교육과 네트워크

(1) 화문교육기지 및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화교화인 청소년의 교육 공간인 화문(华文)학교의 역사는 화교화인의 해외 이주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화문학교는 거주국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세워졌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해외로 이주한 화교화인의 증가는 전통적인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미주와 유럽으로 지역적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주말 중문학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최근 화문학교와 중문(中文)학교는 전 세계에 걸쳐 약 5000여개가 있으며,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국가에 뿌리를 내린 노화교화인 사회의 화문학교, 두 번째는 언어 보습반 형태의 화문학교, 세 번째는 1980년 이후의 신이민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형성 된 주말 중문학교, 네 번째는 거주국 교육체계에 편입 된 화문학교이다.[50]

이러한 화교화인사회의 교육 기반을 토대로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중국해외교류협회는 중국 내 '화문교육기지' 지정 및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중국 내의 대학, 중학교 등 37개 교육 기관을 화문교육기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2009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210개의 '화문교육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화교화인 사회와 중국과의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본 사업이며, 해외 화교화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치이다. 중국 내 화문교육기지와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 장의 국무원 교무판공실 결산보고에서 살펴 본 것처럼 매년 지출되는 교육 예산이 '화문교육기지' 및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교사 연수, 교재 개발, 문화 프로그램, 모국 연수 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조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 중국과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이 교육 문화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의 중국내 네트워크인 '화문교육기지'의 경우, 대학과 중학교 등 화교화인 청소년 연령대를 고려하여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언어 교육 기관과 예술과 체육 전문 교육 기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화문교육기지' 지정 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 천전(陈真)(2007). 国际化背景下华文教育发展趋势及影响研究 云南师范大学学报. p39

표 Ⅱ-13 중국의 '화문교육기지' 지정 현황

구분	지정학교
화문교육기지 (중국내 37개)	기남대학(暨南大学), 화교대학(华侨大学), 북경화문학원(北京华文学院), 광서화교학교(广西华侨学校), 곤명화교학교(昆明华文学校), 절강대학(浙江大学), 사천대학(四川大学), 하문대학(厦门大学), 온주대학(温州大学), 오북사범대학(湖南师范大学), 협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청도대학(青岛大学), 요녕사범대학(辽宁师范大学), 해남사범대학(海南师范大学), 해남대학(海南大学), 산서대학(山西大学), 연변대학(延边大学), 안휘대학(安徽大学), 안휘사범대학(安徽师范大学), 남경사범대학(南京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화동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상해사범대학(上海师范大学), 중경사범대학(重庆师范大学), 천진대학(天津大学), 항주학군중학(杭州学军中学), 중경시기화중학(重庆市暨华中学), 태산학원(泰山学院), 성도수덕중학(成都树德中学), 하얼빈외국어학교(哈尔滨外语学校) 북경해정진수실험학교(北京海淀进修实验学校), 온주체육운동학교(温州体育运动学校), 하남성실험중학(河南省实验中学), 구강학원(九江学院), 온주시소년예술학교(温州市少年艺术学校), 장가구시제육중학(张家口市第六中学), 산동태안예술학교(山东泰安艺术学校)

* 출처: 중국화문교육망 华教资讯/基地院校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info-jdyx/index20.shtml) 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중국 내 화교화인 전문 교육기관인 '화문교육기지' 지정과 함께 추진 된 해외 화교화인사회 교육기관에 대한 '화문교육시범학교' 지정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확대되어 오고 있다. 즉 2009년, 첫 '화문교육시범학교' 지정에서는 21개국 58개 교육기관이 선정되었고, 2011년, 15개국 46개 교육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에도 27개국 88개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되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4년에도 7개국 18개 교육기관이 지정되는 등 현재까지 210개의 교육기관이 '화문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시기별 지정 국가와 교육 기관명은 다음과 같다.

표 Ⅱ-14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1차 지정[51]

구분	국가	지정학교
2009년 21개국 58개 지정	필리핀	菲律宾中正学院′ 菲律宾侨中学院′ 宿务耶稣会圣心学校′ 描戈大同中学
	라오스	万象寮都公学′ 沙湾拿吉崇德学校′ 百细华侨公学
	몽고	旅蒙华侨友谊学校
	일본	横滨山手中华学校′ 神户中华同文学校
	태국	北榄公立培华学校′ 国光慈善中学′ 育华学校智民学校
	미얀마	东方语言与商业中心′ 福星语言与电脑学苑′ 福庆学校
	브루나이	文莱中华中学
	한국	汉城华侨小学′ 韩国大邱华侨小学
	오스트리아	维也纳中文学校′ 维也纳中文教育中心
	덴마크	丹麦华人总会中文学校′ 美人鱼中华文化学校
	네덜란드	旅荷华侨总会乌特勒支中文学校′ 安多芬中文学校
	스페인	马德里华侨华人中学学校
	영국	伯明翰华联社中文学校′ 伦敦普通话简体字学校′ 华夏中文学校
	이태리	意大利普拉托华人华侨联谊会中文学校′ 米兰华侨中文学校
	캐나다	蒙特利尔佳华学校′ 亚省中文学校′ 侨文中文学校′ 湾景周六中文学校′ 温哥华北京中文学校
	미국	希望中文学校′ 南侨学校′ 圣地亚哥华夏中文学校′ 尔湾中文学校′ 休斯敦华夏中文学校′ 亚特兰大现代中文学校′ 华夏中文学校′ 希林亚裔社区中心
	호주	澳大利亚汉语国际推广中心′ 南澳华联谊会中文学校′ 苗苗中文学校′ 神州中文学校
	뉴질랜드	基督城路易·艾黎中文学校′ 奥克兰现代中文学校
	모리셔스	新华学校
	브라질	圣保罗华侨天主堂中文学校′ 袁爱平中巴文化中心
	수리남	广义堂中文学校

* 출처: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 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51) 한국의 경우 2009년에 서울과 대구의 화교 소학교가, 2013년에 광주의 화교학교가 화문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표 Ⅱ-15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2차 지정

구분	국가	지정학교
2011년 15개국 46개 지정	필리핀	菲律宾中西学院, 菲律宾华教中心 怡朗新华学院, 三宝颜中华中学
	캄보디아	金边端华学校, 崇正学校, 福建会馆民生中学
	미얀마	缅甸东枝东华语言与电脑学校, 缅北腊戍果文中学
	태국	泰京培英学校, 罗勇府公立光华学校 龙仔厝府三才公学, 呵叻府磨艾县公立育侨学校 帕府中兴学校, 泰南勿洞中华学校
	호주	悉尼大同中文学校(ashfield), 丰华中文学校 雪梨中文学校, 中华会馆黎明中文学校
	아르헨티나	富兰克林中文学校
	독일	柏林华德中文学校, 巴伐利亚中文中心学校 不来梅华威中文学校, 汉堡汉华中文学校 斯图加特汉语学校
	네덜란드	丹华文化教育中心
	캐나다	渥太华欣华中文学校 大温哥华中华文化中心李树坤书院－中文学校 卡尔加里育丰中文学校
	미국	哈维中文学校, 美中实验学校, 剑桥中国文化中心 瑞华中文学校
	포르투칼	里斯本中文学校
	스웨덴	瑞青中文学校, 瑞京中文学校
	벨기에	布鲁塞尔中文学校
	스페인	马德里爱华中文学校, ESERP孔子文化学校 中国文化学校, 中加西友好学校
	이태리	基督教罗马中文学校, 意大利佛洛伦萨中文学校 米兰第一中文学校, 意大利金龙学校 罗马中华语言学校

* 출처: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 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표 Ⅱ-16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3차 지정

구분	국가	지정학교
2013년 27개국 88개 지정	필리핀	罗申那同和中学暨附小, 红奚礼示立人中学 菲律宾怡省毓侨中学, 怡朗华商中学 宿务中华中学, 碧瑶爱国中学, 仙朝峨中华中学
	한국	光州全南中国侨民学院中国华侨学校
	캄보디아	公立广肇中学, 暹粒中山中学 西哈努克省公立港华学校, 立群学校
	라오스	老挝琅勃拉邦新华学校
	미얀마	缅甸仰光九龙堂天后华文补校, 八莫佛经学校 曼沾勐稳学校, 抹谷千佛寺学校, 景栋中文培训中心
	일본	同源中国语学校, 九州中国人学者技术人员联谊会附设 习悦中文学校
	태국	曼谷培知公学, 芭提雅明满学校, 大城强华学校 网銮公立建华学校, 清迈崇华新生华立学校 彭世洛醒民学校, 清莱网攀公立中华学校 泰国坤敬公立华侨学校, 乌汶华校学校二 德教树强学校, 泰国合艾陶华教育慈善中学 东盟普及泰华学校
	아일랜드	爱尔兰华协会中文学校
	폴란드	华沙汉语中心, 华沙中文学校
	벨기에	安特卫普中文学校
	독일	德国柏林益智中华文化学校, 德国华达中文学校, 汉园杜塞尔多夫中文学校 纽伦堡中文学校
	프랑스	法国语言文化国际交流协会附属精英中文学校 法国中华学校
	체코	布拉格中华国际学校
	노르웨이	挪威中文学校
	포르투칼	维拉贡德中文学校
	스웨덴	斯德哥尔摩新星中文学校, 哥德堡第一中文学校
	스위스	日内瓦中文学校
	스페인	塞维亚中文学校, 巴萨罗那中国学校
	영국	英国共和协会中文学校, 英国依岭中文学校 英国格林威治中文学校, 苏格兰华夏中文学校 曼城侨联社华人子弟学校
	이태리	米兰龙甲中文学校
	코스타리카	中哥文化教育中心

구분	국가	지정학교
	캐나다	蒙特利尔孔子学校, 孟尝会中文学校 怀尔逊中文学校, 侨道中文学校
	미국	特拉华州春晖中文学校, 美洲中华中学校 美国夏威夷明伦学校, 底特律中文学校 德克萨斯达拉斯现代语文学校, 西北中文学校 克利夫兰当代中文学校, 亚省现代中文学校 圣路易现代中文学校, 长城中文学校 密西根州新世纪中文学校, 安华中文学校 俄亥俄州现代中文学校, 亚省希望中文学校 大辛辛那提中文学校
	자메이카	牙买加中华会馆中文班
	아르헨티나	阿根廷侨联中文学校
	호주	悉尼实验中文学校, 樱桃小溪华人协会中文学校 布里斯本中文学校, 同心中文学校 亚洲语文学校, 新金山中文学校 新金山文化学校,
	뉴질랜드	惠灵顿中文学校, .奥克兰华新中文学校 新西兰华人社区服务中心文化学院

* 출처: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 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표 Ⅱ-17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4차 지정

구분	국가	지정학교
2014년 7개국 18개 지정	캄보디아	贡布省禄山市公立华侨学校, 逢咋叻县觉群学校
	미얀마	曼德勒云华师范学院, 大其力大华佛经学校
	태국	泰国春府大众学校, 光明华侨公立学校 横色令县公立敬德学校, 武哩喃公立华侨学校 陶公夏兴学校
	영국	伦敦哈劳中文学校, 曼彻斯特中国教育文化社区协助中心中文学校
	캐나다	萨城中文学校, 环球中文学校
	호주	澳华公会中文学校
	미국	光华中文学校, 明尼苏达明华中文学校 凯瑞中文学校, 匹兹堡中文学校

* 출처: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중국 내·외를 연결하는 화문교육기지 및 화문교육시범학교 네트워크의 구축은 중국의 화문교육 및 중화문화 거버넌스 구축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화문교육시범학교 1차 58개 지정과 함께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중국해외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세계화문교육대회(世界华文教育大会)'를 개최하였고, 2회 대회를 2011년에, 그리고 3회 대회를 2014년 12월에 개최하는 등 세계화문교육대회를 통해 화문교육 교사에 대한 시상, 중화문화 프로그램 성과 보고, 교사 워크숍 등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52]

중국 내 화문교육기지와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는 대표 사업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기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문교사 자격반, 명사 순강, 교안 대회, 학력 인증반, 행정관리 교류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즉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라는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교사, 교재, 교육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53]

화문교육 네트워크의 대표 사업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화교화인 사회의 교류 협력 현황을 살펴보자. 아래 도표는 2013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 화문교육교사 연수사업 추진 상황이며, 이를 통해 화문교육과 관련 한 중국 내 기관, 단체와 해외 화교화인 거주국별 네트워크의 운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표 Ⅱ-18 2013년 화문학교 교사 연수 개최 현황

개최 시기	연수 명칭	주최	주관
3월	말레이시아 화문학교 담임 연수반	중국해외교류협회	말레이시아화교학교이사회총회
3월, 10월	태국 화문교육 대학학부 학력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화교대학 태국화문교사공회
4월	라오스 화인학교 교장, 교사 연수반	중국해외교류협회 운남사범대학화문학원	운남성해외교류협회
4월~5월	태국 화문교사 표준어 연수반	국무원교무판공실	청도대학화문교육기지
4월~8월	화문교사 교수방법 '金辉' 북경연수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북경시교무판공실

52) 중국화문교육망. 세계화문교육대회 1회 대회.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news/200908/t20090804_30651.sht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53) 중국화문교육망. 校动态 사업 소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info-yxdt/index12.shtml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개최 시기	연수 명칭	주최	주관
5월~12월	해외 화문교육 명사 순례강사단	중국해외교류협회 중국화문교육기금회	
6월~12월	화문교육 교사 연구실습	국무원교무판공실	
6월~7월	인도네시아 화문교사 표준어 연수반	국무원교무판공실 중국해외교류협회	제남대학화문학원
8월	베트남, 말레이사아 화문교사 교수방법 광서 연수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광서장족자치구 교무판공실 광서사범대학
8월	라오스 화문학교 교사 연수반	중국해외교류협회 운남성해외교류협회	
8월	화문교육교사 연구학습 구미반	국무원교무판공실	천진시교무판공실 천진대학화문교육기지
8월	미얀마 南邓 지역교사 연수반	중국해외교류협회	임창시교무판공실
10월~11월	외국정부관리 중문학습반 실천활동	국무원교무판공실	화교대학
10월~11월	화문교육 우수인 중국행	국무원교무판공실	산동성교무판공실
11월	말레이시아국립중학교교사연수반	국무원교무판공실	화중사범대학교
11월	화문교육교사연수말레이시아화문교사 표준말시정연수반	국무원교무판공실	청도교무판공실
12월	화문교사언어문자 교학기능 교수실기 연수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해남사범대학
12월	동남아 국가화문학교 주요교사교류단	국무원교무판공실	화교대학
12월	말레이시아 독립중학교생물 지리교사연수반	국무원교무판공실	화중사범대학

* 출처: 刘华·程浩兵(2014). 近年来海外华文教育发展的现状、问题及趋势. 东南亚研究. p..83.
중국화문교육망..首页/华教资讯/华教新闻.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표 Ⅱ-19 2014년 화문학교 교사 연수 개최 현황

개최 시기	연수 명칭	주최	주관
3월	2014 화문교육 교장 연수 학습 캐나다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주장학원
4월	아시아 화문교사 북경 연수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북경시 교무판공실
5월	중국 화문교육기금회 아시아 화문학교 교장 광서연수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광서해외교류협회 광서화교학교
6월	해외화문학교교사 9년 의무제 개편교재 교수 방법 연수반	운남성 교무판공실	곤명화문학교
6월	화문교육 교사연수 인도네시아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문화사	북경화문학원
6월	해외화문 유아교사 연수반	중국해외교류협회	광동성 해외교류협회
7월	중앙아시아 4개국 화문교사 연수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화중사범대학교
8월	해외 화문교사 연수반 (온주적 화문학교 교장 및 교사)	온주시 교무판공실	
9월	네덜란드 화문교사 신강신쟝 연수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신강사범대학교
11월	2014 화문교육 교장 연구학습 말레이시아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심천시 요화실험학교
11월	차세대 해외화문 교육관리인원 연수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기남대학
12월	말레이시아 독립중학교 생물 지리화문교사연수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화중사범대학교
12월	2014 중국화문교육기금회 화문교사 녕하 연수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녕하 해외교류협회

* 출처: 중국화문교육망..首页/华教资讯/华教新闻.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표 Ⅱ-20 2015년 화문학교 교사 연수 개최 현황

개최 시기	연수 명칭	주최	주관
1월	인도네시아 화문교사 자격증 취득 연수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화문학원
2월	17기필리핀 화문교육 연수학습반	필리핀 진강향우회	필리핀 화문학교
2월	2015년 중문교사 연수토론회	영국 중문교육촉진회	런던대학교아시아아프리카학원
3월	'완미중국' 해외화문교사 원격연수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북경4중 e스쿨
4월	프랑스 중문교사 연수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프랑스 화문교육협회 유럽타임스
4월	화문교육화문교사자격증연수연습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중국해외교류협회	기남대학교화문학원
6월	화문교육교사연수연습 인도네시아반	국무원 교무판공실 중국해외교류협회	북경화문학원
7월	화문교육관리교류	국무원 교무판공실	북경시 교무판공실
7월	화문교육 해외우수화문교사 중국행	국무원 교무판공실	섬서사범대학교
8월	해외화문교사 연수반(온주적 교사대상)		온주시 교무판공실

* 출처: 중국화문교육망..首页/华教资讯/华教新闻.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인해 교사 연수 이외에도 청소년 연수가 직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전체 연수 추진 상황을 보면, 중국 초청 연수가 3,400여명, 해외 파견 연수가 730여명, 그리고 파견이 7,000여명에 이르는 등 화교화인 청소년 및 차세대에 대한 교육 네트워크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54]

54) 김판준,(2015). 중국의 화교화인 역사·교육·문화 네트워크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 35호, p.142

(2)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중화문화 프로그램

1990년대 이후 화교화인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화(中华)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Ⅱ-21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대상 주요 중화문화 프로그램

명칭	시작/주기	주최	사업 목표
화인소년작문대회 (华人少年作文比赛)	1993년, 매년 1회	국무원교무판공실 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	화예 청소년의 민족문화 계승 및 언어문자 능력 진작
중국뿌리찾기여행 (中国寻根之旅)	1999년, 매년 여름, 겨울	국무원교무판공실 중국해외교류협회	화예 청소년의 중국 연수를 통해 중국 사회와 중국 문화 이해 및 교류 촉진
중화문화대낙원 (中华文化大乐园)	2011년, 매년 국가별	국무원교무판공실 중국해외교류협회	거주국 캠프로 개최되며, 노래, 춤, 무술, 미술, 수공예 등 중화문화 체험을 제공
해외화예청소년중문노래대회 (海外华裔青少年中文歌曲大赛)	2011년, 매년 1회	국무원교무판공실 북경시인민정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화예 청소년의 언어와 중화문화의 정서적 공감 형성
해외화예청소년중화문화대회 (海外华裔青少年中华文化大赛)	2012년, 매년 1회	중국해외교류협회	화예 청소년의 중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 고취

* 출처: 刘华, 程浩兵(2014). 近年来海外华文教育发展的现状′ 问题及趋势. 东南亚研究에서 표 저자 재구성.

위 표 Ⅱ-21 에서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1993년에 시작되어 매년 1회 개최되는 '화인소년작문대회(华人少年作文比赛)', 1999년 시작되어 여름과 겨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국뿌리찾기여행(中国寻根之旅)', 그리고 2011년 시작된 '중화문화대낙원(中华文化大乐园)'과 '해외화예청소년중문노래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文歌曲大赛)' 등이 있으며, 2012년에는 '해외화예청소년중화문화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华文化大赛)'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 표 Ⅱ-21의 주최 기관을 보면,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중국해외교류협회가 중화문화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중화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따라 거주국 지역별 대회와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이어지며, 유형별로도 언어, 작문, 춤과 무용, 노래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사업별 현황을 보면, 199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화인소년작문대회(华人少年作文比赛)'의 경우 10회인 2009년 참가작품수가 10만을 넘어섰으며, 15회인 2014년에 이르러서는 참가 작품수가 20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4년 수상자만 해도 1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등 중국과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해외 약 5000여개로 추정되는 화문학교와 중문(中文)학교 교육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인소년작문대회 최근 10년 개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2 최근 10년 '화인소년작문대회(华人少年作文比赛)' 참가자 현황

회차	년도	국가	참가작품수	수상인수
7회	2006	31	70000	2000
8회	2007	34		3310
9회	2008	32	85000	
10회	2009		100000	5385
11회	2010	24	120000	9000
12회	2011	32	124000	9000
13회	2012	25	142000	10000
14회	2013	26	122000	10400
15회	2014	32	207000	16231

* 출처: 중국화문교육망. 검색. 웹 페이지 (http://search.hwjyw.com/search/search.jsp)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또한 1999년 시작 된 '중국뿌리찾기여행(中国寻根之旅)'은 대표적인 모국 방문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으며, 이 역시 중화문화 거버넌스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중국해외교류협회 및 지방 교무판공실을 통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성, 시급 교무판공실과 지역 화문교육기지 등이 주관하고, 관련 지역 및 직능 단체 등이 공동 개최하면서 지역별, 주제별로 특성화 된 캠프들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뿌리찾기여행'의 지방별 주제별 사례를 그림으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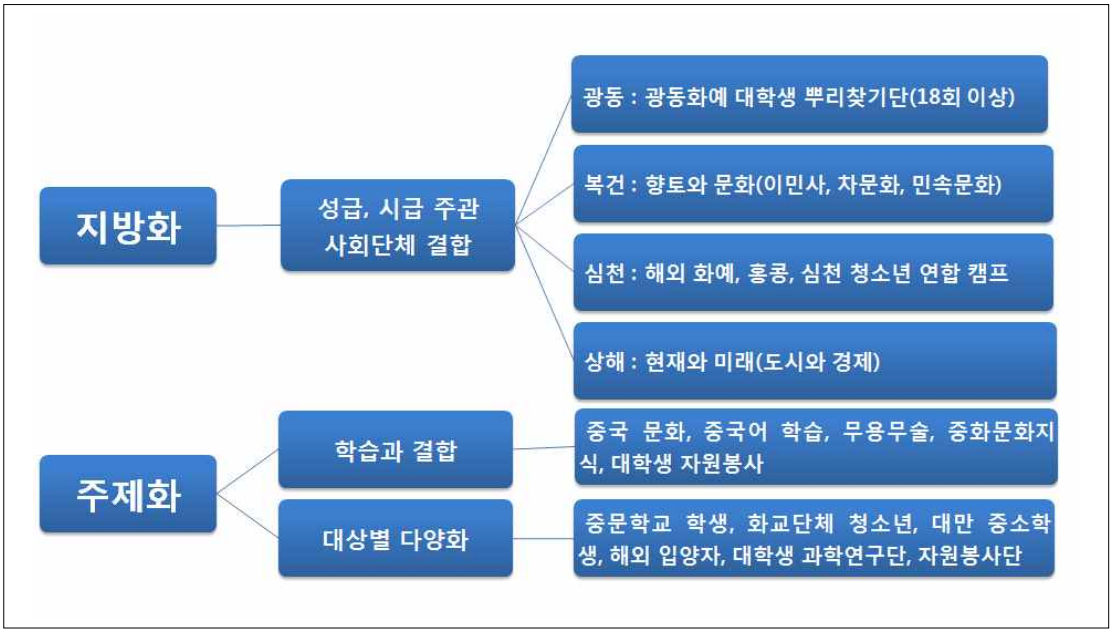

* 출처: 李嘉郁(2009). **近年来华裔青少年中根之旅夏令营活动的特点和发展趋势.** 八桂侨刊.
김판준(2015). 중국의 화교화인 역사·교육·문화 네트워크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 35호.**. pp.142-143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Ⅱ-7】 '중국뿌리찾기여행(中国寻根之旅)'의 지방화와 주제화 사례

'중국뿌리찾기여행'의 지방화는 성급, 시급 교무판공실이 지역에 맞는 청소년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것이다. 즉 지역 자원, 즉 지역의 문화 단체, 시설, 인적 자원을 화교화인 청소년 모국 연수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화교화인 사회가 중국 내 혈연과 지역적 연고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녀의 모국 연수를 추진하는 상황과도 맞물리면서 '중국뿌리찾기여행'이라는 모국 연수 프로그램은 지방화라는 특징을 확대하기에 이른다. 즉 '중국뿌리찾기여행' 초기 시행 시기부터 지방 캠프가 활성화 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노화교의

고향인 복건과 광동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복건과 광동에서의 모국 연수 지방화는 부모와 조부모의 고향을 캠프 장소로 참가하는 유형인지라, 부모와 조부모의 고향을 기반으로 하는 중화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즉 복건의 청소년 모국 연수의 경우 화교의 고향이라는 역사적 특징을 살려 화인 이민사를 모국 연수에 특화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 문화인 차 문화, 민속 문화, 지역 체험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광동의 지방 캠프 역시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추진 된 대표적인 지방 캠프로 자리 잡았다. 특히 광동 지방 캠프는 미국의 광동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광동화예 대학생 뿌리찾기단'을 내년 추진하여 현재 18회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모국 연수가 1회성이 아닌 해외 화교화인사회와 지역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심천은 홍콩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외 화예 청소년, 홍콩 청소년, 심천 청소년이 참가하는 연합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상해는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캠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해와 함께 미래의 상해 발전 전략을 화교화인 청소년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동북 흑룡강성에 위치한 하얼빈시의 경우 추운 겨울이라는 지역적 특징과 아름다움을 주제화하여 겨울 캠프를 운영하는 등 화교화인 청소년 모국 연수의 지방화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55]

'중국뿌리찾기여행'의 지방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목적으로 화교화인 청소년 모국 연수의 주제화도 확대되게 된다. 즉 청소년 모국 연수가 중국 문화, 무술과 무용, 중국어 활동이 특화 된 주제 캠프를 선보이게 되었고 이는 청소년 모국 연수의 지방화와 결합하여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시하게 된다. 대표적인 청소년 주제 캠프로는 '한어와 중화문화 캠프(汉语和中华文化夏(冬)令营)', 그리고 '무도 및 무술 캠프(舞蹈及武术夏(冬)令营)' 등이 있다. 또한 참가 대상자의 특징을 주제화하여 모국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캠프도 선보이고 있다. 즉 화교학교, 혹은 중문학교 학생이 참가하는 일반 캠프에서부터 화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화예 청소년 캠프(优秀华裔青少年营)', 그리고 해외 입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 입양 중국아동 캠프(外国人领养中国儿童营)', 대만의 중소학생 캠프, 대학생 자원봉사단 등 특정 참가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캠프가 개최되고 있다.[56] 이렇듯 화교화인 청소년 모국 연수는 지방 캠프를 중심으로 캠프의 참가 대상과 주제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직능 단체와 지역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역사· 교육· 문화 프로그램으로

55) 중국뿌리찾기여행 지방캠프 개최,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activity/activity-dfy/index57.s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56) 李嘉郁(2009). 近年来华裔青少年中根之旅夏令营活动的特点和发展趋势. 八桂侨刊. pp. 28-31

안착되고 있다.

이렇듯 '중국뿌리찾기여행'은 단순한 모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화교화인 청소년들이 거주국의 화문학교나 중문학교, 즉 해외 화교화인 사회별 형성되어 있는 모국의 출신 지역과의 연계, 그리고 해외 거주국별 중국계 청소년의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모국 연수 참가자들이 지방 캠프의 프로그램 구성에 직접 참여하는 등 화교화인사회가 청소년 모국 연수를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해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해외 화예청소년 '중화문화대락원(中华文化大乐园)'은 화교화인 거주국에서 개최되는 중화문화 캠프이다. 즉 '중국뿌리찾기여행'이 모국 연수 형태로 중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중화문화대락원'은 중국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화교화인 사회로 찾아가는 화교화인 청소년 거주국 개최 캠프이다. 즉 화교화인 청소년 거주 국가별로 중국과 방학이 다른 국가들이 있고, 또 모국 연수가 체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 된 프로그램이다. '중화문화대락원'은 2011년 첫 해의 경우 9개국 1만 3천여 명 참가 수준에서 4회 대회인 2014년에는 16개국 3만여 명으로 참가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개최 거주국 주관 단체가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대회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화문화대락원' 프로그램은 화교화인 청소년이 거주하는 거주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중화문화 프로그램 외에 거주국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중국과 거주국 간의 문화 교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해외 화예청소년 '중화문화대락원(中华文化大乐园)' 개최 국가 및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23 해외 화예청소년 중화문화대락원(中华文化大乐园)' 참가자 현황

회차	년도	개최국가	참가인원수	결승전 참가자수
1회	2011	9	13000	
2회	2012	19	36000	65
3회	2013	14	30000	300
4회	2014	16	30000	200

* 출처: 청소년활동 신문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2013년 12월 27일 일자)
/search/search.jsp?channel=zw&sort=pubtime&q=%E4%B8%AD%E5%8D%8E%E6%96%87%E5%8C%96%E5%A4%A7%E4%B9%90%E5%9B%AD&field=null&start=30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아울러,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 화예청소년 중화문화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华文化大赛)'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으며, 사업 추진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Ⅱ-24 해외 화예청소년 중화문화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华文化大赛) 사업 추진 개요

구분	내용
목적	해외 화예청소년의 중국어와 중화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해외 화문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
참가대상	13~18세 사이의 해외 화예청소년
대회절차	중화문화지식경연대회(필기시험)와 재능·예능대회로 진행. 지식경연대회는 각 국가별 진행하며 우승자를 중국으로 초청하여 우승자로 조직 된 여름(혹은 겨울) 캠프를 진행함.
	재능·예능대회는 중국내에서 우승자의 여름캠프 기간에 진행함. 지식경연대회와 재능·예능대회의 점수를 합산하여 득점이 높은 자를 우승자로 선정함.
대회내용	지식경연대회 필기시험은 모두 객관문제임. 그 중 80-90%는"삼상(三常)" (중국문화지식, 중국역사지식 중국지리지식) 교재를 기초로 작성된 문제집에서 나오며, 20-30%는 문제집 외 중국의 발전 변화와 관련됨.
	재능·예능대회의 내용은 중국어, 악기, 성악, 무술, 무용 등 5개 분야이며, 참가자들은 종류만을 선택할 수 있음.
대회방식	세계 각국의 방학날짜가 다르기에 지식경연대회의 우승자 여름(혹은 겨울) 캠프참가 및 재능·예능 대회의 진행은 "3+3+1" 방식으로 진행함. 즉 3개의 권역, 3번의 캠프, 1번의 결승을 말함.
	1번의 총 결승전은 3개 지역구의 우승자들이 당해년도 중화문화대회 총결승전에 진출하여 1, 2, 3등을 결정함.
	3개의 권역이란, 지식경연대회 필기시험을 춘계지역구, 하계지역구, 추계지역구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의미이며, 동일 지역구에 속하는 국가들은 같은 시간에 대회를 치르고 각국의 지식경연대회 우승자를 선출함.
	3번의 여름(혹은 겨울) 캠프는 중국에서 3개의 시기에 나누어 개최하고, 원칙적으로 한 개의 지역구를 한 시기에 진행하여 지식경연대회 우승자 캠프를 조직함. 또한 그 기간에 재능·예능대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지식경연대회 득점과 재능·예능대회 점수를 합산하여 우승자를 선발함.

* 출처: 중화문화대회 참가 안내문.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content/2012/02/22/23662.sht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이와 같이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화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화문교육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중화 문화 프로그램 유형도 언어와 작문, 중화 문화 지식, 춤과 무용, 노래 등 다양하다. 특히 중화문화 거버넌스가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화교화인 교육기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 세계 화교화인 청소년과 중국의 문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과 화교화인 미래 인재 정책

(1)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중국 건국 시기부터 화교화인 우수 인재의 모국 기여를 경험한 중국 정부는 1980년대 개혁개방으로 인한 해외로 유학 간 화교화인 우수 인재에 주목하게 된다. 즉 중국이 1990년대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유학으로 해외 진출 후 해외에 정착한 20만 명 이상의 화교화인 우수 인재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유학 인재의 귀국 인센티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즉 1992년 국무원 교무판공실에서 '해외유학인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공포하는 등 유학인재의 귀국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게 되었으며, 유학 인재에 대한 귀국과 초빙, 창업을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취업 인센티브, 거주 및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 등 해외 화교화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실시되고 제공되게 된다.[57]

대표적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으로는 1998년에 시행된 '장강학자장려계획(长江学者奖励计划)'과 2008년 시행된 '천인계획(千人计划)'이 있다.[58] '장강학자장려계획'은 최고 수준의 고급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로 해외 고급 인재를 1천 3백여 명 초빙하였으나, 사실상 해외 유학 후 정주하였던 인재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천인계획' 또한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았으며, 2012년 7월까지 2,263명이 중국으로 귀환하였다. 특히 천인계획의 실시와 함께 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의 다양한 인재

57) 재외동포재단(2014a).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서울: 재외동포재단 .pp.109-110에서 재인용 재외동포재단(2014b).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3**. 서울: 재외동포재단.

58) 천인계획의 공식 명칭은 해외고층차인재인진계획(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 즉 해외 고급인재 유치 정책이며, 천인계획인 통용 된 명칭이다. 현재는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있으나 baidu 웹 검색을 통해 주요 인재 유치 경과와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초빙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외 우수 인재의 귀국과 창업은 중국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귀국 유학 인재 전용 창업 단지가 경제 개발을 원하는 여러 지역에서 설치되어 창업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즉 중국의 해외 우수 인재 유입 정책으로 인해 화교화인 인재의 중국 귀환과 중국내에서의 투자와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 된 것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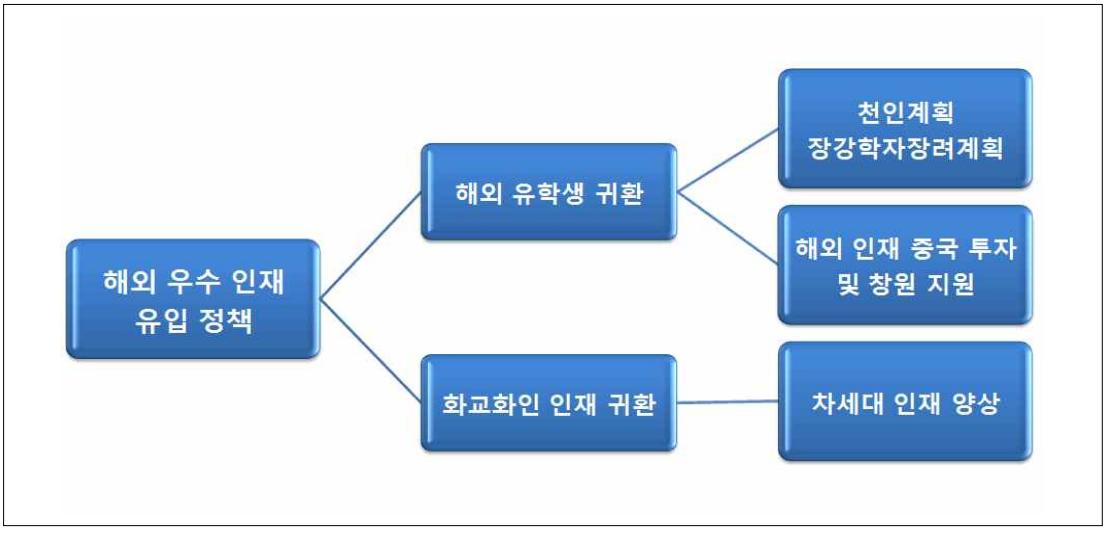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4a).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서울: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2014b).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3**. 서울: 재외동포재단. 118의 그림을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Ⅱ-8】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입 정책과 화교화인 인재 귀환

해외 화교화인 우수 인재의 중국내 초빙과 창업 지원은 동시에 추진되었다. 특히 지방 정부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유학인재의 창업 유치를 독려하였다. 이로 인해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중국 내 창업 지원은 지방 정부를 통해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게 된다. 즉 해외 유학 인재 및 화교화인 차세대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해외유학인재 창업원구'라는 경제 개발 단지가 지역별로 조성되었으며, 해외에서 귀환한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무담보대출 지원, 세금감면, 토지건물 임대료 감면, 배우자 및 자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59]

59) 지방 정부의 유학 인재 창업 지원 사례와 특혜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생하였다. 재외동포재단(2014b).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3**. 118-119. 서울: 재외동포재단. 에서 재인용

이러한 중국의 해외 유학 인재 유입 정책과 이로 인해 귀국하게 된 화교화인 차세대들은 중국내에서 다양한 지역 및 직능 커뮤니티를 구축하게 되며, 이는 해외 화교화인 사회와의 또 다른 이주 네트워크로 작용하고 있다.

(2) 해외 유학생 귀환 정책의 성과와 화교화인 미래 인재 정책

중국의 해외 유학생 귀환 정책의 성과는 해외 화교화인 우수 인재를 이민 정책의 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해외 유학 인재와 화교화인 차세대의 중국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의 귀환 정책과 함께 지방 정부에서도 인재 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로 접어 든 중국 경제에 대한 해외 화교화인 차세대들의 관심과 귀환이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화교화인 인재의 중국 귀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중국 정부로써도 화교화인 차세대의 중국과의 경제, 문화 네트워크가 중요해 졌다. 특히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면서 화교화인 차세대의 거주국 성장과 위상 강화에 중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고,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인재 양성 또한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화교화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 투자와 화문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중국과의 인재 양성 협력은 새로운 미래 인재 전략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 특히 앞 장의 표 Ⅱ-10 국무원 교무판공실 2014년 예산 수입·지출 내역에서 보았듯이, 무려 90%를 교육에 투여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내·외를 연결하는 화문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통한 화문 교육 강화 사업들은 장기적인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화문화 프로그램은 글로벌 중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매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무원 교무판공실이라는 정책 추진기구의 존재와 한화 1조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고, 두 번째는 중국내 37개 '화문교육기지'의 지정과 해외 210개 '화문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해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교화인 청소년 사업 추진 단체로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국화문교육기금회를 설립하여 정책 기구인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함께 화교화인 교육문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기구의 존재와 안정적인 재정, 중국 내·외를 연결하는 화문교육 네트워크는 화문교육이 거주국별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 동력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해외를 잇는 다양한 중화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993년 시작 된 화인소년작문대회는 전 세계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참가 작품수가 20만 건을 상회하며, 수상자만 해도 1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등 방대한 참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에 방문하는 모국 연수 유형인 '중국뿌리찾기여행'의 경우 1999년 개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표적인 중화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해외 화교화인 사회의 수요와 요청에 맞게 다양한 주제 캠프들이 여름과 겨울에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거주국에서 개최되는 '중화문화대낙원'은 모국 방문 연수인 '중국뿌리찾기여행'에서와 같은 중화문화 체험과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거주국 청소년 캠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거주국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중국과 거주국 간의 문화 교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해외 화예 청소년 중화문화대회는 화교화인 거주국 대회, 거주국 방학을 기준으로 거주국을 재구성 한 권역 대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 대회로 이어지는 글로컬 프로그램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즉 화교화인 청소년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며,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내·외를 포괄하는 '전 세계 화인'을 주창하는 새로운 글로벌 사회통합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90년대 이후 해외 우수인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화교화인 차세대 인재의 모국귀환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천인계획' 등을 통해 해외 유학 거주자와 화교화인 차세대가 성공적으로 중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중국 정부는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규획 요강(2006~2020년)'을 시행하면서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우수 인재 수요의 상당수를 해외 화교화인 차세대 유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교화인 청소년에 대한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문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중화 문화프로그램의 운영과 화교화인 차세대 인재의 귀환 정책은 불과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중국의 정책 의지가 중화문화 거버넌스를 전 세계 화교화인 교육기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에도 화문교육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중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것을 전망하게 한다.

3. 일본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 연구[60]

1)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도 세계화 및 국가 경쟁력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해외일계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정부의 청소년 정책 및 해외일계인 청소년의 정책, 해외일계인 청소년의 실태와 현황, 활동내용,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자료검색을 통해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대안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청소년 정책과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의 연구 성과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과 접목시킨다면 정책적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고 해외일계인 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네트워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일본민족으로서 청소년 정체성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일계인 청소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과제를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현재 자국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청소년과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을 분류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일본 내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청소년정책의 전체의 틀을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다. 둘째, 해외일계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계인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두 가지 분석대상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해외일계인 청소년이고, 또 하나는 일본 내 일계인 귀환청소년 정책일 될 것이다. 가령, 구체적인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 청소년정책으로서는

60) 이 절은 임영언 교수(전남대학교)가 집필하였음.

국내외 일계인 인재육성-국제협력사업단 실시, 인재육성사업, 일계연수원 수용사업, 일계유학생 장학금 조성사업, 인재육성기금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의 시급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청소년 정책(지원 대책 혹은 교류대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국내 청소년 정책 및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의 실태와 현황분석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의 실태와 현황분석은 한국정부의 재외한인 청소년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700만의 재외동포와 17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사회 한국에 구체적인 시사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교류현황 및 네트워크 실태조사, 일본국내 청소년과 해외일계인 청소년과의 친선정도 및 교류방법, 친선모임의 성공사례, 일본청소년과의 상호교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해외일계인 청소년들의 현지 고용실태, 인적자원 활용 실태, 세계 각국 해외일계인 청소년과의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의 대안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 및 분석틀

해외일계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임성모(2008)의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해외이민, 임영언(2010, 2011, 2014)의 일본인 브라질 이민사와 귀환일계인의 일계인타운 형성 과정, 송석원(2009)의 해외일계인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해외일계인에 대해 역사학적 측면에서 이민정책, 해외일계인 연구나 JICA의 활동, 사회학적 측면에서 일계타운의 형성과정에 접근한 선구적인 연구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국내외 청소년 정책 및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연구는 한일양국에서 뚜렷한 연구 성과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일본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내각부, 문부성, 외무성 산하 JICA내 해외일계인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본내각부 공생사회정책과에서는 일본 국내 청소년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직접 청소년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내각부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자료제공 등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내각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육성, 지원에 관한 기획입안이나 종합조정을 수행하는 관청으로서 정책 전체의 기본적 혹은 종합적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관계성청의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61]

내각부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침은 일상생활능력의 습득과 학력향상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목표로 두고 청년실업(니트), 이지메(히키고모리), 등교거부 청소년 등을 안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정 등을 지원하는데 있다. 내각부 공생사회정책과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의 실시상황이나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취지는 학교수업이나 취업 등 사회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해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고용 등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 공공단체와 연계하여 정비와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백서를 발행하여 청소년의 현상 및 주변 사회 환경의 실태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62]

다음은 문부성의 재외방인 청소년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일본헌법에 따라 일본의 미래를 여는 교육의 기본을 확립하고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기본법(1947년 3월 31일 제정 법률 제26호),[63] 교육기본법(2007년 12월 22일 법률 제120호),[64] 학습지도요령[65]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다음은 외무성 산하 JICA내 해외일계인협회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해외일계인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향후 대책'과 맞물려 1993년 의견서에 근거를 두고 청소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외이주자 지원 대상의 일계인 3세까지 한정, 일계인을 지원하여 거주국에서 일본의 이해자로서 육성 및 일본과 거주국과의 2국간 교류관계의 촉진역할, 일계인의 지위 및 능력 향상 도모와 거주국의 발전 공헌, 일계 청소년의 일본과 거주국과의 외교 기반의 강화 확충에 대한 공헌

61) 內閣部. '청소년 행정의 종합적 추진' 웹 페이지에서 http://www8.cao.go.jp/youth/suisin/houkoku/c_1.htm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62) 共生社会政策. 若者育成支援 http://www8.cao.go.jp/yout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63) 文部省. 일본학교교육법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26.html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64) 1947년 3월 31일 제정된 학교교육기본법 제25호를 2007년에 전부 개정한 법률로 교육의 목적 제2조 제5항에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것들을 배양해온 일본국과 향토를 사랑함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http://law.e-gov.go.jp/htmldata/H18/H18HO120.html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65)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정부가 1947년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학습지도 안내라는 입장에서 각 학교의 재량으로 잠정적으로 활용하다가 1953년에 학습지도요령(시안)이라는 명칭이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의 각 학교가 각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정한 것이다. 위키피디아. 학습지도요령 http://sja.wikipedia.org/wiki/dptj 2015년 9월 8일 인출.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이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으며 국제협력사업단(JICA) 이주지 시설 정비, 일계인 농업자 지원, 농업협동조합 연계 신기술개발, 일계인 농업사회 발전 도모하였으며 해외이주 일계인사회에 관한 국민대상 계발 홍보, 학술연구 협력에 주력해오고 있다. 또한 세계 각지 일계인 단체 조직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팬 아메리칸 일계인 대회 지원, 청소년 레벨의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와 같은 사업지원, 해외일계인 대회 지원 등을 강화해 왔다.[66]

3) 연구방법 및 청소년 범위

이 연구는 일본정부의 국내 청소년 정책과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와 자료검색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존문헌 및 국내외 통계자료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실시된 조사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일본 국내외 재외동포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의 분포 현황 및 생활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자료조사는 국내거주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나 인터넷 자료검색 등 정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통계조사나 기초조사에서 누락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수집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일본 내 인터넷 검색자료를 통해 해외일계인 청소년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표 Ⅱ-25 일본 각종 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구분

법률 명칭	호칭		연령구분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
형법	형사책임연령		만14세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아동	1세미만
		유아	1세~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소년	초등학교 취학부터 18세 미만
아동수당법	아동		18세에 달한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

66) 海外日系人協会. 国際日系ネット http://www.jadesas.or.j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법률 명칭	호칭	연령구분
모자 및 과부복지법	아동	20세 미만
학교교육법	학령아동	6세에 달한 이후 최초 학년~12세에 달한 학년말까지
	학령생도	초등학교 과정을 종료한 최초 학년~15세에 달한 학년 말까지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혼인적령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미성년자는 부모동의 필요)
노동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아동	15세에 달한 최초 3월 31일까지
근로청소년 복지법	근로청소년	법률상 규정 없음. 대략 35세 미만
도로교통법	아동	6세~13세 미만
	유아	6세 미만
	대형면허 불가	20세 미만
	보통면허, 대형특수면허, 대형 이륜면허 및 견인면허 불가	18세 미만
	보통 이륜면허, 소형특수면허 및 원동기 면허 불가	16세 미만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법	청소년	법률상 규정 없음. '어린이 꿈 기금' 대략 18세 미만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법	어린이	대략 18세 이하
미성년자 흡연금지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 적정화 법률	연소자	18세 미만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안전 안심 인터넷 이용 가능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아동	18세 미만

* 출처: 内閣部. 청소년연령구분 웹 페이지(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0honpenhtml/html/sanko_02.html에서 인용.

먼저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서 일본에서 각종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연령구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표 1>은 일본의 청소년 구분 연령을 정리한 것이다. 대개 일본의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은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18세 미만으로 최대 20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초등학교를 입학한 이후부터 20미만까지로 정의하였다.

4) 연구내용– 일본 국내외 청소년정책

(1) 일본정부 국내외 청소년정책

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일본이 청소년 정책은 다수의 관계성청이 교육, 복지, 보호 등 각 분야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사회정세의 변화에 의해 청소년 육성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연락회의 개최 등을 통해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일본 관계성청에 의한 청소년정책이 너무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각 분야 간의 조정력이나 정책 등의 종합적 추진력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정책의 종합적 추진방안의 대안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00년 1월부터 중앙성청 개혁에 의해 시스템의 변경을 도모하고 새로운 추진방안을 검토해왔다. 중앙성청의 개혁에 의해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내각부가 설치되었다.[68]

67) 內閣部. 청소년연령구분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0honpenhtml/html/sanko_02.html에서 2015년 7월 2일 인출.

68) 內閣部.. http://www.kantei.go.jp/jp/cyuo-syocho/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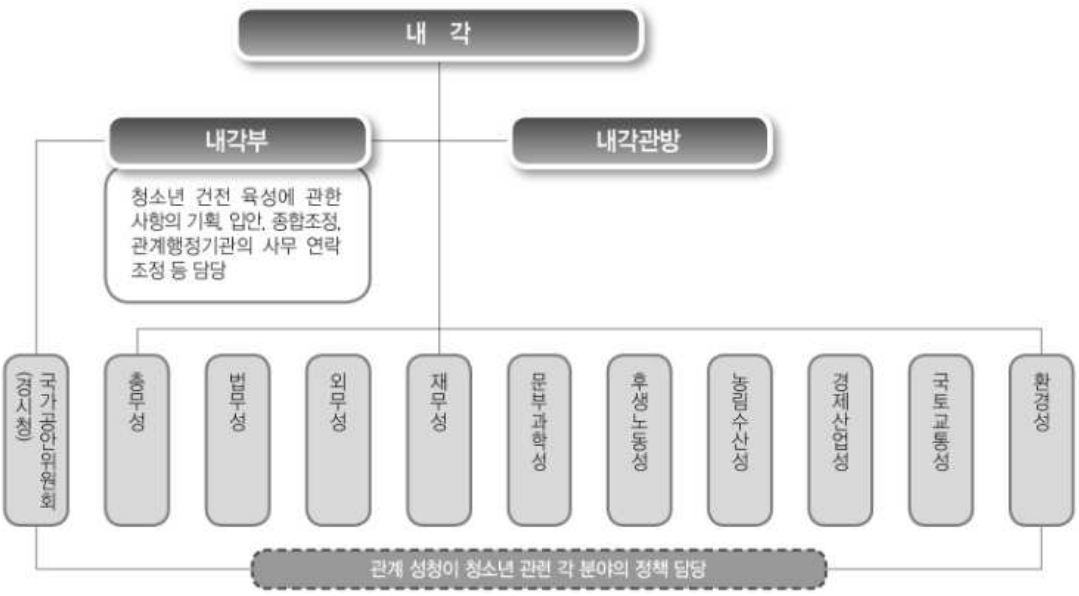

* 출처: 內閣部. 청소년행정의 종합적 추진 웹 페이지(http://www8.cao.go.jp/youth/suisin/houkoku/c_1.htm)에서 에서 인용.

【그림 Ⅱ-9】 일본 중앙성청 청소년 정책 분담

[그림 Ⅱ-9]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새로 편성된 관계성청이 청소년에 관한 각 분야의 정책을 분담하고 내각부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개혁에 의해 지금까지 '청소년육성(대책) 추진요강', '청소년대책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청소년정책 전반에 걸쳐 담당해온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기관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착실히 수행하도록 청소년육성의 기본이념 및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 하에 각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소년행정의 종합적 추진 및 일본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제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69]

69) 內閣部. '청소년 행정의 종합적 추진' 웹 페이지에서 http://www8.cao.go.jp/youth/suisin/houkoku/c_1.htm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② 청소년정책 기본정책

일본정부는 청소년정책을 책정하기에 앞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형태의 책정 및 개정의 방법, 일본정부의 정책과 지방공공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방법, 새로운 정책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후관리와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또한 청소년정책에 포함될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명확한 내용제시 및 폭넓은 연령층을 포괄하는 '청소년' 정책으로 필요하면 발달단계에 따른 특정 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청소년육성의 기본이념, 청소년육성 목표, 청소년 행정의 기본방침 등 청소년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계성청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지방공공단체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청소년정책이 구체화된 이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0]

③ 청소년정책 주요 내용

일본 내각부 청소년육성의 기본이념은 청소년 자신의 육성방법 및 사회적 위치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심신을 튼튼하게 육성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사회와의 관계를 자각하여 타자와의 이해 및 협조에 노력하여 자주적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자기를 향상시켜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이 담당하는 역할의 관점에서는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어른, 정책, 기타 각종 단체 등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역할 및 책임을 자각하고 상호 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는데 있다. 내각부 청소년육성의 목표는 국민, 정책, 기타 사회구성원은 청소년육성의 기본이념에 의해 이하의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 혹은 계획적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 정비,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제도 정비 및 적절한 운용, 어른을 포함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업 등에서 의식개혁 또는 의식형성을 위해 노력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각부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은 청소년 육성의 기본이념에 의해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 특성을 배려하면서 국민, 관계단체 등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면서 각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두고 있다.[71]

---

70) 內閣部. 청소년 정책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5902012.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일본 관계성청에 의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청소년정책은 향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며 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 청소년 비행 등으로부터 지키는 환경만들기,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사회로의 전환 등이다. 청소년정책 실시의 확보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실시상황의 파악(사후관리), 새로운 정책평가 수법활용 등에 의해 계획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 청소년 백서에 의해 청소년정책 실시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관계성청에서 국내외 정보수집을 통한 자료공개, 지방공공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계획의 책정 및 적극적인 실시 노력 등이다.[72]

(2) 일본정부 해외일계인 청소년정책

① 일본인 해외이주

일본의 해외이주는 메이지시대가 시작된 1868년 하와이 이주로부터 시작되어 147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주자 수는 1945년 이전까지 78만 명, 1945년 이후에는 약 26만 명 정도로 총1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1993년 이후 일본해외이주심의회 의견서에는 이주자 및 그 자손인 일계인은 브라질에 약130만 명 및 미국에 약 100만 명을 필두로 미주대륙을 중심으로 약 26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3]

아래 [그림 II-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계인들을 살펴보면 북미지역, 중남미지역, 아시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남미지역의 일계인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멕시코 17,000명, 쿠바 800명, 도미니키공화국 800명, 베네수엘라 800명, 콜롬비아 900명, 에콰도르 300명, 벨기에 80,000명, 브라질 1,5000,000명, 페루 80,000명, 볼리비아 6,700명, 파라과이 7,700명, 칠레 1,600명, 우루과이 500명, 아르헨티나 32,800명 정도이다. 북미지역으로는 캐나다에 98,8900명, 하와이에 240,000명, 미국본토에 1,300,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지역에는 일본에 약 300,000명, 오스트레일리아에 36,000명, 필리핀에 33,000명, 인도네시아에 4,5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74]

71) 内閣部.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5902012.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72) 文部科学省. 청소년 정책 웹 페이지에서 http://www.mext.go.jp/a_menu/sports/ikusei/main4_a7.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73) 日本海外移住協会. 일본해외이주 심의회 의견서 http://www.janm.org/projects/inrp/japanese/overview_ja.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74) 公益財団法人海外日系人協会. 日系人居住地域 http://www.jadesas.or.jp/aboutnikkei/index.html에서 201년 7월 2일자 원본지도를 수정하여 필자 작성.

해외일계인의 거주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북미지역에는 미국, 하와이와 캐나다, 중남미지역에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일계인의 모국인 일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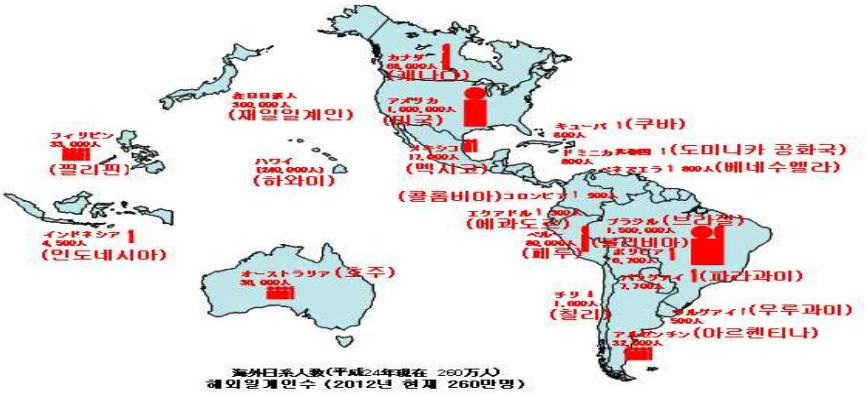

* 출처: 公益財団法人海外日系人協会(http://www.jadesas.or.jp/aboutnikkei/index.html)에서 원본지도를 수정.

【그림 Ⅱ-10】 2012년 현재 해외일계인수

표 Ⅱ-26 해외일계인의 거주자 현황(2013년 기준)

지역	국가	해외거주자 수
북미지역	캐나다	98,900
	미국	1,300,000
	하와이	240,000
중남미지역	브라질	1,500,000
	페루	80,000
	아르헨티나	32,000
	멕시코	17,000
	쿠바	800
	도미니카공화국	800
	베네수엘라	800
	콜롬비아	900
	에콰도르	300
	볼리비아	6,700
	파라과이	7,700
	우루과이	500
	칠레	1,600
아시아지역	일본(일계인)	181,317
	오스트레일리아	36,000
	필리핀	33,000
	인도네시아	4,500
합계		약 260만 명

* 출처: 公益財団法人海外日系人協会(http://www.jadesas.or.jp/aboutnikkei/index.html)에서 인용.

일본출입국관리국에 의하면 2013년도 말 일본 체류외국인 이주자는 206만 6,4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정도 증가하여 일본 총인구 1억 2,729만 명 중 1.62%를 차지하였다. 체류외국인 이주자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3.6%감소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 14.5%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167만 6,343명으로 81.1%, 남미지역이 24만 3,246명으로 11.8%을 차지하여 이주자 전체 92.9%가 아시아 및 남미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주자(영주자 및 특별영주자)가 82만 9,5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학생'과 '기능실습생'이었다. 또한 남미지역출신자들의 경우 전체 체류자들 중에서 영주자가 15만 3,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주자들이 차지하였다. 특히 일본 체류외국인들은 남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이 6.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남미지역은 일본에서 체류외국인의 감소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3.9%(9,997)정도 감소하였다. 국적별 이주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이 64만 9,078명으로 전체에서 31.4%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한국·조선이 51만 9,740명으로 25.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필리핀이 20만 9,183명으로 10.1%, 브라질이 18만 1,317명으로 8.8% 순이었다. 일본 내 이주자의 지역별 분포는 동경도가 40만 7,0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사카 부, 아이치 현, 가나가와 현, 사이다마 현 순으로 지리적 집중을 보였다.[75]

본 연구에서는 일계인을 일계인과 재외방인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일계인(日系人)'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 이주한 후 거주하는 해당국가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 재외방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인으로 장단기 체류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76] 이들 일계인들은 각각의 거주국에서 정치, 경제, 행정, 학술,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거주국과 일본과의 상호이해 증진, 유호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일계인 사회는 세월이 경과되면서 세대교체에 의해 일계인 2~4세가 중심이 되어 현지사회로의 동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일본국적을 유지하지 않고 일본어를 모르는 일계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로 선진국에서는 각종 분야의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른바 신일계인1세나 학계 등에서 활약하는 재능이 풍부한 새로운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75) 日本法務省. 出入国管理局統計 http://www.immi-moj.go.jp/toukei/index.html에서 7월 2일 인출.

76) '일계인(日系人)'의 정의는 일본이외의 해외지역에 이주한 후 거주하는 해당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을 일컫는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인 장단기 체류자를 총칭하여 '재외방인'이라고 칭함.

추세이다. 또한 일계인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1993년 일본해외이주심의회의 의견서에서는 일본거주 일계인의 수가 15만 명이상으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그 후 일계인의 취업활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왔다.[77]

일본 해외이주심의회는 1955년에 설립된 이후 1960년 일본총리의 답변에서 해외이주의 이념으로서 처음 국제협력을 등장시켰다. "이주는 단지 노동력의 이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발능력의 현지이동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국의 개발능력과 세계 복지에 대한 공헌으로 일본 및 일본인의 국제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라는 새로운 이주이념을 주장하였다. 1985년 총리의 해외이주심의회 답변에서는 "일본의 종래 일계인에 대하여 주로 1945년 이후 중남미이주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주사업의 연장으로서 대책을 강구해왔다. 1945년 이전의 이주자 및 그 자손을 포함한 일계인이 거주국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일본문화의 소개 및 대일이해의 매개체가 되어 2국간의 상호이해의 강화, 긴밀한 우호관계의 유지 및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들 일계인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해외이주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일계인과의 협력을 제기했다.[78]

1993년 일본해외이주심의회 의견서에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이주자 송출관련 업무의 단계적 정리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이주자 및 일계인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지적하여 향후 대책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이주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주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주자 지원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일계인 3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할 것. 둘째, 일계인을 지원하여 거주국에서 일본의 이해자로서 육성해나가는 것이 일본과 거주국과의 양호한 2국간 관계의 촉진에 적합할 것. 셋째, 일계인의 지위와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거주국의 발전에도 연결될 것. 넷째, 총체적으로 일계인의 존재는 일본과 거주국과의 외교 기반의 강화확충에 공헌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79]

일본 해외이주심의회는 21세기를 이하여 과거 이주자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77) 일본 해외이주 심의회 의견서(1993) http://www.hosei.ac.jp/toukei/shuppan/g_shoho20_nishikawa.pdf#search0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78) 일본 해외이주 심의회 의견서(1993) http://www.hosei.ac.jp/toukei/shuppan/g_shoho20_nishikawa.pdf#search0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79) 일본 해외이주 심의회 의견서(1993) http://www.hosei.ac.jp/toukei/shuppan/g_shoho20_nishikawa.pdf#search0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세계의 일계인 사회와 일본과의 관계,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일본의 대외정책상 적극적인 위치를 결정하고 기본적인 이념을 확립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해외일계인대회에 출석한 세계 각지의 일계인 대표를 비롯하여 각 방면의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여 논의와 검토를 거듭해 왔다. 그리고 '해외일계인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향후 대책'은 1993년 의견서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이념과 대책을 더욱 발전시켜 일본정부의 향후 정책적 방향을 결정짓는 대안으로 삼고 있다.[80]

② 일본정부 해외일계인 정책적 추진 방향

일본의 기본외교정책에 관한 1994년 시행된 외무성의 새로운 설치법은 "평화롭게 안전한 국제사회의 유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체적 혹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양호한 국제환경을 도모하고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일본 및 일본인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 기술협력, 인적교류, 인재육성, 홍보 문화활동 등에 의해 외국과의 상호이해, 우호친선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일본과 일본인의 이익증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81]

해외일계인은 일본어 능력, 일본국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국과 일본 양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일본과 거주국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각지의 일계인 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축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계인의 거주국에서의 활약은 일본으로서는 유형무형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계인 사회로서 거주국사회로의 동화와 공헌은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 일계인사회가 현지 동화 및 거주국에 대한 공헌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계인들 중에는 일본과의 연결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생각도 존재한다. 더욱이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배우거나 일본에서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다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요망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요망에 대응하는 것은 일계인 사회의 거주국에 대한 공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본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신일세대로 부르는 일계인을 비롯하여 해외의 각 방면에서 기능, 재능을 발휘하여 활약하는 일본인의 존재도 새로운 형태의 '가교'라고 할

80) 일본 해외이주 심의회 의견서(1993) http://www.hosei.ac.jp/toukei/shuppan/g_shoho20_nishikawa.pdf#search0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81) 外務省設置法(1994) http://law.e-gov.go.jp/htmldata/H11/H11HO094.html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수 있다. 해외체류경험자의 일본에 대한 조언, 기대의 목소리는 유익한 것으로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계인의 요망과 기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외일계인의 필요에 따라 협력, 지원을 수행하는 것은 일계인 사회의 지위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거주국 시민들의 대일이해와 일본이미지 향상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에 입각하여 일계인 및 일계인 사회와의 협력은 일본의 외교정책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필요한 각 방면에서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82)]

일본이 해외일계인 사회와의 계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거주국에서 일계인 사회의 형성 경위 및 특색 등의 상이점을 고려한 세세한 대응이 중요하며 세대와 지역에 따라 일계인들의 의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본과 해외일계인 사회의 관계는 필요에 따라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원에서 협력으로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일계인과 일본과의 연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어교육 등 문화교류 방면에서도 일계인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83)]

1990년 일본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계인의 일본취업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한 문제도 다양화되고 있다. 경제, 사회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회전체가 외국인과의 격리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체류 일계인의 존재는 일본사회의 글로벌화의 선험적인 사례로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0세기 해외이주사업에서 일본정부의 일계인 사회와의 협력을 논할 때 1945년 일본의 패전 시 해외일계인 사회로부터 받은 라라물자에 의한 일본지원, 한신아와지 지진 시 해외일계인의 일본사회 지원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4)]

일본정부는 정부지원에 의해 다수의 이주자를 송출시킨 국가로서 일계인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주자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문제, 자조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원실태도 중요하다. 또한 일본인의 해외이주역사, 일계인사회의 현상에 대하여 일본인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개발을 위한 노력도 일본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

82) 外務省設置法(1994)http://law.e-gov.go.jp/htmldata/H11/H11HO094.html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83) 外務省設置法(1994)http://law.e-gov.go.jp/htmldata/H11/H11HO094.html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84) 石田智恵(2009). 1990年入管法改正を経た＜日系人＞カテゴリーの動態ー名づけと名乗りの交錯を通してー. Core Ethics. Vol.5, pp.1-10

(3) 일본정부 국내 청소년 수용정책 및 송출정책

① 해외우수인재 수용정책

일본정부의 청소년 유입정책의 개시는 '유학생 10만 명 계획(1984년 8월)'의 실시로 취학생(주로 일본어학교)에 대한 입국절차의 간소화(1984년 10월)와 '개정출입국 관리법'이 시행 (1990년 6월 제1차 개정) 되어 전문직 외국인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미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85]

한편 'IT혁명'과 더불어 '출입국관리기본계획(제2차)(2000년)'에서 제시된 방침, 유학 및 취학생 중심에서 "국제비즈니즈에 종사하는 자의 국제이동의 원활화와 전문기술직 분야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추진여부에 대한 국내외 기운의 고조가 인정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 유입조건 및 환경을 확보하면서 유입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라는 단기체류 전문직의 체류기한의 확대 방침을 결정하였다. 일본정부의 개정출입국관리법의 시행으로 이전까지 외국인전문직에 한하여 문호를 개방하여왔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전문기술자 또는 이공계 대학, 대학원생이 일본유학을 거친 후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형태가 아니라 유입과 동시에 일본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86]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인재 확보가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졌고 일본정부는 그에 따른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민정책의 실용적 측면에서 일본정부의 외국인전문직의 유입 확대방침과 실무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85) 東京情報大学情報サービスセンター. 改訂出入国管理法. 웹 페이지 http://www.iic.tuis.ac.jp/edoc /journal/ron/r13-2-4/r13-2-4b.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86) 法務省, 出入国管理基本計画. 웹 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 /kouhou/press_000300-2_000300-2-2.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② 해외우수인재 양성정책

표 Ⅱ-27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을 위한 부성청(府省庁)의 대응 방안

주요 목표	구체적인 내용
유학내용의 명확화와 질적 향상, 취업 영향 고려	관민 협력의 '글로벌 인재육성 커뮤니티 창설'(문부과학성) 다양한 체험활동(외국과의 청소년 교류사업, 해외유학과 해외기업에서 인턴십 기회 제공, 해외보란티어활동 등)의 충실과 대학 커리큘럼과의 연계(내각부, 외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기업 활동 등 이해촉진 기회의 충실(외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취업 및 채용활동 개시기의 변경에 관한 통지 및 홍보 철저(내각관방,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유학 후 취업지원 충실(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유학경비 경제적 부담 완화	관민 협력의 '글로벌 인재육성 커뮤니티 창설'(문부과학성) 급부형 장학금의 충실(문부과학성) 공익법인 및 지방공공단체, 외국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활용촉진을 위한 일원적인 정보제공(문부과학성)
학교 체제 정비	해외유학 촉진을 위한 대학 환경정비 등(문부과학성) 슈퍼 글로벌 대학의 창성(문부과학성) 슈퍼 글로벌 고등학교 지정(문부과학성) 대학교육 글로벌 전개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국제교육 연계 지원의 전략적 추진(문부과학성) 조인트 디그리(Joint Degree) 제도 도입(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논의를 거쳐 대학 등에 적극 요청
안전관리	보험가입을 포함한 대학 등에 위기관리체제의 정비와 학생 보험가입 촉진(문부과학성) 외무성 및 재외공관에 의한 안전정보의 제공과 필요한 지원(외무성)
어학력 향상	영어교육개혁의 충실한 실시(초등3학년부터 영어 수업 실시)(문부과학성) (JET)활용촉진에 의한 조기 외국어교육 추진(외무성, 문부과학성) 영어 교원 미국파견에 의해 미국교육사정에도 정통한 영어교원 육성(외무성, 문부과학성) 해외유학 촉진을 위한 대학 환경정비 등(문부과학성)
유학분위기 조성	유학 캠페인 실시(문부과학성) 해외유학 촉진을 위한 대학 환경 정비(문부과학성) 학생 강연, 학생단체 등에 요청을 통한 학생 의식개혁(외무성, 문부과학성, 대학 등) 조기 이문화체험 및 청소년 교류/지적교류 촉진(내각부, 외무성, 문부과학성) 고등학생 해외유학촉진(문부과학성) 국제바칼로레아 추진(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 활용(문부과학성)

주요 목표	구체적인 내용
유학국가에 따른 대응	관민 협력의 '글로벌 인재육성 커뮤니티 창설' (문부과학성) 급부형 장학금의 충실(문부과학성) 대학교육 글로벌 전개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국제교육 연계 지원의 전략적 추진(문부과학성) 2국간 다국간 대응을 통한 미국, 영국 등에 정부레벨의 요청(외무성, 문부과학성) 공익법인 및 지방공공단체, 외국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활용촉진을 위한 일원적인 정보제공(문부과학성) NAFSA 등의 국제회의를 활용한 대학교원 교류의 촉진 수용(문부과학성) 미국 등에 유학에 대한 관심 향상 촉진(문부과학성 등) 유학 페어 실시(문부과학성) 청소년 교류사업, 해외봉사활동 등에 참가촉진(내각부, 외무성) 해외기업 등에 인턴십 기회 충실(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출처: 內閣部.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시도(http://www.cas.go.jp/jp/seisaku /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인용

일본정부는 2014년 4월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계획'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대처라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정부는 현재 유학중인 대학생 6만 명에서 12만 명, 고등학생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020년까지 재외방인의 해외유학생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적은 일본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 각 부성청의 강점을 살려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과제에 대하여 상호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일본 관계 부성청이 협력하여 해외유학을 촉진시키며 동시에 대학가와 산업계에도 인재양성에 대한 의식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87] 일본 청소년의 해외유학 촉진실행에 관한 관계성청의 구체적인 해외유학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일본정부 부성청(府省廳) 해외유학촉진 방안

① 내각부 청년국제교류사업

일본 내각부의 청년국제교류사업의 취지는 일본의 청년 차세대 중핵을 담당하는 '청년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가 각국의 청년대표와의 토론과

87) 文部省. 청소년해외유학촉진실행계획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홈스테이, 문화교류 등에 의한 친밀한 연수 및 교류에 의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일본청년과 외국청년이 상호이해와 우호를 다지고 생애를 걸친 연대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 황실과 관련된 사업으로 실시되어 우호의 상징으로 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88] 내각부 교류사업의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2국간 교류는 국제청년육성교류, 일본 및 중국청년 친선교류, 일본 및 한국청년 친선교류 등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교유사업이다. 다국간 교류사업은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사업 등으로 향후 일본 공생사회를 담당하는 청년육성사업으로는 청년사회활동 핵심리더 육성 프로그램이 있다. 교류사업의 사후관리 활동으로서는 사업 참가 후 참가한 청소년은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전국 도도부현에 지부설치)를 설립하여 지역 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은 세계 57개국에 사후활동 조직이 설립되어 이들 사업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규모 재해시의 지원, 개발도상국 교육지원, 국제교류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89]

② 외무성 해외유학 촉진정책

일본외무성은 청소년 유학진흥을 위해 유학전후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먼저 일본청소년 유학 전의 지원사업으로는 해외유학의 매력발신, 이문화체험기회 제공,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외무성은 직원을 고등학교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나 ODA정책 등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기도 한다. 일본외무성의 주요사업이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협력 사업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세이콘테스트, 글로벌 교육쿵쿠르, 대학생 필드 스터디 프로그램 등을 외무성 산하기관인 일본국제기구(JICA)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직원, 보란티어나 전문가 경험자, 연수원 등이 학교 등의 교육현장에서 국제협력이나 개발도상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전달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90]

일본외무성의 국제교류사업은 'JENESYS2.0'(아시아교류) 및 '가케하시 프로젝트 ~The Bridge for Tomorrow~'(북미지역 미국 캐나다와의 청소년 교류), 일본과 러시아 청소년 교류사업,

88) 內閣部. 청년국제교류사업 웹 페이지에서 http://www8.cao.go.jp/youth/kouryu/data/core.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89) 內閣部. 청년국제교류사업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kouryu/data/core.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90) 文部省. 청소년해외유학촉진실행계획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일본청소년 국제연합방문단 파견, 일본과 미국 문화교류회의(칼콘), 청소년 영어교원 미국파견 교류사업 등이 있다. 일본외무성 청소년에 대한 유학 중의 지원은 재외방인 유학생 인턴십 경험, 재외공관광보 문화교류센터 인턴십 경험 제도를 통해 유학 중 현지 일본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외무성 청소년에 대한 외무성의 유학 후 지원으로는 국제기관 취업 가이던스 안내, 국제기관 대상 인재 발굴 및 육성연수, 국제기관직원파견 신탁기금 활용, 고도개발 인재육성사업, 평화구축인재육성사업 등 유학 후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91]

③ 문부성 해외유학 지원정책

문부성은 미래로 비약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국제화와 학생 쌍방향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글로벌 전개력 강화를 위해 대학시스템의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학의 활발한 유학생 교류를 위해 대학 등의 해외유학지원제도 창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인재수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부성의 슈퍼 글로벌 대학사업은 일본의 고등교육 국제경쟁력의 향상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톱 레벨 대학과의 교류 및 연계를 실현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인사 및 교무시스템의 개혁, 학생의 글로벌 대응력 육성을 위한 체제강화 등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으로는 슈퍼 글로벌 대학 창성지원,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등이 있다.[92]

문부성은 일본 대학의 글로벌 전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간 및 지역 간의 질적으로 보장된 일본 학생의 해외유학과 외국인 학생의 수용을 촉진하는 국제교육연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인도 등과의 대학 간 교류형성 지원, 캠퍼스 아시아 중핵거점 형성 지원, 미국대학과의 협동교육 창성지원, 아세안 국가와의 대학 간 교류형성 지원, 해외대학과 전략적 고등교육연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부성의 글로벌 인재육성 공동체 형성사업은 일본(학생지원기구), 민간, 대학이 일체가 되어 일본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학생지

91) 文部省. 청소년해외유학촉진실행계획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92) 文部省. 글로벌 인재 리더 육성 웹 페이지 http://www.bbt757.com/bond /biz?utm_source=yahoo&utm_medium=pc_kwd&ui_source=yahoo&ui_medium=kwd&wapr=564054ed,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원기구), 연계기업,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인재를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 성장이 보이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한 문부성은 SNS에 의한 유학사업 참가학생들의 공동체를 창설하여 일본(학생지원기구), 연계기업, 대학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93]

일본문부성의 청소년 유학촉진 사업은 '토비타테(トビタテ) 유학 JAPAN' 캠페인으로는 일본 청소년 모두가 해외유학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기운을 양성하여 2020년까지 대학생 12만 명(현재 6만 명), 고교생 6만 명(현재 3만 명)의 해외유학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94]

그밖에 일본사회의 총체적인 고등학생 유학촉진사업으로는 고교생의 유학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공공단체나 고교생의 유학 및 교류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시키고 개인 유학자(장기유학자)의 유학경험을 듣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형성 사업으로는 글로벌 유학경험자의 체험 강연 파견하여 이문화 이해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학 페어 등을 개최하고 있다. 고등학교 대상의 '슈퍼글로벌 하이스쿨' 사업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직시하고 사회과제에 대한 관심과 교양함양,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국제적 소양을 기르고 장래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창 국제화를 진행하는 일본 내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제기관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글로벌 사회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고등학교 등을 '슈퍼 글로벌 하이스쿨'로 지정하여 질적으로 높은 커리큘럼개발 및 실천을 위한 체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강화사업으로 영어교육 강화지역 거점 사업, 외국어 활동 및 외국어 교육 교재정비, 외국어시험단체와 연계한 영어력 조사사업,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영어지도력 향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95]

청소년의 해외유학과 해외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바칼로레아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바칼로레아는 국제바칼로레아기구(IBO: 본부 제네바)가 실시하는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의 유용한 수단이다. 16세~1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플로마

93) 文部科学省. 슈퍼글로벌 대학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 /chukyo4/012/siryo/__icsFiles/afieldfile/2014/05/15/1347725_2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94) 文部科学省. 토비타테 유학 저팬 웹 페이지http://www.mext.go.jp/a_menu/kokusai/tobitate/,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95) 文部科学省. 고등학생유학촉진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koukousei/1323960.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프로그램(DP)은 소정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입학자격(IB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세계 주요 대학에서 대학입학 선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96] 청소년 교육시설을 활용한 국제교류사업으로는 일본청소년과 해외청소년과의 체험활동 및 교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외청소년의 일본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청소년과의 국제교류경험을 통하여 일본 청소년의 국제적 시야 확대 및 동아시아 중핵을 담당하는 차세대 리더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97]

④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해외유학 지원정책

일본후생성은 신졸업자 및 구졸업자의 취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후생성은 핼로우워크 및 신졸업자 응원 핼로우워크가 학교와 연계하여 '잡 서포터'에 의한 자세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부성은 경제산업성과의 연계에 통해 '졸업 전 취업의 집중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졸업자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인 취직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청소년 서포터스테이션'과의 연계로 청소년 니트 등에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전국 도도부현에 설치된 '신졸업자 응원 핼로우워크'에 대한 취업 지원을 통해 3년 이내 구졸업자를 신졸업자로 취급하도록 청소년 고용기회확보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신졸업자와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98]

경제산업성의 취업지원 정책은 일본경제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기업과 인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청소년 해외송출을 촉진하여 해외경험을 가진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청소년들이 해외경험을 충실히 하고 경험의 성과를 제고하여 일본사회에서 활약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해외유학촉진과 병행하여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효과가 높은 해외인턴십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구체적인 사업은 해외인턴십 파견사업 및 교육효과가 높은 해외인턴십 보급, 국제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인턴십 사업의 실시 등이 있다.[99]

일본관광청의 유학촉진 정책은 '일본인'을 기반으로 한 방일 프로모션 노력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해외 6개국 8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11명의 심사위원에 의한 검토회에서 정리된 외국인

96) 文部科学省. 슈퍼글로벌 하이스쿨 사업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kyoiku_kenkyu/index.htm?utm_medium=twitter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97) 文部科学省.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ports/ikusei/kouryujigyou/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98) 厚生省海外留学支援政策,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99) 経済産業省就業支援政策' http://www.hkd.meti.go.jp/information/sangyo_jinzai/support.htm/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방일관광의 3대 가치인 일본인의 기질(Character), 일본인의 작품(Creation), 일본인의 생활(Common Life)'을 포함한 방일프로모션을 영상, 웹사이트, 가이드북에 제공하여 '일본인'을 중심으로 쇄신하고 있다. 또한 관광청은 신설된 웹사이트에 총 181개 일본인관련 동영상을 탑재하여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여행자들에게 다른 국가에는 볼 수 없는 '일본만의 매력'을 발산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관광청은 해외 일본유학생들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발신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서 방일촉진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100]

5)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 청소년정책

(1) 일본정부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

일본 문부성에 의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정책의 실시는 1989년 이후로 추측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문부성은'외국인자녀교육연구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아동의 수용과 지도에 대한 모델사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 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일계인자녀가 급증하자 적용대상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과는 1991년 '한일각서'에서 '과외에서의 모어 및 모문화교육의 공인', '취학안내 발급', '교육공무원 임용 시 국적조항의 철폐' 등을 인정하여 외국인 자녀의 교육에 적용되었다. 일본 문부성의 외국인 자녀 교육정책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28 문부과학성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 추이

연도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
1986년	'귀국자녀교육 안내'(귀환자녀관계) 작성 '중국귀국 고아자녀교육지도협력자파견'사업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최종답신(신국제학교의 설치제안, 일본어교육 충실 등)
1989년	일본어 교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중국귀국 아동대상)작성 '외국인자녀교육연구협력학교'지정
1991년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 조사'개시 '한일각서'(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대우)(①과외에서 모어/모문화교육 공인, ②취학안내 발급, ③교육공무원 임용 시 국적조항 철폐)
1992년	일본 총무청 권고(①취학의 원활화, ②수용체제 정비/교원연수/일본어지도교재정비, ③취학 전 정보제공) '일본어 지도 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응한 교원 배치'사업'일본어를 배우자'(초기 일본어지도교재)작성 배포

100) 日本観光省留学促進政策,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gaiyou.pdf#search/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연도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
1993년	'일본어를 배우자 2'(초등4학년까지 산수/이과/사회 학습에 필요한 일본어 교재)작성 배포 '외국인 자요 등 일본어 지도강습회', '외국인자녀교육담당지도주사 연구협의회'개최
1994년	'일본어를 배우자 3'(초등5-6학년까지의 산수/이과/사회 학습에 필요한 일본어 교재) '외국인자녀 등 지도협력자 파견(모어대응)'사업
1995년	'환영합니다. 일본학교에'(지도 자료집)작성 배포
1996년	'일본어지도 커리큘럼 가이드라인'작성
1997년	'외국인자녀교육자료/교재총람'작성
1998년	'외국인자녀교육유입추진지역'지정
1999년	'외국인자녀교육 등 상담원 파견'사업
2000년	대학입학자격검정(대검)의 개정(외국인학교 등 졸업생에 수험자격 인정) 멀티미디어판 '일본어를 배우자'개발/배포
2001년	초중등학국 국제교육과에서 외국인아동 교육 소관 '귀국/외국인 아동 교육연구협의회'개최 '귀국/외국인 아동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의 국제화추진'사업(2005년까지)
2003년	총무성 행정평가/감사결과에 따른 통지(①외국어에 의한 취학 가이드 북 정비, ②외국어에 의한 취학원조제도 안내 철저, ③통학 구역외 혹은 통학 가능한 일본어 지도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학교로의 통학 인정)'JSL커리큘럼' 초등학교 편 개발
2005년	'미취학외국인아동지원'사업(2006년까지) '외국인아동위한 취학 가이드북'작성 배포
2006년	'귀국/외국인아동 교육지원체제모델'사업 문부성 초중학교 국장의 도도부현교육위원회, 지사 등에 통지'외국인아동교육 충실'
2007년	'귀국/외국인 아동유입촉진'사업(①모어를 이해하는 지도협력자 배치, ②역내 초중학교에 대한 순회지도, ③이중언어 상담원 등 활용에 의한 취학계발 활동) 'JSL커리큘럼'중학교편 개발 'JSL커리큘럼 실천지원' 사업
2008년	'외국인아동교육추진검토회'보고

*출처: 佐藤郡衛(2009).日本における外国人教育政策の現状と課題ー学校教育を中心にしてー. 移民政策研究 .創刊号 pp.43-45.

이상과 같은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정부는 197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는 일계인 자녀의 교육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이후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의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출신 국가별 민족별 특별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재일외국인의 연장선상에서 일계인 자녀의 교육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외국인 청소년 교육행정의 기본자세는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외국인 청소년의

교육도 일본어를 할 수 없는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이 문제가 부상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청소년의 교육정책은 큰 변화보다는 지금까지 일본의 교육정책 틀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어 왔다. 즉 외국인 청소년의 교육정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상했다기보다는 기존 해외체류자의 자녀 교육, 중국 귀환자 자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외국인청소년 교육정책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민족교육'는 오히려 후퇴하게 되었다. 셋째,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은 이중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80년대 재일코리안, 1990년대 일계브라질인의 자녀교육을 큰 과제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 뉴커머 자녀의 일본어 교육과 학교적응이 일본정부 교육정책의 중심과제였던 것이다. 넷째, 일본정부의 외국인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격차가 크게 발생했는데 특히 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청소년의'수용체제', '고등학교입시 특별전형', '취학안내' 등에서 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수용체제 측면에서 일본어 지도를 수행하는 특별교원을 배치하거나 지도원과 보란티어를 배치하는 자치단체들도 나타났지만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존재했다. 다섯째, 일본의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은 국제법 측면에서 보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측면들이 존재한다. 즉 일본정부의 외국인 청소년 교육정책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모어 및 출신국 문화교육의 보장까지는 아직까지 요원하다.[101]

이상과 같이 과거 20년간 일본문부성의 외국인청소년 교육정책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일시체류자로 보고 일본학교나 교육을 기준으로 한 동화 교육정책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최근에는 외국인 자녀나 청소년을 일시체류자로서가 아니라 일본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일부 교육을 보장하려는 사회 통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02]

(2) 일본 국내 남미 일계브라질 학교 설립배경

1980년대 후반 일본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101) 東京学芸大学. 日本における外国人教育政策の現状と課題. 웹 페이지 http://iminseisaku.org/top/pdf/journal /001/001_042.pdf#searc,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02) 東京学芸大学. 日本における外国人教育政策の現状と課題. 웹 페이지 http://iminseisaku.org/top/pdf/journal /001/001_042.pdf#searc,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그 첫 번째의 작업으로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여 과거 이민으로 일본에서 남미로 건너간 일본인과 그 자손들을이 대거 일본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일본 군마 현 오이즈미마치, 시주오카 현 하마마쓰 시, 나고야 시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이나 지방 제조업에 종사하여 이들 산업을 지탱해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중심의 유입으로 교육적인 측면의 충분한 준비나 배려 등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은 일본어나 일본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교거부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모국의 교육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일본 각지에서 브라질 등 남미계 학교가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103] 그리고 일본에서 남미계 외국인학교는 1990년 이후 10년간 90개 이상의 학교가 출현하였다. 그 첫 번째 학교가 1991년 군마 현 오라군 오이즈미마치 니시코이즈미(群馬県邑楽郡大泉町西小泉)에 세워진 일백학원(日伯学園: 일본-브라질학원)으로 일계브라질인을 위해 일본어교실, 오이즈미 일본-브라질센터로서 개교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현재의 학교 장소로 이사했다. 2002년 브리질 정부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았으며 브라질 교육제도에 따라 1월부터 시작되는 4학기제로 1학년부터 8학년 학생, 그리고 2~6세까지의 아동 등 17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아침 7시부터 탁아보육, 일본학교에 다니는 일계브라질을 위한 포르투갈어교실 등이 개설되어 있다. 군마 현 오이즈미마치에는 브라질이나 페루출신 일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오이즈미마치 전체인구 4만 2,281명 중 16%에 해당되는 6,788 명(2006년 7월 기준)이 외국적 출신이다.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에 의해 일계인에 대한 체류자격이 완화되면서 이곳에 위치한 산요전기(三洋電機)나 후지중공업(富士重工業) 등이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브라질이나 페루 출신 일계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많은 이들이 유입되었다(編集部編, 2006 : 16-40).

일본의 학교법상 정규학교(일조교: 一条校)인 공립/사립학교에 대하여 국제학교나 조선학교 등은 '각종학교(各種学校)'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는 "학교는 초 · 중 · 고등학교, 중 · 고 일관제 교육, 대학교, 고등전문학교, 맹인학교, 농아학교, 간호학교 및 유치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임영언, 2015, 529-546). 또한 일본 학교교육법 제83조에서 "제1조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로 학교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각종학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계브라질학교는 법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각종학교나 사립학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仲尾宏, 2003: 77-78). 왜냐하면 브라질 학교나 페루학교는 '각종학교'의

103) 日本ブラジル中央教会. 在日日系ブラジル子女への教育支援 http://nipo-brasil.org/archives/2203/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인가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인가조차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백(일본-브라질)학원도 학교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각종학교의 허락을 받을 수 없었고 유한회사로서 운영되어 왔다. 학교가 유한회사의 사립학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없고 학생들부터 받은 수업료로 학교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에 일백학원은 2002년부터 브라질 교육성의 인가를 받아 브라질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브라질 학교는 브라질 귀국 시 언어적 어려움이 없도록 포르투갈어 교육이 중심이지만 일본어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 이유는 도일한 일계인들이 점차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정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정착하는 이들도 늘어났지만 브라질 귀국 후 다시 일본으로 도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든 바로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일본이 브라질 보다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井口泰, 2001: 15).

브라질과 일본의 교육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일본의 의무교육은 초중학교 15세까지 9년간이지만 브라질은 8학년 14세까지 8년간으로 1년간의 공백이 생긴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15세부터 입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계브라질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2006년부터 브라질 정부도 교육제도를 변경하여 의무교육은 5세부터 14세까지 9년간으로 정하였다.[104]

아이치 현을 중심으로 한 일계브라질인 학교도 20개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에스코라 상파울로는 아이치 현 안조 시(愛知県安城市)에 2000년 10월에 설립되어 2001년 현재 장소로 이전하였으며 아이치 현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학교로 브라질 정부의 인가를 승인받았다. 그리고 2006년 일본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신설되어 있다. 2005년 당시 아이치 현 거주 브라질 국적자는 71,004명으로 재일코리안 43,43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코라 상파울로 학교는 브라질 모국의 인가를 받아 브라질 교사 전원이 모국의 교원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로부터 재정적 원조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도 모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학원(私塾) 라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성금도 없고 운영비는 보호자의 수업료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 따라서 현재 목표는 각종학교 인가를 받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105]

---

104) 愛知県. 愛知県における外国人の状況 http://www.pref.aichi.jp/kokusai/sankou1ji.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05) 愛知県. 愛知県における外国人の状況 http://www.pref.aichi.jp/kokusai/sankou1ji.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일본 아이치 현 도요타 시에 처음으로 브라질 학교가 출현한 것은 1995년이다(岡本雅享監修編著, 2005: 18).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어를 가르치는 시설은 있었지만 '학교'시설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 말 14개교에 지나지 않았던 브라질 학교는 2006년 7월 90개교에 달하여 2008년 리먼쇼크까지 급증하였다.[106]

(3) 일본 국내 일계브라질 학교 설립유형 및 현황

일본 아이치 현 브라질학교의 설립유형은 대개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브라질 교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 경험을 살려 포르투갈어로 가르쳤던 계기로 학교를 경영하는 경우이다. 둘째, 일본인 경영자가 브라질 교사를 고용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셋째, 브라질 모국에서 학교경영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일본에서 자매교를 만드는 경우이다(今津孝次郎、松本一子編, 2002: 40). 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은 포르투갈어, 일본어, 산수와 이과, 지리 등으로 기타 컴퓨터나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학교는 아이치 현 6개교, 시즈오카 현 2개교 등 일본 각지에 18개교 정도이다. 이들 학교들은 대개 사립학원 형태로 운영되어 보호자의 부담이 컸지만 2004년 12월 시즈오카 현 하마마쓰 시에 있는 페루학교 '문도데 아레구리아'가 처음으로 각종학교로 인정받았다. 페루교육제도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5년 총 11년제로 페루정부 공인의 교과서 채택하여 졸업생에게는 페루 졸업자격이 부여된다. 교사는 페루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2002년부터 일본각지의 브라질 학교를 연결하는 '재일브라질인학교협회'가 설립되었다. 일본에 브라질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 모국 브라질교육성과 각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2008년 리먼쇼크이후 일계인의 브라질 귀환이 계속된 지금 일계인의 수적 감소와 더불어 학교 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107]

106) 立命館言語文化研究. 外国人学校·民族学校 : 社会正義を考える. 웹 페이지 http://www.ritsumei.ac.jp/acd/re /k-rsc/lcs /kiyou/19-4/RitsIILCS 19.4pp61-71HATANO.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07) Dulce Hogar. ペルーの教育制度 http://members.jcom.home.ne.jp/catalinahy/educacion.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표 Ⅱ-29 일본 내 브라질 학교(2006년 기준)

일본 현 (브라질 학교)	학교 개수	주요 자격 및 내용
군마 현	15개교	대학 수험 자격 및 브라질 모국 인가
도쓰기 현	1개교	대학 수험 자격 및 브라질 모국 인가
이바라키 현	5개교	브라질 인가
사이타마 현	6개교	자격 및 인가 없음. 사립학원(私塾) 유형
가나가와 현	1개교	사립학원(私塾) 유형
나가노 현	12개교	대학 수험 자격 및 브라질 모국 인가
야마나시 현	2개교	사립학원(私塾) 유형
기후 현	6개교	대학 수험 자격 및 브라질 모국 인가
시즈오카 현	23개교	대학 수험 자격 및 브라질 모국 인가
아이치 현	17개교	대학 수험 자격 및 브라질 모국 인가
미에 현	4개교	사립학원(私塾) 유형
시가 현	5개교	대학 수험 자격 및 브라질 모국 인가, 지정기부금
페루 등 남미계학교	3개교	각종학교, 사립학원(私塾) 유형
합계	100개교	

* 출처: 編集部編(2006). 日本の中の外国人学校. 明石書店. 月刊 イオ pp.231-235. 외국인 학교 리스트를 참고로 필자 재구성

위의 표는 1990년대 이후 도일하기 시작한 일본 내 브라질 학교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일본 내 브라질 학교는 총100개교 중에서 브라질 모국에서 인가를 내준 학교는 84개교였으며 사립학교유형은 16개교에 달했다. 따라서 브라질학교 대부분은 법적자격이나 인가가 없는 실정이고 사립학교유형의 각종학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대학수험자격을 보면 브라질 모국인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일계인들 대부분은 일본보다는 모국 브라질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다.

6)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정책 및 지원정책

(1) 해외거주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시설 현황

일본의 국제적인 활동의 진전과 더불어 많은 일본인들이 자녀들을 대동하여 해외로 나가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약 7만 7,000명 정도의 의무교육단계의 일본인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후 귀국하는 학생 수는 2013년도까지는 약 1만 1,000명 정도 된다.[108]

표 Ⅱ-30 해외에서일본 학생 수-일본 해외자녀교육 현황(2014년 4월 15일 기준)[109]

지역구분	지역별 취업형태별(의무교육단계)	학생 수	합계
총계	일본인학교 88개교	21,027	76,536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현지교 및 기타 8개교	18,983	
	보습수업교+현지교 등 203개교	36,526	
구주	일본인학교 21개교	2,621	14,234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현지교 및 기타 3개교	3,887	
	보습수업교+현지교 등 64개교	7,726	
중동	일본인학교 8개교	328	1,064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현지교 및 기타	96	
	보습수업교+현지교 등 5개교	640	
아프리카	일본인학교 3개교	110	677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현지교 및 기타	88	
	보습수업교+현지교 등 6개교	479	
아시아	일본인학교 35개교	16,733	32,236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현지교 및 기타 2개교	1,487	
	보습수업교+현지교 등 21개교	14,016	
북미	일본인학교 4개교	435	24,126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현지교 및 기타 3개교	12,890	
	보습수업교+현지교 등 87개교	10,801	
대양주	일본인학교 3개교	157	2,567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현지교 및 기타	433	
	보습수업교+현지교 등 12개교	1,977	
중남미	일본인학교 14개교	643	1,632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현지교 및 기타	102	
	보습수업교+현지교 등 8개교	887	

* 출처: 海外子女教育の概要(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1.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08) 海外子女教育の概要(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1.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09) 보습수업교는 일본정부 원조를 받고 있는 학교만 포함, 보습수업교+현지교 등은 보습수업교와 현지교 혹은 인터내셔널 스쿨 등에서 병행 취학하고 있는 경우, 현지교 및 기타는 체류당국학생을 위한 학교나 인터내셔널 스쿨만 취학하는 경우를 말함.

일본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일본국민에 적합한 교육을 받기 쉽게 하도록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은 헌법이 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및 의무교육무상의 정신에 따라 해외자녀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부과학성이 재외교육시설에 교원파견, 교재정비보조 및 귀국학생의 유입과 관련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무성에서는 재외교육시설의 건물임대료 및 현지채용 교원 사례금 원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110]

(2) 재외방인 교육시설 설립법 및 재학생 현황

재외방인 교육시설은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에 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외 설치된 교육시설을 말한다.[111] 재외방인 교육시설은 일본인 학교, 보습수업교, 사립재외방인 교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문부성 장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재외교육시설은 일본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일제 교육시설이다. 이들 학교는 문부성장관으로부터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와 동등 과정을 가진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해당시설의 중학부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자는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각각 획득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학습지도요령이 의해 교과서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많은 재외교육시설에서는 현지문화와 역사, 지리 등 현지사정과 관련된 학습이나 현지교등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어민 강사에 의한 영어회화 혹은 현지어의 학습도 진행하고 있다.[112]

일본인 학교는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일제 교육시설을 말한다. 일본인학교는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일본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와의 동등한 교육과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일본인학교 중학부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부졸업자는 국내 대학의

110) 海外子女教育の概要(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1.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11) 文部科学省. 학교교육법 웹 페이지에서 http://www.mext.go.jp/a_menu/shougai/senshuu/06033002.htm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112)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2/001.htm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입학자격을 각각 가지게 된다.[113]

표 Ⅱ-31 세계 각지 재외교육시설 재학생 수 추이

연도	학교	재학생 수	합계
1981년	초등학교	24,494	30,200
	중학교	5,706	
1986년	초등학교	30,082	39,393
	중학교	9,311	
1991년	초등학교	37,658	50,773
	중학교	13,115	
1996년	초등학교	37,580	49,740
	중학교	12,160	
2002년	초등학교	39,584	52,046
	중학교	12,467	
2003년	초등학교	40,019	52,462
	중학교	12,443	
2004년	초등학교	41,369	54,148
	중학교	12,779	
2005년	초등학교	42,138	55,566
	중학교	13,428	
2006년	초등학교	44,099	58,304
	중학교	14,205	
2007년	초등학교	44,480	59,109
	중학교	14,629	
2008년	초등학교	46,163	61,252
	중학교	15,089	
2009년	초등학교	46,042	61,488
	중학교	15,446	
2010년	초등학교	49,538	67,322
	중학교	17,784	
2011년	초등학교	47,950	64,950
	중학교	17,000	

113)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2/001.htm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연도	학교	재학생 수	합계
2012년	초등학교	49,436	66,960
	중학교	17,524	
2013년	초등학교	51,890	71,628
	중학교	19,738	
2014년	초등학교	55,390	76,536
	중학교	21,146	

* 출처: 일본외무성. 해외체류 방인 자녀수 조사 자료:(1991년까지는 5월 1일, 1991년 이후는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6/shiryou/04111901/004.htm)에서 인용..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교과서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일본인학교에서는 현지 문화와 역사, 지리 등 현지사정에 관련된 학습과 현지학교 등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원어민 강사에 의한 영어회화 혹은 현지어의 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교'을 설립하여 외국인 자녀를 수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114]

일반적으로 해외체류 방인이 조직한 단체가 주최가 되어 설립되어 운영은 일본인회나 진출기업의 대표자, 보호자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56년 태국 방콕에 설립된 이래 2014년 4월 15일까지 50개국 지역에 88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학생 수 약 2만 1,000명이 배우고 있다. 또한 국내 학교법인 등이 모체가 되어 설립된 학교 있다. 2014년 4월 현재 세계 8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초중 고등학교 합쳐 총 1,2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115]

보습수업교는 현지학교나 국제학교(인터내셔널) 등에 통학하고 있는 일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토요일이나 방과 후 등을 이용하여 국내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의 일부교과에 대하여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시설이다.

114) ウイキペディア. 国際学校 https://ja.wikipedia.org/wiki/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15) 泰日協会学校. バンコク日本人学校 http://www.tjas.ac.th/bkk/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표 Ⅱ-32 지역별 재적자 수의 비율(의무교육단계)

구분	지역	재적자(비율%)	합계
일본인학교	아시아	16,733(79.6)	21,027
	구주	2,621(12.5)	
	중남미	643(3.1)	
	북미	435(2.1)	
	중동	328(1.6)	
	대양주	157(0.7)	
	아프리카	110(0.5)	
보습수업교	북미	12,890(67.9)	18,983
	구주	3,887(20.5)	
	아시아	1,487(7.8)	
	대양주	433(2.3)	
	아프리카	88(0.5)	
	중동	96(0.5)	
	중남미	102(0.5)	

* 출처: 文部科学省. 세계각지의 교육시설과 재적자 수.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 /a_menu/education/micro_detai l/icsFiles/afieldfile/2015/08/13/1291579_3.pdf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일본인학교와 같이 현지 일본인회 등이 설립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다. 최초 1958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이래 2014년 4월까지 세계54개국 203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약 1만 9,000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업시수나 수업과목이 일본인학교와 준하는(준전일제보습학교) 것도 있다. 교육의 특징은 일본어를 중심으로 시설에 따라 산수(수학), 이과, 사회 등을 추가한 수업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다.[116]

마지막으로 사립재외학교시설은 일본 국내학교법인 등이 모체가 되어 해외에 설치된 전일제교육시설이다. 2013년 5월 현재 세계 8개교에 설치되어 있다. 사립재외교육시설은 문부성장관으로부터 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와 동등한 과정을 가진다는 취지의 인정 혹은 그에 상응하는 과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지정을 받고 있으며 사립재외교육시설의 중학부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부졸업자는 국내 대학의 입학자격을 각각 가지게 된다.[117]

116)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1338806.html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117)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1338806.html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현재 문부성에 의해 인정된 일본인학교와 사립재외교육시설의 부록에 제시한 바와 같다.[118]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재외방인 교육시설은 총 96개교로 대부분 초등부 및 중학부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미인정으로 남아 있는 사립재외교육시설로는 미국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뉴욕학원(고등부)이다. 과거 재외교육시설로 지정 혹은 인정되었지만 문부성에 의해 지정 혹은 인정 취소된 재외교육시설은 2013년 8월 현재 일본인학교는 15개교이며 사립재외교육시설은 11개교이다.[119]

(3) 재외방인 청소년 문부성 지원정책(의무교육단계)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에 교원파견은 현지교원 파견, 시니어 교원 파견, 교재정비추진, 안전대책, 지도안 작성 등이 있다. 문부성의 현직교원 파견은 해외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의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현직 교원을 모집하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는 방인조직의 단체가 설립한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에는 국내 의무교육학교의 교원(주로 공립학교 교원)을 원칙적으로 2년간(평가에 따라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파견하고 있다. 다만 보습수업교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설에 대하여 기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2014년도 파견교원정수는 1,070명이었다. 매년 4월경에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파견교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 시니어 교원 파견은 2007년도부터 재외교육시설의 파견교원 경험을 가진 퇴직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관리직 퇴직자에 제한한 모집대상 직종을 교원까지 확대하였으며 2012년도 모집부터는 교원에 한하여 파견교원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응모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4년도 시니어 파견교원정수는 87명이었다. 매년 4월경에 모집을 개시하고 있다. 국내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에 교원파견은 국내 학교법인 등이 모체가 되고 있는 학교 교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교재정비의 추진은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이 문부과학성의 보조를 받아 재외교육시설에 대한 교재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파견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파견교원을 위한 각종 협의회, 연수회,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대책은 위기관리, 건강안전대책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 자료를 작성하여 일본인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다. 보습수업교를 위한 지도자료 작성은 재외방인청소년

118) 文部科学省. 일본정부인정 재외교육시설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2.html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119) 文部科学省..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1338806.htm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해외자녀)교육 전문가 및 보습수업교의 지도경험자의 협력으로 지도계획이나 지도안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재외교육시설(고등학교단계) 정책으로는 고등부의 수업료 지원이 있는데 문부성장관의 인정을 받은 재외교육시설의 고등부에 2014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국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에 상당하는 지원으로서 수업료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120]

(4) 해외거주 재외방인 어린이 교육정책

해외 거주하는 일본인 어린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의무교육교과서 급여, 통신교육 실시 등이 있다. 의무교육 교과서 보급은 해외에 체류하거나 향후 출국하는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의무교육교과서를 급여하고 있다. 어린이 대상 통신교육의 실시는 문부성의 보조사업으로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다.[121]

기타 정책으로는 재외방인 학생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있다. 먼저 일본국내 홈페이지(Clarinet)에서 정보제공은 해외자녀교육 및 귀국학생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국립대학법인 동경학예대학에는 전국 공동 이용시설로 국제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자녀교육과 귀국학생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122] 외무성 재외교육시설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학교건물 임대료 지원은 대상학교의 학교건물임대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지채용교원 및 강사급여 원조는 대상학교의 현지채용교원 및 강사의 기본급여의 일부를 원조하고 있다. 일본인학교 안전대책비 지원은 대상 일본인학교의 경비비 및 경보기기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123]

(5) 문부성 재외교육시설 인정제도 및 취소제도

일본인학교 및 사립재외교육시설은 '재외교육시설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1991년 문부성 고시 제114호)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의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가지는

120)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에서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4/004/002.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21) 文部科学省...일본인학교 웹 페이지에서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dptj 2015년 11월 6일 인출
122) 東京学芸大学. 国際教育センター http://crie.u-gakugei.ac.j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23) ウィキペディア. 日本人学校安全対策 https://ja.wikipedia.org/wiki/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외교육시설의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또는 대학입학자격 등이 부여되며 교원들에게도 교원면허장 등에 관한 취급의 일부를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의 교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재외교육시설 문부성 장관 인정제도는 종래 문부성장관 지정제도(상급학교로의 입학자격만을 부여하는 것)를 개선한 것이다. 2010년도 문부성은 일본인학교 88개교, 사립재외교육시설 9개교, 계 97개교(휴교중인 학교 제외)가 재외교육시설로 인정하고 있다.[124] 문부성 인정제도는 문부성장관이 재외교육시설 설립자의 신청에 의해 재외교육시설이 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보유한다는 취지의 인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재외교육시설 설립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이 일본인의 복리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재외교육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신청시설 소재국의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단체로 사립학교법(1949년 법령 제270호)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이 해당신청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기타 위의 1항, 2항에 준하는 단체이다.

문부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시설의 설치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신청시설의 명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외교육시설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에 제시한 서류를 준비하여 문부성장관에게 신청한다.[125]

재외교육시설의 변경의 승인 등에 대해서는 인정시설의 설립자는 명칭, 위치, 설립자 혹은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이유 및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문부성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과 및 과정의 조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및 수용정원, 직원조직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변경에 제한한다. 승인시설의 설립자는 학교대지, 학교건물, 운동장, 기타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관한 권리의 취득, 혹은 처분하려는 경우 혹은 용도의 변경, 개축 등에 의해 이들 상태의 중요한 변경을 시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부성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인정시설의 설립자는 임원, 교감, 혹은 교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업료 혹은 입학료의 개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문부성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교육시설 인정의 취소는 문부성장관이 인정시설이 인정의 기준 혹은 운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시설의 설립자는 해당인정시설의 최소를 신청하여 문부성장관이 이것을 승인할 경우 인정취소를 받을 수 있다.[126]

---

124) 문부성 재외교육시설 인정학교 일람표는 부록 참조.
125) 文部省. 在外教育施設認定施設取り消し http://kanpoo.jp/.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26) 文部省. 在外教育施設認定施設取り消し http://kanpoo.jp/.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인정제도에서는 재외교육시설의 설립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재외교육시설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의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보유하는 취지의 인정을 시행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문부성의 인정을 받게 되면 재외학교시설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입학자격이 인정된다(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호, 제150조 제2호 등). 고등학교졸업과정 인정시험의 시험과목에 상당하는 과목을 습득한 자에게는 해당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이 면제된다(고등학교졸업과정인정시험규칙 제5조제3항). 인정재외교육시설에서 근속연수는 교장, 부교장 및 교감의 기초자격인 재직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 등의 정하는 것에 의거하지만 지역사회, 신청시설 혹은 학생의 실태 등으로부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취급(일부에 대해 특별 교육과정에 의할 것)할 수 있다(재외교육시설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127].

(6) 해외거주 귀국자녀 수용 및 지원정책

해외에 1년 이상 체류 후 일본에 귀국한 학생 수는 2013년도까지 국공립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총 11,146명이다. 문부성은 해외귀국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도 및 지원과 함께 다른 학생들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학습 및 생활경험을 존중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부성의 해외귀국자녀에 대한 교육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어 지도의 충실이다.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귀국자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 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재적학급 이외의 교실에서 진행되는 지도로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128]

표 Ⅱ-33 귀국학생 수의 동향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합계
2002년	6,389	2,460	1,918	11	10,778
2003년	6,231	2,192	1,855	17	10,295
2004년	5,992	2,235	1,841	32	10,100
2005년	6,042	2,383	1,910	33	10,368

127) 文部省. 在外教育施設認定施設取り消し http://kanpoo.jp/.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28) 文部科学省. 해외귀국자녀에 대한 교육정책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합계
2006년	6,015	2,515	1,721	56	10,307
2007년	6,401	2,841	1,766	69	11,077
2008년	6,597	3,065	2,016	71	11,749
2009년	7,010	2,995	2,049	64	12,118
2010년	5,910	2,644	1,963	72	10,589
2011년	5,824	2,301	1,772	93	9,990
2012년	6,182	2,343	1,951	115	10,591
2013년	6,604	2,406	2,053	83	11,146

* 출처: 文部科学省. 귀국아동학생 수의 동향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 l/__icsFiles/afieldfile/2015/08/13/1291579_10.pdf)에서 인용.

둘째는 해외귀국자녀의 수용과 지원체제의 구축이다. 공립학교에서 귀국 및 외국학생에 대한 철저한 지원사업(보조사업)의 실시: 2014년도 실시 지역은 6부 현(19현시), 11개 지정도시, 12개 중핵 시 등이다. 귀국 혹은 외국인학생 및 국제이해교육담당 지도주사 등 연락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귀국 혹은 외국인학생 교육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129]

2014년 5월 국립대학 및 학부부속학교에 귀국아동생도교육학급 등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설치학교 수는 13개 대학 24개교(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고등교육학교 2개교)이다. 고등학교입학자 선발(공립)의 경우, 일부 혹은 모든 학교에서 귀국학생을 위한 특별정원 수를 설정하고 있는 지역은 15개 도도부현이다. 귀국학생 입학자 선발에서 일정한 배려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32개 도도부현이다. 대학입학자 선발(국립, 공립, 사립) 시험에서 귀국자녀입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 학부 수는 390개교, 1,109학부이다. 귀국학생 수용학교에 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130]

7) 일본 문부성 재외방인 교육시설 교원파견 제도(일본인학교 및 보습수업교)

(1) 재외교육시설 교원파견 의의 및 역사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와는

129) 文部科学省. 귀국자녀 혹은 외국인학생 http://www.casta-net.jp/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130)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귀국학생 수용학교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okunai/indes.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다른 교육환경에 처한 일본인 자녀에 대하여 국내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및 의무교육무상의 정신에 따라 일본국민에 적합한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국제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기본은 좋은 교사를 획득하는 것에 있다. 특히 국내에 비하여 교육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재외교육시설에서 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재외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확보하여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파견교원은 국내와는 다른 환경에서 교육실천을 수행하는 의의는 매우 크고 귀중한 교원연수의 기회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이점을 살리고 일본 교육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국제성이 풍부한 일본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131]

일본인 학교에 교원파견은 1962년 국립학교 교원 1명을 방콕 일본인 학교에 외무공무원으로 겸임하여 파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1964년부터는 국립학교에 일본인학교 파견교원의 정원조치가 강구되었다. 1965년부터는 국제화의 진전으로 해외자녀 수 및 일본인학교 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69년부터 국내 제3차교원정수개선, 1974년부터 제4차교원정수개선에서 공립학교에 파견교원의 정수조치를 강구하여 이들 공립학교교원의 국내급여비의 2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도도부현의 자발적 협력을 기초로 공립 의무교육학교의 교원을 파견해 왔다. 그러나 이후 해외자녀 수의 급증과 지방재정의 압박 등에 의해 재외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 수의 확보가 매년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파견교원의 신분취급도 각 도도부현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교원의 처우 면에서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때문에 1978년도부터는 국가가 파견교원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교원파견에 협력하는 도도부현에 교부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재외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경비교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132]

이것과 함께 파견교원의 신분취급을 장기 연수출장취급으로 통일하여 처우면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선고방법도 종래 일반 공모 추천방식으로부터 국내소속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통일하였다. 1981년도부터는 종래 외무성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교원파견 경비(부임 및 귀국여비, 근무수당)이 문부성에 이관됨과 동시에 문부성장관이 파견교원을 위촉하여 파견하게 되었으며 교원파견업무가 문부성에서도 통일되게 수행하게 되었다. 1988년도에는 사립학교로부터 파견교원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공립학교교원과 같이 국가가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부금을

131)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일본인 학교의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aigai/index.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32)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일본인 학교의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aigai/index.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교부하는 조치가 새롭게 인정되어 1988년도부터 파견되는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도 처우면의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재외자녀교육, 귀국 및 외국인학생 등의 지원에 대한 일원적 추진, 종래와 같이 국가가 책임지고 파견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관점에서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위탁비'가 신설되어 지금까지의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경비교부금'은 2002년도를 끝으로 폐지되었다.[133]

(2) 교원파견 제도적 절차 및 구조

문부성은 국내 의무교육학교의 교원 중에서 각 도도부현교육위원회 등이 선고하여 추천하는 교원에 대하여 선고를 하여 적임자를 결정하고 이들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수행한 후 원칙적으로 2년간의 기간에 문부성장관에 의한 파견교원의 위촉을 진행하여 매년 초에 각 재외교육시설에 파견하고 있다(재외교육시설교원파견규칙 1981년 문부성 훈령 제27호).[134]

표 Ⅱ-34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의 발자취(2008년 4월 기준)

구분	재외교육시설	주요 내용
재외교육시설설치	일본인학교 1956년 1월	태국일본국대사관부속으로 방콕일본인학교(현재 방콕일본인학교)가 설치되었다. 2008년 4월 기준 86개교가 설치되어 있다.
	보습수업교 1958년 9월	재미국대사관 교실에서 워싱턴보습수업교가 개교되었다. 2008년 4월 기준 201개교가 개교되었다.
	사립학교재외교육시설, 1972년 4월	릿쿄영국학원이 영국(서섹스주)에 설치되었다. 2008년 4월 현재 10개교가 설치되었다.
교원파견사업	일본인학교 1962년	방콕일본인 학교 파견(동경학예대학부속학교로부터 1년 임기로 1명 교원 파견). 1966년도부터 공립학교교원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 당시 교원파견방식은 문부성이 외무성에 교원을 추천하여 외무장관 위탁으로 파견(외무장관 위탁은 1980년도까지 이후 문부성장관 위탁).
	보습수업교 1974년	뉴욕보습수업교 파견.

133)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일본인 학교의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aigai/index.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34)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일본인 학교의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aigai/index.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구분	재외교육시설	주요 내용
	보습수업교 순회지도반 1974년	파견교원이 없는 보습수업교에 교육지원으로 국내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보습수업교순회지도반 파견사업' 개시.
	일본학교 파견교원 순회지도 1981년	일본인학교에 통학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하여 교육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 어린이들이 체류하는 지역에 인근 일본인학교 등의 파견교원에 의한 '순회지도' 실시.
파견교원 체제	1976년	파견교원의 사명과 부임지 상황에 대하여 1주일간 부임 전의 '파견교원내정자연수회'실시. '파견교원배우자연수회'는 민간단체 '국제교육교류센터'에 위촉하여 실시(1995년부터는 문부성 실시).
	1978년	도도부현에 의해 연수, 휴직 등 다양한 파견교원의 파견 기간 중 취급을 장기 연수출장으로 통일하였다.
	1978년	'일본인학교교장연수회'개시(현재 '일본인학교교장연구협의회', '보습수업교파견교원연구협의회'로 계승).
	1990년	파견교원의 등록 및 사전연수제도를 창설. 종전 실시한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내정자 등 연수회'외에도 파견까지 1년을 파견교원후보등록자로서 파견전년도의 하기에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등록자연수회'을 실시. 또한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관리직)연수회'을 실시.
교재정비 등 정부지원	1967년	교재정비사업 개시 일부 교과에 대해 교과서의 무상배포사업을 발족. 당시 재외공관 비치용으로 배포.
	1972년	교재정비사업, 통신교육사업을 전년도 발족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보조사업으로 실시. 해외출장용 교과서 급부사업 실시.
	1974년	교육사업을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보조사업으로 실시.
	2008년	교재정비사업, 통신교육사업에 대하여 문부성이 보조사업으로 계속 실시.
교육지원 안전대책	1978년	동경학예대학 전국공동이용기관으로 '해외자녀교육센터(2002년부터 국제교육센터로 변경)' 발족. 해외자녀교육 등의 조사연구 및 개발 실시(당시 문부성 해외자녀교육과 예산조치).
	1988년	교육과정과 교육지도 방법 등에 대하여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해외자녀교육연구지정교' 창설(해외자녀교육연구협력학교)로서 2007년까지 실시).
	1989년	보습수업교 현지채용강사연수회 개시(외무성 공동).
	1990년	재외교육시설을 거점으로 현지사회와의 교육, 문화, 스포츠를 통한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국제교육, 문화교류추진학교를 지정하는 제도 발족. 해당학교에 대하여 국제교류 디렉터 파견.
	1995년	재외교육시설 위기관리에 대하여 교장 및 파견교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마다 대응을 정리하는 등 안전대책 자료를 작성 배포(1998년부터 예산화되어 이후 사례집, 건강안전 및 감염병 대책, 위기관리 등 복수 발행).

구분	재외교육시설	주요 내용
	1997년	해외자녀교육 및 귀국학생교육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진행하기 위해 홈페이지 'CLARINET' 개설.
	2001년	국내 초중학교 교원 경험이 없는 보습수업교의 현지채용교원을 대상으로 지도계획자료 연구 작성(보습수업교 지도계획자료의 연구 작성)실시.

* 출처: 文部科学省. 해외자녀교육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재구성.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7.htm에서 11월 2일 인출

(3) 재외교육시설 파견교원의 자격 및 연수

① 재외교육시설 파견교원 연수회 및 지원정책

문부성은 매년 국내 국공립사립의 의무교육학교의 교원 중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이 선고하여 추천하는 교원에 대하여 선고를 실시하여 적임자를 결정하고 이들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한 후 2년 임기(1년마다 최대 2년 연장가능)로 각 재외교육시설에 파견하고 있다.

문부성의 재외교육시설 연수 및 파견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등록자 연수회는 재외교육시설 파견교원등록자에 대하여 재외교육시설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연수를 실시하여 파견교원으로서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파견까지의 기간에 스스로 연구 및 수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5] 둘째,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 내정자 등 연수회는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 내정자 등에 대하여 재외교육시설에서 교육지도방침 등에 대하여 연수를 시행하고 재외교육시설교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재외교육시설에서의 교육수준의 유지 및 향상에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6] 셋째,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 관리직 연수회는 재외교육시설에서 인적관리, 물적 관리 및 운영관리의 전반에 관한 지식기술 등을 습득함과 동시에 부임지에서의 교육사정과 어학 등에 대하여 연구 및 수양, 재외교육시설관리직으로서 원활한 교육활동의 실천에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7]

넷째,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 배우자 연수회는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이 임무를 수행하여

135)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36)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37)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배우자 지원이 국내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파견교원배우자로서의 필요한 연수를 수행함으로서 그 자각을 촉진하고 견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8]

다섯째, 일본인 학교장 연구협의회 등 개최는 일본정부가 세계를 4지구(동아시아·대양주지구, 중남미지구, 남서아시아중동아프리카지구, 북미·구주지구)로 나누어 일본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일본인학교에서 교육지도 및 운영상의 문제를 협의하여 일본인학교의 교육수준의 유지향상과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보습수업교에 대해서도 파견교원을 대상으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139]

여섯째, 현지채용 교원에 대한 연수(재외교육시설지도과)는 일본인학교 또는 보수수업교의 현지 채용된 교원 혹은 강사에 대하여 교원연수기회를 마련하고 재외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966년부터 재외교육시설교원국내연수회(동경학예대학국제교육센터 실시) 및 1989년도부터 보습수업교 현지채용강사연수회(북미4지구 및 구주4지구)를 개최하고 있다.[140]

일곱째, 문부성은 보습수업교에서 교육지도의 충실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2001년도부터 보습수업교 교사를 위해서 보습수업교의 교사들이 일상의 교육지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습수업교의 수업일수에 대응한 커리큘럼에 의해 지도계획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어, 산수(수학)과목에 대하여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에 준거하면서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에서 기초기본을 습득하도록 지도사항을 정선하고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할애한 한 시간 마다의 수업진행을 해설하는 지도안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보습수업교를 위한 지도계획(이과지도안집, 사회과지도안집)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한편, 보습수업교 현지채용강사의 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안, 지도기술 및 화술, 발문, 지시, 설명, 지명, 판서, 숙제, 통지표 등을 실천에 의거하여 해설한 보습수업교 교사를 위한 원포인트 어드바이스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141]

여덟째, 교재정비 추진(서무조성과)으로 문부성은 1967년부터 일본인학교 및 보습수업교에서의 교육지도를 충실히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교육시설 교재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일본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준한

138)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39)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40)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41)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일반교재, 이과교재, 교육용 컴퓨터 및 학교도서관도서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내 교육용 컴퓨터 신정비 수준에 의해 교육용컴퓨터의 계획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국내와는 자연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과나 사회를 중심으로 시청각교재(칼라VTR TV)를 정비하고 있다.[142]

아홉째, 재외교육시설 국제교류디렉터 파견(교직원 파견과)으로 문부성은 1990년도부터 재외교육시설을 거점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기획 및 실시에 대하여 종합조정, 조사지도, 조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디렉터를 파견하고 해당 디렉터가 소속하고 있는 재외교육시설을 국제교육 및 문화교류추진학교로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위촉하고 있다. 열 번째, 국제교육센터 정비(기획조사과)는 문부성이 1978년 4월 동경학예대학에 해외자녀교육에 관한 교육내용, 방법 등 실제적 조사연구 및 개발, 전문연수, 교육지도상담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국공동이용시설로서 해외자녀교육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2002년부터 국제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제교육센터의 주요 업무는 재외교육시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재외교육시설 교재개발 연구, 해외자녀교육담당교원 전문연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부적응아동 등 전문 지도에 관한 연구, 파견교원 지도실천 기록서 작성, 해외자녀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관리 및 제공, 외국인아동 학생의 일본어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조사연구이다.[143]

② 파견교원 자격

파견교원은 다음 1~6사항에 해당하고 7~10항까지의 각 조건을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교장으로 파견되는 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첫째, 현재 의무교육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여 학교운영상의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째, 현재 의무교육학교 부교장 혹은 교감으로서 근무하여 학교 운영상의 업적이 있고 파견 시 의무교육학교의 부교장 혹은 교감으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교장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셋째, 현재 교육위원회의 지도 주사 및 관리 주사 등 사무국 직원으로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장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섯째,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1947년 문부성령 제11호)에 정하는

142)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43)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교장자격을 보유한 자로 문부성 초등중등교육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다 등이다.[144] 부교장으로서 파견되는 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첫째, 현재 의무교육학교의 부교장으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둘째, 현재 의무교육학교의 교감, 주간교사, 지도교사 혹은 교사로서 통산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부교장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셋째, 현재 교육위원회의 지도주산, 관리주간 등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부교장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 등이다.[145] 교감으로서 파견되는 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자이다. 첫째, 현재 의무교육학교의 교감으로서 혹은 지도교사로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둘째, 현재 의무교육학교의 주간교사 혹은 지도교사로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파견 시 의무교육학교의 주간교사, 지도교사 혹은 교사로서 통산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교감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셋째, 현재 의무교육학교의 교사로서 근무하여 교무주임 등으로 학교운영상 뛰어난 능력이 있으며 파견 시 의무교육학교의 교사로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교감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넷째, 현재 교육위원회의 지도주사, 관리주사 등의 사무국지원으로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또한 교감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146]

주간교사로서 파견되는 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이다. 첫째, 의무교육학교의 주간교사로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둘째, 현재 의무교육학교의 교사로서 근무하여 교무주임 등으로서 학교운영상 우수한 능력이 있고 파견 시 의무교육학교의 지도교사 혹은 교사로서 1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주간교사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셋째, 현재 교육위원회의 지도주사, 관리주사 등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주간교사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147]

지도교사로서 파견되는 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이다. 첫째, 의무교육학교의 지도교사로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근무성적이 유수한 자, 둘째, 현재 의무교육학교의 교사로서 근무하여 파견 시 의무교육학교의 주간교사 혹은 교사로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지도교사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셋째, 현재 교육위원회 지도주사, 관리주사 등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지도교사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교사로서 파견되는 자는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이다. 첫째, 현재 의무교육학교의 교사로서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144)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45)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46)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47)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우수하고 파견 시 3년 이상의 근무교육학교교사경험을 가진 자, 둘째, 의무교육학교의 교사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3년 이상의 의무교육학교의 조교사 혹은 강사(상시근무자에 한함)로서 경험을 가지고 해당교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등이다.[148] 그밖에도 교장, 부교장, 교감, 주간교사 혹은 지도교사에 승격하여 파견된 자는 귀국 후 계속해서 동등하게 처우 받는 자에 해당된다. 해외자녀교육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열의를 가져야 한다. 현지 각국의 어려운 생활환경, 교육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인내로서 동료와 협조하고 직책을 수행하는데 견고한 의지와 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혼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해야 한다. 동반가족들도 심신이 건강하고 주위와 잘 협조하고 장기간 해외근무생활에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149]

(4)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 지원정책[150]

① 일본인학교 및 보습수업교 교원파견

문부성은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본인학교, 보습수업교의 교육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의 의무교육학교의 교원(임기 2년)을 파견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실제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자질, 능력에 결정되는 것이 많으므로 교원파견제도는 일본인학교, 보습수업교의 교육조건 정비의 큰 축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교원의 파견은 학교경영의 건전성 확보나 보호자의 취학상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인학교, 보습수업교에 대한 교원 파견은 일본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에 관한 시책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파견교원에 대해서는 소속지방의 도도부현 등으로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문부성으로부터 근무수당(근무기본수당, 거주수당, 가족수당 등) 혹은 부임 및 귀국여비를 별도를 지급하고 있다.[151]

148) 文部科学省. 指導教員の派遣資格 http://www.pref.osaka.lg.jp/atta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49)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50) 文部科学省. 재외교육사설 시책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3.html#a08에서 2015년 9월 6일 인출.
151)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및 보습수업교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② 교과서 무상지급 및 통신교육 지원

문부성은 1967년부터 해외체류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을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무교육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처음 해외로 출국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1972년부터 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을 통해 필요한 의무교육 교과서를 지급하고 있다. 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에서는 1972년부터 문부성 보조사업으로 의무교육단계 상당 연령의 청소년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학교교육에 대한 적응 등을 준비하여 기초학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교과는 초등학교 1-2학년은 국어, 산수, 생활과의 3교과,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은 국어, 산수(수학), 사회, 이과 등 4교과이다.[152]

③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협력학교 지정 및 순회지도

문부성은 1996년부터 재외방인 교육시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특정 과제에 대한 실천연구에 집중하여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일본인학교 및 보습수업교를 대상으로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 연구협력학교(재외교육시설지도과-2007년까지 시행)를 지정하여 실천연구를 위촉하고 있다.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간이다.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시설 순회지도반 파견(재외교육시설지도과)-문부성은 1974년부터 재외방인 교육시설의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교원이 없는 보습수업교에 지도와 조언 등을 담당하는 순회지도반을 파견하고 있다.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시설 파견 교원에 의한 순회지도(재외교육시설지도과)-문부성은 1981년부터 일본인학교에 다니지 않는 해외 일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 및 재외방인교육관계단체 등에 주변 가까운 지역에 소재하는 재외교육시설의 파견교원을 장기휴업기간을 이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파견교원이 있는 재외교육시설에 의한 파견교원이 없는 재외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재외교육시설지도과)-문부성은 2001년부터 파견교원이 없는 보습수업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 해당 보습수업교에 대하여 근린 일본인학교나 파견교원이 있는 보습수업교로부터 전화, 팩스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교육상의 지도, 조언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파견시설과 지원받는 미파견 시설과의 그룹구분을 정하여

152)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및 보습수업교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 /education/micro_detail/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항상적인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153]

④ 재외교육시설 안전대책(교직원파견과, 교직원급여과, 재외교육시설지도과)

해외에서 안전대책의 필요성이나 위험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각 일본인학교 등에서는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재외공관 및 현지일본인회, 보호자 및 현지관계기관 등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자기방어체제(Self-defence)를 구축하고 있다. 문부성은 외무성과 연계를 통해 재외교육시설의 치안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을 통한 주의환기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문부성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여 재외교육시설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154]

표 Ⅱ-35 재외교육시설 안전대책

지원정책	주요 내용
방범수당 지급	파견교원 등의 주거 경비비(경비원 고용비, 경비기구설치비) 지급
재외교육시설 위한 안전대책 자료작성 배포	1995년 재외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 및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자료인 '안전핸드북'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또한 1996년부터는 재외교육시설과 관련된 사건사고 등의 안전대책 자료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스쿨버스 운행 시 등)편', '학생 재교 시 편', '사례집편', '정신 케어 편', '건강안전 및 감염병 대책 편' 및 '위기관리 편'을 수시 작성하여 배포했다.
일본인학교교장 연구협의회 등에서 안전대책 취지 철저	시기: 10월~11월 기간, 3일간 연수회: 세계를 4지구로 나누어 개최되는 일본인학교교장 연구협의회 및 보습수업교 파견교원 협의회 내용: 재외교육시설에서 안전확보에 관한 정보교환, 분석, 지도 및 조언
파견교원 사전 연수 등에서 안전지도 취지 철저	내정자연수회: 안전확보에 관한 강의실시 관리직연수회: 관리직으로서의 '안전대책'에 관한 강의 및 연습실시 배우자 연수회: '안전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의 취지 철저

* 출처: 文部科学省. 재외교육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통지(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4/002/003.htm)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153)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및 보습수업교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 /education/micro_detail/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154) 文部科学省. 재외교육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통지(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4/002/003.htm)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5) 한국일본인학교 운영사례

① 서울일본인학교(ソウル日本人學校)[1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DMC) 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자는 SJC (Seoul Japan Club: 구 서울 일본인회)이며 서울시와 근접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1972년 5월 8일 유치원 과정(12명), 초등학교 과정(21명) 등 총 33명으로 개교했고, 1979년 강남구 개포동에 학교건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0년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인학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귀국할 예정이 확실한 일본 국적자나 일본 영주권 소유자만 입학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서울일본인학교를 사립 각종학교로 분류하여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를 졸업해도 한국 국내에서는 졸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일본인학교의 교육기반은 "일본헌법,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법규에 준거하여 학습지도요령의 지도방침에 의해 초등중등교육의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사회의 요청이나 보호자의 바람과 기대에 따라 인간성이 풍부한 심신이 조화된 어린이 육성에 노력함으로서 본교의 교육목표인 '건강하고 마음이 풍성한 세계에 사는 어린이 육성'을 지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56]

교육과정은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국내와 동등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일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재외교육시설"로서 문부성으로부터 인정되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은 상사, 은행, 보도기관, 대사관 등 근무자의 자녀들이다. 2015년도 4월 재외교육시설파견교원으로서 다나카(田中栄一)씨가 서울일본인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2015년 교장을 포함 7명의 교원이 일본에서 임명되어 착임하였다. 서울일본인학교 교직원은 정부파견교원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채용한 현지채용교직원, 강사 등을 포함하여 총 52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일본인학교는 올해 4월 14일 제44회 입학식이 있었는데 유치부 21명, 초등학교 51명, 중학부 43명 등 총 115명이 입학하였다. 2015년도 서울일본인학교 총 재적자 수를 보면 유치부 61명, 초등부 300명, 중학부 82명 등 총443명으로 나타났다.[157]

155) 서울일본인학교 http://www.sjs.or.kr/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156) 다음. 서울일본인학교경영방침 웹 페이지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157) 네이버. 서울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ungjin2002&logNo=170859811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② 부산일본인학교(釜山日本人學校)[158]

1975년 10월 1일에 가토 다이스케(加藤泰介)를 중심으로 한 부산일본인회에 의해 부산일본인학교로 수영구 민락동에서 개교하였다. 2001년 8월 1일에 각종 학교로 인가되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에게 일본 헌법, 교육 기본법, 학교 교육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부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수업 연한은 초등부 및 중학부로 편성하여 각각 6년과 3년으로 되어 있다. 입학 자격은 '일본인, 일본 영주권이나 정주권을 소지한 한국인, 부모의 어느 한쪽이 일본인인 한국인, 부모의 어느 한쪽이 일본 영주권이나 정주권을 소지한 한국인' 등으로, 학교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받을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학습지도요령에 준거하여 각 교과와 도덕, 특별 활동, 한국어, 영어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 초등부에 38명(남학생 22, 여학생 16), 중학부에 13명(남학생 2, 여학생 11)으로 총 51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다. 교직원은 마사키 에미코(政木惠美子) 교장, 교감 1명, 교사 19명이 근무하였다. 학교 운영 위원회는 부산일본인회의 위촉을 받아 임명되며, 위원장 1명, 위원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부지 총면적은 1,606.92㎡로, 강당(음악·체육 겸용), 학습실, 이과실, 가정과실, 도서실, 컴퓨터실, 보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 입학자격은 원칙적으로 일본국적의 자녀, 보호자가 부산일본인회 회원이며, 일본어 일본 같은 학년 상당하는 교육레벨을 가지고, 친권을 가진 보호자와 동거하여 장래 일본에 귀국하는 것이 명확하며 입학 시 일시금 및 매월 학비 등을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등 위의 사항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하여 면담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입학을 심사하고 있다.[159] 국적규정에 대해서는 일본인, 일본에 영주권 혹은 정주권을 가진 한국인, 양친 중 한 사람이 일본인인 한국인, 양쪽 중 한 사람이 일본에 영주권 혹은 정주권을 가진 한국인(부산일본인학교규칙) 등이다.[160]

8) 일본 정부기관 및 JICA 청소년 프로그램

(1) 문부과학성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158) 네이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사전 웹 페이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20514&cid=55784&categoryId=564880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159) 이글루. http://egloos.zum.com/sangmok72/v/4807597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160) 文部省. 일본인학교 입학심사 웹 페이지 http://crie.u-gakugei.ac.jp/report/pdf31/31_51nohara.pdf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① 일본 전국 체험활동 보급계발[161]

가정이나 기업 등에 체험활동의 이해를 구해 나가기 위한 보급계발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기업 등에 이해를 구하는 전국적인 보급계발에 노력하는 한편 자연체험활동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방재(재난)교육의 관점에서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체험활동추진 기획의 목적과 배경은 최근 일본사회가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에서 2010년 실시한 '어린이 체험활동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2011년 '청소년의 체험활동 등과 자립에 관한 실태 조사' 등에서 어린이들의 자연체험, 사회체험, 생활체험 등의 체험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정부는 어린이들의 자연체험, 사회체험, 생활체험 등의 체험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장소를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널리 가정이나 사회에 보급 계발하여 사회전체에서 체험활동을 추진하는 기운을 고조시키는데 있다.[162]

체험의 바람을 일으키자 운동추진위원회에서는 체험활동의 추진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험기회와 장소의 확충, 청소년 교육지도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의 중요성을 보급 계발하는데 있다. 매년 10월은 '체험의 바람을 일으키자 추진월간'으로 운동의 강조월간으로 정하는 한편 통일 이벤트 실시 일을 정하는 등 운동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에 종사하는 복수의 단체가 연계하여 전국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 체험활동의 보급계발 사업- '공익사단법인 청소년 교우협회'의 경우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양상으로서 거주지에서 수행하는 상이한 연령집단에 의한 생활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형 체험활동에 대한 검토와 시행을 통해 도시형 체험활동의 전국적인 보급 계발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인간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일본사회의 안정과 지속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심신을

161) 日本全国体験活動普及啓発.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 /afieldfile/2015/09/09/1290888_03.pdf#search/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162) 日本全国体験活動普及啓発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 /detail/__icsFiles /afieldfile /2015/09/09/1290888_03.pdf#search/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건전하게 배양시키기 위한 생활체험활동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정보화, 저출산 등에 의해 청소년의 자연체험과 생활체험 등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자연체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 나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거리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에도 연결되어 체험활동 감소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으로서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도시형 체험활동'을 주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형 체험활동(생활체험학교)의 실시는 여름방학 기간 중 교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의 유용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까지의 나이가 상이한 집단에 의한 공동생활의 하나이다. 기간은 6박 7일간의 자취에 의한 장기생활체험이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형체험활동 보급을 위한 안내책자 작성, 체험활동추진 포럼 개최, 도시형체험활동의 안내책자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체험활동 보급계발 프로젝트로서 기획 배경으로는 일본 청소년의 사회성 및 풍부한 인간성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자연체험활동 등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이나 기업 등에 이해를 요구하는 보급계발에 노력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이나 기업 등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보급계발을 실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체험활동의 실시, 체험활동에 대한 숙의, 인터넷 등에서의 정보발신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의식 촉발의 계기로 삼고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운동선수나 지도자의 체험활동에 관한 유식자협력에 의해 스포츠 팀 등을 대상으로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체험활동을 시행하여 그 매력과 성과를 전국에 보급 계발한다. 체험활동의 좋은 사례를 활동단체(기업, 자치단체, 학교, NPO 단체 등)로부터 수집하여 실시 경위, 사례, 성과 등의 웹사이트를 작성하여 발신하고 있다. 전국의 NPO 단체 등 체험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와 협동으로 '체험활동 숙의'를 실시하여 체험활동의 효과와 시행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한편 숙의한 결과(시행사례)의 수집과 발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사업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고 살아가는 힘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일본정부는 초등학교가 1주일정도 집단숙박활동, 자연체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문부과학성 청소년과는 '청소년 체험활동 종합플랜'으로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의 27개 시설을 비롯한 지도양성연수실시기관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제정한 '지도자양성커리큘럼'에 의해 양성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한 사람들을 초등학교 등에 소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자연체험활동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는 전제지도자와 보조지도자 프로그램이 있다.

전체지도자의 경우 초등학교가 실시하는 1주간의 자연체험활동 계획에 대한 조언을 실시한다. 또한 활동 시 전체지도를 수행하여 활동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종료 후에는 초등학교가 수행하는 평가 때 조언한다. 보조지도자의 경우 전체지도자의 지시로 지도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Ⅱ-36 청소년 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

강의 항목	목적	내용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험활동의 의의(전체/보조)	오늘날 사회적 환경, 아동의 현상, 발달단계를 포함하여 체험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교육적 효과 이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의 현상 등을 포함한 청소년의 현대적 과제와 청소년 문제 이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현상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현대적 과제와 문제 이해 체험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학력과의 관계 이해 발달단계에 배려한 체험활동의 양상과 지도자에 요구되는 역할과 질을 이해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의 관련성 (전체/보조)	교육과정에서 체험활동의 의의와 교육과정의 편성에 체험활동을 포함시키는 방법 이해	학습지도요령에서 체험활동의 위상 이해 집단 숙박체험활동의 지도상의 유의사항과 운영상의 문제 이해 학교에서 집단숙박체험활동의 실제(생활지도 포함) 이해
프로그램 기획입안(전체)	자연체험활동에서 프로그램의 기획입안에서 평가까지의 일련의 흐름과 기호기입안의 방법 이해	자연과 인간, 사회, 문화의 관련 및 청소년체육시설과의 연계, 지역 인재활용 등 기획입안 시 유의사항 이해 교육과정에 따른 체험활동사업 프로그램의 사례연구 실시 기획입안으로부터 평가까지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유의사항 이해
자연체험활동의 기술	자연체험활동의 기술 습득	자연 중의 생활과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기술 습득

강의 항목	목적	내용
체험활동의 지도법(전체)	체험활동의 기초적인 지도방법 이해	인간관계 만들기, 환경보존에 대한 흥미와 관심 가지기 등 목적에 따른 지도법 이해 체험활동의 지도법의 실습을 수행
안전관리(전체)	안전관리의 시점이나 안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이해함과 동시에 구명구급법의 기본기술 습득	활동 전과 활동 중의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응방법 이해 구명구급법의 실습 수행

* 출처: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http://www.niye.go.jp/services/plan/natural_experience.html)에서 인용.

② 청소년 교육시설 활용 국제교류사업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청소년을 일본에 초청하여 청소년교육시설을 중핵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국제교류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Ⅱ-37 2011년도 청소년 교육시설 활용 교류사업 일람표

실시단체	사업명	개요	교류 상대국	초빙자수	
				청소년	인솔자
홋카이도 카미가와군 히가시가와쵸	중국단기 일본어 연수 일본문화 등 교류	중국고교생 초청 마을 내 전문학교 활용 일본어 연수 실시하면서 약1개월 체류, 마을 내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고교생, 전문학교생, 주민들과 교류를 도무하고 청소년교육시설을 활용한 스키체험학습 등 실시	중국	19	2
재단법인 육성회	시골 놀이대	한국 13~20세 청소년과 일본청소년들이 자연과 문화가 풍부한 농어촌지역에 있는 청소년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교류하면서 생산 활동과 전통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등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의욕향상을 제고한다. 일본의 초중고대학생 110명이 교류학습과 체험활동 참여	한국	30	5

실시단체	사업명	개요	교류 상대국	초빙자수	
				청소년	인솔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교육지원협회	재일외국인아동생도와의 체험활동에 의한 국제교류	외국인국적을 가진 초중학생과 일본 초중고대학생 보란티어가 자연체험활동을 함께 가지며 공동생활과 체험교류를 통해 일본에서 청소년의 국제적 시야를 양성하고 상호 동아시사 국제사회의 중핵을 담당하는 리더로서의 경험 축적	중국, 필리핀, 한국, 타이, 대만	21	–
야마구치 현 청소년지역 국제교류추진 컨소시엄	Road to JAPAN 2011프로젝트 야마구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10개국 청소년을 초청하여 야마구치 현 근교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교육시설을 활용한 어드벤처 프로그램, 캠프장에서 출신국의 명물요리를 나누는 야외요리체험, 신칸센 공장견학, 초중학교방문 등 지역특성을 살린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도모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20	10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체육진흥기구	아세안중학생 초청교류	아세안가맹국의 중학생을 각각의 시설에 2개국을 초청하여 일본 중고생과 각 시설(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역전승문화체험, 농어촌체험, 과학기술체험외 홈스테이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일본 청소년의 국제적 시야 확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47	9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타이왕국 고교생초청 교류	타이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고등학생을 초청하여 각 시설이 가진 기능을 살리면서 일본의 중고대학생과 함께 자연체험활동 및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일본어학습도달도의 향상과 일본이해를 도모하고 일본 청소년에 대한 교류체험을 통해 국제적 시야 양성	타이	66	8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저팬/ 말레이시아 교류프로젝트	말레이시아 고교생을 초청하여 긴끼, 시코쿠지역의 청소년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각국의 문화, 자연체험, 학교방문 등을 수행하고 양국 청소년에 의한 전통문화에 관한 워크숍과 발표 등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와 국제적 시야 확대	말레이시아	20	2

실시단체	사업명	개요	교류 상대국	초빙자수	
				청소년	인솔자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바다는 사람을 연결한다.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대학생을 초청하여 일본해 연안 도로를 자전거로 이동하며 각지의 시민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청소년과 공동으로 해류로 표류하여 도착한 대륙 유래의 쓰레기 회수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문제 토의	한국	28	2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아시아의 가교 오키나와 스리랑카 프로젝트	스리랑카의 중학생을 초청하여 환경, 평화, 역사문화, 생활 등의 카테고리로 나눈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생명과 평화를 미래로' 에 대하여 주제로 교류. 사업기간 중 지역대학생이 튜터로서 기획 운영에 참가	스리랑카	20	3

* 출처: 文部科学省. 교육시설 활용 청소년 교류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_/sports/ikusei/kouryujigyou/index.htm)에서 2015년 6월 27일 인출

(2) 내각부 청소년 핵심리더 양성 프로그램

① 내각부 청년사회활동 핵심리더 육성 프로그램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은 다양한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립하여 사회에 참가함으로서 지탱되는 '공생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일환이다. 지역주민이나 NPO등에 의한 사회활동의 충실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고령자 관련 활동, 장애자 관련 활동 및 청소년 관련 활동의 각 분야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청년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해외민간조직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리더를 일본에 초청하여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활동의 중심적인 담당자로서 청년리더의 능력향상과 각국 각 분야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163] 이 사업은'일본청년 해외파견'과 '외국청년 국내초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각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한다. 주제는 고령자 관련 활동: 보람 있는 고령자의 생활, 장애자의 사회참가를 위한 지하는 원장애자 관련 활동, Youth Worker 육성의 방향 등이다. 둘째, 참가대상은 청소년 관련 활동은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경력이 원칙적으로

163) 内閣部. 청년국제교류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kouryu/data/core.html에서 2015년 6월 17일 인출.

3년 이상인 23세부터 40세까지 경력자, 현재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거나 장래 운영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초청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응하거나(일본청년), 본 사업의 경험을 살려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자 등이다. 각 국가에 파견된 일본청년들은 각 분야의 선진적 특징적인 사회활동 현장 및 관련 시설 등의 방문, 의견교환 및 민박(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파견 프로그램과 초청 프로그램은 일본 내각부 계약에 의해 일반 재단법인 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164]

② 외무성 가케하시 프로젝트(KAKEHASHI Project)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일본정부(외무성)가 추진하는 북미지역과의 일본청소년 교류의 일환으로서 'KAKEHASHI Project-The Bridge for Tomorrow-'을 실시하고 있다.

가케하시 프로젝트는 일본에 대한 잠재적 관심을 증진시켜 방일 외국인의 증가를 도모하고 일본적인 가치나 쿨 저팬(Cool JAPAN)과 같은 일본의 강점이나 매력 등의 일본브랜드에 대한 국제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수행을 통해 일본경제의 재생과 활성화에 합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사업을 통해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이해 심화, 미래 일본과 미국 간의 교류 담당자 층의 네트워크 형성 및 청소년층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165]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청소년 2,300명의 미국 단기파견(2주간)은 일본의 고교생, 대학생 등이 전미 각 지역을 방문하여 미국에서의 교류사업과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의 강점과 매력을 발신하고 있다. 둘째, 미국 청소년 2,300명의 일본 단기초청(10일간)은 미국 고교생 대학생 등이 일본 각지를 방문하여 지방문화, 역사적 유산, 최첨단기술 시찰, 학교교류, 홈스테이 등을 통해 일본의 매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164) 内閣部. 若手リーダー育成プログラム http://www.bosch-career.com/ja/jp/joining_bosch_jp/graduates_jp/junior_managers_program_jp/junior-managers-program.html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165) KAKEHASHIプロジェクト. 가케하시 프로젝트(架け橋プロジェクト) 웹 페이지https://www.jpf.go.jp/j/project/intel /youth /kakehashi/)에서 2015년 6월 17일 인출

표 Ⅱ-38 가케하시 프로젝트(외무성)

파견사업	초청사업
기본프로그램 중학생 고교생 교류 및 대학생 교류 주제별 프로그램 도모다치 이노우에 스칼라스 프로그램 학생 사이언티스트 단기파견 학생 크리에이터 교류 청년 크리에이터 교류 지방 매력 발신 청년리더 파견 청년 연구자 교류 오키나와 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중학생 고교생 교류 및 대학생 교류 주제별 프로그램 청년 연구자 교류 학생 크리에이터 교류 청년 크리에이터 교류 도모다치 이노우에 스칼라스 프로그램 미국 일계인 청소년초청 프로그램 오키나와 프로그램 저팬 보울(Bowl) 미식축구 대회 전미 사쿠라 마쓰리

* 출처: KAKEHASHIプロジェクト. 가케하시 프로젝트(架け橋プロジェクト) 웹 페이지 (https://www.jpf.go.jp/j/project/intel/youth/kakehashi/)에서 2015년 6월 17일 인출

③ 미국 일계아메리카인 학생 초청사업

재미일계인 사회에서 일계인과 비일계인 쌍방의 조상을 가진 자녀, 일본인 미국 영주자(신일계인 1세)의 부모를 가진 자녀와 같은 일본인의 피를 가진 새로운 시대의 일계인 청소년에 대한 일본어 교육, 일본문화 계승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신일계인의 청소년에게 일본 정체성을 인식하고 장래 일본과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가교역할'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목표는 신일계인 청소년 가운데 유망한 청소년을 선발하여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나 홈스테이를 통해 양호한 대일관을 양성하여 향후 친일파, 지일파를 육성하는데 있다. '신일계인초청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의 일반가정에서의 홈스테이를 비롯한 일본 고교방문, 각지 견학을 통해 일본인과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166]

166) 国際交流基金日米センター. 日系アメリカ人との交流事業 http://www.jpf.go.jp/cgp/exchange/jald/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3) JICA 청소년 프로그램

① 개발도상국 청소년 지원 연수사업

일본 정부의 청소년 초청 연수사업은 1984년 장래 국가만들기를 담당하는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이 교육,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연수를 통해 지견을 넓히고 같은 분야의 일본 청년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개시되어 그 후 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이 대상국이 되어 2006년 31,428명이 일본에 건너왔다. 2007년에는 사업내용을 개편하여 대상국의 발전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습득에 중점을 둔 청소년연수로서 새롭게 출발하였다.[167]

표 Ⅱ-39 해외 청소년 연수실적

연도	대상국	수용인원
2007년	99개국	1,622
2008년	106개국	1,464
2009년	108개국	1,430
2010년	109개국	1,460
2011년	110개국	1,117
2012년	115개국	1,027
2013년	107개국	1,025
2014년	110개국	921
2015년	117개국	958

* 출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해외청소년 연수실적 웹페이지 (http://www.jica.go.jp/activities /schemes/tr_youngleader/summary.html)에서 인용.

일본정부의 해외 청소년 연수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중동 등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각 국가에서 필요한 분야에 일본의 경험, 기술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연수를 통해 장래 국가만들기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에 협력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청소년연수

167)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해외청소년 연수실적 웹페이지 http://www.jica.go.jp/activities/schemes /tr_youngleader/summary.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목적은 첫째, 일본에서 각 분야의 기초적인 기술과 제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둘째, 일본의 기술이 발전한 역사, 경험과 문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셋째, 대상국의 개발과제 해결의 노력에 합당하는 지식과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연수 분야로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경제, 지역진흥, 농업, 환경보전, 정보통신기술(ICT), 평화구축 등 각 분야에서 각국의 청소년을 연수원으로서 수용하고 있다. 청소년 연수프로그램은 총 18일간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168]

표 Ⅱ-40 청소년 연수프로그램 일정[169]

일정	주요 프로그램
도일 전	도일 전 오리엔테이션(해당국에서 진행) 각국의 JICA 재외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일본에서의 연수프로그램의 설명과 준비, 관련 분야의 학습 등
3일간	도일프로그램 일본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 학습, 일본에 대한 개요(일본에서 각 분야에 대한 개요) 학습 등
13일간	연수프로그램/평가회 각 분야의 강의와 실습, 토론, 관련 시설 시찰 연수프로그램 최종일 평가회 실시, 연수원이 실제로 느낀 연수내용에 대한 충족도와 개선 요망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등
2일간	귀국 프로그램 폐강식, 귀국 준비 등, 최종일 연수생 귀국 등

* 출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청년연수프로그램 일정 웹 페이지(http://www.jica.go.jp/chotatsu/domestic /komagane/ku57)에서 인용.

② JICA 일본 청년해외협력대(JOCV) 해외파견 사업

JICA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해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일본 국내에서 모집하여 선발과 훈련을 거쳐 해외로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응모기간에 20~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청년해외협력대이다.[170]

168)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http://www.jica.go.jp/chotatsu/domestic/komagane/ku57,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169)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청년연수프로그램 일정 웹 페이지 http://www.jica.go.jp/chotatsu/domestic/komagane/ku57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170)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에서는 청년해외협력대(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이외에도 봉사활동 사업으로

청년해외협력대는 민간의 청년단체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을 정치가 응답하는 형태로 1965년 4월 해외기술협력사업단을 실시기관으로 하는 정부사업으로서 시작되어 1974년 8월 국제협력사업단(구 JICA) 발족에 따라 계승되어 신 JICA의 발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청년해외협력대(JOCV)가 1965년 창설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청년단체나 자민당청년대의원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는데 정치적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일본은 국내 빈곤층의 존재와 안보투쟁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문제, 대외적으로는 냉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보란티어를 해외에 파견하였다. 또한 청년해외협력대의 창설은 미국평화부대 창설 4년 후였다. 국제적으로 당시 이케다 일본수상은 동남아시아 개발에 공헌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정부로부터 평화부대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내 구조적인 요인으로서는 농촌실업, 안보투쟁, 도시범죄 등 청년문제에 대하여 평화부대 창설에 자극을 받은 대의원이나 청년단체들이 해결책으로서 해외보란티어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둘째, 해외청년협력대의 세 가지 목적은 국제지향과 국내지향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현재까지 그 특징이 되고 있다. 일본 청년해외협력대 창설의 정책결정과정은 자민당 청년단체와 기술전문가의 파견을 주장하는 외무성의 대립으로 타협결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청년해외협력대가 탄생하게 되었다(岡部恭宜, 2014: 26-36).

최근 청년해외협력대는 보란티어활동에 의한 빈곤삭감활동, 국내 글로벌 인재 요청 등 존재형태를 바꾸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국 사회적 경제적 발전 협력, 둘째, 친선과 상호이해 증진, 셋째, 일본청년의 국제적 시야 함양 등으로 세 번째는 인재육성측면에서 오늘날 봉사활동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지진 피해지)하는 측면을 강조해오고 있다.

1965년 12월 처음으로 5명의 대원을 라오스에 파견한 이래 2011년 3월까지 총 88개국 35,905명을 파견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약 3할,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 약 2할을 중심으로 파견하였지만 최근에는 아프리카 파견이 증가하여 전체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해외협력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취미, 특기 등을 살려 가능한 많은 국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8부문의 180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파견하고 있다. 부분별로는 농림수산, 가공, 보수조작, 토목건축, 보건 위생,

---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요청의 다양화에 대응과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중고연령층의 맨 파워를 활용하자는 관점에서 1991년부터 만 40~69세를 대상으로 '시니어 협력전문가' 제도를 개시하여 1997년에는 '시니어 해외 봉사활동(SV)'으로 개칭하였다. 더불어 일계인과 일계인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교육문화, 스포츠, 계획 행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2011년도 누적 실적에서 교육문화의 파견이 가장 많고 농림수산과 보건위생, 등 3부문이 전체 약 7할을 차지하였다.

글로벌시대 청년해외협력대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뿐만이 아니라 상호이해의 증진, 봉사활동 경험의 사회 환원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B/OG회를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 지역 활성화, 재일외국인 지원, JICA봉사활동 사업 계발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서도 청년해외협력대가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경험을 통해 배양된 생활력과 커뮤니티에 적응능력, 전문성 등을 살려 피해지에서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청년해외협력대는 기술을 가진 20세부터 39세의 청년남녀가 개발도상국 지역주민과 생활을 함께 하며 해당지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일계사회청년 보란티어는 청년해외협력대와 같은 활동과 활동대상지역을 중남미지역의 일계인·일계인 사회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和喜多裕一, 2011: 88).

<표 Ⅱ-41>은 일본의 자이카(JICA)와 한국의 코이카(KOICA)의 활동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먼저 설립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자이카는 1974년 8월 국제협력사업단으로 발족한 이래 주로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 지식,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일본 상대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협력하고 친선과 상호이해 증진, 일본청년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인재육성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코이카는 1991년에 설립되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ODA 규모확대나 무상원조, 국제원조 조달시장 확대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일 양 사업단의 활동측면을 보면, 자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활동에 중점을 두고 국제이해교육, 지역 활성화, 재일외국인 지원, JICA봉사활동 사업계발 등에도 많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 거주하는 일계인 사회 청년보란티어 활동을 통해 해외일계인·일계인 사회에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이카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제공하는 활동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결국 코이카는 개도국에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Ⅱ-41 JICA와 KOICA 사업 비교

비교	JICA(일본국제협력사업단)	KOICA(한국국제협력단)
목적	1974년 8월 국제협력사업단(구 JICA) 설립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해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지고 개발도상국 파견 봉사활동 상대국 사회적 경제적 발전 협력, 친선과 상호이해 증진, 일본 청년의 국제적 시야 함양, 인재육성측면에서 봉사활동 경험 사회 환원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설립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및 한국 개발경험의 체계적인 전수를 바탕으로 선진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 확보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확대, 무상원조 확대, 국제원조 조달시장 진출 확대, ODA 추진체계 개선, 개발경험의 체계적인 전수
활동	개발도상국 기술협력 활동 국제이해교육, 지역 활성화, 재일외국인 지원, JICA봉사활동 사업 계발 중남미 지역 일계인 사회 청년 보란티어 활동을 통해 해외일계인/일계인 사회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체계적 전수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 기여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구축
차이점	일본은 기술협력개발과 상호친선, 국제적 시야 확대, 인재육성과 봉사활동 경험 사회 환원, 해외일계인 사회 지원 강조 한국은 한국적 개발경험 체계적 전수, 국가 이미지 확보 주력–향후 개인 커리어개발과 경험 사회 환원, 재외동포 지원 확대 필요	

* 출처: 코이카. 한국의 개발원조 웹페이지(http://kov.koica.go.kr/hom/)에서 인용.

따라서 한일 양 사업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기술협력개발과 상호친선, 국제적 시야 확대, 인재육성과 봉사활동 경험 사회 환원, 해외일계인 사회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한국적 개발경험 체계적 전수, 국가 이미지 확보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코이카사업도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 커리어개발과 ODA경험의 사회적 환원,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지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이 연구는 일본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고찰하고 해외일계인 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일본국내 청소년과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의 방향, 일본 내각부와 해외일계인협회의 청소년 정책프로그램, 일본정부 국내외 청소년정책 및 재외방인 교육시설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일본 국내외 청소년정책에 대한 뚜렷한 연구성과가 전무한 가운데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 및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존문헌 및 국내외 통계자료를 정리, 일본 국내외 재외동포정책 및 청소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청소년정책은 2001년 1월 이후 새로 편성된 관계성청이 청소년에 관한 각 분야의 정책을 분담하고 내각부가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 국내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행정의 종합적 추진 및 일본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제안을 제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1]

둘째, 해외일계인 청소년정책은 국제협력사업단(JICA)을 중심으로 일계인사회와의 관계유지, 개발경제와 기술분야 협력, 일계인의 일본취업, 일계인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등 차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172]

셋째, 일본정부는 차세대 양성 지원정책으로 2020년까지 약 18만 명의 유학생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 각 부성청의 강점을 살리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상호 연계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990년대 이후 남미일계인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문부성의 외국인청소년 교육정책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일시체류자로 보고 일본학교나 교육을 기준으로 한 동화 교육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최근에는 외국인 자녀나 청소년을 일시체류자로서가 아니라 일본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일부 공교육을 보장하려는 사회 통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仲尾宏, 2003: 77-78).

다섯째,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교육시설은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규정을 준수하고 일본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와의 동등한 교육과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지정, 혹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정부의 재외교육시설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3] 여섯째, 일본내각부나 문부성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체험활동, 국제교류친선, 핵심리더 및 인재양성, 그리고 국제협력기구 JICA에서는 개발도상국청소년 지원 연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JICA의 경우 1984년 초기 사업에서는 국가만들기를 담당하는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이 교육,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연수를 통해

171) 内閣部. 青少年政策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172) 자이카. http://www.jica.go.jp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173)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에서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2/001.htm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지견을 넓히고 같은 분야의 일본 청년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대상국의 발전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습득에 중점을 둔 청소년 연수로서 변모되었다.[174] 11월 7일)

일곱째, JICA의 청년해외협력대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뿐만이 아니라 상호이해의 증진, 봉사활동 경험의 사회적 환원 등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和喜多裕一, 2011: 90).

여덟째, 일본의 JICA는 기술협력개발과 상호친선, 국제적 시야 확대, 인재육성과 봉사활동 경험 사회 환원, 해외일계인 사회 지원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KOICA는 한국적 개발경험 체계적 전수, 국가 이미지 확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5] 따라서 향후 KOICA는 개인 커리어개발과 경험 사회 환원,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홉째, 일본정부의 일계인과 재외방인 청소년정책은 외국국적의 일계인보다는 재외국민에 속하는 일본국적의 재외방인을 중심으로 언젠가는 일본에 귀국하여 생활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어와 전통문화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정부의 청소년정책은 내각부와 문부성을 중심으로 일본국내의 국제화 문제와 해외청소년의 일본화(내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독일의 제도와 선택[176][177]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대표적인 주요국 중 하나인 독일이 자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74) 자이카. 일본국제협력기구 http://www.jica.go.jp/activities/schemes/tr_youngleader/summary.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175) 자이카). 일본국제협력기구 http://www.jica.go.jp/activities/schemes/tr_youngleader/summary.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176) 이 절은 정호원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77) 이 절의 내용은 2015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재외한인학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회의(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에서 "독일 귀환 '후기재이주자' 자녀 교육의 방향"(pp.77~96)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추진해 오고 있는 제반 정책 및 프로그램의 특징을 그 법적 근거와 함께 고찰해 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 내지 접근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청소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보다는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듯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이래 동서독 통일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역대 독일 정부를 포함한 독일인 대다수가 자국의 재외동포를 상대로 견지해 온 시각 및 그에 따른 접근방식의 독특함과 관련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의 '재외동포재단'과 같이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무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 또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하는 독일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독일은 크게 세 부류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상이한 정책을 입안·집행해 오고 있다. 여기서 세 부류란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 중인 독일 국적의 재외국민'과 '구소련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에 거주해 오던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그리고 '캐나다, 남·북미, 호주 등 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등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재외동포를 구분함에 있어서 '(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기간 국외 체류 중인)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의 동포'로 세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독일은 후자인 '외국국적의 동포'를 재차 두 개의 집단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는 독일만의 특성과 관련 있음은 물론이다.

독일의 경우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재외동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앞에서의 주장에 근거할 때,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외독일동포 청소년'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첫째,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 중인 9~24세의 독일 국적 청소년'과 둘째, '구소련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에 거주해 오던 9~24세의 외국국적 청소년' 그리고 셋째, '캐나다, 남·북미, 호주 등 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9~24세의 외국국적 청소년' 등이 그것이다.

'재외동포 청소년' 개념 구분상의 특징에 더해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이 갖는 또

한 가지 특징은 각각의 '재외동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내지 프로그램이 수립 및 집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성이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무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으로서, 어떤 '재외동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대신 첫째,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집행을 정부가 주도하되 협회나 재단과 같은 다양한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형태와 둘째, 거꾸로 정부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라는 큰 그림만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뿐 구체적인 정책 내지 사업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 같은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조달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과 같은 민간기구가 전담하는 형태 등 크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형태의 진행 방식의 경우 비록 정부 주도인가 혹은 민간 주도인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통적으로 이른바 '민·관 협력 방식'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다음 장을 통해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개념 구분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재외독일동포 청소년 정책'의 종류와 내용 및 진행방식 등에 있어서의 차이의 배경을 이루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하는 독일의 특수성에 관해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재외독일동포청소년과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이 각각 어떻게 분류될 수 있겠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그에 더해 본 연구는 각각의 '재외동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내지 프로그램이 수립 및 집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성, 즉 독일식 접근법상의 또 다른 특징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내무성 내의 독립기관인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이 주관하는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 다시 말해 '연방추방자법' 상의 '재이주자'(Aussiedler) 내지 '후기재이주자'(Spätaussiedler)[178]의 자녀 된 9~24세의 청소년 - 다시 말해 '구소련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178) 독일어 표현인 Spätaussiedler/Aussiedler(독일어 'spät'은 본래 '늦은' 내지 '지각한'을 의미하는 수식어이나, 명사/대명사의 첫머리에 놓임으로써 '후기'라는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에 대한 국문 번역은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다. 독일어 발음 그대로 '슈패트아우스지들러/아우스지들러' 로 쓰는 경우(김명희 2003),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소련과 동유럽으로부터 독일로 재이주한 그룹' 이라 표현하는 경우(조화성 2000), 그리고 '후기재이주자/재이주자'로 쓰는 경우(이규영 2000), '후기강제이주자/강제이주자'로 쓰는 경우(정준현 1994) 등이 발견된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두 용어가 시기상의 구분을 떠나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한때 독일제국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변 지역을 비롯해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에 흩어져 살아오던 동포들 중 1933년 이래 자행되어 오던 나치 치하의 잔학상에 대한 혐오와 복수심 등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 종전 시점을 전후해 ①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이주를 당한 채 살아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에 거주해 오던 외국국적 독일 동포의 자녀 된 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책, 즉 '(후기)재이주자' 자녀를 위한 '사회통합강좌'에 관해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연방추방자법' 상의 '재이주자' 내지 '후기재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종래의 모국귀환 지원 일변도에서 현지거주 지원 병행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게 된 역사적 특수성에 관해 살펴본다. 그에 이어 본 연구는 현지거주 지원 정책의 내용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연방추방자법'상의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 다시 말해 '캐나다, 남·북미, 호주 등 상기 열거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독일 동포의 자년 된 9~24세의 청소년' - 및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한편에서 민관협력 형태의 대표적 사례로서 외무성이 지원하는 해외학교 정책을,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그와 더불어 본 연구는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지원방안의 대표적 사례로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는 한편, 그로부터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수립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의 차별성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비롯한 문헌연구 방식에 기초한다. 다만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 가지 큰 난점이 존재한다. 연구의 주된 대상을 재외독일동포 일반에서 재외독일동포 '청소년'으로 좁히는 경우, 이른바 '후기재이주자' 정책 내지 '재이주자' 정책 - 후술하듯 '구소련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왔거나 혹은 ②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상상하기 힘든 차별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거나 혹은 ③강제이주를 당했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돌아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차별과 핍박을 견뎌내며 살아오다 독일 정부의 모국귀환 지원책에 힘입어 고국으로 재이주하게 된 경우"이니 만큼, '강제이주의 경험'을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설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강제이주의 경험'이라는 특징은 비록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가령 위의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모국인 독일로의 재이주'라는 특징만큼은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 'Aussiedler'와 'Spätaussiedler'는 단순히 '재이주자'로 및 '후기재이주자'로, 그리고 이들 둘을 하나로 통칭해 써야 할 경우에는 간단히 '(후기)재이주자'로 표현하기로 한다.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에 거주해 오던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를 대상으로 모국인 독일로의 귀환 내지 재이주를 비롯해 독일 국적의 재취득과 독일 사회로의 (재)통합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재외동포정책 - 의 대상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및 교육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의 연구 또한 전무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소수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물론이고, 앞서 연구목적에서 기술한 독일 내 유관 정부기관 및 재단이나 협회 등의 민간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들에 관한 언론 및 통계자료, 그리고 그들 및 기타 유관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발간해 온 각종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탐색과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종합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엇보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외독일동포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국내외를 통틀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사실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인 동시에 기여를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재외동포 청소년을 개념적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이들 각각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 내지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그것들이 수립 및 집행되는 데 있어서 관찰되는 세 가지 상이한 진행 방식과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망해 보는 작업 자체가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재외동포 청소년 일반을 위한 독일의 정책 내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자체가 처음 시도되는 작업인 셈이다.

2) 독일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의 이원화

(1) 재외독일동포의 규모와 재외독일동포청소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재외동포 청소년'이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9~24세[179]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듯, '재외동포'는 무릇 '일정기간 외국에

179) "누가 청소년인가?". 다시 말해 청소년의 연령대에 관한 규정 내지 정의는 나라마다 상이하고, 또 한 나라 안에서도 법령이나 사전류에 따라 상이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대를 '9~24세'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 조항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조항 및 가장 최근의 통계청 자료를 따른다. 청소년의 연령대

체류 내지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먼저 재외독일동포의 규모에 관해 살펴보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재외독일동포의 규모에 관한 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2010년 독일 하원에서 행한 연방정부의 답변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180] 잠정적인 체류의 형태로든 혹은 지속적인 거주의 형태로든 국외에 살고 있는 재외독일인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잡혀 있는 바는 전혀 없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재외독일동포의 규모에 관한 신빙성을 갖춘 공식자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독일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못지않게 현 거주국 내지 체류국에서 파악되고 있는 자료 또한 함께 고려해야

에 관한 한국과 독일의 경우만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가별 근거 법령		나이 (만 나이)	비고
한국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통계청 〈2015 청소년 통계〉	9~24세	가장 큰 차이: 한국의 경우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독일의 경우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19세 미만	
	(위키 온라인 백과) 성년(청년)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간단히 '학생)	13~18세	
독일	청소년노동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제2조 2항	15~17세	
	청소년재판소법(Jugendgerichtsgesetz) 제1조 2항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제8권(Achtes Buch) 제7조 1항 2번	14~17세	
	아동과 성인 사이를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소년재판소법' 제1조 2항에 기대어 '예비 성인(Heranwachsender, 18-20세)'까지를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14~20세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15~24세	

* 출처: 아래의 다양한 웹 사이트에 근거하여 직접 작성

① 한국의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3538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B2%AD%EC%86%8C%EB%85%84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위키백과 웹 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C%86%8C%EB%85%84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② 독일의 경우:
'인터넷 법령집' 웹 사이트 http://www.gesetze-im-internet.de/index.html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위키백과 웹 사이트 https://de.wikipedia.org/wiki/Jugend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통계청 웹 사이트 https://www.destatis.de/DE/Startseite.html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180) Bundesregierung (2010).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Wolfgang Wieland, Volker Beck (Köln), Ingrid Hönlinger,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 Retrieved May 19, 2015, from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18/ 1701883.pdf.

하는데 반해, 과연 누구를 어떤 시점에서부터 어떤 기준에 근거해 재외독일동포로 분류 및 등록하는지는 나라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령 가장 많은 수의 재외독일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181]의 경우를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 예술가, IT 전문가, 엔지니어, 사업가 등의 경우 대부분이 이중국적을 소지 - 독일은 이중국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국가이다 -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에 더해 거주국 내 독일대사관에 가족을 포함해 자신을 반드시 등록해야 할 필요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독일동포의 수는 적게는 1000만(Fröschle, 1987: 542)에서 많게는 1,500만(VDA, 1989: 5)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두고 파악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VDA란 한 때 '재외독일인 협회'(Verein für das Deutschtum im Ausland e.V.)로도 불렸던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Verein fur Deutsche Kulturbeziehungen im Ausland e. V.)의 약자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동 협회의 웹사이트상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재외독일인의 수는 약 1,400만에 달하고 있다.[182] 한편 VDA와 더불어 재외독일동포 일반을 가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양대 민간협회 중 하나인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Stiftung Verbundenheit mit den Deutschen im Ausland)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총 13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독일인의 지역별 분포가 유럽에 약245만, 북미에 약540만, 중남미에 약362만, 아프리카에 약24만, 독립국가연합에 약 75만 그리고 호주에 약54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83]

이와 같이 재외독일동포의 규모에 관한 한 독일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닌 주요 민간단체의 통계 추정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재외독일동포의 하위 집단에 해당하는 '9~24세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놓은 공식 자료를 발견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184]

181) 블레크(Bleek 2003, p. 21)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인의 수는 약 5백만 명으로서 두 번째로 많은 3백만 명 수준의 브라질을 훨씬 앞서고 있다. 재외독일동포 전체 추정치(1000만~1500만)에 대해서는 후술함.

182) VDA. Über uns — der VDA stellt sich vor. Retrieved June 26, 2015, from http://www. vda-kultur.de/de/ueber_uns/ueber-uns.php

183) Stiftung Verbundenheit. Stiftungszweck. Retrieved June 27, 2015, from http://stiftung- verbundenheit.de/?page_id=22

184) 다만 설사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될지언정 한국에서의 경우를 독일의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4월 한국의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라는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총인구 중 청소년(9~24세) 인구의 비중'은 19.0%이다.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bSeq=&aSeq= 33538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5년 6월 30일 인출). 2014년판의 결과가 19.5%이었음을 감안해 대략 20%를 - 결국 추정치에 접근해 보려는 시도이므로 - 재외독일동포 추정치(1000만~1500만)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9~24세에 속하는 재외독일동포청소년'의 규모는 어림잡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 세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과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

① 세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과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는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외독일동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외독일동포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따르면 1997년의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의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의 재외동포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처음 시도된 이래 향후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이진영, 2011: 3-4).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재외동포 개념은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에 따라 다시 두 부류의 집단, 즉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집단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재외동포 개념은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 및 체류자 집단, 즉 '재외국민'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민족 일원, 즉 '외국국적동포'로 구성된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재외동포 개념 역시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을 첫 번째 부류로서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재외독일인'(Auslandsdeutsche) 혹은 영어 표현인 Expatriate(혹은 줄여서 Expat)에 해당하는 집단을 일컫는데, 니베르그(Nieberg, 201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외독일국민은 대부분 직업상의 동기에서 1년에서 5년에 걸쳐 특별한 자질을 갖춘 인력집단 신분으로 외국에 머물게 되며, 대개의 경우 조직의 틀 내에서나 혹은 제도상의 맥락에서 국외체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재외독일국민은 많은 경우 '지식을 전달하거나 혹은 본국기관과 파견국기관 사이에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독일 내의 기업 내지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국외로 파견된 전문인력 내지 선도인력'에 해당한다. 니베르그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있는 독일 100대 기업의 해외지사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그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외독일인의 수는 대략 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185]

185) Nieberg, Th. (2013). Auslandsdeutsche. Veröffentlichung unter Lizenz der Creative Common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Retrieved May 15, 2015, from http://www. 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160471/auslandsdeutsche

본 연구의 근본 취지와 관련해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부류는 공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한다. 즉 '외국국적을 보유한 채 국외에 거주 중인 재외독일인', 이른바 '외국국적의 재외독일동포'를 일컫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국국적의 재외독일동포이되 동시에 독일 '연방추방자법' - 원명은 '추방자 및 난민 문제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이며, 흔히 줄여서 '연방추방자법'(Bundesvertriebenengesetz, BVFG)이라 칭함 - 상의 '후기재이주자', 단 시기적으로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재이주 내지 귀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이주자'에도 해당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이다. '재이주자' 및 '후기재이주자' 개념에 대한 이해에 앞서 여기서 잠시 이 두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당시를 기준으로 영토의 4분의 1에 육박하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변 지역을 폴란드와 구소련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33년 이래 자행되어 오던 나치 치하의 잔학상에 대한 혐오와 복수심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동변 지역을 비롯해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에 이주해 살고 있던 천만 이상의 독일인 및 독일 동포들이 추방과 도주 및 강제이주로 대표되는 갖은 핍박과 고난 및 차별 등을 경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독일은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추방당하거나 혹은 탈주하여 고국으로 귀환한 약 1,200만 명의 외국국적동포를 조건 없이 수용한 바 있으며, 그에 더해 - 과거 나치 치하의 온갖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일관해 오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 상기 1,200만 명 이외에 자신들의 거주지에 남았거나 혹은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이주 당했거나 혹은 강제이주지에서의 귀향 후 온갖 차별과 박해 속에서 살아오던 수백만 명의 외국국적 독일동포들을 대상으로 - 그 배우자 및 자녀 또한 포함하여 - 모국으로의 재이주 내지 귀환 및 국적 재취득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이른바 '후기재이주자 정책' - 재이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는 '재이주자 정책' - 을 1949년의 서독 건국 이래로 계속해서 전개해 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재이주자'와 '후기재이주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일컫는가? 일찍이 1953년에 제정(2013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연방추방자법'은 제 4조 1~3항을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86] 그에 따르면 '후기재이주자'란 시기적으로 1992년 12월 31일 이후

186)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Stand: 2013. Retrieved May 11, 2015, from http://www.gesetze-im-inter net.de/bundesrecht/bvfg/gesamt.pdf

- 모국인 독일로의 재이주 시점이 199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는 '재이주자'에 해당 - '연방추방자법'에 열거된 거주 지역, 즉 구소련 지역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지를 떠나 6개월 이내에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즉 독일로 재이주 내자 귀환한 '독일민족귀속인'(Deutsche Volkszugehörige: 더 이상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또 다른 표현[187])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요건에 더해 과거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자신이 단지 '독일민족귀속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전의 불이익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188]

이와 같이 하여 오늘날[189] 독일의 재외동포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총 세 부류 - ①독일국적을

187) '연방추방자법' 은 제6조 1~2항을 통해 '독일민족귀속인', 즉 독일 민족에 속하는 자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①192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의 경우 자신의 고향에서 스스로를 독일민족이라고 고백한 자로서, 그와 같은 사실이 태생(즉 혈연)이나 언어, 교육 혹은 문화 등의 특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②1923년 12월 31일 이후에 독일국민 내지 독일민족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독일민족에 속한다고 고백하거나 - 단 여기서의 고백은 독일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혹은 출신국의 법에 의거해 독일민족에 속함이 인정된 경우 등이 '독일민족귀속인'에 해당한다.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Stand: 2013. Retrieved May 11, 2015, from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vfg/gesamt.pdf 한편 비록 '독일민족귀속인'의 경우처럼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법률적인 용어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독일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국적의 독일동포'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 '독일혈통인(Deutschstämmige)'이 있다. '독일민족귀속인' 집단은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rundgesetz) 제116조 1항이나 '연방추방자법' 제6조 3항에서 보듯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기본법' 상의 '독일인' (Deutsche)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독일혈통인'은 통상의 경우 - 말 그대로 선조가 독일인이거나 독일인이었을 뿐인, 혹은 달리 표현해 독일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선조들로부터 모국어로서의 독일어가 전승되지 않은 – '독일혈통인'에 머무를 뿐이다.

188)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전의 불이익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달리 표현해 "과거에 한때 그랬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추방의 압력 하에 놓여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에 따라 21세기 들어와 어느덧 민주화를 이룩하였거나 혹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 동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에 거주해 오던 외국국적의 독일동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추방의 압력 하에 놓여 있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3년 1월 1일 이른바 '전쟁결과정리법(Kriegsfolgenbereinigungsgesetz 혹은 줄여서 KfbG)'이 발효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방추방자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독일로 재이주하는 '후기재이주자'들의 출신국은 대부분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 - 물론 지난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발틱3국, 즉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를 제외하고 - 로 국한되기 십상이었다. 발틱3국을 제외한 구소련 국가들에 거주해 오고 있는 '후기재이주자'들의 경우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전의 불이익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가정'이 기타 구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추방자법' 제4조 1항 및 2항이 포함하고 있는 '후기재이주자'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BAMF 2013, p. 47)을 참조하시오.

189) '연방추방자법'은 '(후기)재이주자' 이외에도 제1~3조에 걸쳐 '추방자'(Vertriebener)와 '고향추방자'(Heimatvertriebener) 및 '소비에트지역 탈주자'(Sowjetzonenflüchtlinge)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이 연방내무성의 위탁을 받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 '이주보고서(Migrationsbericht)'에 의해 공식 통계가 잡힐 만큼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 ②'연방추방자법'상의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의 독일동포 ③'연방추방자법'상의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일체[190] - 로 구분할 수 있는바, 그 중 두 번째 부류의 존재는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재외독일동포청소년의 경우는 어떠한가? 모두 세 부류로 구분이 가능함은 마찬가지이겠다. 즉 첫 번째로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으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둘째로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9~24세의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191] 및 '연방추방자법'상의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셋째로 '연방추방자법'상의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192]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앞서 언급한 재외독일동포 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의 경우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물론이겠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독일정부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되어야 맞는 것일지 살펴볼 차례이다.

②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과 독일식 접근법상의 또 다른 특징

앞에서 우리는 재외독일동포청소년이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각각에 대한 세 가지 별도의 정책 내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독일만의 역사적 특수성에 근거를 두는 두 번째 부류를 뺀 나머지, 즉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정책 내지 프로그램 수립이 의미를 갖는지의 여부를 고찰함으로써 찾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실제적이고 비중 있는 이주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경우는 '(후기)재이주자'에 한해서이다.

190) 다시 말해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외국국적 독일동포 일체를 일컫는바, 앞에서 열거한 지역에 거주해 온 경우이거나 혹은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역에 거주해 온 외국국적 독일동포 일반을 지칭한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 각주 12) 참조 - 이들과 '(후기)재이주자' 집단이 한국에서의 '외국국적동포'를 구성한다.

191) '연방추방자법'은 제4조 1항의 3번을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최소 연령이 1992년 12월 31일 생, 즉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만 22세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가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인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에 더해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22~24세의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또한 포함함을 의미한다.

192) 연령대가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으로서 본인이 이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으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와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지의 문제이다.

먼저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으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이 부류가 재차 두 개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및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 '본인'으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즉 대개의 경우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혹은 실습생 혹은 해외봉사자 혹은 군인 등의 신분으로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이기 십상인 독일국적의 청소년이 그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후자만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는지 실로 의문이다. 가령 대표적인 예로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내지 제도, 해외실습이나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지 제도, 해외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 - 이들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당사자가 독일을 떠나기 전에 이미 진행된 것 - 을 과연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개의 소집단 중 - 재외독일동포 청소년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와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를 한데 묶어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대상이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일 것임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재외독일동포청소년이 비록 개념적으로는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그들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 내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 사이의 차이가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즉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에 적용되는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은 상호 구분되기 어려운 한 가지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은 ① '연방추방자법'상의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를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② '연방추방자법'상의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및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

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가? 그 이유는 두 부류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접근 방식이 서로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에 대해 보이는 적극성과는 달리 후자에 대해 독일정부는 시종일관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다시 한 번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이 그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 나치 치하의 독일은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에 더해 그들에 의해 주도된 2차 세계대전에서 철저한 패망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독일은 -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 자의반 타의반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힘겹게 수행해야 했는바, 그와 같은 독일 정부 및 대다수 독일인들에게 재외동포라는 존재는 – 모국인 독일을 떠나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고 있었기에 - "이제는 '극복된' 복고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옛 시대의 유물(Relikte einer in Deutschland überwundenen restaurativen und völkischen Zeit)"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새롭게 재건된 독일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한동안 "금기시" 되다시피 하였다(Bleek 2003, p. 21).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정적 시각은 상호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서독 사회 전반에서 진행됐던 근본적인 사회변혁이 거꾸로 많은 재외독일동포의 눈에는 다분히 "독일적인 전통에 대한 위협(Gefährdung des traditionellen Deutschtums)"으로 비춰지기 십상인 것이었다(Bleek, 2003: 21).[193]

이러한 맥락에 따라 재외독일동포에 대한 서독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 및 접근은 사뭇 "일정 거리를 둠(Distanz)"에 의해 특징져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Witte, 1990: 38). 그 결과 재외동포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접근은 그 대상을 단지 재외동포에만 국한하지 않고, 재외동포들이 삶을 영위하는 거주국 내의 내외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국제문화정책'[194](Auswärtige Kulturpolitik)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재외독일

193) Bleek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남미에 정착해 거주하던 재외독일동포들이 독일적인 전통의 고수 및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반면, 북미 국가들 및 동구 공산국가들에 정착해 거주하던 재외독일동포들은 그와는 다르게 거주국 사회에 '강하게' 동화 내지 - 정치적·사회적으로 – 통합되어 갔다. 차이점이 있다면, 북미 국가들에 정착한 재외독일동포들의 경우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동화되어 간 반면, 동구 공산국가들에 정착해 거주하던 재외독일동포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동화 내지 통합 정책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Bleek 2003, p. 21 참조).

194) 오늘날의 '국제문화교육정책'(Auswärtige Kultur– und Bildungspolitik)을 지칭.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과거 외무장관이던 시기(1966~1969) 이래로 '안보정책(Sicherheitspolitik) 및 국제경제정책(Auβenwirtschaftspolitik)과 더불어 독일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세 가지 기둥을 형성해 오고 있다.

동포의 정체성 유지나 독일 문화의 해외 확산을 목표로 하여 '괴테문화원(Goethe-Institute)'의 해외 지부나 국제독일학교의 설립, 해외독일어방송프로그램의 확산 등을 줄곧 지원해 오기도 한 것이었으나, 당시 서독 정부의 대외문화정책에 있어서의 방점은 세계 각국에 '소수'로서 존재할 뿐인 재외독일동포에 놓여있기보다는 '다수'인 내국인까지를 포함하는 내외국민 '모두'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재외동포 일반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한국의 '재외동포재단'과 같이 재외독일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 주무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195]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독일정부의 이 같은 인식과 태도가 그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에 임하는 독일정부의 소극성 및 적극성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내지 입안과 집행 등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이어져 나타난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무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으로서, 어떤 '재외동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대신 첫째,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집행을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형태와 둘째, 거꾸로 정부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라는 큰 그림만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뿐 구체적인 정책 내지 사업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 같은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조달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과 같은 민간기구가 전담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형태의 진행 방식의 경우 비록 정부 주도인가 혹은 민간 주도인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히 이른바 '민·관 협력 방식'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유관기관이 어디인가에서 찾아진다.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재이주자' 정책 내지 '후기재이주자' 정책 중 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다음 장에서 상술함)의 경우 - '재이주자' 정책 내지 '후기재이주

195) 이와 같은 특징은 '(후기)재이주자' 및 소수민족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부서에 해당하는 '재이주자 문제 및 소수민족을 위한 담당관'(Beauftragter für Aussiedlerfragen und nationale Minderheiten)이 ①외무성 소속이 아닌 내무성 소속이며, ②'(후기)재이주자' 및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 및 연방 주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데에 주된 역할이 있으며, ③소수민족과 관련하여서도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독일동포 문제를 – 독일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계 소수민족을 포함하여 – 소수민족 '일반'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다룰 뿐이라는 사실 등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자' 정책 자체가 그러하듯 - 외무성이 아닌 내무성이 유관기관이다. 다만 비록 내무성 산하이긴 하지만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세 개의 부서, 즉 '재이주자 문제와 소수 민족을 위한 담당관'(Beauftragter für Aussiedlergragen und nationale Minderheiten)과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그리고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주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재이주자 문제와 소수 민족을 위한 담당관'의 경우 '(후기)재이주자'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 및 연방 주 사이의 소통을, 그리고 '연방행정청'의 경우 '(후기)재이주자' 신분으로의 수용 및 증명서 발급 문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의 경우 재이주 이후의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사회통합에 대한 지원 일체를 책임지고 있다. 이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및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가 주요 대상인 정책 내지 프로그램(다음 장에서 상술함)의 경우 - 협회나 재단 등의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를 제외하고는 -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무성이 지원의 주체가 된다. 이상에서의 내용을 표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Ⅱ-42 세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과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

<table>
<tr><th colspan="3">독일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의 대상(=재외동포 청소년 분류)</th></tr>
<tr><td>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td><td>'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td><td>'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td></tr>
<tr><td>독일 국적의 재외국민 청소년</td><td colspan="2">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청소년</td></tr>
<tr><td colspan="2">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1</td><td>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2</td></tr>
<tr><th colspan="3">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 유형</th></tr>
<tr><td colspan="2">정부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라는 큰 그림만을 그리고 전체 내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할 뿐 구체적인 정책 내지 사업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 같은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td><td rowspan="2">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집행을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형태'</td></tr>
<tr><td colspan="2">예산 조달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과 같은 민간기구가 전담하는 형태</td></tr>
<tr><th colspan="3">독일 정부의 접근 방식</th></tr>
<tr><td colspan="2">소극적 접근</td><td>적극적 접근</td></tr>
</table>

* 출처: 연방추방자법. 제2장 제2절 1항과 2항의 내용을 종합 및 정리하여 필자 재구성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 내지 접근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청소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보다는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또 무엇인지 등에 관해 살펴볼 차례이다.

3)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 주관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

(1) 모국귀환 지원 일변도에서 현지거주 지원 병행으로의 전환

앞 장에서 보았듯 1949년 서독정부의 수립 이래 재외독일동포 일반에 대한 서독정부의 시각 및 접근이 '거리 두기'에 의해 특징져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과는 달리, 과거 나치 시대의 과오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들 - 이른바 '(후기)재이주자'로 대표되는 외국국적 독일 동포들 - 을 대상으로 해서는 무한의 책임감에 근거해 모국귀환과 국적 재취득 및 그에 이은 사회편입 내지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예외적인 시각 및 접근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가들, 즉 구소련 지역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지로부터 모국으로의 귀환 내지 재이주를 희망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던 서독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냉전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어느덧 자신들의 조국 아닌 조국이 되어버린 공산정권 지배하의 거주국을 독일 혈통의 소수민족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우며 자유롭게 떠나올 수 있는 재외독일동포들의 수가 결코 많을 수는 없었다.

처음으로 20만 명 이상을 기록한 1988년 이전에는 8만 명을 넘기는 경우가 없다시피 했다는 사실이 증명하듯(Worbs, S., Bund, E., Kohls, M., & Babka von Gostomski, Ch. 2013: 31), 아무리 많은 국가들에서 아무리 많은 수의 외국국적 독일동포들이 서독 정부의 '후기재이주자' 정책 – 1992년까지 '재이주자' 정책 - 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자 거주국인 공산정권 하의 국가기관에 공식 지원 하였을지라도, 마침내 출국허가를 얻어 모국인 서독으로 귀환하는 재이주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달리 표현해 거주국인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출국허가를 얻어 거주국을 떠나오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거나 혹은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도록 서독 정부가 관여 내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은 – 각주에서와 같이 -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동화 내지 통합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서독정부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자의 아닌 타의에 기반을 두었는바 이 같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동적 입장은 199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과거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쇠락 및 구소련의 해체 등에 따른 냉전의 종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작동해 오던 절차상의 각종 장애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당시 서독으로 귀환 내지 재이주해 오는 외국국적의 재외독일동포, 즉 '후기재이주자' - 1993년 이전에 재이주한 경우는 '재이주자' - 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폐쇄적이지 않은 거주국의 정부로부터 출국허가를 얻어 모국인 서독으로 귀환하는 데에 과거와 같은 장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그간 비록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나 '재이주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한의 책임감에 근거해 모국으로의 재이주 내지 귀환과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서독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 또한 작용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87년까지 8만 - 1986년까지는 5만 - 을 넘기기 힘들었던 '재이주자' - 1993년 이래로는 '후기재이주자' - 의 수는 1988년에 20만을, 그리고 89년에 35만을 각각 넘긴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 해이자 소련이 붕괴되기 한 해 전이기도 한 1990년에 이르러 397,073명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9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줄곧 20만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196] 1988년을 시작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독일로 귀환한 '재이주자'의 수가 1949년 이래 1987년까지 근 40년 동안 귀환한 '재이주자'의 총 수에 가까워지는 것을 충격 속에서 목격한 서독 정부는 1990년[197]을 기점으로 '새로운 차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후기)재이주자' 정책상의 변화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196) 90년대 중반까지의 증감 수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397,073	221,995	230,565	218,888	222,591	217,898

* 출처: BAMF 2015a, p. 104.

197) 왜 하필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 해 전이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이기도 한 1989년에 재이주 내지 귀환한 '재이주자'의 수는 377,055명으로 이미 과거 대비 최고치에 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즉 그와 같은 추세가 이듬해인 1990년에도 그대로 이어져 다시 한 번 최고치가 갱신되었다는 사실에 더해,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 단지 독일 일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타남으로써 – 과거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재이주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여실히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의 적극적인 관여'란 무엇을 지칭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통합 상의 제반 문제를 야기하게 된 '재이주자' - 1993년부터는 '후기재이주자' - 의 '국내로의 이입'을 조절하려는 방향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거주국 현지에서의 자조적인 삶을 지원'(Hilfe zur Selbsthilfe vor Ort)한다는 의미에서의 '현지거주 지원'(Bleibehilfen)[198]을 통한 '거주국으로부터의 이출'을 조절하려는 방향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구소련을 비롯해 과거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해체를 앞둔 1990년을 전후로 –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개입 내지 관여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서독 정부가 취한 행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후기)재이주자'들을 과거와 같이 무한의 책임에 근거해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듯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후기)재이주자'의 수를 통제 내지 조절하고자 적극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후기)재이주자'의 수용 및 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하는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의 서류심사와는 별도로 수용 주체인 연방 주의 동의를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는 등 수용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거나 혹은 연간 수용 인원을 법으로 고정하거나 혹은 독일어[199] 구사 능력을 필수요건으로 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로의 이입'을 조절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국 현지에서의 자조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현지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거주국으로부터의 이출'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한 마디로 '온정주의에 입각하되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종래의 접근에서 '보다 적극적이되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200] 독일의 재외동포

198) 1999년 '재이주자 문제 연방 담당관'(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Aussiedlerfragen) 벨트(J. Welt)가 연방하원에 제출한 "재이주자 정책의 목표"(über die Ziele der Aussiedlerpolitik der Bundesregierung) 참조.

199) '후기이주자' 신분의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에 독일어 구사 능력이 포함되게 된 것, 혹은 달리 표현해 독일민족에의 귀속 여부를 독일어 구사 능력과 결부시키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 아래 각주 25)에서 보듯이 가족구성원을 포함해 독일로 귀환한 '후기재이주자'의 수는 독일어 테스트의 도입이 있은 1996년에 처음으로 20만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2004년까지는 '후기재이주자' 본인에 한해 독일어 테스트가 실시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해서도 독일어 테스트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후기재이주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독일어 테스트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독일어 테스트와 구분된다는 점이다. '후기재이주자'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독일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만이 – 일종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 – 이루어지는데 반해,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언어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Gemeinsamer Europaischer Referenzrahmen, GER) 상의 A1 등급에 상응하는 독일어 '기본지식'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가 필기 및 구두시험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한편 2013년 9월 14일자로 발효된 '연방추방자법' 10차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면제되어 오던 독일어 테스트가 향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해 정신적·육체적 질병의 환자 등으로 확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상 독일어 테스트와 관련된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Worbs, S., Bund, E., Kohls, M., & Babka von Gostomski, Ch. 2013, p. 25, p. 141; BAMF 2015a, p. 141;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Stand: 2013. Retrieved May 11, 2015, from http://www.gesetze-im-internet.de/ bundesrecht/bvfg/gesamt.pdf0

200) 이와 관련해 김명희(2003, p. 118)는 "민족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동포 혹은 한민족 끌어안기'와 '현실' 즉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버린 재외국민을 또 다른 외국인 소수집단으로 대하기' 사이의 모순"에 주목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사회통합 지원 및 현지거주 지원 : 각각의 내용

①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열쇠 : '(후기)재이주자'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강좌'

지난 2010년의 한 자료에 따르면 '(후기)재이주자' 신분 취득을 위한 신청자들 중 독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비율이 1990년대 초의 80%에서 20%로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201] 20%의 나머지인 80%의 대다수가 함께 귀환하는 가족구성원인바, 이들에게 독일어는 전적으로 외국어일 뿐인 것이다.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후기)재이주자'의 수가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음[202]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199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귀환이 이루어진 구소련 출신 '재이주자' 내지 '후기재이주자' 자녀의 경우[203] - 과거 1990년 이전 가장 많은 수의 귀환이 있어 왔던 루마니아나 폴란드

201) Welche Leistungen erhalten Spätaussiedler? Retrieved May 22, 2015, from http://irwa-v.de/ beruf,leistungen_spaetaussiedler.html

202) 가족구성원을 포함해 독일로 귀환한 '(후기)재이주자'의 수는 1990년에 397,07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그 후론 줄곧 하향세로 접어들어 독일어테스트의 도입이 있은 1996년에 처음으로 20만 밑으로,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 처음으로 10만 밑으로 떨어졌다. 그 후로도 감소세를 지속하던 '후기재이주자'의 수는 급기야 2006년 들어와 만 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2012년 들어오면 1950년 이래 최저치에 해당하는 1,817명을 기록하게 된다. 해당 자료가 출간된 2010년의 수치는 2,350명이었다. 1990년~2013년 사이의 '(후기)재이주자'의 증감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397,073	221,995	230,565	218,888	222,591	217,898	177,751	134,41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3,080	104,916	95,615	98,484	91,416	72,885	59,093	35,52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747	5,792	4,362	3,360	2,350	2,148	1,817	2,427

* 출처: BAMF 2015a, p. 104.

203) 베를린장벽 붕괴에 이어 독일의 통일이 있은 1990년 이래 출신국가에 따른 '(후기)재이주자' 의 구성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1990~2013년 사이에 귀환한 '(후기)재이주자' 2백5십여 만 명의 주요 출신국 여섯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수	927,574	701,821	211,014	187,977	73,963	41,475
(누적)	(927,574)	(1,629,395)	(1,840,409)	(2,028,386)	(2,102,349)	(2,143,824)
비율	36.9	27.9	8.4	7.5	2.9	1.7
(누적)	(36.9)	(64.8)	(73.2)	(80.7)	(83.6)	(85.3)

혹은 구체코슬로바키아 출신 '재이주자' 내지 '후기재이주자' 자녀의 경우와는 달리 -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서 배우지 않았으며, 따라서 독일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다.[204]

'(후기)재이주자'의 자녀들에게 독일로의 재이주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는바, 이들로서는 온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독일 사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셈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건 혹은 개개인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건 부모 세대에 비해 독일보다는 자신들의 고향이자 조국인 출신국과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독일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새 삶에 적응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사회화 내지 정치사회화 과정 - 다시 말해 기존사회로의 편입 내지 사회통합 - 이 불가피하였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독일에서 자아를 실현해야 하는 그들에게 사회통합은 필수인 것이었으나, 새로운 언어 습득의 문제는 사회통합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초점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강좌'(Integrationskurs)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 맞춰지게 되었다.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위한 '사회통합 강좌'는 크게 '어학강좌'(Sprachkurs)와 '오리엔테이션강좌'(Orientierungskurs)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을 위한 어학강좌의 경우 최대 900시간[205] - 300시간의 재수강이 진행될 경우는 최대 1200시간 - 으로 이루어지며, 오리엔테이션강좌는 총 60시간으로 구성된다. 언뜻 보아 독일어의 습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후술하듯 어학강좌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이 훗날 오리엔테이션강좌의 내용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짜여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상의 경우 총 900시간이 할당되는 청소년 어학강좌는 300시간의 초급과정과 600시간의 중급과정(300시간의 중급-I 과정과 또 다른 300시간의 중급-II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럽공통참조기준'(Gemeinsamer Europaischer Referenzrahmen, GER) 상의 B1[206] 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의 설명에 따르면 '독자적인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B1 등급을 취득하게 되면 익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대화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친밀한 주제에 관해 간단하면서도 종합적으로

---

* 출처: BAMF 2015a, pp. 103-104.

204) Schneider, J. (2005). Integration. Retrieved May 17, 2015, from http://www.bpb.de/ 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56404/integration?p=all

205) 강좌 한 시간은 45분으로 구성된다.

206) '(언어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총 여섯 개의 등급, 즉 초급(A1, A2)과 중급(B1, B2) 및 고급(C1, C2)을 구분하고 있다.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사건, 꿈, 소원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어학강좌의 이수를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은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제 3자의 도움이나 중개 없이도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독일어 및 독일에서의 생활환경에 친숙해지게 되는 것이다.[207] 그만큼 강좌의 주제와 내용이 청소년적인 것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BAMF, 2015b: 20-23)

총 900시간의 어학강좌가 종료되면 '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시험'(Deutsch-Test fur Zuwanderer)을 치르게 된다. 이 때 B1 등급의 취득에 성공하게 되면 총 60시간의 오리엔테이션강좌를 이어 수강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실패할 경우 - 비록 B1 등급의 취득에는 실패했을지언정 그간의 어학강좌를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0시간의 어학강좌 재수강이 진행되게 된다. 재수강을 포함해 총 1200시간의 어학강좌가 모두 종료되면, 다시 한 번 '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시험'에 응함으로써 어학강좌의 최종 목표인 B1 등급의 취득에 재도전할 수 있게 된다. 재수강을 거쳐서 이건 아니건 어학강좌에 이어 두 번째 사회통합강좌인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총 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BAMF, 2015b: 76-79). 어학강좌를 이수 내지 재수강한 후 B1 등급의 취득에 성공한 경우이거나 혹은 굳이 어학강좌를 이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독일어의 구사에 능숙한 경우 오리엔테이션강좌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의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 과도 흡사한 오리엔테이션강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독일의 국가제도에 관한 이해를 일깨움, 둘째, 독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발전시킴, 셋째, 주민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게 하기, 넷째,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하기, 다섯째, 사회생활에의 참여 가능케 하기, 여섯째, 지적인 역량의 획득하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강좌는 일상의 삶에 필요한 지식의 전달에 더해 독일의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의 가치, 법질서 및 법치주의의 원칙, 남녀평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관용 및 신앙의 자유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6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어학강좌가 단순히 독일어의 습득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 오리엔테이션강좌를 예비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 오고

207) 총 900시간의 어학강좌 중 여덟 번째 100시간은 - 독일에서의 직업 및 직업 구하기와 관련하여 – 외부에서의 현장실습을 위한 시간으로서, 이를 통해서도 청소년을 위한 어학강좌가 단지 독일어의 습득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간파할 수 있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의 목표 및 초점에 더해 오리엔테이션강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역은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이며, 이 영역에서는 '독일의 국가구조 및 원칙', '기본권과 시민의 의무', '헌법기관·정당·국가의 상징', '복지국가', '정치참여' 등의 구체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이어 두 번째 주제 영역인 '역사와 책임' 하에서는 '국가사회주의 및 그 결과', '1945년 이래 역사에 있어서의 주요 분기점', '통일 독일 및 유럽에서의 삶' 등의 구체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영역인 '인간과 사회'에서는 '가정 및 기타 생활 공동체에서의 공동생활', '독일에서의 교육', '지적인 공동체 생활', '종교적인 다양성', '관련자들의 요구 및 이해관계' 등의 구체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BAMF, 2015b: 78).

어학강좌가 종료된 후 '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시험'이 있었듯,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종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또 한 번의 시험이 '독일에서의 삶'(Leben in Deutschland)이라는 제명 하에 치러진다. 이 두 번의 시험이 결국 일종의 졸업시험인 셈으로서, 두 차례의 졸업시험에 모두 합격한 이주청소년에게는 연방행정청이 발행하는 '사회통합강좌 증명'(Zertifikat Integrationskurs)이 교부된다. 이 증명은 그것을 소지한 자가 한편으로는 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법질서 및 사회 질서를 포함해 제반 생활환경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 문서인 셈이며, 이에 힘입어 '후기재이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은 보다 성공적인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다(BAMF, 2015b: 82).

② 현지화 지원 정책

독일로 귀환하는 '(후기)재이주자'의 수가 근 40만 명에 육박하는 397,0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1990년을 기점으로 독일정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간의 관대하기 그지없던, 다시 말해 다분히 온정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후기)재이주자' 수용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 즉 이른바 '현지 거주 지원(Bleibehilfen)'이라는 다분히 현실적인 정책을 별도로 진척시키기에 이른다.[208]

'현지에서의 자조적인 삶을 위한 지원(Hilfe zur Selbsthilfe vor Ort)'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도

208) Aussiedlermigration in Deutschland. Retrieved May 16, 2015, from http://www.bpb.de/themen/ L2K6XA,2,0,Aussiedlermigration_in_Deutschland.html#art2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상기 새로운 접근은 잠재적인 '(후기)재이주자'들로 하여금 현 거주국에서 자기책임 하의 자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모국인 독일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거주국의 발전에도 또한 일부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와 같은 지원책 전개의 이면에 향후 발생하는 '(후기)재이주자'나 그들 가족의 수를 조절 및 제한하려는 독일정부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그에 더해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책이 궁극적으로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즉 독일계 소수민족과 이들 거주국 내의 주류민족 사이에 존재하기 마련인 선입견이나 긴장 내지 갈등 등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들이어야 함 또한 물론이다. 지난 1999년에 벨트(J. Welt)가 '재이주자 문제 연방 담당관'(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Aussiedlerfragen) 자격으로 연방하원에 제출한 "재이주자 정책의 목표"에 따르면, '(현지에서의) 자조(적인 삶)을 위한 지원'은 크게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209]

첫째는 '공동체 촉진책(Gemeinschaftsfördernden Maßnahmen)'으로도 불리는 문화적인 지원으로서, 회합장소 및 자치조직에 대한 지원, 학교 정규과정 외의 독일어 수업 지원(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외무부 주관 '문화교육정책(Kulture und Bildungspolitik)'에 입각한 교육(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등 포함) 지원, 그리고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소수민족으로서의 외국국적 독일 동포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제반 지원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연방추방자법'(BVFG) 제9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로는 경제적인 형태의 지원으로서, 농업 및 경제 부문에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소상공인과 수공업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자금 대출(Existenzgründungsdarlehen)', (특히 러시아에서의) 주거 공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출 형태의 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셋째로는 인도적인 지원의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의 지원을 일컫는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자금의 축소에 따라 그간 농업 및 경제 분야에서 진행해 오던 프로젝트들, 즉 많은 돈과 시간을 요하거나 혹은 대규모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신 잠재적인 '(후기)재이주자'를 비롯한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들에게 거주국에서의 자조적인 삶에 유용한 구체적인 전망을

209) Welt, J. (1999). Über die Ziele der Aussiedlerpolitik der Bundesregierung. Retrieved June 02, 2015, from http://www.haus.pl/pl/pdf/pub1/09.pdf

제공해줄 수 있는 조치들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과 민간기구 주도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1)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

해외에서 독일적인 것 혹은 독일적인 전통을 보존하는 데에 핵심적인 것은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게 되는 문화적인 정체성으로서, 여기에는 독일어의 장려와 전승, 다시 말해 독일어 교육이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에서 독일은 출발하고 있다(Bleek, 2003: 21).

해외에서의 독일어 교육은 크게 두 곳, 즉 해외에 세워진 독일(국제)학교 - 이들 대부분은 사립학교이다 - 및 독일어 강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공인된 '독일어 어학 증명'(das Deutsche Sprachdiplom, DSD) 또한 발행하는 현지의 학교이다. 중요한 사실은 해외 독일학교이든 혹은 독일어 강좌를 제공하는 현지 학교이든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연방행정청' 내의 '해외 학교를 위한 중앙기구'(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 ZfA: 이하 '중앙기구')는 외무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들에 대한 외무성의 지원을 중개해 오고 있다. '중앙기구'는 전 세계 71개국에서 140개 이상의 해외 독일학교와 DSD를 제공하는 870개 이상의 현지 학교 - 총 학생 수로는 79,000명이며, 그 중 58,000명이 비 독일인 - 를 지원해 오고 있다.[210] 그에 있어 '중앙기구'는 외무성의 3대 외교정책 중 하나인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Auswärtige Kultur- und Bildungspolitik) - 나머지 둘은 안보 및 국제경제 정책 - 의 목표들을 실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한 목표에는 현지 국가의 문화 및 사회와의 만남, 해외 독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 교육 지원, 독일어의 장려, 연구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독일의 입지 강화등이 있다.[211]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보다 해외의 독일학교가 이질적인 민족과 문화 간의 만남과 교류 및 대화의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청소년은 물론이고 직업 상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들이 독일식 학교 교육을 받기 원하는 재외 독일

210)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 (ZfA). Retrieved June 07, 2015, from http://www.auswaertiges-amt.d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Auslandsschulwesen-ZfA_node.html. 한편 '중앙기구'의 홍보사이트에 따르면 독일학교를 포함해 '중앙기구'에서 지원하는 해외학교의 수는 주말 학교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1,200여 개에 달한다.

211)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 (ZfA). Retrieved June 07, 2015, from http://www.auswaertiges-amt.d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Auslandsschulwesen-ZfA_node.html

국민의 자녀, 그리고 독일과 독일의 문화 및 언어에 친숙해지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국적의 현지 청소년들 등 모두가 외무성이 지원하는 해외학교 정책의 대상인 셈이다.

무엇보다 '중앙기구'는 해외 독일학교에 약 2천 명의 교원을 공급 - 6,800명은 현지에서 조달 - 하고, 이들을 돌본다. 그에 더해 전 세계에 약 50명이 고문들이 이들의 조언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자료에 따르면 2천명의 파견교원에게 외무성의 학교기금에서 1억5천5백7십만 유로, 그리고 외무성의 건축기금에서 6백만 유로가 각각 지원되었다.[212]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외무성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전적으로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가장 오래된 형태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민관협력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민간기구 주도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① 대표적 민간기구 및 주요 목표

재외독일동포 일반을 가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양대 민간협회는 VDA, 즉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한 때 '재외독일인 협회'로도 불렸던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Verein fur Deutsche Kulturbeziehungen im Ausland e. V.)와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Stiftung Verbundenheit mit den Deutschen im Ausland)이다.[213] 이들은 스스로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일인과 모국인 독일 사이의 '문화적 매개자'[214]로서 이해한다. 이는 곧 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모국어로서의 독일어를 매개로 독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최대 1,500만 가량 재외독일인들의 대화 상대이자 동시에 접촉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

212) Deutsche Auslandsschulen – Orte der Begegnung und des interkulturellen Dialogs. Retrieved May 25, 2015, from http://www.auswaertiges-amt.de/sid_CFF3409170C69FA15ACA7515C3ACAC8E/DE/ 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Uebersicht_node.html

213) 지난 2004년 자아란트 주의 기업가이자 법학박사인 린스터(K. Linster)에 의해 설립된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의 경우 그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의 '재단'에 해당하는바, 130 여년 역사의 '재외독일인 협회'(VDA) 또한 지난 2004년 이래로 동 재단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DA. Stiftung Verbundenheit. Retrieved June 26, 2015, from http://www.vda-kultur.de/de/ueber_uns/stiftung.php

214) VDA. Über uns — der VDA stellt sich vor. http://www. vda-kultur.de/de/ueber_uns/ueber-uns.php 에서 2015년 6월 26일 인출

이들 민간기구는 특정 정당의 노선과 무관하며, 또한 특정 종파의 교리와도 무관하다. 나아가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상당 부분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것들 중 청소년 집단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및 그들 공동체의 언어, 문화, 습속 등의 유지와 장려,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 내지 교환의 장려, 외국국적 독일동포 학생·대학생·직업청소년 등을 위한 장학사업의 수행, 독일어 및 독일문화의 전파자, 그리고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들 간 연결고리로서의 해외 독일 매체에 대한 지원, 교육· 문화· 학문· 연구 등을 위한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시설(대표적으로 학교, 도서관, 각종 협회 등)에 대한 문화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국제회의나 포럼· 강연· 세미나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혹은 후원, 의료와 구제 등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이다.[215]

언뜻 보아 이들 목표는 여타 국가들이 자국의 해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치는 통상의 지원책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정부 부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민간기구에 의해 추구되는 목표들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이다.

② 민간기구 주도 지원방안의 대표적 사례 : 교환학생 프로그램

최대 1,5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독일인과 모국인 독일을 연결시켜 온 대표적인 민간기구 중 하나인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VDA)는 40년 넘게 남미 5개국, 즉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파라과이와 아프리카 1개국, 즉 나미비아 - 나미비아는 과거 독일의 식민지였다 -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 협회는 상기 국가의 독일학교를 다니는 외국국적의 청소년 -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에 국한해서는 아님 - 중에서 독일어 과목을 비롯해 학교 성적이 우수한 14~17세의 청소년 – 비록 선별된 소수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 들로 하여금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동안 홈스테이, 즉 독일인 가정에 머물면서 독일이라는 국가와 독일인, 독일어와 독일문화 등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일인 가정에 머무는 2~4개월 동안 방문 청소년은 정규 독일 학교 -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김나지움이든 혹은 구직을 염두에 둔 직업학교이든 – 에 등록해 정규과정을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디까지나

215) Stiftung Verbundenheit mit den Deutschen im Ausland. Stiftungszweck. http://stiftung-verbundenheit.de/?page_id=22 에서 2015년 6월 27일 인출

교환학생으로서의 독일방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협회는 2~4개월에 걸쳐 방문 청소년을 받은 독일인 가정의 청소년 자녀가 거꾸로 방문 청소년의 출신국을 방문하는 것 또한 지원한다. 그러한 대응 방문의 경우 독일의 여름방학 기간 중 6주에서 8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독일로의 방문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216]

앞 절에서 소개한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독일과 독일의 문화 및 언어에 친숙해지기를 원하는 다양한 국적의 현지 청소년들까지를 대상으로 삼는 민간기구 주도 지원방안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본 연구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제도와 정책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외동포청소년은 독일의 경우 크게 세 개의 집단, 즉 ①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와 ②'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및 ③'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중심에는 두 번째 부류, 즉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 정책, 즉 '사회통합강좌'가 자리하고 있다. 이 '사회통합강좌'의 경우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바, 언어의 습득에 더해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 의 이수를 사회통합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의 습득 못지않게 민주시민교육 여부가 사회통합의 열쇠가 된다는 발상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이다.

둘째, '사회통합강좌'를 구성하는 '어학강좌' 및 '오리엔테이션강좌'의 운용을 '괴테문화원'과 같은 민간기구가 책임지게 되는 사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어떤 재외동포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첫 번째 및 세 번째 재외동포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216) VDA-Jugendaustausch auf einen Blick. http://www.vda-kultur.de/ de/jugendaustausch/auf-einen-blick.php에서 6월 28일 인출

하는 정책, 즉 독일 외무성이 지원하는 해외학교 정책과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지원방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지원방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외무성이 지원하는 해외학교 정책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민관협력의 가장 오래된 사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재외동포 일반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이건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이건 민간 부문이 과연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발전해 있는지 사뭇 회의적이다. 민간 부문이 자리를 잡고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는 민간 부문의 의지와 역량 못지않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의 의지와 역량 또한 필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사례는 단지 부러움의 차원을 넘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되는 '사회통합강좌'가 오로지 '(후기)재이주자'나 그 가족 구성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듯, 또한 외무성의 지원을 받는 해외 독일학교가 오로지 재외독일동포 청소년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듯, 그리고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오로지 재외독일동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듯,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독일식의 접근은 소극성 내지 수동성의 차원을 넘어 사뭇 탈국가주의적 내지 탈민족주의적 성격 또한 지니게 된다. 여기에는 한편으로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둔 독일의 특수성, 즉 재외동포 일반에 대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의 부정적인 시각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유럽연합의 한 부분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과 괘를 같이 하는 측면이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차세대 리더의 발굴 및 그들 사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 인재의 조기 확보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가령 총 1,200여개에 달하는 해외학교의 존재를 다양한 민족 및 문화 간 만남과 소통 및 대화의 장으로 간주하고 지원함으로써 독일을 보다 잘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국적의 차세대 인재들을 상대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시도해 오고 있는 독일식의 접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넷째, 비록 언제부터인가 독일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중심에 '연방추방자법'상의 '재이주자'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책이 자리하게 되었지만, 정책 입안 과정에서 사회통합 상의 어려움이 처음부터 예측 및 고려되었던 것은 아니다. '자민족 끌어안기' 식의 온정주의에 입각한 모국귀환 지원 일변도에서 현지화 지원 병행이라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동서독 통일과 동구권 몰락 및 소련 해체 등을 전후해 '(후기)재이주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로 사회통합 상의 제반 문제점이 돌출되면서부터였다. 시작 단계부터 모국귀환

지원과 현지화 지원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 혹은 달리 말해 처음 단계부터 모국귀환 지원과 현지화 지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은 - 한편으로는 고려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을 전후 한 북한 주민의 대량 이주에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5. 이스라엘 청소년 재외동포정책[217][2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 시대를 맞아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이 자유롭게 국경을 왕래하면서 국민국가 정체성과 별도로 언어와 문화를 한 뿌리로 하여 공동체 의식을 공유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Anderson, 2006: xi-xiii)[219]라 할 수 있는 동포 개념의 또 다른 정체성의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한 국가의 재외동포는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역량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역할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된다. 재외동포사회 규모는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그 수에 있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높은 편이다. 특히 조선족 재외동포는 무역과 모국송금 외에 우수한 노동 인적자원의 공급을 통해 모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한반도 주변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선족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은 한반도 남북의 접촉과 관계개선 나아가서는 통일문제까지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사회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에 있는 해외 코리안들 보다 더욱 밀접하고 역동적인 기능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매체 작용과 완충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곽재석 2011 : 1). 해외 거주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며 미래 한국과 인연을 맺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17) 이 절은 성일광 전임연구원(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이 집필하였음.
218) 이 절의 내용은 2015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재외한인학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회의(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에서 "이스라엘 청소년 재외동포정책" (pp.35~60)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219) 물론 앤더슨은 국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상의 공동체' 를 사용했다. Anderson Benedict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Verso, 2.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역시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 왜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인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약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에 만든 국가인 만큼 건국초기부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어떻게 귀환시켜 나라를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인재 귀환정책 역시 이스라엘 건국초기부터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은 건국초기부터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와 살게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국가 건설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귀환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본 논고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재외동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온 이스라엘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재외동포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유대인 재외동포 청소년을 포함한 세계도처에 퍼져있는 유대인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스라엘 재외 동포 정책의 역사와 법제도를 살펴본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 산하 이민 주관 부서와 함께 민간 이민 지원 단체와 이민 장려 프로그램을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청소년 이민 정책에 대한 결론과 함께 이스라엘 이민 정책의 한계를 알아보고 끝으로 이스라엘의 정책이 한국 재외동포 정책에 주는 함의를 파악해 볼 것이다.

2) 선행연구

이스라엘 재외동포 정책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약한 수준이다. <민족연구>에 발표된 정지영의 이스라엘 해외동포정책이라는 짧은 보고서는 1990년대 발표돼 2000년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명진의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은 이스라엘의 과학자 유입 정책에 대한 훌륭한 연구서다. 우수 인재 모집을 위한 이스라엘 정책에 관한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보고서도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 재외동포 이민 정책을 큰 틀에서 살펴보고 그 중에 청소년 이민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먼저 청소년 및 재외 동포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관련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둘째는 청소년 이민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이 이스라

엘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주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련문헌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스라엘 청소년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자료도 추가할 것이다.

3)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

(1) 세계 유대인 분포 현황

현재 전 세계 유대인은 1,421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69억 명의 0.19%에 불과한 매우 소규모의 민족이다. 이중 해외거주 유대인(Diaspora)은 약 844만 명이며 유대인 인구가 많은 국가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순이며 미국에만 57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재외 청소년 동포의 이스라엘 이민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며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Ⅱ-43 세계 유대인 분포도

대륙	국가별	유대인수
미주	미국	5,700,000
	캐나다	385,300
아시아	이스라엘	5,763,100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12,500
	뉴질랜드	7,500
아프리카	모로코	2,400
	남아공	70,000
유럽	프랑스	475,000
	영국	290,000
	독일	118,000
	나머지 국가	1,289,000
총 유대인 수		14,212,800 명

* 출처: Jewish Virtual Library(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Judaism/jewpop.html)에서 인용.

(2) 재외 동포 정책의 방향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

고 이스라엘로의 이주 후 정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0년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Knesset)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나라로 이민 올 권리를 갖고 있다"는 조항으로 시작되는 귀환법(Law of Return)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 유대인은 모계혈통으로 유대인이거나 비유대인일 경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한다(박 동, 강일규, 이영대, 정지선, 황규희, 2009: 109).

이스라엘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돌아와 살 수 있는 국가 건설을 위해 귀환법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존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박 동 외, 2009: 109-110).

재외동포 정책은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재외동포와 이스라엘로 이주할 의향이 없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핵심은 재외동포의 이주에 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30여개 국가로부터 이민 온 유대인들이 전체국민의 85%를 차지한다.

귀환법은 이후 1955년과 1970년 두 번에 걸쳐 개정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위해 해외 거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이주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이스라엘 국가에 통합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박동 외, 2009: 111).

둘째 이스라엘로 이주하지 않고 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만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이나 재외동포 법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먼저 법제상으로 이들 재외동포의 지위를 살펴보면 이들은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스라엘 국적법에 의하면 이스라엘로 이민 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고 그들의 본래 국적 역시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이중 국적 허용) 만일 재외동포 중 이주를 통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는 이스라엘 국내 재산권 보유나 국내 경제활동 면에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국내참정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은 병역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은 투자촉진법 조세촉진법 사업 R&D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를 외국인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하는 제도는 없으며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해외로 이주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이민자들이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집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그들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교육, 문화 등 필요한 프로그램이 계속되어야 함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이종훈 외, 1999: 144-145).

이스라엘 국민의 국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국적의 취득은 크게 출생, 귀환법, 거주 귀화 등 3가지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은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경우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나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귀환법 거주 귀화 등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국적을 얻게 된다(박동 외, 2009: 112).

귀환법에서 유대인이란 유대인 모계혈통에서 태어난 경우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955년 개정된 귀환법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를 미치는 활동에 가담한 경우 공중보건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공공안녕에 해를 끼칠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이민자들에게는 이민자 신분증의 수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했다(국회산업자원위원회, 2003: 77).

1970년 2차로 개정된 귀환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유대인 자녀들과 손자들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의 비유대인 배우자들까지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타종교인과의 결혼으로 가족들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 선조의 신분으로 인해 비유대인으로 취급당하게 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배려이다 하지만 유대인 중 자발적으로 타교로 개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지영, 2000: 83).

해외 거주 유대인을 귀환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현재까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재외 동포 유대인의 불안정한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해외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은 '울판(Ulpan)'이라는 히브리어 학습제도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면서 해외 우수인재를 귀국시키고자 할 때 이스라엘의 유인책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강조하던 것이 점차 '전문 직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애국심을 강조하던 데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런 강조점의 이행이 가능한 조건은 이스라엘 내에서 해외이주에 대한 혐오가 희박해지고, 귀환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2013: 203).

4) 이스라엘 재외동포 법, 제도, 조직

(1) 재외동포 관련법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귀환정책이다. 귀환법(Law of Return)은 1950년 7월 5일에 통과된 이스라엘 법으로 유대인에게 귀환의 권리와 이스라엘에서 살 권리, 이스라엘 시민권을 획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는 유대인의 권리를 "모든 유대인은 이민자(oleh, olim)[220]로서 이 나라에 들어 올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이민 문제에 관한 후속입법은 1955년 제정된 국적법에 포함된다. 귀환법은 1970년 귀환의 권리를 유대인 조부모를 가진 비유대인과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되었다. 1970년 이래 귀환법은 유대인 모계의 선천적 유대인, 유대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가진 유대인 혈통, 정통파나 개혁파 혹은 보수파이거나 종파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밖에서 개종한 유대교 개종자, 이스라엘 밖에서 세속 결혼한 유대인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스라엘 국가의 안녕에 위협이 될 경우 귀환법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살인 같은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전력을 가진 사람, 또는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피한 자(종교적 박해의 희생자가 아닌 경우)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귀환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귀환법은 유대인이었다가 자발적으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도 배제한다. 그러나 귀환법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유대인은 귀화, 거주, 또는 이스라엘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있다(이진영 외, 2013: 195-196).

(2) 재외동포 정부기관

이스라엘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부부처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유대인의 국내이주를 돕기 위한 이민자 수용부와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기 위한 디아스포라부다. 장관급의 디아스포라부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부서는 원래 명칭은 '예루살렘 및 디아스포라부' 였는데 2015년 5월 예루살렘 문제를 이스라엘 총리에게 일임하고 명칭은 디아스포라부로 바뀌었다.[221]

220) 이민을 "위로 올라가다"란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Aliyah"를 사용한 것처럼 이민자 역시 올라가는 사람 (능동 동명사 형태) 뜻을 지닌 "oleh (올레)" 또는 복수 형태인 올림이라고 부른다.

221) 이스라엘 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o.gov.il/MediaCenter/Spokesman/Pages/spokeTfuzot190515.aspx에서 2015

① 이민 수용부 (Ministry of Immigrants Absorption)

이민 수용부는 1968년에 설치되는데 그 역할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민 수용부는 이주민의 동화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의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국민연금지원 사회통합지원 등을 수행한다(김수진, 2000: 25).

이민수용부는 크게 중앙본부와 지방본부 그리고 지방본부 산하의 지역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본부는 이스라엘의 4개 지역에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는 동화지원부(Absorption Service Division)와 기획연구부(Planning and Research Division) 그리고 기획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있다 동화지원부는 이스라엘로 막 이주해 온 이들을 동화 센터로 안내하는 등의 초기 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는 부서이다(박동 외, 2009: 116-117).

기획연구부는 국내외로부터 이주에 대한 자료나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주민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과 기획안을 수립하고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입각하여 수립한 기획이 이들이 정착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정책의 집행을 맡고 있는 부서로는 정착동화지원과(Housing Absorption Department) 직업안정과(Employment Absorption Department) 사회복지(Social Welfare Department)과 사회통합지원과(Social Integration Department) 히브리어교육과(Ulpan Department) 경제과(Economic Department) 가 있다(박동 외, 2009: 116).

정착지원과는 모기지 은행과 협력하여 이주민에 대한 월세 보조금 지급과 아파트 구입시 융자업무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이스라엘의 주택임대는 일반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이다 정착동화지원과는 가족 수와 구성에 따라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 이후 해가 지날수록 지원액은 감소한다. 그리고 이주민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모기지 은행을 통해서 일반적인 융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박동 외, 2009: 116-117).

직업안정과는 이주민의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년 10월 20일 인출

위해서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Social Affairs)와 기업가협회 등 정부부처나 민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직업안정과는 지방본부에 직업안내 소개 센터(Vocational Guidance Referral Center), 지역지부에는 직업교육 및 고용상담센터(Learning and employment Counseling Center) 등을 두고 있다 직업안정과는 이주한 이후에도 출신국가에서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민에게 가까운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박동 외, 2009: 117).

사회복지과는 이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각종 기관과 단체의 협력 하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회복지과 산하에는 피해보상분과 교육분과(Education Section) 보건분과(Health Section)가 있다. 이 분과들 중에서 보건분과는 이주민에 대한 초기 의료 서비스 업무를 관장하며 이주민은 이주 후 초기 개월간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해 온 이들은 1년 동안 무료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사회통합지원과는 이주민의 이스라엘 사회적응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사회통합지원과는 이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주민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박동 외, 2009: 117).

국내 이민자 수용부는 이민자의 귀국 후 초기 경제적,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인 통합을 책임지고 있다. 이 부처에서는 본부에 이주민 지원업무를 기능별로 담당하는 여러 부서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는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에 소속기관을 가지고 있다. 중앙의 기능조직과 지역조직이 상호 연계하여 이주민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이진영 외, 2013: 195).

이민자 수용부는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민자 신분을 받게 될 경우 이민자의 신분 조건과 분야에 있어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민자 정착 기금인 흡수 바스켓(Absorption Basket)으로 분야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지원 분야별로는 흡수 바스켓, 실업 수당, 관세 보조, 울판(히브리어 수업), 주택원조, 구직지원, 개인 사업지원, 교육비 지원, 군인 보조 등이 있다(정지영, 2000: 81).

특히, 이주민 학생에 대한 지원이 뚜렷한데, 학생국(Student Authority)은 고급 이주민 인력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 초기 이주민학생이나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이주민을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주 황동은 우선 학생들의 알리야 (이민)를 적극 지지하고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심리적, 사회복지와 교육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이스라엘 사회로의 통합을 쉽게 하게 위해 상담 및 직업 소개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과 "학생 처우와 지원 시스템(student treatment and

support system, 마아트팟)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학생 이민자의 교육을 위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다(이진영 외, 2013: 195).

이주민 학생들은 언어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고등교육과 히브리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이민 수용부에서 운영하는 울판(Ulpan, 히브리어 집중 코스)을 받을 수 있다. 학업 수행 전에 지원이 필요하면 예비대학준비과정(pre-academic preparatory course, Mechina)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민 전에 "초기 준비"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학부 대학생은 3년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석사 과정 전과정을 지원한다. 학위는 하나만 지원한다. 학비 외의 다른 생활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 부카라, 카프카스 출신 이민자에게는 특별한 지원 혜택이 있다. 영어 과정을 수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있다.[222]

② 디아스포라부

'디아스포라부'는 부처 자체는 크지 않아서 전담 직원은 35명이며 연간 예산도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아스포라부'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본국 귀환 의사가 없는 재외 유대인, 특히 유대인 후손의 이스라엘에 대한 친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진영 외, 2013: 214)

3) 재외동포지원 민간기관

① 세계시온주의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

미국은 재미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1974년 이후 이스라엘에 약 억 50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각종 기금모금 운동을 통해 해외에 분산된 유대인들의 모국 귀환을 돕고 있는데 매년 수억 달러가 모금되어 해외 교민들의 이스라엘 이주와 정착 그리고 재활을 돕는 데 쓰인다 미국에는 해외의 유대인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189 개의 연방기구와 450여개 이상의 유대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단위의 기구인 UJA(united Jewish Appeal)가 유대인 기구(JAFI)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 미국에는 해외의 유대인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189 개의 연방기구와

222) 유대기구. 홈페이지 참고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450여 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들이 JAFI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의 이스라엘을 위한 기금조성기구인 Keren Hayesod for Israel Appeal은 5대륙 47개국에서 기금 모금을 위해 90개의 캠페인을 수행한다. 세계시온주의 기구의 전신인 시온주의 조직(The Zionist Organization) 시온주의의 아버지 테오도르 헤르첼이 1897년 제1차 시온주의 총회가 열린 바젤에서 창설했다. 1960년 세계 시온주의 기구(WZO)로 이름이 변경된다.[223]

1929년 세계 WZO에 의하여 설립된 유대기구(JAFI)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의 유대인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전 세계 유대인들의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또한 WZO와 JAFI 두 기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스라엘 정부 사이에 제도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정지영, 2000: 79).

국가설립 이전부터 WZO와 JAFI는 유대인의 이스라엘로의 귀환과 이스라엘 정착 유대인 국가 설립을 책임지는 기관이었다. JAFI는 수난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조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정착 유대인들의 교육과 복지강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단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JAFI 프로그램의 기본취지는 유대인들의 통일이 바로 유대인 기구가 풀어야 할 핵심이며 종교적 차이 관용과 서로에 대한 이해이다(국회산업자원위원회, 2003: 76).

국가설립 이후 WZO 와 JAFI 집행부의 회장인 다비드 벤 구리온은 초대 수상이 되었으며 조직의 기능은 유대인 기구 사이의 조약인 지위법에서 정해졌다. 1952년 지위법과 1954년 이스라엘과 WZO와 JAFI 간의 규약에 의해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의 관계는 공식화되었다. 지위법과 WZO 와 JAFI간의 규약은 유대인들이 WZO 와 JAFI 두 기관 을 통해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이스라엘 내에 정착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박해 받는 유대인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적 도의적 정치적 원조를 해 왔다. 1979년 WZO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교육과 지원 등에 집중하고 JAFI는 이스라엘 초기 이민자들의 적응, 지원, 교육, 정착을 전담하기로 이스라엘 정부와 합의했다(박동 외, 2009: 128-129).

② 유대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JAFI)

이스라엘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유대인 정체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유대조직이

223) 세계시온주의 기구. 홈페이지 참고(http://www.wzo.org.il/world-zionist-organization)에서 2015년 10월 11일 인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유대기구이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인 유대 기구를 중심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히브리어 교육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에 이주하고 문화에 적응하며 취업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분들에 관여해오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재건하기 전까지 자발적인 유대인 조직과 네트워크들의 전통과 영향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유대기구는 해외 유대인의 국내이주 정착지원 등의 주된 사업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의 전통보존 활동을 통해 해외거주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대 기구는 유대인 비영리 단체에서 가장 큰 단체이다. 유대인 이민과 정착을 지원한 가장 오래되고 전통을 가진 단체이다. 1929년 팔레스타인 시온주의 집행부(Palestine Zionist Executive)에서 유대기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8년 이후 300만명의 유대인 이민자가 유대기구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유대기구는 비영리단체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다. 대신 북미 유대인연합(The Jewish Federations of North America), 케렌 하예소드(Keren Hayesod), 주요 유대인 공동체와 연합체, 기독교와 유대인을 위한 국제 펠로우쉽(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 등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이진영 외, 2013: 202).

JAFI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구 소련연방으로부터 약 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미국의 유대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FTA간의 체결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심을 보여 이를 관철시켰으며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유도하며 아랍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난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조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정착 유대교육과 복지의 강화와 단일성 강화에 있다(이병훈, 2007: 369-370).

JAFI가 운영하는 '협력 2000'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라엘의 27개 지역이 100개가 넘는 세계 유대인 공통체와 연계되어 있다. 매년 2만 명의 전 세계 유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JAFI의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의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혜택을 받으며 이스라엘과 유대인 역사 전통 교육 그리고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한다. 또한 JAFI는 25개의 수용센터를 마련하여 초기단계의 수용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한다. 새로운 이민자 중 다수가 바로 개인주택을 마련하기 때문에 JAFI는 지방정부와 지역 위원회와의 공조로 이민자들의 동화와 문화적응을 추진한다 이러한 JAFI의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스라엘에서의 인간적이고 교육적이며 사회적인 필요를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224]

유대기구는 해외거주 유대인의 귀환을 돕기 위해 귀환센터(Israel Aliyah Center)를 산하조직으로 두어 이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맡으며 이주절차까지 대행한다. 귀환센터에는 귀환을 돕는 담당관이 있는데 이주를 원하는 유대인의 모임을 조직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관의 역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귀환을 원하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을 사전 방문해 보도록 하는 예비방문 (Pilot Tour)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당관의 역할에 의하여 이주를 희망하는 해외거주 유대인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박동 외, 2009: 114-115).

또한 유대기구는 이주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 이주민에게는 입국 항공권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거주를 희망했던 유대인이 입국 후 2년 이내에 이주민으로 지위를 변경하려면 무이자로 대출 받았던 항공권 비용은 다른 영구 귀환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여금 전환성 대출로 전환된다. 또한 유대기구는 이주시의 이사 화물운송비도 대출해 주는데 이 대부금이 실제적으로 쓰인 용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출금의 규모는 유대인협회가 이주자의 출발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결정하며 대출을 받은 이주자는 이주 후 2년 또는 3년의 기간 내에 갚으면 된다. 해외거주 유대인이 일단 이스라엘로 이주하면 취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의 이스라엘 내 취업의 걸림돌은 언어와 출신지역의 직업과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기구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의 극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거주 유대인 중 이스라엘 이주 희망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유대기구의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유대인 협회는 자신의 활동 지역에서 유대인의 파악과 유대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노력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박동 외, 2009: 114-115).

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해외거주 유대인 청소년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히브리어 교육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대 기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주민의 수를 늘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우리의식 함양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국회산업자원위원회, 2003: 79-80).

유대기구의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마사 이스라엘(Masa Israel Journey), 파트너쉽2게더(Partership2Gether), 유스 퓨처(Youth Futures), 유스 빌리지(Youth Villages) 등이다. 파트너쉽2게더는 민족성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정 이스라엘 도시와 세계 유수도시의 유대인이

224) 세계시온주의 기구. 웹 페이지 http://www.wzo.org.il/world-zionist-organization에서 2015년 10월 11일 인출

자매결연 하여 방문하는 방식이다. 매년 이스라엘 주민과 해외 유대인 30만명이 45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225]

③ 네페쉬 베네페쉬 (Nefesh B'Nefeshi)[226]

비영리 단체로 북미와 영국에서 유대인 이민을 촉진, 장려, 알리야를(Aliyah, 이스라엘에 유대인 이민)를 지원 및 격려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잠재적인 이민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제, 금융과 사회적 장애물 제거를 목표로 한다. 네페쉬 베네페쉬는 유대 기구(Jewish Agency), 이스라엘 정부 등과 긴밀한 공조하고 있으며 이민자 재정 지원, 취업 지도 및 네트워킹, 이스라엘 시스템, 사회 지도 탐색 및 상담 지원 등의 리소스를 제공하고 이민 과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민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2002년부터 약 3만명의 이민자가 네페쉬 베네페쉬를 통해 이스라엘에 이주했다. 이 조직은 특히 가족 구성원이 없는 이민자 군인들에게 여러 지원을 한다. 이런 서비스는 4단계에 걸쳐 제공되는데 이민 전, 이민 후 군입대전, 군복무기간, 군복무 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군 복무 기간에는 경제지원, 군복무 후에는 일자리 찾기를 지원해 준다. 이밖에 젊은 이민자들의 이민 과정 안내와 교육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다.[227]

5) 이스라엘 이민 정책

(1) 이민 흡수 바스켓과 각종 혜택

흡수바스켓은 이민자수용부가 이민자에게 6개월간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이민자의 나이, 결혼 여부, 은퇴 여부,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 이민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흡수바스켓은 매년 1월 1일 금액이 조정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흡수바스켓은 전년보다 1.5% 증액됐다.

225) 유대기구. 홈페이지 참고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26) 네페쉬 베네페쉬는 히브리어로 영혼에 의한 영혼 또는 통일된 유대인의 영혼의 뜻
227) 네페쉬 베네페쉬. 홈페이지 http://www.nbn.org.il/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표 Ⅱ-44 이민자 흡수 바스켓

구분	올림 (이민자)
항공료	편도 항공료 유대기구에서 지원
생활비	6개월 경제 지원 (6개월 지나서 실직 상태일 경우 실업 수당 이민 1년 까지 지급)
의료보험	일자리 구할 때 까지 1년 동안 무료 의료 보험
히브리어 교육	500시간 무료 히브리어 학습 5개월 동안 1주일에 5일 매일 5시간 히브리어 집중 학습
대학교육	대학 학비 지급
직업 교육	전문 자격증 취득 준비 코스 지원 전문직 재훈련 비용 지원 일자리 찾기 카운셀링, 훈련 지도 지원
세제혜택	소득세 면제 (3년 6개월) 2008년 세제 개편, 10년 동안 해외 소득과 자산 신고 면제 지방세 1년 동안 90% 면제
주택	이민 후 13개월 후 비주택 이민자에게 지원 단독 이민자: 2년~4년차까지 70달러 5년차 30 달러 부부/가정: 2년차 134 달러, 3년차 107 달러, 4년차 75 달러 이민 후 15년 동안 주택 모기지 이자 할인 혜택 이민 후 7년 부동산 매입 시 세제혜택
자동차	자동차 구입 세제 혜택 (부가세)
TV세혜택	1년 동안 TV세 면제 혜택

* 출처: 이스라엘 이민부 홈페이지(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인용.

(2) 이민자의 4가지 신분

이스라엘로의 이민은 이민자의 성격에 따라 4가지 이민으로 나뉜다. 첫째, 교포 이민(Immigrant Citizen)은 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시민으로 이스라엘 귀환법에 따라 이민 권리를 가진다. 이스라엘 주민증 발급받으면 이스라엘 국민이 되고 새로운 이민자와 동등한 권리 누린다. 둘째는 새 이민자(New Immigrant)로 신분으로 1950년 제정된 이스라엘 귀환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과 그의 남녀 배우자와 자녀와, 손자와 그 배우자들은 이스라엘 이민 권리를 가지고 정부의 특별 지원 받을 수 있다. 셋째는 미성년 이민자(Immigrant Minor)로 14-17세에 이스라엘에 부모 없이 온 청소년이 있고 14세 이전에 알리야 (이민) 절차를 밟아 17세까지 부모 없이 거주하는 청소년도 있다. 마지막은 가족 이민 (Immigrant Family으로 가족 전부가 함께 이민 온 경우 받는 신분이다.[228]

228) 이스라엘 이민부. 웹 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2015년 9월 25일 인출

(3) 이민 방식

① 이민 수용센터 이민 프로그램

이스라엘에는 이민 수용 센터가 18곳 있다. 센터는 이민자의 초기 수용을 위한 곳으로 새 이민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다. 수용 센터는 히브리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알아 가도록 한다. 또한 전문 기술 훈련과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새 이민자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새 이민자가 센터를 떠날 때는 주택 보조금을 받아 주택 마련에 도움을 받는다. 이민 센터에 오는 이민자는 직업 프로그램과 직업 할당 등을 포함하는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있다. 또한 이민 전에 이스라엘에 2-6달 방문하는 가족들과 빈곤국가에서 이민 온 가족들은 먼저 이민 센터에서 생활하게 된다. 유대 기구(Jewish Agency)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이들도 센터를 통해 이민 과정을 밟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수용 센터에서 18-24개월 머무른다. 이 기간 중에 이민 수용부는 초기 이민을 돕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 유대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수용 센터를 통해 3,080명의 이민자들이 할인된 주거지, 히브리어 학습(울판), 다양한 카운셀링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229]

② 직접 이민 프로그램

이민 수용부를 거치지 않는 이민자는 살 곳을 정할 수 있고 경제지원 수용 바스켓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민자는 가용 기금과 경제 지원을 어디에 쓸지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2010년 16,851명의 이민자가 직접 이민 방식을 이용했다.[230]

③ 특별 이민 프로그램

직접 이민 방식 중의 하나인 특별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공동 그룹 이민 프로그램은

229) 이스라엘 이민부. 웹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2015년 9월 25일 인출
230) 이스라엘 이민부. 웹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2015년 9월 25일 인출

2010 이스라엘 이민 장려 프로그램, 네게브와 갈릴지 이민과 정착 장려 프로그램, 라틴 아메리카 이민 장려 프로그램, 베네수엘라 이민 장려 프로그램, 구 소련연방 이민 장려 프로그램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핵심은 이민 가능성이 높고 공동 관심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국가에서 먼저 모임을 갖도록 주선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직접 이런 가족과 그룹을 이민 기간과 수용 기간 동안 동반해 주는 것이다. 공동체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6년 동안 약 3,500가구가 이스라엘로 이민해 흡수됐다. 예를 들면 이민부의 협조로 유대 기구와 함께 실행된 "엣 홈 투게더(At Home Together)"프로그램은 이민자의 이민과 수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14개 도시와 마을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30개 지방 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원 봉사로 참여한 수용/고용 코디네이터가 수용 기간 중 이민자를 동반하고 모국어를 구사하는 코디네이터가 개인적인 지원을 한다. 2010년 7000천명의 새 이민자가 이런 도움을 받아 이주했다[231].

표 Ⅱ-45 이스라엘 이민 방식에 따른 이민

이민 방식	내용
이민 수용 센터 이민	이스라엘에 있는 18곳의 이민 수용 센터를 통한 이민. 센터는 이민자의 초기 수용을 위한 곳으로 새 이민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을 지원한다.
직접 이민	이민 수용부를 거치지 않는 이민자는 살 곳을 정할 수 있고 경제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수용 바스켓). 이민자는 가용 기금과 경제 지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할 수 있다. 2010년 16,851명의 이민자가 직접 이민 방식을 이용했다.
특별 프로그램 이민	직접 이민 방식 중의 하나인 특별 프로그램 다음과 같다. 공동 그룹 이민 프로그램은 2010 이스라엘 이민 장려 프로그램, 네게브와 갈릴지 이민과 정착 장려 프로그램, 라틴 아메리카 이민 장려 프로그램, 베네수엘라 이민 장려 프로그램, 구 소련연방 이민 장려 프로그램 등이다.

* 출처: 이스라엘 이민부. 웹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6) 유대기구의 재외동포 이민 장려 프로그램

이스라엘 정부와 이민지원 민간단체는 공동으로 다양한 이민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체험 및 리더쉽 프로그램, 사회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교육

231) 이스라엘 이민부. 웹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및 직업 프로그램,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스라엘 체험과 리더쉽 프로그램

이스라엘 체험프로그램 및 리더십프로그램은 마사 이스라엘(MASA Israel Journey), 티글릿(Taghlit-Birthright), 온워드 이스라엘(Onward Israel), 민야님(Minyanim), 마콘 리더십 트레이닝(Machon Leadership Training)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은 마사와 타글릿(생득권)이다.[232]

표 Ⅱ-46 이스라엘 체험과 리더십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내용
마사 이스라엘(MASA Israel Journey)	자원봉사, 인턴, 유학 프로그램
타글릿(Taghlit-Birthright) ; 생득권	10일 동안 이스라엘 여행 체험 프로그램
온워드 이스라엘(Onward Israel)	타글릿 마친 학생들 6~10주 동안 이스라엘 생활 경험
민야님(Minyanim)	공동체 리더십 및 이스라엘학 학습 프로그램
마콘 리더십 트레이닝 (Machon Leadership Training)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 출처: 유대기구 홈페이지(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 사회활동과 상담 프로그램

사회활동 및 상담프로그램으로는 파트너쉽 투게더 (Paternship2Gether), 슐리힘 Shlichim (Israeli Emissaries), 스쿨 트위닝(School Twinning), 커넥트 이스라엘(Connect Israel), 프로젝트(Project TEN), 유스 빌러지(Youth Villages), 헤 헤벤 센터(Hechven Center) 등이 있다.

취약 계층 사회봉사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를 알아갈 수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과 자매결연

232) 이스라엘 정부는 마사와 타글릿 프로그램에 매년 7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http://www.haaretz.com/blogs/jerusalem-babylon/why-is-no-israeli-minister-in-charge-of-relations-with-diaspora-jews.premium-1.525431에서 2015년 10월 23일 인출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다. 자매결연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유수 도시와 자매결연 하여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해 이스라엘을 알아가는 파트너쉽 투게더(Paternship2Gether)가 있다.

표 Ⅱ-47 사회활동과 상담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내용
파트너쉽 투게더 (Paternship2Gether)	세계주요도시 자매결연 및 상호방문 프로그램
슐리힘 Shlichim (Israeli Emissaries)	청소년 교육, 공동체, 사회 활동 프로그램
스쿨 트위닝 (School Twinning)	유대인 학교의 유대인 정체성 알기 프로그램
커넥트 이스라엘(Connect Israel):	도시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
프로젝트 (Project TEN)	이스라엘 사회 자원 봉사 프로그램
유스 빌러지 (Youth Villages)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헤 헤벤 센터 (Hechven Center)	키부츠와 에찌온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민 상담 프로그램. 직업, 교육, 심리, 문화, 경제 문제 포함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출처: 유대기구 홈페이지(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3)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히브리어 언어학습과 대학 입시 준비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첨단 산업 분야는 이스라엘 업체에 직접 방문, 체험, 인턴, 창업까지 지원해주는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표 Ⅱ-48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이름	내용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 (Israel Tech Challenge)	컴퓨터 과학 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거나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	나알레(Na'ale)	세계 유대인 고등학교 또는 엘리트 아카데미로 이스라엘 학제 10학년 중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도록 장학금, 숙식, 생활비를 제공한다.

구분	프로그램 이름	내용
	마사 이스라엘프로그램 (Masa)	유대인 청소년들이 한 학기나 1년 동안 (5~12달) 자원봉사, 인턴, 유학 프로그램
	울판 에찌온 네트워크 (Ulpan Etzion Network)	이민자 히브리어 학습 프로그램
	메키나 (Mechina)	대학 입시 준비 프로그램
	타카(Taka)	대학생 이민자 이스라엘 대학 준비 프로그램
	스쿨 트위닝 (School Twinning)	유대인의 학교의 유대인 정체성 알기 프로그램
	울판 키네렛 (Ulpan Kinneret)	히브리어 교육과 직업 교육 – 5개월 동안 언어, 직업교육 군복무 준비.
	베이트 브로데쯔키 젊은 올림 프로그램 (The Beit Brodetsky Young Olim Program)	5개월 동안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출처: 유대기구 홈페이지(http://www.jewishagency.org/ 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4)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

젊은 이민자들이 입대 전에 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가족이 없는 군인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표 Ⅱ-49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내용
가린 짜바르 (Garin Tzabar)–	군복무 사전학습 프로그램
윙스 (Wings)	독거 이민자 군인 지원 프로그램

* 출처: 유대기구 홈페이지(http://www.jewishagency.org/에서 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7) 주요 청소년 이민 프로그램

아래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10년간 재외 청소년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민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정부와 이민 지원 민간 기관들이 청소년 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청소년 이민 장려 프로그램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공동체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이다.

표 Ⅱ-50 재외동포 유대인 청소년 이민 현황 (청소년 이민 증가 추세, 나이 9~24세)

년도	재외동포 청소년 이민자 수
2005	6579 명
2006	5885 명
2007	5862 명
2008	4188 명
2009	4709 명
2010	5517 명
2011	5114 명
2012	4982 명
2013	4832 명
2014	5599 명
	총 53267 명

* 출처: 이스라엘이민부 웹 페이지(http://www.moia.gov.il/English/InformationAndAdvertising/Statistics/Pages/default.aspx)에서 2015년 9월 25일 인출

(1) 청소년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233]

타글릿[234](Taglith, Birthright)프로그램은 이스라엘 10일 무료 방문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약40만명의 재외동포 유대인 대학생(18-26세)이 타글릿을 통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1999년 창설된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 6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9,000여명이 참여.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이스라엘의 같은 또래 7만명이 미프가쉬 (만남)을 통해 타클릿 참여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브랜다이스 대학 모리스와 메를린 코헨 현대 유대학 센터 연구에 따르면 타글릿에 참여한 대학생 3분의 2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깝게 여기게 됐고 절반가량이 유대 유산과 연결되는 감정을 얻었다고 답했다. 타글릿은 뉴욕의 자선사업가 뉴욕의 자선 사업가 챨스 브론프만과 마이클 슈타인하르트가 1994년 미국의 유대 젊은이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민족간 결혼문제의 해결까지 염두에 두고 창설됐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여행을 유대 젊은이들의

233) 대표적 이스라엘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은 타글릿(Taglit)과 마사 (Masa)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두 프로그램에 매년 1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234) 타글릿 (תילגת) 의 원래 의미는 새로운 장소나 사물의 발견이다. 이스라엘 국가의 발견 또는 이스라엘 국가에서 거주할 권리의 발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과의례로 만드는 것이었다(1998, The New York Times)-출처x.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이스라엘인의 후손이면서 이스라엘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 신청 순번에 따라 10일간 이스라엘 무료 여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235]

프로그램의 내용은 키부츠여행, 고고학 유적지 탐방, 하이킹, 생태 탐방, 역사 탐방 등 다양하다. 타글릿은 유대 커뮤니티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다녀온 많은 젊은이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실감하고 이후 유대인 단체에서 일하거나 유대인 교사가 되었다. 니쉬(niche) 프로그램은 의대생, LGBTQ (성소수자), 음악가, 금융전문가을 위한 특별 방문 프로그램이다. 야브네 올라미(Yavneh Olami)는 종교 시온주의 조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뉴욕과 토론토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키부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공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소유 집단농장에서 숙박을 해결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울판(히브리어 언어 학습) 프로그램, 티쿤 올람(사회 정의 프로그램)과 각종 이스라엘 경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밖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공존 아랍어 학습 프로그램과 환경학 프로그램도 있다.[236]

표 Ⅱ-51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름	내용
타글릿 (Taglith, Birthright)	이스라엘 10일 무료 방문 프로그램
니쉬 (niche) 프로그램	의대생, LGBTQ (성소수자), 음악가, 금융전문가 등을 위한 프로그램
야브네 올라미 (Yavneh Olami)	종교 시온주의 조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키부츠 프로그램	키부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울판 (언어 학습) 프로그램, 티쿤 올람–사회 정의 프로그램과 각종 이스라엘 경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출처: 유대기구 웹페이지(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35) 생득권 웹 페이지..http://www.birthrightisrael.com/Pages/default.aspx에서 2015년 9월 11일 인출
236) 유대기구. 웹 페이지(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 공동체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Israel Tech Challenge)는 동포 유대인 학생과 이스라엘 현지 IT기술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컴퓨터 과학 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거나 벤처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이스라엘의 선두적인 기업인과 학자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실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영감을 얻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12일 동안의 무료 하이테크 체험 여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자 2개월 인턴쉽 , 펠로우쉽 프로그램- 5개월 훈련 5개월 인턴 프로그램이 있다. 글로벌 체인지 에이전트(Global Change Agents)는 유대 기구의 글로벌 리더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미, 남미, 유럽과 이스라엘 등의 여러 그룹의 또래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예술 분야의 훈련과 글로법 리더쉽 훈련과 개인 멘토도 제공한다. 마콘 젊은 지도자 훈련(Machon Youth Leadership Training)은 청년들을 위한 리더쉽 프로그램으로 1946년 세워졌으며 현재까지 12,000명이 참여했다. 매년 4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237]

(3) 히브리어와 대학입시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이주민의 히브리어 학습과 대학 입학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나알레(Na'ale)는 일명 세계 유대인 고등학교 또는 엘리트 아카데미로 불리며 이스라엘 학제 10학년 중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도록 장학금, 숙식 제공, 생활비, 다른 활동비도 지급한다. 현재까지 32개국에서 13,000명의 10대들이 프로그램 참여했다.[238]

마사 이스라엘 프로그램(Masa)[239]은 18~30세 제외동포 유대인 청소년들이 한 학기나 1년 동안(5~12달) 자원봉사, 인턴, 유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스라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북미 대학들은 전공을 정하기 전에 한 학기나 1년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사 프로그램 수학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65,000명 마사 프로그램 참여했다. 관련 프로그램, 갭이어(Gap Year), Study Abroad, 발런티어(Volunteer), 유대학(Jewish Studies), Teach in Israel 등이 있다. 갭 이어는

237) 유대기구. 웹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38) 유대기구. 웹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39) 마사 (מסע)는 히브리어로 여행이란 뜻이다.

북미 유대인 고등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1년을 이스라엘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쉽은 주로 첨단 과학기술 회사들이 제공하는 인턴쉽을 통해 기술을 익히거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발런티어 프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교육기관에서 영어 선생으로 자원봉사 가능하다(MASA Israel Teaching Fellows). 인권 단체 자원봉사는 아흐밧 아밈(Solidarity of Nations)이 있다.[240]

이스라엘 이민자를 위한 2가지 대학 준비 프로그램이 있는데 메키나(Mechina)와 타카(Taka)다. 메키놋(메키나의 복수형)은 이스라엘 대학에 입학 준비 프로그램으로 이민 청소년의 히브리어 학습과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타카는 이민 전에 대학 교육을 이미 받아서 메키놋이 면제되는 이민자들이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를 재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타카 프로그램은 무료 등록 가능하나 입시 시험을 위한 특별 코스는 강의료를 지불해야 한다. 타카 예루살렘(18~30세) 프로그램이 있고 타카 10 프로그램은 10개월 동안 히브리어와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241]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히브리어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키부츠 울판은 히브리어 학습과 집단 농장을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이다.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는 대신 숙식을 해결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울 있다. 현재 이스라엘 내 10개의 키부츠에서 발런티어를 모집 중이다. 울판 키네렛(Ulpan Kinneret)은 5개월 동안 히브리어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군복무 준비, 문화 활동 등을 포함한 초기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갈릴리 호수 서쪽 도시 티베리야스에서 실시된다. 울판 에찌온 네트워크(Ulpan Etzion Network)는 1949년 예루살렘에서 나이층 22-35세 이민자를 위한 히브리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이스라엘 주요도시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베이트 브로데쯔키 프로그램(The Beit Brodetsky Young Olim Program)은 5개월 동안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텔아비브 라맛 아비브에서 개설된다.[242]

(4) 상담 및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

헤 헤벤 센터(Hechven Center)는 키부츠와 에찌온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민

240) 유대기구. 웹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41) 유대기구. 웹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42) 유대기구. 웹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과 함께 직업, 교육, 심리, 문화, 경제 문제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커넥트 이스라엘(Connect Israel)은 새로 이주한 젊은 이민자들의 사회 모임으로 청년 도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것이다. 경력 워크숍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회와 연결되고 통합하는데 도움을 준다. 텔아비브에서 약 2,000 명이 매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가린 짜바르(Garin Tzabar)는 이민을 결정한 유대인 청년들이 이민 전 이스라엘 생활과 군복무에 대한 사전에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윙스는 가족 없이 혼자 이주한 젊은 이민 군복무자들의 상담 및 사회 적응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243]

8) 결론

귀환법에 따라 1950년 이후 약 28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유대인(손자 등)의 모든 후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에 따라 수십만 명의 비유대인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1948년 독립 이전에 6차에 걸친 대대적인 알리야를 수행해 독립 당시에 약 65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독립 이후 계속된 아랍세계, 서유럽, 소연방, 에티오피아로부터 대규모 알리야의 결과 현재 이스라엘에는 65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박동 외, 2009; 110).

표 Ⅱ-52 독립 이후 1990년대까지의 대규모 알리야

출신국가	이주자수	이주시기	특징
예멘	49,000	1948~1950	
이라크	127,000	1950~1952	
모로코	260,000		1970년대까지 68만여명 아랍계 유대인 이스라엘로 귀환
이란	59,000		
튀니지	56,000		
리비아	35,600		
터키	33,000		
이집트	29,000		
알제리	14,500		
시리아	4,500		

243) 유대기구. 웹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출신국가	이주자수	이주시기	특징
레바논	6,000		
서방계	30,000	1968	6일 전쟁 후 Call to Aliyah 프로그램 실시
	10,000	1969~1970	
소연방계	13,000	1989년말까지	
	190,000	1990	
	150,000	1991	
	65,100	1992	
	66,100	1993	
	68,100	1994	
	64,800	1995	
에티오피아	8,500	1984-1985	모세작전
	14,200	1991	솔로몬 작전

* 출처: 이진영 외(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p. 210.

이런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민 정책은 몇 가지 풀어야 할 난제가 있다. 첫째 누가 그 수혜자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 즉 유대인에 대한 정의이다. '누가 유대인인가?'라는 물음은 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지 않은 논쟁의 대상이었다. 1950년 국회에서 통과된 귀환법은 모든 유대인은 이민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에 정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그 후의 유대 율법적인 개념의 개정안을 보면 유대인 엄마에게서 태어나거나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 법은 모든 종류의 개종(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등)이 인정되며 또한 타 종교인과의 결혼에 의한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기회의 폭을 넓혀놓은 상태이다(정지영 2000; 84). 하지만 유대인의 정의에 있어 보수적인 정통파 유대인들과 좀 더 세속적인 디아스포라 거주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유대인 정체성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대인들 간의 계층 간의 반목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오랜 기간 동안 각국에 동화되어 온 유대인들은 피부색, 언어,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 성향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과 유대교를 믿지 않는 세속 유대인들 간의 반목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교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심한 반목마저 존재하고 있다. 종교뿐만 아니라 이민 출신 국가 간의 반목도 존재한다. 북미와 유럽 출신 유대인을 칭하는 아쉬케나짐 유대인과 중동 지역 출신 유대인을 의미하는 스파라딤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부유했던 아쉬케나짐은 이스라엘 국가 건설 초기 요직을 독식하게 되고 부의 대물림으로 후세에게도 이런 부가 대물림 되고 있다. 반면 스파라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류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에티오피아나 등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국가의 이민자들은 교육제도에 편입돼지 못하거나 이스라엘 사회의 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44] 따라서 경제적 취약 이민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더 확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재외 동포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를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재외동포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분야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종사자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 예술가들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45] 다시 말해 이민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에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잠재적 이민 동포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주요 민간 지원 단체 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협업으로 이민 장려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민간 지원 단체들이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246] 한국도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더 많은 민간단체가 세워져야 되고 더 나아가 이들 단체를 지원할 개인 및 단체들의 후원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스라엘 정부는 재외동포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에 매년 78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247] 우리 정부와 관련 부처도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체계와 규모 있는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군복무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우리나라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 장 큰 고민은 군복무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재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우리 군을 소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단순히 군복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무 기간 동안 한국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어 학습과 대학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

244)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웹 페이지 http://www.haaretz.com/israel-news/israel-s-absorption-of-ethiopian-immigrants-rife-with-failures-comptroller-report-shows.premium-1.5197960에서 2015년 10월 1일 검색

245) 유대기구, 홈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46) 유대기구, 홈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47)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웹 페이지 http://www.haaretz.com/blogs/jerusalem-babylon/why-is-no-israeli-minister-in-charge-of-relations-with-diaspora-jews.premium-1.525431.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에서 2015년 10월 23일 인출

제 Ⅲ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국가별 연구결과
2. 정책제언

제 Ⅲ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248]

1. 국가별 연구결과

5개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을 비교 분석해보면, 각 국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책 수립의 유무부터, 구체적 정책 및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첫째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현황, 둘째 이에 대한 법과 제도, 셋째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의 특색, 마지막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주는 시사점 등 네 가지이다.

1)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 혹은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즉,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배경 및 국민과 민족에 대한 개념 규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특성 상, 국적과 민족의 소속감 여부가 재외동포 규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개념 역시 각 국의 내부 사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별 상이성은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의 수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적극적인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국가부터, 사실상 정책 자체가 부재한 국가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재외동포 청소년을 바라보는 각 국가의 시각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재외동포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expatriat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재외동포정책이 독자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청소년에 대응하는 단어로 teenager를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13-19세에 해당한다.

248) 이 장의 1절은 이진영 교수(인하대학교)가, 그리고 2절은 김판준 교수(길림사범대학)가 집필하였음.

그러나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의해 미국 정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각 부처와 주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사실상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정책이 미국에서는 사실상 부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재외동포는 총 세 부류 인데, ①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 ②'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③'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가 그것이다. 그 결과 9-24세에 이르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 역시 세 부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좁은 의미에서는 '재외독일인'(Auslandsdeutsche) 혹은 영어 표현인 Expatriate(혹은 줄여서 Expat)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혹은 본국기관과 파견국기관 사이에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독일 내의 기업 내지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 대개 1년에서 5년에 걸쳐 - 국외로 파견된 전문인력 내지 선도인력'이 한국의 재외국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 반면 위의 ②, ③은 외국 국적 독일동포가 가지는 역사성에 근거한 재외동포청소년이다. 1953년에 제정(2013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연방추방자법'에 규정된 '후기재이주자,' 즉, 시기적으로 1992년 12월 31일 이후 구소련 지역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 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지를 떠나 6개월 이내에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즉 독일로 재이주 내자 귀환한 '독일민족귀속인'의 청소년을 지칭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독일정부가 재외국민인 전자에 대해 보이는 적극성과는 달리, 후자 즉 외국 국적 출신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나찌라는 민족주의의 발흥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유발한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이 그 배경을 형성하여, 제한적인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시 제한적인데, 해외에 거주하는 일계인을 국적구분에 의하여 일계인과 재외방인으로 구분하여 재외방인 중심의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계인(日系人)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 이주한 후 거주하는 해당국가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을 지칭하는데, 이들에 대한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것이다.

반면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은 명확한 개념 규정과 함께 잘 정비되어 있어 대조를

보인다. 중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를 국적에 근거하여 화교(華僑), 화인(華人)으로 구분하고 있다. 화교란 중국 국적의 해외거주자를 의미하며, 화인이란 외국 국적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혼혈 혹은 수 세대에 걸쳐 현지 거주국에 동화되었으나 중국인의 뿌리가 있는 후예를 화예(華裔)라 지칭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은 중국 국적인 화교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외국 국적인 화인 및 화예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적으로 군중 조직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소년선봉대 조직을 통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해외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스라엘로의 이주 후 정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개념 역시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나라로 이민 올 권리를 갖고 있다"는 조항으로 시작되는 귀환법 (Law of Return)에서 유대인은 모계혈통으로 유대인이거나 비유대인일 경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사실상 국민의 개념을 전 세계 유대인으로 확장하였다. 그 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 역시, 유대인으로 범주화되는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교 범위의 5개 국가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개념 자체가 부재한 미국의 경우부터, 재외국민이나 혹은 역사적 이유로 일부의 재외국민만이 포함되는 제한적인 개념의 일본과 독일, 명확하게 범주화하여 정의하는 중국, 그리고 확장된 개념 속에서 폭넓게 정의하는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각 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황은 물론, 그들에 대한 정책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재외동포의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100여개 국가에 약 220-760만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30-32).. 이 중 재외동포 청소년의 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반면 재외국민만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집계하는 일본의 경우, 통계는 비교적 정확하다. 201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약 7만 7,000명 정도의 의무교육단계의 일본인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249]. 그러나 재외국민에 한정한다 할지라도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독일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전 세계 71개국에서 140개 이상의 해외 독일학교와 DSD를 제공하는 870개 이상의 현지 학교의 학생 수가 79,000명이며, 그 중 58,000명이 비 독일인이기에,

249) 일본외무성. 해외체류 방인 자녀수 조사 자료:(1991년까지는 5월 1일, 1991년 이후는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6/shiryou/04111901/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약 21,000명 정도로 추정할 뿐이다[250]. 독일의 소극적 태도는 2차대전 발발에 대한 국제적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며,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인 해외독일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중국의 경우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방대한 해외 거주 인구와 다양성 때문에 체계적정리가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중국의 경우 해외 210개 '화문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점에 기초하여[251], 대략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화인소년 작문대회는 전 세계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2014년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참가 작품수가 20만 건을 상회하며, 수상자만 해도 1만 6천여 명[252]에 이르는 등 방대한 규모임에 비추어 보고,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인구로 추정되는 화교 화인을 고려할 때 수백 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해외보다는 오히려 국내로 입국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의 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해외 거주 유대인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국가가 형성 유지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황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법과 제도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제도는 위 개념 부분의 결과에서 짐작하듯이, 다른 국내외 정책에 대한 법과 제도와 비교할 때 아직 체계적인 입법 및 제도화 단계에 이르렀다 할 수가 없다. 개념 부분의 영향을 제외하고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인 가장 주된 이유는 정책의 대상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특성 때문이다. 즉 정책의 집행에 있어 사실상 효과성이 낮고, 실제 집행력이 역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권의 문제는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법제화에 있어 국내적인 면에 초점을 둔다든지, 혹은 국내로 유인하는

250)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 (ZfA). Retrieved June 07, 2015, from http://www.auswaertiges-amt.d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Auslandsschulwesen-ZfA_node.html. 한편 '중앙기구'의 홍보사이트에 따르면 독일학교를 포함해 '중앙기구'에서 지원하는 해외학교의 수는 주말 학교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1,200여 개에 달한다.

251)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 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252) 화인소년작문대회. 웹 페이지 http://www.huarenzuowen.com/newsitem/38993,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는 형태가 보편적인 특색을 이루고 있다. 혹은 법과 제도의 수립을 통한 정부의 공식적인 간여보다는,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제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재외동포 자체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부재한 미국은 고유의 연방제라는 제도의 특성에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정부는 연방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각 부처와 주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연방 정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법령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주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와 그들의 자녀는 자신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에 있어 (세금, 재외동포 자녀 시민권 취득 자격 조건 등) 자신이 속해있는 해당 주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화교화인 거버넌스는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정책 기관, 사업단체, 지역별, 직능별 커뮤니티라는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화교화인 업무의 총괄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무판공실은 중국내 지방 조직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반면에 대표적인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은 협력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1990년에 설립 된 중국해외교류협회(中國海外交流協會)와 2004년 설립 된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國華文教育基金會)가 대표적이다. 중국해외교류협회는 중국 전역 47개 성급, 시급 지부 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해외 화교화인 사회의 유력 인사를 이사진으로 포괄하는 등 화교화인 사회와의 인적 네트워를 구축하고 있고[253], 중국화문교육기금회는 정부 부처 담당자를 당연직 이사로 위촉하고 해외의 화교화인 교육체계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두 단체는 모두 법인 정관상에 국무원 교무판공실의 업무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역시 두 단체 모두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같은 주소지 건물로 되어 있다. 즉 정부와 사회단체가 사실상 하나이지만, 창구를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의 청소년정책은 2000년 새로 편성된 관계성청이 청소년에 관한 각 분야의 정책을

253) 중국해외교류협회. '단위 회원' 웹 페이지 http://www.coea.org.cn/, 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분담하고 내각부가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 등을 맡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명확하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법과 제도는 부재하며, 구체적인 법과 제도화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추진 체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일본정부는 2014년 4월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계획'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대처라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재 해외 유학중인 일본국적 대학생을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고등학생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020년까지 재외방인 해외유학생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254]. 이러한 목적 하에 재외국민 청소년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간헐적으로 정비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의 기조가 그대로 법과 제도에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어떤 '재외동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첫째,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집행을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형태와 둘째, 거꾸로 정부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라는 큰 그림만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뿐 구체적인 정책 내지 사업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 같은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조달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과 같은 민간기구가 전담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사실상 민간 위주의 구조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재외동포에 대한 명시적 법과 제도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귀환법 (Law of Return)이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유대인은 이민자 (oleh, olim)로서 이 나라에 들어 올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재외동포 청소년도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특히 귀환법은 1970년 귀환의 권리를 유대인 조부모를 가진 비유대인과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제도에 있어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부부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국내이주를 돕기 위한 이민자 수용부와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기 위한 디아스포라부다. '디아스포라부'는 부처 자체는 크지 않아서 전담 직원은 35명이며 연간 예산도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다(인하대 산학협력단, 2013: 214). 즉,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 초점은 귀환이지, 해외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제한적이다. 이 점은 유대인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해외의 유대인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민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254) 내부무.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시도,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있다. 세계 시온주의기구(WZO)와 유대기구(JAFI)는 전 세계 유대인들의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스라엘 정부 사이에 제도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유대기구는 비영리단체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다. 민간 기구 중 네페쉬 베네페쉬(Nefesh B'Nefeshi)는 알리야 (Aliyah, 이스라엘로의 유대인 이민)를 지원 및 격려 하는 조직이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특징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외동포 관련 법에서 재외동포 청소년에 해당하는 조항이 발견된다든지, 혹은 제도적 측면에서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에 초점을 둔 법제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 역시, 각 국의 재외동포 혹은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지향점이라는 상황을 잘 반영하여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스라엘로의 귀환에 초점을 두다 보니, 외국 현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제도보다는 귀환 제도가 두드러지며, 독일의 경우는 민간에 위탁되는 비율이 높은 제도적 특징을, 중국의 경우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라 하나 사실상 정부와 같은 건물에 민간 기구가 존재하는 특징에 나타나듯 정부 주도의 비공식 채널이라는 제도적 특성이 보이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사실상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다만 해외 주둔 미군의 자녀나 외교관 등의 자녀 교육에 초점을 두는 간접적인 지원 제도만 존재할 뿐이다. 일본의 경우 역시 재외국민 교육에 초점을 두는 형태의 제도화를 보일 뿐이다. 즉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법과 제도화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그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은 국내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특성과, 그 결과 인구 규모의 파악과 정책의 집행 효율에 있어 어려움이 잇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구체적 정책과 프로그램,

그렇다면 각 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미국의 경우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사실상 재외국민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한 명이라도 미국시민인 부모아래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고, 18세가 되면 참정권이 주어진다. 이는 시민적 권리이며, 그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해외의 미국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다. 해외 학교는 국방부와 국무부 소속으로 나눌 수 있다. 국방부 소속학교는

현재 172개교이며 74,017명의 미국 자녀들이 재학 중이다(DoDEA, 2015)[255]. 반면 국무부 소속 학교는 현재 약 136개국에 196개교이며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34,867명이다(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 2015). 그 중 미국 청소년은 36,409명에 (27%) 불과하다[256]. 재외동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미국 정부 보다 민간단체가 더욱 활발한데, 이 중 해외미국여성연맹 (FAWCO)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1년 두바이의 미국여성협회에서 만든 아메리카나 프로그램은 3세에서 10세 정도의 재외동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긍정적인 환경 안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재외동포 청소년을 집단에 초점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부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표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은 화문교육기지 및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정책이다. 전 세계에 걸쳐 약 5000여개가 있는 해외 화문 · 중문학교 중 일부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257], 중국 내 화문교육기지와 교육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이다.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은 1990년대 이후 화교화인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화(中華)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1993년에 시작되어 매년 1회 개최되는 '화인소년작문대회(華人少年作文比賽)', 1999년 시작되어 여름과 겨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국뿌리찾기여행(中國尋根之旅)', 그리고 2011년 시작된 '중화문화대낙원(中華文化大樂園)'과 '해외화예청소년중문노래대회(海外華裔青少年中文歌曲大賽)'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해외화예청소년중화문화대회(海外華裔青少年中華文化大賽)'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9년 시작된 '중국뿌리찾기여행(中國尋根之旅)'은 재외동포 청소년의 대표적인 모국 방문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다.

일본의 경우 앞서 언급한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계획' 등이 구체적 정책이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JICA의 '청년해외협력대(JOCV)'의 해외파견 사업은 그 대상이 재외동포 청소년은 아니지만, 일본 국내 청소년의 파견을 통하여 교류하게 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중국의 '중국뿌리찾기여행'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 재미일계인 사회에서 일계인과 비일계인 등 어느 한쪽의 조상을 가진 청소년, 일본인 미국 영주자(신 일계인 1세)의 부모를 가진 신일계인 청소년에게 일본인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고 장래 일본과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255)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 (DoDEA). http://www.dodea.edu/에서 2015년 9월 28일 인출.
256) Department of State. American-sponsor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verseas. Worldwide fact sheet 2014-2015 부분 재인용. 2015년 5월 20일 인출.
257) 천전(陈真)(2007), "国际化背景下华文教育发展趋势及影响研究," 『云南师范大学学报』,39

사업목표는 신일계인 청소년 가운데 유망한 청소년을 선발과 일본 초청으로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거나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 및 홈스테이를 통해 확고한 대일관을 형성하게 하여 친일파, 지일파를 양성하는데 있다. 물론 재외국민에 초점을 두는 일본의 특성상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지원이 중요한 분야이다. 일본 문부성의 의무교육단계의 재외방인 교육지원정책은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에 현지교원 파견, 시니어 교원 파견, 교재정비추진, 안전대책, 지도안 작성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과 민간기구 주도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은 해외에 세워진 독일(국제)학교와 공인된 '독일어 어학 증명'(DSD)을 발행하는 현지의 학교가 그것이다. 그러나 재외독일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재외독일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대 민간협회는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와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일인과 모국인 독일 사이의 '문화적 매개자'로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및 그들 공동체의 언어, 문화, 습속 등의 유지와 장려, 국제교류 내지 교환의 장려, 장학사업의 수행, 해외 독일 매체에 대한 지원, 교육, 문화, 학문, 연구 등을 위한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시설(대표적으로 학교, 도서관, 각종 협회 등)에 대한 문화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재외동포 청소년의 귀환에 초점을 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스라엘 10일 무료 방문 프로그램인 타글릿 (Taglith, Birthright), 의대생, LGBTQ (성소수자), 음악가, 금융전문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인 니쉬 (niche) 프로그램, 종교 시온주의 조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야브네 올라미 (Yavneh Olami), 키부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울판 (언어 학습) 프로그램, 티쿤 올람-사회 정의 프로그램과 각종 이스라엘 경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키부츠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공동체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인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 (Israel Tech Challenge)는 동포 유대인 학생과 이스라엘 현지 IT기술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컴퓨터 과학 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거나 벤처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이주민의 히브리어 학습과 대학 입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다. 나알레 (Na'ale)는 일명 세계 유대인 고등학교 또는 엘리트 아카데미로 불리며 이스라엘 학제 10학년 중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도록 장학금, 숙식 제공, 생활비, 다른 활동비도 지급한다. 마사 이스라엘 프로그램 (Masa)은 18-30세 재외동포 유대인 청소년들이 한 학기나 1년 동안(5-12달) 자원봉사, 인턴, 유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사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갭이어 (Gap Year), Study Abroad, 발런티어 (Volunteer), 유대학 (Jewish Studies), Teach in Israel 등이 있다. 이스라엘 이민자를 위한 2가지 대학 준비 프로그램, 메키나 (Mechina)와 타카 (Taka)도 있다. 즉 이스라엘의 경우 매우 세심하게 디자인된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및 귀환 프로그램 그리고 정착 프로그램이 있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선, 이스라엘이 가장 체계적이고 세밀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만 이스라엘로의 귀환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단계별로 귀환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면서, 해외에 거주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미약한 형편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귀환보다는 현지에서의 화교 화인 정체성을 유지시키려는 다양한 교육 및 방문 프로그램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언어와 문화에 대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적 재외동포 청소년 자체보다는 국내 일본 청소년의 파견을 통한 그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재외국민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은 국민의 권리인 교육에 치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재외동포라는 개념보다는 해외 파견 미국인 자녀의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재외독일인을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각 국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각기 독특한 특색으로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우수인재 유치와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5개 국가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의 목적과 지향, 추진 체계의 제도화, 구체적 프로그램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재외동포 개념의 외연은 어디까지인가?

한국의 경우 중국과 가장 유사한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국적을 기준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적동포로 나누어 재외동포를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구체적 범주와 외국적동포의 외연을 살펴볼 때 그 대상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 국적

소지자로 범주화하더라도, 미국의 영주권자나, 일본의 사실상 무국적자라 할 조선적의 경우 그 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는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이 그 국민 개념 규정에서 북한인을 포함하는가 여부이다. 왜냐하면 해외 거주 북한인의 경우 재외국민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사실상 우리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개념의 구체성은 특히 국민의 중요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연관되어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재외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을 하려면 지원과 함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적동포의 범주 역시 모호하다. 인종적 혼혈, 세대 여부, 입양아, 배우자의 포함 여부 등이 외국적동포 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혈연에 기초한 한민족 개념과 국적 구분에 기초한 재외동포 개념이 혼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국민과 민족의 대립인데, 국내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새로 규정된 한국인의 해외 친척을 어떻게 범주화하는가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 국적의 귀화 베트남인의 경우, 해외 거주하면 재외국민이지만 그 자녀나 친척 등의 한민족 포함 여부는 쟁점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그 대상은 넓어지고,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 역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인재인가? 민족 정체성인가? 시민교육인가?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 연관된 두 번째 질문은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지향점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보고서의 다른 목적 중 하나인 인재유입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를 위한 재외동포 청소년의 인재 육성인지, 아니면 한민족으로서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재발견하게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혹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한민족이 후예를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가령 일본정부의 일본국내 청소년 및 재외방인 청소년 정책은 일본국내의 글로벌화와 해외거주 재외방인 청소년의 일본화(내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일본 청소년의 해외 파견이며, 재외국민 중심의 교육 지원체계에 초점을 둔 지원 방안이고,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큰 정책이 없이 일본 방문을 통한 정체성의 재발견 프로그램 일부만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중심에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 정책, 즉 ‘사회통합강좌’가 자리하고 있다. 이 ‘사회통합강좌’의 경우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바, 언어의 습득에 더해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 의 이수를 사회통합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다. 언어의 습득 못지않게 민주시민교육 여부가 사회통합의 열쇠가 된다는 발상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경우처럼 처음 단계부터 모국귀환 지원과 현지화 지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은 한편으로는 조선족과 고려인의 현지에서의 지원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을 전후 한 북한 주민의 대량 이주에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조선족, 고려인, 탈북자 등 북한인이라는 대상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적 차별 금지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의 배제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위의 동포뿐 아니라, 새로 일원이 되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한류 등의 확산으로 인한 해외 ‘준 한국인’의 범위가 넓어져 새로운 지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추진체계의 제도화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국가는 없었다. 다만 각 국가는 자신들의 시각 및 목적에 맞게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이다. 외국 사례를 볼 때,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 법령의 필요성이 있는가? 법적 제도화가 아니라면 어떠한 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사업과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인가?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무원 교무판공실이라는 정책 추진기구의 존재와 한화 1조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고, 두 번째는 중국내 37개 ‘화문교육기지’ 및 해외 210개 ‘화문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교화인 청소년 사업 추진 단체로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국화문교육기금회를 설립하여 정책 기구인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함께 화교화인 교육문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의 정치 체계가 가지는 성격이 사회주의적이고 고도의 중앙집권적 특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사항은 중국의 추진 체계가 가지는 유연성과 함께 네트워크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은 물론, 정부와 준 민간 기구, 중국과 해외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한국의 경우 별도의 법령과 제도 혹은 통일적인 제도화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정책 추진 체계 내에서의 유연한 연결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재외국민 및 외국적 동포 교육 추진 체계 정비가 대표적인 것이다. 가령 가칭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새로 설립한다고 하여도,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가 부재하면 그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각과 한국의 지향점에 적절한 추진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구체적 프로그램들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5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귀환 혹은 이민 혹은 인재 유입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체성의 유지 및 발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한국 방문을 통한 뿌리찾기와 같은 모국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스라엘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독일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듯이 재외한인들이 한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권유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사례이다.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및 기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수단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성취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국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추후 한국 방문 및 재능 기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점차 쌍방향의 교류와 책임의식이 막연한 혈연에 기초한 정체성의 확보보다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개국의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2.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제언

1)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고려

(1)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특징과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 된 법규는 1999년 공포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입법 당시 크게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였다. 하나는 혈통적 · 국가 정통성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 한 재외동포까지 포괄하는 법 제정에 대한 시각이었고, 또 하나는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 그리고 국내 노동시장 수용의 한계라는 시각의 대립이었다. 당시 국내 대표적인 불법체류집단을 형성한 중국 동포의 급격한 증가를 경계한 것이었다. 결국 외교부와 노동부의 정책적 시각이 반영되어 최초 제정 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가 제외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의 제기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1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 전개는 입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해 재외동포들은 외국국적이라는 신분, 즉 외국인 일반에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F-4)과 함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자격(H-2), 단기방문자격(C-3) 등 체류 목적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고 있으며,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는 유학자격(D-2)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에는 구소련 지역 출신 고려인의 국내 입국과 정주화 경향으로 인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초기 외교적 · 이주노동자 시각을 중심으로 출입국과 체류자격에 국한하여 입법화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으며, 정부 부처 내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전담 부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약하였다. 다만 최근 재외국민 선거권의 이슈화로 인해 국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와 관련 된 정책 논의들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2) 법·제도 측면에서의 현실적 접근 방안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특수목적법에 대한 수요가 있다.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특수목적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외동포교육진흥법', 또는 '재외동포교육기금법'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기능이 예산집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을 전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화문 및 중문학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력 인증 과정과 교사 자격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교사 연수와 교안 대회, 교육 행정자 연수 등을 조직함으로써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구소련 지역 고려인의 한국 가족 이주에 따른 청소년 교육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안산 뗏골과 광주광역시 월곡동에 고려인 집중 거주지가 성장, 그리고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고려인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동포의 가족 동반 한국 정주화가 증가하면서 동포 청소년을 위한 교육 모형 또한 필요하다. 이는 기존 국내 다문화 범주에서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가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단체 설립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의지도 필요하다.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 시행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간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해 재외동포 거주국가를 대상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민간의 '사회단체' 육성 또한 필요하다. 즉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법 입법 과정에서부터 재외동포 거주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문제가 이슈화 되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를 통한 재외동포 청소년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사회단체 육성법을 통해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국화문교육기금회'라는 사회단체를 설립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화교·화인에 대한 글로벌사업 추진 체계를 갖췄다. 따라서 한국 사회 역시 중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재외동포 사업을 담당할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사업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사회단체 육성을 해온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 즉 현재 UN경제사회이사회로 등록된 단체인 사)새마을운동중앙회와 사)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단체는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을 통해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의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3) 법 · 제도 측면에서의 중장기 제도화 방안

중국은 화교화인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 기구로 국무원 직속의 교무판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교무판공실로 행정적 수직화가 구축되어 있다. 이스라엘 또한 해외 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정착을 위한 정책 부서로 이민자 수용부가 있으며, 해외 유대인을 지원하는 디아스포라부 또한 설치되어 있다. 즉 중국과 이스라엘은 재외동포 정책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내 타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정책기구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교무판공실은 한국의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처'급에 해당하며, 이스라엘의 이민자 수용부는 '부'급에 해당된다. 반면에 한국은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단지 외교통산부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재단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체계는 갖추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독자적인 수립과 타 부처와의 협력, 그리고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2) 재외동포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1) 재외동포 청소년 사업 현황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청소년 사업은 중국, 이스라엘 청소년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왜소함을 느끼게 한다. 2015년 18회째를 맞이한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 사업'을 중국, 이스라엘의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 중고생팀 400명, 대학생팀 250명이 각각 모국 연수의 형태로 한국을 약 일주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업이며, 2015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258]. 이는 중국의 '중국뿌리찾기여행',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글렛(생득권)' 프로그램

258) 재외동포재단의 '2014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 에 의하면, 2014년 청소년 모국 연수의 참가 규모는 중고생 초청연수 해외 51개국 416명, 대학생 초청연수 해외 26개국 227명이었다. p27 참조

과 비교가 가능하다. 즉 중국의 '중국뿌리찾기여행'의 경우 중국 각 지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캠프가 정착되어 있고, 언어, 문화, 대상별 다양한 주제 캠프들이 개발되어 있음으로 인해 해외 청소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이러한 지방화와 주제화를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의 '타글릿(생득권)' 프로그램 또한 매년 약 9천여명의 유대계 해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의 정책 의지와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재외동포재단의 역량과 사업추진체계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재외동포재단의 청소년 대상 사업은 모국 연수 외에는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장학사업의 형태, 그리고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주제 글짓기 사업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다양한 재외동포 청소년 프로그램,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양한 모국 체험 프로그램과는 비교할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것이다.

(2) 재외동포 청소년 사업 확산을 위한 현실적 접근 방안

재외동포재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책 역량 부족은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정책 기관의 역량을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한다. 일본의 경우 해외 우수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문부과학성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중국 교육부가 재외동포 청소년의 중국 진학과 연관 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재외동포 관계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 중 교육부는 17개국 39개 한국교육원이라는 물적 토대를 해외에 갖추고 있으며[259], 재외동포사회와 한글, 역사, 문화 방면의 교육에서 결합 할 수 있다. 또한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한 해외 현지 연수와 교안 개발 등 재외동포 교육 네트워크와 결합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또한 갖추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이 해외에 독자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교육부의 물적 토대와 파견 교사들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접근 모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거주국별 재외동포 통합 지원 역할로 '재외동포 교육·문화 허브센터'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원이 수행하는 방안,

259) 재외동포재단의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p.3 참조, 재외동포재단 2014년 10월.

이러한 거주국 '재외동포 교육·문화 허브센터'를 통해 거주국 상황에 맞는 교사 연수, 교재 개발, 교안 연구, 교육 ·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운영되는 현실적인 접근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 재외동포재단 등이 추진해 온 교사 연수, 청소년 프로그램 등은 한국으로의 초청 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적은 인원이 수혜를 받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한국교육원과 같은 기존 교육 시설을 '재외동포 교육·문화 허브센터'로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거주국 청소년 협력을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거주 국가별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과 상황에 따라,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유형도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중국과 일본 동포사회가 그러하다. 중국에는 중국 교육 체계에 속해 있는 조선족 학교가 약 250여개 있고, 한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외교적 문제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조선 학교가 60여개 운영되고 있으나 조총련 계열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정부 기관으로써는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 그리고 가장 많이 한국사회와 접촉해 온 일본의 동포 사회가 정부 기관으로써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비교 연구 국가인 이스라엘, 독일,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민간 영역의 접근과 사회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 기관간의 자매결연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사회적 결합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거주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모형이 필요하다. 정규 교육 기관을 갖추고 있는 중국과 일본 동포사회, 그리고 주말 한글학교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동포사회 커뮤니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 주체와 접근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즉 거주국 협력과 접근 모델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주국 로컬에서의 교육 · 문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 국내 재외동포 청소년 프로그램 협력에 대한 검토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과 이스라엘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국가의 행정망과 지역의 사회단체가 결합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역시 소수 선발자를 위한 행사라는 비판, 그리고 매년 연수 프로그램이 비슷함으로 인해 1회용 방문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의 다양화와 주제화를 담당할 기관 협력이 필요하며, 모국 연수를 원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와

연수 기간이 고려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즉 중국의 경우 언어와 문화, 지역과 역사, 춤과 무술,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제 캠프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역의 관련 전문 기관이 청소년 대상자에 특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 협력 체계를 통해 세계 화교·화인 청소년 모국 연수를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류와 관련된 주제인 태권도, 한국어, 음식문화에서부터, 전통무용&사물놀이, 역사문화 체험과 환경 등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는 모국연수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서론 및 결론 자료>

内閣部.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시도'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이진영, 박우(2012). **차세대 재외동포를 지향하는 미래 한국 발전 전략**.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진영·강성봉·김판준·임영언·정호원(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무성.'해외체류 방인 자녀수 조사 자료'(1991년까지는 5월 1일, 1991년 이후는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6/shiryou/04111901/004.htm 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 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중국해외교류협회. '단위 회원' 웹 페이지 http://www.coea.org.cn/, 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재외동포재단(2014).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재외동포재단.

화인소년작문대회. 웹 페이지 http://www.huarenzuowen.com/newsitem/38993,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陈真(2007). **国际化背景下华文教育发展趋势及影响研究.** 云南师范大学学报. 38-44.

Department of State. American-sponsor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verseas. Worldwide fact sheet 2014-2015 부분 재인용. 2015년 5월 20일 인출.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ZfA).http://www.auswaertiges-amt.de

/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 gend/Auslandsschulwesen-ZfA_node.html 에서 2015년 6월 7일 인출.

<미국 재외동포 관련 자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2). A reference for professional developing adolescents. Washington, DC. Internet Document.
http://www.apa.org/pi/families/resources/develop.pdf에서 2015년 7월 2일 인출.

American women living long-term In France(AAWE).
http://aaweparis.org/pages/index.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American Citizens Abroad(2011). https://americansabroad.org/에서 2015년 6월 13일 인출.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education(AAIE).www.aaie.org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AARO).(n.d.). https://aar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Benson, M., & O'Reily, K(Eds.)(2009). Migration and the search for a better way of life:A critical exploration of lifestyle migration. Sociological Review. 57, 608-625.

Bureau of Consular Affairs.(n.d.)http://travel.state.gov/content/travel/english.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Cohen, E.(1977). Expatriate communities. Current Sociology, 24, 5-90.

D'Andrea, A.(2007). Global Nomads: Techno and new age as transnational countercultures in Ibiza and Goa. Abingdon, New York: Routledge.

Democrats Abroad(DA).(n.d.).
https://www.democratsabroad.org/group/da-internationa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DoDEA).(n.d.) http://www.dodea.edu/에서 2015년 9월 28일 인출.

East Asia Regional Council of Schools (EARCOS).(n.d) https://www.earcos.org/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FAWCO.(n.d.). http://www.fawc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2014). http://www.fvap.gov/vao/va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Flick, F. E., & Yun, L.(2007). Americans buying homes abroad: Trend indicators and some

initial estimates. Research Divis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White Paper.
Fulbright(n.d.). http://eca.state.gov/fulbright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Hong Kong International School.(2014-2015). Fact Sheet. 2014-2015. Hong Kong: Hong Kong International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IIE).(2013). http://www.iie.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IBO, 2015, http://www.ibo.org/programmes/diploma-programme/ 2015년 9월 1일 인출.
Juvenile Law Center.
http://www.jlc.org/news-room/media-resources/youth-justice-system-overview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Klekowski von Koppenfels, A.(2014). Migrants or expatriates? Americans in Europ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Klekowski von Koppenfels, A.(2015). Americans abroad: A disillusioned diaspora?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americans-abroad-disillusioned-diaspora 2015년 10월 30일 인출.
Klekowski von Koppenfels, A., & Costanzo, J.(2013). Counting the uncountable: Overseas Americans. Migration Information Source(May 2013).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counting-uncountable-overseas-americans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americans-abroad-disillusioned-diaspora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Office of Overseas Schools(OOS).(2015).
http://www.state.gov/m/a/os/index.htm에서 2015년 10월 1일 인출.
OVF Research Newsletter(2009)Office of Overseas Schools. Family resources:DoD education activity schools. Millitary.com: Benefits & Resources.
http://www.military.com/Resources/ResourcesContent/0,13964,31992-mil_status_active-1,00.html에서 2015년 10월 1일 인출.
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n.d.)

http://www.state.gov/m/a/os/c6971.htm에서 2015년 5월 20일 인출

Republicans Abroad International(RAI).(2015).

http://www.republicansabroad.org/ 에서 2015년 5월 8일 인출.

Smrekar, C., Guthrie, J. W., Owens, D. E., & Sims, P. G.(2001). March toward excellence: School success and minority student achievement in Department of Defense Schools. A report to the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Lessons from the States. National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Education, Washington, DC,;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N. Peabody College.

Starkweather, S.(2010). Contributions by American citizens living abroad. 1991-2008. Overseas Vote Foundation Research Newsletter, 2(2), 2-5.

Simpson, R. J., & Duke, C. R.(2000). American overseas schools. Bloomington, IN: Phi Delta Kappa Foundation.

Smith, C. M.(2010). These are our numbers: Civilian Americans overseas and voter turnout. Overseas Vote Foundation Research Newsletter, 2(4), 5-9.

Smith, C. M.(2014). Bridging the gap: Practicing politics vs. studying politics. Overseas Vote Foundation Research Newsletter, 4(3), 3-5.

Singapore American School.(2014-2015). Fact Sheet. Singapor: Singapore American School

Taipei American School(2014). Annual Report. Taipei: Taipei American School.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2014-2015). Fact sheet. Hanoi: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2013-2014) Annual Report. anoi: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

Toytown Germany.(n.d.). http://www.toytowngermany.com/search/?q=international+school+in+berlin 에서 2015년 8월 20일 인출.

Toze, D.(2015). Personal communication Interview with a Manila school administration(2015년 9월 6일). (개인메일로 문의한 내용을 정리)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01). https://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overseas/overseas-congress-report.html에서 2015년 6월 12일 인출.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2015a). American-sponsor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verseas. Worldwide fact sheet 2014-2015. http://www.state.gov/m/a/os/c1684.htm에서 2015년 6월 29일 인출.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3.4.10). Executive budget summary-function 150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Fiscal Year 2014. http://www.state.gov/s/d/rm/rls/ebs/2014/pdf/index.htm에서 2015년 7월 15일 인출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2013.4.10). Highligh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and U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udget. Fact Sheet. http://www.state.gov/r/pa/prs/ps/2013/04/207281.htm에서 2015년 7월 15일 인출.

United Sates Department of State(2015). Selected activities of the office of overseas schools, http://www.state.gov/m/a/os/c16358.htm에서 2015년 4월 7일 인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n.d.). http://www.uscis.gov/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U.S. Department of States(USDOS)(n.d.). http://www.state.gov/에서 2015년 5월 8일 인출.

Whitmer, C.(2010). When citizenship doesn't equal voting rights. Overseas Vote Foundation Research Newsletter, 2(4), 10-11.

<중국 재외동포 관련 자료>

국무원 교무판공실. '2014년도 보고, ''기능과 역할''웹 페이지 http://www.gqb.gov.cn /zwgk/에서 2015년 6월 10일, 9월 1일 인출.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귀국학생 수용학교 웹 페이지http://www.joes.or.jp/g-kokunai/indes.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일본인 학교의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aigai/index.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http://www.niye.go.jp/services/plan/natural_experience.html에서 2015년 6월 26일 인출.

김판준(2015). 화교화인 청소년 정체성 함양을 위한 중화문화 프로그램 연구. **재외한인학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 11~34.

김판준(2015). 중국의 화교화인 역사·교육·문화 네트워크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 35호,** 125~149.
바이두백과. '청소년'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 /link?url=IypstpdEoywOlKhWg1zqqL3t7Dg-TmM3T-DduprIuVTg_5KnCre8A0qt4zbe6Ucq6oq3yk0VLNaXChirzSWqO9mk9gRi0XJhOciylfP1suC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백과.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웹페이지http://baike.baidu.com /view/20997.htm?fromtitle=%E5%85%B1%E9%9D%92%E5%9B%A2&fromid=215034&type=syn.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백과. '중국소년선봉대'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 /view/62980.ht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백과. '청년'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20565.ht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 백과. '화교화인'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 /view/1066153.ht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백과. '화예'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view/71292.ht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백과. '신화교'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 /money.163.com/06/0904/08/2Q5QJA7T00251OBC.htm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웹 페이지 http://www.clef.org.c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중국화문교육망. 웹 사이트 http://www.hwjyw.co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중국화문교육망. '중국뿌리찾기여행 지방캠프 개최'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activity/activity-dfy/index57.s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중국화문교육망. '华教资讯/基地院校'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 /info/info-jdyx/index20.shtm.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중국화문교육망. '세계화문교육대회 1회 대회'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news/200908/t20090804_30651.sht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중국화문교육망. '2012 중화문화대회 참가 안내문'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content/2012/02/22/23662.sht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중국화문교육망. '院校动态 사업 소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info-yxdt/index12.shtml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중국화문교육망. '청소년활동 신문 기사 2012년 12월 25일, 2013년 12월 27일 일자'웹

페이지 http://www.hwjyw.com/ /search/search.jsp?channel=zw&sort=pubtime&q=%E4%B8%AD%E5%8D%8E%E6%96%87%E5%8C%96%E5%A4%A7%E4%B9%90%E5%9B%AD&field=null&start=30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중국해외교류협회. 웹 페이지 http://www.coea.org.c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재외동포재단(2014a).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서울: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2014b).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3**. 서울: 재외동포재단.
刘华, 程浩兵(2014). 近年来海外华文教育发展的现状、问题及趋势. 东南亚研究. 82-88.
陈真(2007). **国际化背景下华文教育发展趋势及影响研究**. 云南师范大学学报. 38-44.
李嘉郁(2009). **近年来华裔青少年中根之旅夏令营活动的特点和发展趋势**. 八桂侨刊. 28-31
丘进 主编(2011). 华侨华人蓝皮书.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일본 재외동포 관련 자료>

KAKEHASHIプロジェクト. 가케하시 프로젝트(架け橋プロジェクト) 웹 페이지https://www.jpf.go.jp /j/project/intel/youth/kakehashi/에서 2015년 6월17일 인출.
公益財団法人海外日系人協会. 日系人居住地域http//www.jadesas.or.jp/aboutnikkei/index.html에서 2017년 7월 2일 인출.
教育基本法. '교육기본법' 웹 페이지 http://law.e-gov.go.jp/htmldata/H18/H18HO120.html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国立青少年教育振興機構. '청소년 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 웹 페이지 http://www.niye.go.jp/services/plan/natural_experience.html에서 2015년 6월 26일 인출.
国务院侨务办公室(2014). 国务院侨务办公室 2014. 年度部门决算. 4.
国際交流基金日米センター. 日系アメリカ人との交流事業 http://www.jpf.go.jp/ cgp/exchange/jald/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共生社会政策. 若者育成支援 http://www8.cao.go.jp/yout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네이버. '서울일본인학교' 웹 페이지에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ungjin2002&logNo=170859811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네이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사전' 웹 페이지에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20514&cid=55784&categoryId=56488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內閣部. 웹페[이지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5902012.htm, 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內閣部. '청년국제교류사업'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 youth/kouryu/data/core.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內閣部. '청소년연령구분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 youth/whitepaper/h20honpenhtml/html/sanko_02.html에서 2015년 7월 2일 인출.

內閣部.'청소년 정책' 웹 페이지에서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5902012.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內閣部. '青少年政策' 웹 페이지에서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內閣部. '청소년 행정의 종합적 추진' 웹 페이지에서 http://www8.cao.go.jp/youth/suisin/houkoku/c_1.htm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內閣部.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시도'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內閣部. '若手リーダー育成プログラム' http://www.bosch-career.com/ja/jp/joining_bosch_jp/graduates_jp/junior_managers_program_jp/junior-managers-program.html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다음. 서울일본인학교경영방침 웹 페이지에서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東京情報大学情報サービスセンター. '改訂出入国管理法'http://www.iic.tuis.ac.jp/edoc/journal/ron/r13-2-4/r13-2-4b.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東京学芸大学.'国際教育センター'. http://crie.u-gakugei.ac.j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東京学芸大学. '日本における外国人教育政策の現状と課題'http://iminseisaku.org/top/pdf/journal/001/001_042.pdf#searc,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고등학생유학촉진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koukousei/1323960.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귀국아동학생 수의 동향'웹 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5/08/13/1291579_10.pdf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文部科学省. '교육시설 활용 청소년 교류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ports/

ikusei/kouryujigyou/index.htm에서 2015년 6월 27일 인출.
文部科学省. '슈퍼글로벌 하이스클 사업' 웹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kyoiku_kenkyu/index.htm?utm_medium=twitter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귀국자녀 혹은 외국인학생' 웹 페이지 http://www.casta-net.jp/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文部科学省. '세계각지의 교육시설과 재적자 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5/08/13/1291579_3.pdf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文部科学省.'슈퍼글로벌 대학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12/siryo/__icsFiles/afieldfile/2014/05/15/1347725_2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일본인학교 및 보습수업교 교원파견'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1338806.htm에서 2015년 9월 2일,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일본정부인정 재외교육시설' 웹 페이지에서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2.html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文部科学省. '재외교육시설 시책'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3.html#a08에서 2015년 9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재외교육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통지'를 중심으로 필자 작성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4/002/003.htm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文部科学省. '指導教員の派遣資格' http://www.pref.osaka.lg.jp/atta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웹 페이지http://www.mext.go.jp/a_menu/sports/ikusei/kouryujigyou/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청소년 정책' 웹 페이지에서 http://www.mext.go.jp/a_menu/sports/ikusei/main4_a7.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시도' 웹 페이지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文部科学省. '토비타테 유학 저팬 日本法務省出入国管理局統計'자료를 중심으로 필자 작성. http://www.mext.go.jp/a_menu/kokusai/tobitate/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学省. '학교교육법' 웹 페이지에서 http://www.mext.go.jp/a_menu/shougai/senshuu/06033002.htm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文部科学省. '해외귀국자녀에 대한 교육정책'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文部科学省. '해외자녀교육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작성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7.htm 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文部科学省. '해외체류 방인 자녀수 조사 자료:(1991년까지는 5월 1일, 1991년 이후는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 참고하여 필자 작성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6/shiryou/04111901/004.htm에서 2015년 11월 6 일 인출.

文部省. 'CLARINET'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htm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文部省.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3.html#a08에서 2015년 9월 6일 인출.

文部省. 글로벌 인재 리더 육성 웹 페이지 http://www.bbt757.com/ bond/biz?utm_source=yahoo&utm_medium=pc_kwd&ui_source=yahoo&ui_medium=kwd&wapr=564054ed 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省. 在外教育施設認定施設取り消し http://kanpoo.jp/.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省. '청소년해외유학촉진실행계획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法務省.'出入国管理基本計画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press_000300-2_000300-2-2.html 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서울일본인학교(2015.9.7). 웹 페이지에서 http://www.sjs.or.kr/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송석원(2009). 일본정부의 일계인(日系人)정책과JICA의 해외일계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37권**, 103-120.

愛知県. 愛知県における外国人の状況 http://www.pref.aichi.jp/ kokusai/sankou1ji.pdf#search 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외무성 '해외체류 방인 자녀수 조사 자료(1991년까지는 5월 1일, 1991년 이후는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6/shiryou/04111901/004.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이글루 http://egloos.zum.com/sangmok72/v/4807597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이병훈(2007).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현상과 과제. **고려법학 제 48권.**

일본학교교육법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26.html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일본해외이주 심의회 의견서 1993. http://www.janm.org/projects/inrp/japanese/overview_ja.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日本ブラジル中央教会. 在日日系ブラジル子女への教育支援 http://nipo-brasil.org/archives/2203/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日本法務省. 出入国管理局統計 http://www.immi-moj.go.jp/toukei/index.html에서 7월 2일 인출.
日本観光省留学促進政策. 웹 페이지 http://www.cas.go.jp /jp/seisaku/ryuugaku/dai2/gaiyou.pdf#search/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日本全国体験活動普及啓発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 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5/09/09/1290888_03.pdf#search/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日本海外移住協会.'일본해외이주 심의회 의견서' http://www.janm.org/ projects/inrp/japanese/overview_ja.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立命館言語文化研究. 外国人学校·民族学校. 社会正義を考えるhttp://www.ritsumei.ac.jp/acd/re/k-rsc/lcs/kiyou/19-4/RitsIILCS_19.4pp61-71HATANO.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外務省設置法(1994). 웹 페이지 http://law.e-gov.go.jp /htmldata/H11/H11HO094.html에서 2015년 12월 29일 인출.
임성모(2008).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학사학연구 제103집.** 181-214.
임영언(2010).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 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日本文化学報第46輯.** 449-461.
임영언, 김재기(2011).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의 귀환과 브라질타운형성에 관한 연구: 군마 현 오이즈미마치 일계브라질타운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6집 제4호(통권61호).** 267-291.
임영언(2011).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 브라질 이주사와 전시문화콘텐츠 고찰. **日本文化学報 第50輯.** 345-367.
임영언, 임온규 (2014).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계인의 모국귀환정책 연구. **日語日文学. 第63輯.** 281-302.
임영언, 허성태 (2015). 재일코리안 한국계 민족학교의 학교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64**집. 529-546.
임채완, 임영언, 박구용 (2013). **일계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 네트워크.** 29-30. 서울: 북코리아.
위키백과. 웹 페이지 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C%86%8C%E

B%85%84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위키피디아. '학습지도요령' 웹 페이지에서 http://sja.wikipedia.org/wiki/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자이카(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웹 페이지 http://www.jica.go.jp/activities/schemes/tr_youngleader/summary.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자이카(JICA). http://www.jica.go.jp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자이카(JICA). '청년연수프로그램 일정' 웹 페이지에서 http://www.jica.go.jp/chotatsu/domestic/komagane/ku57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자이카(JICA). '해외청소년 연수실적' 웹페이지 http://www.jica.go.jp/activities/schemes/tr_youngleader/summary.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石田智恵(2009). 1990年入管法改正を経た<日系人>カテゴリーの動態ー名づけと名乗りの交錯を通してー. Core Ethics. Vol.5, 1-10.
천인계획망(千人计划网) http://www.1000plan.org/에서 2015년 9월 7일 인출.
중앙성청 http://www.kantei.go.jp/jp/cyuo-syocho/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청소년 정책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5902012.htm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코이카(KOICA). '한국의 개발원조' 웹페이지 http://kov.koica.go.kr/hom/에서 2015년 7월 2일 인출.
海外子女教育振興財団. 공익재단법인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귀국학생 수용학교' 웹 페이지http://www.joes.or.jp/g-kokunai/indes.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海外子女教育振興財団. 在外教育施設支援 http://www.joes.or.jp/sub3.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海外日系人協会. 国際日系ネット http://www.jadesas.or.j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編集部編(2006) 日本の中の外国人学校. 明石書店. 月刊 イオ. 東京: 明石書店.
佐藤郡衛(2009).日本における外国人教育政策の現状と課題ー学校教育を中心にしてー. 『**Migration Policy Review**』 **Vol.1**. 42-54.
井口泰(2001). **外国人労働者新時代**. 東京: ちくま親書.
ウイキペディア. 国際学校 https://ja.wikipedia.org/wiki/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泰日協会学校. バンコク日本人学校 http://www.tjas.ac.th/bkk/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今津孝次郎´ 松本一子編(2002). **東海地域の新来外国人学校**. 東京: 新曜社.
岡本雅享監修編著(2005). **日本の民族差別**. 東京: 明石書店.
岡部恭宜(2014). **青年海外協力隊 (JOCV) の学際的研究**. JICA-RI Working PaperNo.72. 26-36.

仲尾宏(2003). **在日韓国・朝鮮人問題の基礎知識**. 東京: 明石書店.

Dulce Hogar. ペルーの教育制度 http://members.jcom.home.ne.jp/catalinahy/educacion.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독일 재외동포 관련 자료>

김명희(2003). 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 독일의 재러 독일계 동포이주자에 대한 정책 고찰. **재외한인연구, 13(1)**, 111-1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위키백과. 웹 페이지 https://de.wikipedia.org/wiki/Jugend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인터넷 법령집. 웹 페이지 http://www.gesetze-im-internet.de/index.html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이규영(2000). 독일의 동유럽 소련 재외동포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10(2)**, 29-64.

이진영(2011). **한국의 재외동포정책(Working Paper No. 2010-11)**. 경기: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준현(1994). **독일 통일 과정상의 난민 등 처리 관계법(입법자료 1994-07)**. 서울: 법제처.

정호원(2015). 독일 귀환 후기 재이주자 자녀 교육의 방향. **재외한인학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 77~96.

조화성(2000).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5,** 85-95.

통계청. 웹 페이지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3538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B2%AD%EC%86%8C%EB%85%84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통계청. 웹 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Startseite.html에서 2015년 5월 12일 인출.

Agunias, D. R., & Newland, K.(Eds.)(2012). Developing a road map for engaging diasporas in development: A handbook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 home and host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Geneva, Switzerland.

Aussiedlermigration in Deutschland. 웹 페이지 http:// www. bpb.de /themen/L2K6XA,2,0,Aussiedlermigration_in_Deutschland.html#art2에서 2015년 5월 16일 인출

BAMF(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2013). Migrationsbericht 2011 Nürnberg: Druck-Buch-Verlag.

BAMF(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2015a). Migrationsbericht 2013 Nürnberg:

Druck-Buch-Verlag.

BAMF(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2015b). Konzept für einen bundesweiten Jugendintegrationskurs(Überarbeitete Neuauflage). Paderborn: Druck-Buch-Verlag.

Bleek, W.(2003). Auslandsdeutsche. In A. Uwe, W. Woyke(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5. Aufl.)(pp. 19-22). Opladen: Leske + Budrich.

Bundesregierung(2010).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Wolfgang Wieland, Volker Beck(Köln), Ingrid Hönlinger,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 웹 페이지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18/ 1701883.pdf.에서 2015년 5월 19일 인출.

Bundesvertriebenengesetz(BVFG).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vfg/gesamt.pdf0에서 2015년 5월 11일 인출.

Deutsche Auslandsschulen. 'Orte der Begegnung und des interkulturellen Dialogs'. http://www.auswaertiges-amt.de/sid_ CFF3409170C69FA15ACA7515C3ACAC8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Uebersicht_node.html에서 2015년 5월 25일 인출.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ZfA).http://www.auswaertiges-amt.d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 gend/Auslandsschulwesen-ZfA_node.html에서 2015년 6월 7일 인출.

Fröschle, H.(1987). Die Deutschen im Ausland: Lage, Aufgabe und Selbstverständnis der Auslandsdeutschen. In B. Willms(Hrsg.), Handbuch zur Deutschen Nation(Bd. 2)(pp. 541-545). Tübingen: Hohenrain-Verlag.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2013).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vfg/gesamt.pdf에서 2015년 5월 11일 인출.

Irwa-v(2015). Welche Leistungen erhalten Spätaussiedler? http://irwa-v.de/beruf,leistungen_spaetaussiedler.html에서 2015년 5월 22일 인출

Nieberg, Th.(2013). Auslandsdeutsche. Veröffentlichung unter Lizenz der Creative Common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 160471/auslandsdeutsche에서 2015년 5월 15일 인출.

Schneider, J.(2005). 'Integration '.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56404/integration?p=all에서 2015년 5월 17일 인출.

Stiftung Verbundenheit.(2015). Stiftungszweck.http://stiftung-verbundenheit.de/?page_id=22에서 2015년 6월 27일 인출.

VDA(1989). Die Deutschen in aller Welt.(절판) Bonn: VDA-Verlag.

VDA(1989). 'Über uns — der VDA stellt sich vor'. http://www.vda-kultur.de/de/ueber_uns/ueber-uns.php에서 2015년 6월 26일 인출.

Stiftung Verbundenheit. /de/ueber_uns/stiftung.php에서 6월 26일 인출.

Jugendaustausch auf einen Blick. de/jugendaustausch/auf-einen-blick.php에서 6월 28일 인출.

Welche Leistungen erhalten Spätaussiedler? ttp://irwa-v.de/ beruf,leistungen_spaetaussiedler.html에서 2015년 5월 22일 인출

Welt, J.(1999). 'Über die Ziele der Aussiedlerpolitik der Bundesregierung'. http://www.haus.pl/pl/pdf/pub1/09.pdf에서 2015년 6월 2일 인출.

Witte, B.C.(1990). Auswärtige Kulturpolitik und die Deutschen im Ausland. Außenpolitik, 2, 33-47.

Worbs, S., Bund, E., Kohls, M., & Babka von Gostomski, Ch.(2013). (Spät-)Aussiedler in Deutschland: Eine Analyse aktueller Daten und Forschungsergebnisse(Forschungsbericht 20). Paderborn: Druck-Buch-Verlag.

<이스라엘 자료>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3). **재외교포 상공인 네트워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곽재석(2011). **재외동포 이주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서울: 법무부.

김수진(2000).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의 국가홍보 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네페쉬 베네페쉬. 웹 페이지 http://www.nbn.org.il/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박 동, 강일규, 이영대, 정지선, 황규희(2009). **글로벌 코리안 인재의 개발 활용을 위한 네트워킹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생득권 웹 페이지.http://www.birthrightisrael.com/Pages/default.aspx에서 2015년 9월 11일 인출.

성일광(2015). 이스라엘 청소년 재외동포정책. **재외한인학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 35~60.

세계시온주의기구. 웹 페이지 http://www.wzo.org.il/world-zionist-organization에서 2015년 10월 11일 인출.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이스라엘 이민부 웹 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2015년 9월 25일, 10월 10일 인출.

이스라엘 이민부 웹 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InformationAndAdvertising/Statistics/Pages/default.aspx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웹 페이지 http://www.haaretz.com/israel-news/israel-s-absorption-of-ethiopian-immigrants-rife-with-failures-comptroller-report-shows.premium-1.519796에서 2015년 10월 1일 인출.

Why is no Israeli minister in charge of relations with Diaspora Jews?'/blogs/jerusalem-babylon/why-is-no-israeli-minister-in-charge-of-relations-with-diaspora-jews.premium-1.525431에서 2015년 10월 23일 인출.

이스라엘 총리실. 웹 페이지 http://www.pmo.gov.il/MediaCenter/Spokesman/Pages/spokeTfuzot190515.aspx에서 2015년 10월 1일 인출.

이종훈 외(1999). **주요국정지표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과 재의동포재단 중장기 사업계획**. 서울: 재외동포재단.

이진영·강성봉·김판준·임영언·정호원(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지영(2000).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 본국 귀환 및 정착 정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5권**. 77~84.

Anderson Benedict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Verso, 2.

Jewish Virtual Library.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Judaism/jewpop.html에서 2015년 10월 15일 인출

부 록

부 록

1. 일본인학교 사립재외교육시설(2014년 7월 기준)
2. 과거 문부성 지정 혹은 인정되었던 재외교육시설
3. 과거 문부성 지정 혹은 인정되었던 사립재외교육시설
4. 재외교육시설 안전확보 통지 (문교해제214호)

부록 1. 일본인학교 사립재외교육시설(2014년 7월 기준)

<표 1> 일본인학교 사립재외교육시설(2014년 7월 기준)

번호	재외방인 교육시설명칭	위치	설립자
1	뉴델리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인도 뉴델리	델리 일본인회
2	뭄바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인도 뭄바이	뭄바이 일본인회
3	자카르타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일본인학교 유지회
4	수라바야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수라바야 일본인학교 유지회
5	반튼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인도네시아 반튼	반튼 저팬클럽
6	싱가포르 일본인학교(클레멘티교 초등부, 창기교 초등부 및 중학부)	싱가포르	싱가포르 일본인회
7	콜롬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스리랑카 콜롬보	콜롬보 일본인학교 운영위원회
8	시라차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태국 시라차	태일협회
9	방콕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태국 방콕	태일협회
10	서울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한국 서울	서울 저팬클럽
11	부산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한국 부산	부산 일본인회
12	항주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중국 항주	항주 상공클럽
13	광주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중국 광주	광주 일본인학교이사회
14	상해 일본인학교(초등부, 중학부 및 고등부)	중국 상해	상해 일본상공클럽
15	심천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중국 심천	심천 일본상공회
16	소주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중국 소주	소주 일상클럽
17	대련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중국 대련	대련 일본상공회
18	청도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중국 청도	청도 일본인회
19	천진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중국 천진	천진 일본학교운영이사회
20	북경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중국 북경	북경 일본인학교운영이사회
21	홍콩 일본인학교(홍콩교 초등부 및 동 중학부 혹은 대포교 초등부)	중국 홍콩	HONGKONG JAPANESE SCHOOL, Ltd
22	이슬라마바드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드 일본인회
23	카라치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파키스탄 카라치	카라치 일본인회
24	다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방글라데시 다카	다카 일본인회
25	마닐라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 일본인회

번호	재외방인 교육시설명칭	위치	설립자
26	하노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 일본인학교이사회
27	호치민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 일본상공회
28	쿠알라룸푸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일본인회
29	코타키나발루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일본인회
30	조호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말레이시아 조호바르	조호르 일본인학교운영위원회
31	페낭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말레이시아 페낭	페낭 일본인회
32	양곤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미얀마 양곤	양곤 일본인학교운영위원회
33	프놈펜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일본인회
34	대중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대만 대중	대만 일본인회
35	대북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대만 대북	대만 일본인회
36	다카오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대만 다카오	대만 일본인회
37	시드니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오스트레일리아 테리힐즈	시드니 일본인학교유한회사
38	퍼스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오스트레일리아 케임브리지	퍼스 일본인학교운영이사회
39	멜번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코필드	멜번 일본상공회의소
40	괌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미국 괌	재단법인 괌 일본인학교이사회
41	시카고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미국 알링톤 하이츠	시카고 후타바회
42	뉴저지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미국 뉴저지	뉴욕 일본인교육심의회
43	뉴욕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미국 코네티컷	뉴욕 일본인교육심의회
44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본문화교육협회
45	과테말라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과테말라	재과테말라공화국 일본인회
46	산호세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코스타리카 산호세	코스타리카 일본인회
47	보고타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콜롬비아 보고타	일본문화협회
48	산차고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칠레 산티아고	일본문화교육재단
49	파나마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파나마	파나마 일본인회
50	아순시온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파라과이 아순시온	아순시온 일본인학교운영위원회

번호	재외방인 교육시설명칭	위치	설립자
51	상파울로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브라질 상파울로	상파울로 일본인학교 교육회
52	마나우스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브라질 마나우스	마나우스 일본문화진흥회
53	리오데자네이루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리오데자네이루 일본인자제교육회
54	카라카스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베네수엘라 미란다	이수회
55	리마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페루 리마	사단법인 일본문화협회
56	아구아스카리엔테스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멕시코 아구아스카리엔테스	아구아스카리엔테스 일본인학교이사회
57	일본 멕시코학원 일본코스(초등부 및 중학부)	멕시코	사단법인 일본멕시코학원
58	밀라노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이탈리아 밀라노	사단법인 밀라노일본인학교
59	로마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이탈리아 로마	로마 일본인회
60	런던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영국 런던	일본인학교 유한회사
61	빈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오스트리아 빈	재빈 일본인학교협회
62	암스테르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재단법인 암스테르담 일본인학교
63	로테르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네덜란드 로테르담	재단법인로테르담 일본인학교
64	취리히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스위스 위스타	법인취리히 일본인학교
65	바르셀로나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일본문화재단
66	마드리드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문화기금재단
67	프라하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체코 프라하	체코 일본인회
68	뒤셀도르프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독일 뒤셀도르프	공익법인 일본국제학교
69	함부르크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독일 할스텐베크	공익법인 함부르크일본인학교
70	프랑크푸르트 일본인국제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익법인 프랑크푸르트일본인국제학교
71	베를린 일본인국제학교	독일 베를린	공익법인 베를린일본인국제학교
72	뮌헨 일본인국제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독일 뮌헨	학교법인 뮌헨일본인국제학교
73	부다페스트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헝가리 부다페스트	재헝가리 일본상공회
74	파리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프랑스 상캉탕 안 인브린느	일불문화학원
75	브뤼셀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일본인회

번호	재외방인 교육시설명칭	위치	설립자
76	바르샤바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폴란드 바르샤바	폴란드 일본인회
77	부가레스트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루마니아 일호프	부가레스트 일본인학교운영위원회
78	모스크바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일본인학교운영위원회
79	아부다비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아랍수장국 연방 아부다비	아부다비 일본인회
80	두바이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아랍수장국 연방 두바이	두바이 및 UAE북부일본인회
81	테헤란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이란 테헤란	테헤란 일본인회
82	도하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카타르 도하	카타르 일본인회
83	지다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사우디아라비아 지다	지다 일본인회
84	리야드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리야드 일본인회
85	이스탄불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 일본인회
86	바하렌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바레인 마나마	바하렌 일본인회
87	카이로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이집트 기자	카이로 일본인회
88	나이로비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케냐 나이로비	케냐 일본인회
89	요하네스부르크 일본인학교(초등부 및 중학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부르크	남아일본인회
90	와세다대학계 속와세다시부야싱가포르교(고등부)	싱가포르	Waseda Shibuya Senior High School in Singapore Pte. Ltd.
91	녀수관 방콕(고등부)	태국 방콕	죠수이칸 에듀케이션 컴퍼니(Josuikan Education Co., Ltd.)
92	성학원 애틀랜타국제학교(초등부)	미국 애틀란타	공익법인 성학원애틀란타국제학교
93	서대화학원 캘리포니아교(초등부 및 중학부)	미국 로미타	공익법인 서대화인크
94	재경런던학원(고등부)	영국 웨크섬	제경영국재단
95	릿쿄영국학원(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영국 서섹스	공익법인 릿쿄영국학원
96	스위스 공문학원고등부(고등부)	스위스 레잔	스위스 공문학원

부록 2. 과거 문부성 지정 혹은 인정되었던 재외교육시설

<표 2> 과거 문부성 지정 혹은 인정되었던 재외교육시설

재외교육시설	위치	설립자	지정 및 인정연월일	지정해제 및 인정취소 연월일
베이루트 일본인학교	레바논 케스로완		1972년 2월 10일 지정	2002년 3월 29일
라고스 일본인학교	나이지리아 라고스		1975년 3월 1일 지정	2002년 3월 29일
쿠웨이트 일본인학교	쿠웨이트		1976년 3월 30일 지정	2002년 3월 29일
바그다드 일본인학교	이라크 바그다드		1978년 1월 11일 지정	2002년 3월 29일
라스팔마스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스페인 라스팔마스	카나리아 일본인회	1975년 3월 1일 지정 1994년 1월 12일 인정	2002년 3월 29일
캘커타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인도 캘커타	캘커타 일본인회	1976년 3월 30일 지정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02년 3월 29일
베렌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브라질 베렌	베렌 일본인학교 우영위원회	1977년 2월 25일 지정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02년 3월 29일
비토리아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브라질 비토리아	비토리아 문화교육 보급	1981년 2월 10일 지정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02년 3월 29일
베로 오리존테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브라질 베로 오리존테	사단법인 목요회문화 협회	1982년 2월 6일 지정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02년 3월 29일
알제일본인학교	알제리아 알제	재알제리아 일본인회	1977년 1월 11일 지정 1994년 1월 12일 인정	2002년 3월 29일
베오그라드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베오그라드 일본인회	1979년 6월 14일 지정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02년 3월 29일

재외교육시설	위치	설립자	지정 및 인정연월일	지정해제 및 인정취소 연월일
메당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인도네시아 메당	수마트라란 재단	1981년 2월 6일 지정 1995년 1월 24일 인정	2002년 3월 29일
키토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에콰도르 키토	에콰도르 일본인회	1979년 6월 14일 지정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03년 3월 31일
앙카라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터키 앙카라	앙카라 일본인회	1980년 7월 25일 지정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04년 3월 31일
아테네 일본인학교 (초등부 및 중학부)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 일본인회	1978년 2월 25일 지정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12년 3월 31일

부록 3. 과거 문부성 지정 혹은 인정되었던 사립재외교육시설

<표 3> 과거 문부성 지정 혹은 인정되었던 사립재외교육시설

사립재외교육시설명칭	위치	설립자	지정 및 인정연월일	지정해제 및 인정취소연월일
브레멘 국제일본학원 (중학부 및 고등부)	독일연방공화국 브레멘		1989년 3월 23일 중학부 1989년 9월 6일 고등부 지정	1999년 12월 17일
영국 사천왕사학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연합왕국 서포크	사천왕사어소시에이션	1986년 11월 1일 고등부 지정 1987년 2월 9일 중학부 지정 1992년 12월 18일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인정	2001년 3월 31일
영국효성국제학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연합왕국밀톤 킹즈	공익법인영국효성국제학원	1987년 10월 26일 고등부 지정 1987년 11월 19일 중학부 지정 1994년 1월 12일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인정	2002년 8월 14일
시라가다이 아일랜드 국제학교 (중학부 및 고등부)	아일랜드 길테아		1989년 12월 26일 고등부 지정 1991년 5월 17일 중학부 지정	2003년 3월 31일
알자스세이죠학원 (중학부 및 고등부)	프랑스 오랑	알자스 세이죠학원	1986년 10월 24일 고등부 지정 1986년 11월 1일 중학부 지정 1997년 2월 25일 인정	2003년 3월 31일 중학부 2005년 3월 31일 고등부
테네시 메이지 학원	미국 테네시	미국법인 테네시 메이지학원	1990년 12월 28일 지정 1994년 1월 12일 인정	2007년 3월 31일
동해대학부속 덴마크교 (중학부 및 고등부)	덴마크 프레스트	재단법인 동해대학부속 덴마크교	1988년 10월 24일 고등부 지정 1988년 12월 24일 중학부 지정 1992년 12월 18일 지정	2008년 3월 31일
독일동음학원	독일 바덴부텐베르크	재단법인 독일 동음학원	1994년 1월 12일 인정	2012년 3월 31일
토레누 고난학원 (고등부 및 중등부) (중학부 및 고등부) -2007년 4월 1일 프랑스 고난학원	프랑스 상시르 뉴르 로와르	토레누 고난학원 -2007년 4월 1일 프랑스 고난학원 토레누로 변경	1992년 3월 26일 중학부 및 고등부 인정	2009년 3월 31일 중학부 2013년 3월 31일 고등부

사립재외교육시설명칭	위치	설립자	지정 및 인정연월일	지정해제 및 인정취소연월일
토레누 고등부 및 중학부로 개칭변경 -2009년 4월 1일 프랑스 고난학원 토레누 고등부로 개칭변경				
사우스퀸즈랜드 아카데미 (고등부)	오스트레일리아 진분바	힐즈 에듀케이셔널 파운데이션	1992년 12월 18일 인정	2013년 3월 31일
성학원애틀랜타 국제학교 (중학부)	미국 애틀랜타	공익법인성학원애틀랜타국제학교	1996년 3월 18일 인정	2015년 4월 1일

부록 4. 재외교육시설 안전확보 통지 (문교해제214호)

<표4> 재외교육시설 안전확보 통지 (문교해제214호)

문교해제214호 1995년 9월 26일

각재외교육시설운영위원회위원장
각일본인학교교장
파견교원이 있는 보습수업교교장

문부성교육조성국장
遠山耕平

재외교육시설 안전확보에 대하여(통지)

이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최근 불행히도 나이로비 일본인학교의 교장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방범수당'의 대상이 되는 경비비로 통근 길의 경비를 추가하는 것과 동시에 '방범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외교육시설을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중입니다. 또한 재외교육시설 안전지도 자료의 작성을 진행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각 재외교육시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재외교육시설에서도 특히 학생·교직원의 인명을 최우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음사항에도 유의하여 안전대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

1. 소재국의 사회사정과 방인을 둘러싼 주변상황을 파악한 후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한층 충실히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등하교 시의 안전확보를 철저히 할 것.

2. 학생의 안전확보와 함께 교직원의 안전확보에도 충분히 유의할 것. 특히 교직원의 출근·퇴청시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3. 안전지도와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내운영조직을 정비하고 전교직원이 각각 분담·협력하여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안전훈련을 실시하여 긴급사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4. 학교 경비체제에 대하여 학생·교직원이 활동하는 낮 시간의 체제를 강화할 것. 또한 복수의 경비회사와 계약하여 경쟁원리를 이용하면 경비효과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5. 재외교육시설의 안전확보에 관계되는 재외공관의 배려방법에 대해서는 외무성에도 알려놓았기 때문에 재외공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항상 최신의 치안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받을 것.

6. 위험한 사태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학교를 임시 휴업하는 등 학생·교직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하는 학교운영에 노력할 것.

7. 파견교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철저히 가지고 보험가입을 포함한 안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할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배려할 것.

1 강도와 조우하였을 경우 반항하지 말고 인명을 최우선하여 대응할 것.
2 통근시간과 일상생활에서는 행동을 패턴화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
3 방문자에 대해서는 상대방 및 안전을 확인한 후 대응할 것.
4 주택을 선택할 시에는 입지조건, 가옥의 형태, 방범상의 문제점을 조사 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것.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15-R06 동북아시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헌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효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 / 김경준 · 김태기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언 · 정호원 · 성일광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VI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VI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 · 최인재 · 유성렬 · 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 · 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최홍일 · 진성희 · 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 · 중 · 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최홍일 · 진성희 · 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최홍일 · 진성희 · 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 · 오민아 · 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 · 김기헌 · 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종 · 김기헌 · 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 · 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 · 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 · 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 · 조성화 · 곽정난 · 김경전 · 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 · 김기헌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헌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종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헌 · 김형주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종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혜정 · 좌동훈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명기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헌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헌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종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협력 (11/17)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 · 여행 · 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compar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young overseas nationals from diverse perspectives in order to be referenced in developing Korea's policy on young overseas nationals.

The policies of five countries, i.e., the U.S., China, Japan, Germany, and Israel, were reviewed in order to understand its implications in the Korean society. Precedent studies on policies of relevant countries involving overseas nationals, youth, and attracting talent were selected and analyzed, and literary works — including laws and statutes, materials on overseas residential facilities and manpower, etc. — and policy programs were extensively analyzed, through searching relevant government websites and communicating via e-mail with relevant government bodies in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in order to deduce significance of policies on young overseas national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U.S.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in place diverse programs and projects for young Korean-Americans. For example, the U.S. Department of State's Office of Overseas Schools provides assistance to schools through the government-supported programs and projects. Programs to support young overseas nationals are also run by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the American Citizens Abroad (ACA), the Federation of Women's Clubs Overseas (FAWCO), the Association of American Wives of Europeans (AAWE), and the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 (AARO).

China's policy on young overseas nationals relate to young ethnic Chinese (of Chinese nationality) and young overseas Chinese/overseas Chinese descendants (of foreign nationality). The State Council of China's Department of School Administration overseas matters pertaining to overseas Chinese nationals, while projects regarding the society of overseas Chinese nationals are jointly carried out with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China Overseas Exchange Association (COEA) and the Chinese Language Education Foundation (CLEF). In China, Chinese language institutions and overseas Chinese language pilot schools are network-linked, and educational and cultural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through regional connections with the society of overseas Chinese and ethnic Chinese.

In the case of Japan, policy support centers more on overseas nationals of Japanese nationality than of foreign nationality. Private organizations' projects for young overseas Japanese of foreign nationality are partially succeeded to and carried out by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such as the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JOVC)" program.

Germany's policy for children of overseas nationals of foreign nationality focus on helping them easily integrate into society by providing comprehensive lectures on social integration, which are divided into language study and orientat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supported overseas school policy centers on Germa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preserve the nation's cultural identity. The private sector, such as the Overseas Germans' Culture Exchange Association (OGCEA) and the Overseas German Foundation (OGF), als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young overseas Germans of foreign nationality.

In Israel, the government's policy on overseas nationals is overseen by the Ministry of Jewish Immigration Absorption and the Ministry of Diaspora Affairs. Relevant private organizations include the 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 and Nefesh B'Nefeshi which operate various youth support programs, e.g., Israel experience programs, community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Hebrew and college entrance education programs, counseling and military service support programs, and so forth.

Key words: *overseas nationals, policy on young overseas nationals, U.S., Japan, China, Germany, Israel, program*

연구보고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42) 254-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Ⅵ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979-11-5654-081-6 94330
979-11-5654-063-2 (세트)